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 간 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사건의 법원 판결 동향과 주요 판시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2012년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관련판결을 수집, 통계적으로 분석한 내용과 함께 주요 판례 34건을 수록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미디어 비평가 마셜 맥루언은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명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매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커뮤니케이션 행태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디어 산업과 사회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매체의 발달은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매체를 통해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순식간에 퍼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더불어 1인 미디어의 확산과 매체 수의 증가로 언론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선정적인 보도가 늘어나고, 이른바 '신상 털기'를 통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은 부정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현되는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 기록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언론분쟁의 유형과 현상을 파악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 그리고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언론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지침으로, 언론법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2013년 6월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Contents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1장 분석목적 및 내용

1. 분석목적 …… 16
2. 자료수집 방법 …… 16
3. 분석대상 …… 17
4. 분석내용 …… 18
5. 분석을 위한 코딩항목 및 코딩방법 …… 19

제2장 소송제기 현황

1. 심급별 소송건수 …… 22
2. 상소율 …… 22
3. 청구별 소송건수 …… 23
4.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 24
5.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 25
6.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 25
7.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 27
8. 매체별 피고 분류 …… 28

제3장 재판 결과

1. 심급별 결과 …… 30

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 31
3. 청구별 결과 ····· 31
4. 침해유형별 결과 ····· 32
5. 원고유형별 결과 ····· 33
6. 매체유형별 결과 ····· 35
7. 보도유형별 결과 ····· 36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 결과 ····· 38
2. 청구액 ····· 39
3. 인용액 ····· 39
4. 인용액 분포 ····· 40
5.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 40
6.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 41
7. 손해배상청구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 42
8.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 43
9.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 44

제5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재판 결과 ····· 45
2. 정정보도청구 사건 기각사유 ····· 45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재판 결과 ····· 46
4.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 46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 47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신청 비율 …… 50
2.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재판 결과 비교 …… 50
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 51

표목차

〈표 1-1〉 심급별 건수 …… 22
〈표 1-2〉 상소율 …… 23
〈표 1-3〉 청구별 건수 …… 23
〈표 1-4〉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 24
〈표 1-5〉 침해유형별 건수 …… 24
〈표 1-6〉 원고유형별 건수 …… 25
〈표 1-7〉 매체유형별 건수 …… 26
〈표 1-8〉 일간지 유형별 건수 …… 26
〈표 1-9〉 방송유형별 건수 …… 26
〈표 1-10〉 인터넷매체 유형별 건수 …… 26
〈표 1-11〉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 27
〈표 1-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 27
〈표 1-13〉 매체별 피고 분류 …… 28
〈표 1-14〉 매체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 29

〈표 2-1〉 심급별 결과 …… 30
〈표 2-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 31
〈표 2-3〉 청구별 결과 …… 32
〈표 2-4〉 침해유형별 결과 …… 33
〈표 2-5〉 원고유형별 결과 …… 34
〈표 2-6〉 공적 인물에 대한 결과 …… 34
〈표 2-7〉 매체유형별 재판 결과 …… 35
〈표 2-8〉 일간지 유형별 재판 결과 …… 35
〈표 2-9〉 방송 유형별 재판 결과 …… 36
〈표 2-10〉 인터넷매체 유형별 재판 결과 …… 36
〈표 2-11〉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재판 결과 …… 37
〈표 2-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재판 결과 …… 37

〈표 3-1〉 손해배상청구 재판 결과 …… 38
〈표 3-2〉 손해배상 청구액 …… 39
〈표 3-3〉 손해배상 인용액 …… 40
〈표 3-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 40
〈표 3-5〉 손해배상사건의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 41
〈표 3-6〉 손해배상사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 42
〈표 3-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 42
〈표 3-8〉 손해배상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 43
〈표 3-9〉 손해배상사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 43
〈표 3-10〉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 44

〈표 4-1〉 정정보도청구 사건 재판 결과 …… 45
〈표 4-2〉 정정보도청구 기각사유 …… 46
〈표 4-3〉 반론보도청구 사건 재판 결과 …… 46
〈표 4-4〉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 …… 47
〈표 4-5〉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 48
〈표 4-6〉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 48
〈표 4-7〉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 49
〈표 4-8〉 정정보도등의 보도본문 길이 …… 49

〈표 5-1〉 조정신청 비율 …… 50
〈표 5-2〉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재판 결과 비교 …… 51
〈표 5-3〉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 52
〈표 5-4〉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 52
〈표 5-5〉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 52

분석대상 판결목록(민사 118건) …… 53

제2부 언론관련판결 사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 원고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각 기사는 대부분 진실에 부합하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A VS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6. 선고 2010가합375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14403 판결) …… 58

2. 기사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의 학원 설립에 대해 '부도덕한 행위', '불공정행위'라고 표현한 것은 언론사의 평가적 의견을 적시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A 주식회사 VS 주식회사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나40856 판결(확정)) …… 71

3. 국내 최대 일간지 발행사의 대표인 원고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보도 내용 또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판단된다.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1명 VS 한국방송공사 외 3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09가합55322 판결) …… 77

4. 보도의 기초가 된 위키리크스 문건에는 정부 관계자가 미국 하원의원에게 '쌀 개방 추가 협상을 약속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원문의 내용이 왜곡되었으므로 정정보도하라.
외교통상부 VS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13593 판결) …… 87

5. 원고들이 휴게소 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은 제작진이 사전에 정한 의도대로 취재 · 촬영하고 줄거리에 맞게 편집하여 제작한 악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하라.
A 외 2명 VS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0가합23150 판결) …… 93

6. 집단의 성격과 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정신과 의사들'이라는 표현이 신경정신과 의사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A 외 69명 V S 주식회사 예스헬스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4.선고 2011가합1049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1.선고 2012나38409 판결) … 131

7. '원고가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돈벌이를 위한 자발적 지원자로 규정했다'는 보도는 원고의 기자회견 발언을 바탕으로 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진실성, 공공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없다.
A VS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외 3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4.선고 2011가합127411 판결) …… 140

8. 'KBS 총무국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민주당사까지 가는 버스를 지원하였다'는 보도는 성명을 인용하거나 전문의 형식으로 표현되었지만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고 그 내용 또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정정보도하라.
한국방송공사 VS 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24. 선고 2011가합10037 판결(확정)) …… 147

9. '수사를 담당한 군 검찰'이라는 표현은 국방부 검찰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소속 구성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보도의 공익성, 진실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C VS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외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가합48808 판결(확정)) …… 155

10. 국회의원의 역사관이라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임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기사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인다.
A VS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외 1명
(서울고등법원 2012. 6. 1.선고 2012나8354 판결(확정)) …… 170

11. 취재기자가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보도 이후 원고가 사기죄로 기소된 점, 타 언론사에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A 외 1명 VS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가합65346 판결(확정)) …… 176

12. 특별히 신속성이 요구되지 않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별도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익명의 취재원의 말을 믿고 '원고가 카바 수술 관련 부작용으로 병원과 마찰을 빚어 사직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그대로 기사화하였으므로 정정보도하고 손해배상하라.
A VS 주식회사 코리아메디케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19.선고 2009가합1574 판결(확정)) …… 183

13. 국회의원인 원고의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해 감시 · 비판 · 견제의 의도에서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발언 내용을 심하게 왜곡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이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하라.
A VS 주식회사 매일신문사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2. 8. 10. 선고 2011나3469 판결) …… 196

14. 네티즌이 창작한 '가상 기도문'을 원고가 북한에서 실제로 한 기도인 것처럼 허위 보도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 노력도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하라.
A VS 뉴데일리 주식회사 외 4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2가합26515 판결) …… 203

15.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그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하므로,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A 외 9명 VS 주식회사 참언론 외 1명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 214

16. 원고가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Access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 외 1명 VS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외 2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14931 판결(확정)) …… 220

17. 원고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두문자나 이니셜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원고가 소속된 통신사 및 주재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명 또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도로 인한 피해자로 볼 수 없다.
A VS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외 1명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10. 25. 선고 2012가단7881 판결(확정)) …… 229

18. 원고들이 '수요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는 익명의 취재원 등 신빙성이 부족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하라.
한국방송공사 외 9명 VS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외 1명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나99162 판결) …… 236

19. 대법원이 특정한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피고 방송사가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극심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사항에 대한 여론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하라.
A 외 3명 VS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1가합23621 판결) …… 248

제2장 재산권 침해 사례

1. 보도내용이 이례적이어서 발생가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이 큰 방송사로서는 진실 여부 확인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A VS 주식회사 문화방송
(수원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1가합14797 판결) …… 269

2. 기사형 광고에서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언론사는 일반 보도기사와 동일하게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게재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사형 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입해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하라.
A 외 104명 VS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외 3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1가합127350 판결) …… 286

3. 사실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여 원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A 영어마을 주식회사 외 1명 VS 주식회사 제주도민일보 외 7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1가합42930 판결) …… 296

제3장 초상권 침해 사례

1. 방송된 신체의 일부만으로 피촬영자의 특정이 곤란한 경우, 단지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A VS 주식회사 와이티엔 외 1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가합10952 판결(확정)) …… 327

2. 공익적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이나 초상권 보호절차를 생략해도 용인될 만큼의 긴급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하라.
A 외 2명 VS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9. 19. 선고 2011가단102015 판결) …… 331

3. 원고가 기자들에게 면담 당시에 찍은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A VS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가합13890 판결(확정)) …… 334

4.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원고들이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을 방송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A 외 2명 VS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7. 선고 2011가단43086(확정)) …… 341

5. 지명수배 중인 원고의 실명과 초상을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조속한 검거에 일조하도록 한다는 공익이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된다.
A VS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외 2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1가합15231(확정)) …… 344

제4장 기타 사례

모욕사례

1.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는 모욕행위는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비판・감시・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
A VS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고등법원 2012. 1. 27. 선고 2011나36512 판결) …… 353

2. KBS 라디오 간부인 원고들을 사장의 '하수인'이라고 지칭한 것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하라.
한국방송공사 외 3명 VS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가합5957 판결(확정)) …… 360

사생활 침해 사례

1. 원고들의 사적 영역을 무단히 침범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나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손해배상하고 기사를 삭제하라.
A 외 2명 VS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외 6명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1나89080 판결) …… 369

2. 공적인 인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영역이 존재하는 것인 바, 남녀간의 성적 교섭과 같은 인간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은 절대적으로 보호된다.
A VS B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2가합4911 판결) …… 380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1.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제재수단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은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결정 2009헌가27) …… 389

2.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 운영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결정 2010헌마47,252(병합)) …… 399

엠바고 사례

1. 국가 안위나 중대한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일 경우, 엠바고 요청을 받은 바 없는 기자라 하더라도 그 취지를 존중하여 관련 사안의 보도를 유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일보 주식회사 VS 대한민국
(부산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1가합3841 판결) …… 411

제 1 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1장 분석목적 및 내용

제2장 소송제기 현황

제3장 재판 결과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5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제1장 분석목적 및 내용

1. 분석목적

법원이 선고한 언론관련 판결은 분쟁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언론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이나 언론인에게 언론관련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또, 언론관련 판결의 내용은 언론분쟁 관련 법리를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서 언론 분쟁의 추세 및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위원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소송의 판결문에 나타난 법률적 판단 내용을 다양한 통계 분석을 통해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송제기 현황, 재판 결과, 손해배상 인용액 등 판결 내용에 포함된 정보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법원의 판결 경향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언론분쟁의 법리적, 사회적 연구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자료수집 방법

법원도서관에서 판결문 검색 후,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 이용

판결의 수집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열람 특별창구를 이용하여 검색[1]한 후, 법원의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를 이용하였다.

판결에 관한 검색어는 ①정정보도 ②반론보도 ③추후보도 ④보도&명예훼손&손해배상 ⑤보도&초상권 ⑥보도&음성권 ⑦보도&사생활 ⑧보도&성명권 등으로 하였다. 그러나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 조정성립 등으로 처리된 사건은 검색이 되지 않아 수집 및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 법원은 2006년 5월 1일부터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판결문을 검색 ·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분석대상

가. 2012년도 분석대상 언론 관련 판결은 민사 118건

분석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중 언론등[2]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이다.

이 중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기사삭제 등을 구하는 청구와 배포나 방영금지 등을 구하는 신청, 그리고 이와 병합된 사건으로 분석 대상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집된 2012년도 분석 대상 판결은 총 118건이다.

나. 분석 대상 판결은 심급,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각 개별사건 모두 분석 대상으로

판결 분석은 확정된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1심 사건과 그 상소심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분석의 경우 2012년 한 해 동안 수집된 모든 언론소송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심급에 관계없이 판결 모두 개별사건으로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분석 대상에는 위 기간 중에 상소심 없이 하급심만 존재하거나 하급심 없이 상소심만 존재하는 판결도 포함되어 있다.

다. 여러 언론사가 공동 피소된 사건의 재판결과는 매체별로 구분하여 분석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피소된 사건의 경우, 언론사별로 보도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 인용내용, 손해배상 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소송사건을 피소된 언론사 매체별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매체별 분석 대상 판결 총 건수는 172건이다.

라. 청구권별 처리결과 등은 매체별 총 건수 172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하여 분석

한편, 분석대상 판결은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여러 청구를 병합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분석에서는 각각의 청구권별 처리결과나, 위원회 조정을 거친 소송사건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매체별 총 건수 172건을 청구권별로 나누어 집계, 분석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청구권별 총 건수는 284건이다.

2) '언론등'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 뉴스통신 ·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뜻한다.

4. 분석내용

본 보고서는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의 소송 제기현황, 재판 결과,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반론보도청구의 재판 결과, 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의 비교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송 제기현황

심급별 소송건수, 상소율, 청구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매체별 피고구성 등

나. 재판 결과

심급별 재판 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재판 결과, 침해유형별 재판 결과, 원고유형별 재판 결과, 매체유형별 재판 결과, 보도유형별 재판 결과 등

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등

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재판 결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문의 형식 등

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2012년도 분석대상 소송사건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 결과 비교,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등

5. 분석을 위한 코딩항목 및 코딩방법

가. 코딩항목

분석 목록	구체적 분석 항목		
일반사항	01. 판결번호 02. 선고일자 03. 법원명	04. 심급 05. 청구의 종류 06. 침해유형	
원 고	07. 원고명 08. 대표 원고 분류	09. 공적인물 분류	
피 고	10. 사건 피고명 11. 사건 피고분류 12. 매체명	13. 매체별 피고분류 14.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매체분류	15. 매체분류		
보도내용 분류	16. 보도내용 분류 16-1. 방송 외 기사유형	16-2. 방송 프로그램 유형	
청 구 별 처리결과	17. 청구별 처리결과 17-1. 정정보도 17-2. 반론보도 17-3. 추후보도	17-4. 손해배상 17-5. 기사삭제 17-6. 사과	
원 · 상소심 결 과	18. 심급별 결과 18-1. 1심 18-2. 항소심	18-3. 상고심 18-4. 파기환송심 18-5. 재상고심	19. 원고 원심유지 여부
조정신청 여부	21. 조정신청 결과 20. 조정청구명	22. 직권조정 결정액	
손해배상	23. 사건 청구액 24. 사건 인용액 25. 매체별 청구액	26. 매체별 인용액 27. 손해배상 기각사유	
정정보도	28. 정정 기각사유	29. 정정 각하사유	
반론보도	30. 반론 기각사유	31. 반론 각하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형식	32. 보도의 인용 여부 33. 보도지면(프로그램) 34. 보도위치	35. 보도제목 36. 보도본문 길이	

나. 코딩방법

수집된 판결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 분석보고서의 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1) 대표 원고 분류

① 원고가 다수인 사건 중 개인 및 단체가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단체로 분류하였다.

② 공인이란 고위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말한다. 판결에서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③ 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 상의 공직자[3]를 말하며, 공적 인물이란 연예인・정치인・기업가・언론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이거나 단체의 대표 등으로서 그 활동이 공적 관심사인 사람을 말한다.

④ 공인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하였다. 전직이라 함은 언론사가 원고의 재직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도를 했지만 현재는 원고가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⑤ 일반인과 공인이 함께 신청한 경우 공인으로 분류하였다.

2) 매체명 분류

① 청구취지에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사삭제 등)가 있거나 오프라인과 함께 언론사닷컴 기사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하였다.

예) 사건 피고는 (주)A신문사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A신문, A신문사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였다면 2개의 매체에 대해 각각 코딩함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해당 언론인의 소속 매체명을 기재하였다.

3) 매체별 피고 분류

① 매체별로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②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사나 부장 등이라도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하였다.

4)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5) 방송 분류

① 지상파방송 중 지상파방송사의 지역방송총국 및 계열사[4]와 지역민방은 지역방송으로 분류하였다.

② 고발성격이 짙은 프로그램만을 시사・고발로 분류하였다.

예)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등

③ 뉴스 프로그램 내의 고발 코너(현장추적 등)는 뉴스로 분류하였다.

④ 「SBS 스페셜」, 「생방송 오늘아침」 등 다큐멘터리나 생활정보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교양・정보로 분류하였다.

6) 청구별 처리결과

① 원고 일부승소라 함은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감액 또는 감축

3) 국무위원・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4) 예) KBS전주방송총국, 대구MBC 등

된 경우, 또는 여러 청구 중에 일부의 청구만 인용된 경우, 즉 1개의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만 인용되고 정정보도는 기각된 경우를 말한다.

② 항소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취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상고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라면 원고 승소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하였다.

7) 원고 원심유지 여부

항소심의 원심은 1심, 상고심의 원심은 항소심을 말한다. 환송후심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8) 매체별 청구액(인용액)

①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청구액(인용액)을 기재하되, 매체별로 각자(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인용)한 경우에는 매체별로 동일한 금액을 각 기재하였다.

②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인용액)에 합산하였다.

③ 항소심과 상고심도 1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기재하였다.

제2장 소송제기 현황

2012년도 분석대상 판결 118건을 대상으로 심급별 소송건수, 상소율, 청구별・침해유형별・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등 소송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소송건수

1심 55.9%, 항소심 28.0%, 상고심 16.1%

분석대상 판결을 대상으로 심급별 건수를 살펴본 결과, 1심 판결이 66건(55.9%), 항소심이 33건(28.0%), 상고심이 19건(16.1%)으로 나타났다.

〈표 1-1〉 심급별 건수

심급	건수	비율(%)
1심	66	55.9
항소심	33	28.0
상고심	19	16.1
합계	118	100.0

2. 상소율

항소율 56.1%, 상고율 54.5%

분석대상 판결 중 1심 사건과 항소심 사건을 대상으로 이후에 원고 또는 피고가 상소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1심 판결 66건 중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은 37건으로 항소율은 56.1%로 나타났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 33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18건으로 상고율이 54.5%였다.

〈표 1-2〉 상소율

심급	건수	상소건수	상소율(%)
1심	66	37	56.1%
항소심	33	18	54.5%

3. 청구별 소송건수

원고가 선호하는 피해구제 방법은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구하는 청구 내용을 통해 이들이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가 78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60건(34.9%)으로 나타났다.

한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청구권별로 각각 나누어 이를 합산해 본 결과, 손해배상청구는 151건(53.2%), 정정보도청구는 105건(37.0%), 반론보도청구는 13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원고들이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은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임을 알 수 있다.

〈표 1-3〉 청구별 건수

청구명	건수	비율(%)
정정	9	5.1
정정/반론	7	4.0
정정/반론/손해배상	5	2.9
정정/손해배상	78	45.3
정정/손해배상/사과	2	1.2
정정/기사삭제	2	1.2
정정/사과	2	1.2
반론	1	0.6
손해배상	60	34.9
손해배상/기사삭제	1	0.6
손해배상/기사삭제/보도금지	2	1.2
손해배상/기사삭제/사과	1	0.6
손해배상/보도금지	2	1.2
합계	172	100.0

〈표 1-4〉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청 구 명	건수	비율(%)
정정보도	105	37.0
반론보도	13	4.6
손해배상	151	53.2
기사삭제	6	2.1
사과	5	1.7
보도금지	4	1.4
합계	**284**	**100.0**

4.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침해유형은 명예훼손이 66.1%로 가장 많아

분석대상 판결에서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인격권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명예훼손이 78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재산권 침해가 13건(11.0%), 명예훼손 및 모욕, 사생활 침해가 각 4건(3.4%), 초상권 침해 3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침해유형별 건수

침해유형	건수	비율(%)
명예	78	66.1
명예/모욕	4	3.4
명예/사생활	2	1.6
명예/재산권	1	0.9
명예/초상	3	2.5
명예/초상/모욕	1	0.9
명예/초상/사생활	1	0.9
초상	3	2.5
초상/음성	1	0.9
초상/음성/사생활/모욕	1	0.9
사생활	4	3.4
재산권	13	11.0
저작권	3	2.5
기타	3	2.5
합계	**118**	**100.0**

5.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원고유형은 일반인이 39.8%, 공직자 15.3% 순으로 나타나

언론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47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직자 18건(15.3%), 언론사 15건(12.7%) 순이었다. 그 외 공적 인물 12건(10.2%), 일반단체 11건(9.3%) 등으로 나타났다.

〈표 1-6〉 원고유형별 건수

원고유형	건수	비율(%)
공직자	18	15.3
공적 인물	12	10.2
일반인	47	39.8
국가기관	6	5.1
기업	9	7.6
언론사	15	12.7
일반단체	11	9.3
합계	**118**	**100.0**

6.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매체유형별 소송건수는 인터넷매체가 45.9%로 가장 많아

분석대상 판결 118건 중 피고 언론사가 다수인 사건을 각 매체별로 나누어 집계한 분석대상 총 건수는 172건이었다. 172건에 대한 매체유형별 소송건수는 인터넷매체가 79건(45.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간신문 43건(25.0%), 방송 28건(16.3%) 순으로 나타났다.

일간지 중에는 중앙종합일간지가 30건(69.8%), 방송 중에는 지상파방송이 23건(82.1%)으로 소송건수가 많았다.

인터넷매체의 경우에는 인터넷신문이 40건(50.6%), 언론사닷컴이 38건(48.1%)이었다.

〈표 1-7〉 매체유형별 건수

매체유형	건수	비율(%)
일간신문	43	25.0
주간신문	14	8.2
월간지	5	2.9
방송	28	16.3
뉴스통신	3	1.7
인터넷매체	79	45.9
합계	**172**	**100.0**

〈표 1-8〉 일간지 유형별 건수

일간지 유형	건수	비율(%)
중앙종합	30	69.8
지역종합	11	25.6
스포츠	2	4.6
합계	**43**	**100.0**

〈표 1-9〉 방송유형별 건수

방송유형	건수	비율(%)
지상파방송	23	82.1
지역방송	2	7.1
케이블	2	7.1
라디오	1	3.7
합계	**28**	**100.0**

〈표 1-10〉 인터넷매체 유형별 건수

인터넷매체 유형	건수	비율(%)
인터넷신문	40	50.6
언론사닷컴	38	48.1
포털	1	1.3
합계	**79**	**100.0**

7.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방송 외 매체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78.5%,
방송은 뉴스가 42.9%로 가장 많아

분석대상 판결의 총 매체별 건수 172건에서 방송매체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인터넷매체 144건을 대상으로 소송의 원인이 된 보도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가 113건(78.5%), 사설이 10건(6.9%)으로 스트레이트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방송매체의 경우 문제가 된 보도유형은 뉴스 12건(42.9%), 시사·고발프로그램 10건(35.7%), 교양·정보 3건(10.7%) 등으로 나타났다.

〈표 1-11〉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보도유형(방송 외)	건수	비율(%)
스트레이트	113	78.5
스트레이트/사설	6	4.1
스트레이트/인터뷰	1	0.7
사설	10	6.9
인터뷰	2	1.4
인터뷰/칼럼	2	1.4
칼럼	2	1.4
사진	1	0.7
광고	4	2.8
기타	3	2.1
합계	**144**	**100.0**

〈표 1-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보도유형(방송)	건수	비율(%)
뉴스	12	42.9
시사·고발	10	35.7
교양·정보	3	10.7
교양·정보 / 드라마	1	3.6
드라마	2	7.1
합계	**28**	**100.0**

8. 매체별 피고 분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47.1%를 차지

각 사건의 피고를 매체별로 나눈 172건을 대상으로 피고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언론사가 81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건수는 29건(16.9%)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피고 구성을 언론사 그리고 언론인의 직위별로 각각 구분한 후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언론사가 152건(53.9%)으로 가장 많았고,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 58건(20.6%), 비언론인 26건(9.2%), 대표이사 21건(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3〉 매체별 피고 분류

매체별 피고 분류	건수	비율(%)
언론사	81	47.1
언론사/대표	6	3.5
언론사/대표/국장	1	0.6
언론사/대표/부장	3	1.6
언론사/국장/담당 기자	7	4.1
언론사/국장/부장/담당 기자	1	0.6
언론사/논설위원	1	0.6
언론사/논설위원/부장/담당 기자	1	0.6
언론사/부장/담당 기자	2	1.2
언론사/담당 기자	29	16.9
언론사/담당 기자/비언론	5	2.9
언론사/비언론	15	8.7
대표	4	2.3
대표/국장/논설위원/담당 기자/비언론	2	1.2
대표/국장/비언론	2	1.2
대표/담당 기자	3	1.6
논설위원/비언론	1	0.6
담당 기자	7	4.1
담당 기자/비언론	1	0.6
합계	**172**	**100.0**

〈표 1-14〉 매체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매체별 피고구성	건수	비율(%)
언론사	152	53.9
대표이사	21	7.4
국장	13	4.6
논설위원	5	1.8
부장	7	2.5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	58	20.6
비언론	26	9.2
합계	**282**	**100.0**

제3장 재판 결과

분석 대상 판결의 재판 결과를 심급별, 청구별, 원고유형 및 매체유형별, 보도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결과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의 원고승소율 46.6%, 원고패소율 53.4%

재판 결과에 따른 원고승소율(원고 일부승소 포함)을 산정해 본 결과,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의 원고승소율은 46.6%, 원고패소율은 53.4%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원고패소율이 원고승소율보다 6.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판결들의 심급별 원고승소율을 살펴본 결과, 1심 50.0%, 항소심 51.5%, 상고심이 26.3%로 각각 조사되었다.

한편, 원고의 청구취지나 항소취지의 인용정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원고의 청구(항소) 취지를 감축 또는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심급별 결과

심급	원고승	원고패	계
1심	33 (50.0)	33 (50.0)	66 (100.0)
항소심	17 (51.5)	16 (48.5)	33 (100.0)
상고심	5 (26.3)	14 (73.7)	19 (100.0)
합계	**55 (46.6)**	**63 (53.4)**	**118 (100.0)**

※ ( )안의 숫자는 %

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 비율은 82.7%로 나타나

분석대상 판결 118건 중 항소심 33건과 상고심 19건을 합산한 52건을 대상으로 원심판결 유지여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17건,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26건으로 상소심의 82.7%가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고가 승소한 원심이 번복된 경우가 4건, 원고가 패소한 원심이 번복된 경우가 5건으로 원심판결 번복비율은 17.3%였다.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72.8%였고 원심판결 번복비율은 27.2%였다. 상고심의 경우 19건 모두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표 2-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구분	건수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번복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번복	원고패소판결 번복
항소심	33 (100.0)	12 (36.4)	12 (36.4)	4 (12.1)	5 (15.1)
상고심	19 (100.0)	5 (26.3)	14 (73.7)		
합계	**52 (100.0)**	**17 (32.7)**	**26 (50.0)**	**4 (7.7)**	**5 (9.6)**
		43 (82.7)		**9 (17.3)**	

※ ( )안의 숫자는 %

3. 청구별 결과

청구별 원고승소율 정정청구 31.4%, 반론청구 69.2%, 손배청구 36.4%

한 사건에서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들을 우선 매체별로 분류한 후, 다시 각 청구권별로 나누어 재판 결과를 살펴보았다. 청구별 원고승소율은 기사삭제청구가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도금지청구 75.0%, 반론보도청구 69.2%, 손해배상청구 36.4% 순이었다. 정정보도청구는 31.4%로 원고승소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사과문 게재 청구가 5건 있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표 2-3〉 청구별 결과

청구명	원고승	원고패	계
정정보도	33 (31.4)	72 (68.6)	105 (100.0)
반론보도	9 (69.2)	4 (30.8)	13 (100.0)
손해배상	55 (36.4)	96 (63.6)	151 (100.0)
기사삭제	5 (83.3)	1 (16.7)	6 (100.0)
보도금지	3 (75.0)	1 (25.0)	4 (100.0)
사과		5 (100.0)	5 (100.0)
합계	**105 (37.0)**	**179 (63.0)**	**284 (100.0)**

※ ( )안의 숫자는 %

4.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유형에 따른 원고승소율은 명예훼손 42.3%, 재산권 침해 53.8%로 나타나

판결문의 청구취지를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 42.3%, 재산권 침해 53.8%, 초상권 침해 66.7%로 나타났다. 그 외 재산권, 명예와 초상권이 함께 침해된 경우, 초상권과 음성권이 함께 침해된 경우 등에서 원고승소율이 100.0%로 나타났지만 건수가 적어 의미 있는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기타 침해유형 사례로는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를 시청함으로써 쇠고기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어 국민으로서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사례[1] , 전교조 명단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한 사례[2], 신문사 소유의 전광판을 촬영한 후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해 가상 뉴스를 제작,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전광판에 대한 소유권 침해를 주장한 사례[3] 등이 있었다.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5660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67097 판결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2나284

〈표 2-4〉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명예	33 (42.3)	45 (57.7)	78 (100.0)
명예/모욕	1 (25.0)	3 (75.0)	4 (100.0)
명예/사생활		2 (100.0)	2 (100.0)
명예/재산권	1 (100.0)		1 (100.0)
명예/초상	3 (100.0)		3 (100.0)
명예/초상/모욕	1 (100.0)		1 (100.0)
명예/초상/사생활		1 (100.0)	1 (100.0)
재산권	7 (53.8)	6 (46.2)	13 (100.0)
초상	2 (66.7)	1 (33.3)	3 (100.0)
초상/음성	1 (100.0)		1 (100.0)
초상/음성/사생활/모욕	1 (100.0)		1 (100.0)
사생활	2 (50.0)	2 (50.0)	4 (100.0)
저작권	2 (66.7)	1 (33.3)	3 (100.0)
기타	1 (33.3)	2 (66.7)	3 (100.0)
합계	**55 (46.6)**	**63 (53.4)**	**118 (100.0)**

※ ( )안의 숫자는 %

5. 원고유형별 결과

공적 인물, 국가기관 승소율 각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원고유형에 따른 재판 결과를 살펴보니 공적 인물과 국가기관의 승소율이 각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단체가 45.5%, 기업은 44.4%의 승소율을 보였다. 언론사의 경우, 26.7%로 승소율이 가장 낮았다.

〈표 2-5〉 원고유형별 결과

원고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공직자	7 (38.9)	11 (61.1)	18 (100.0)
공적 인물	10 (83.3)	2 (16.7)	12 (100.0)
일반인	20 (42.6)	27 (57.4)	47 (100.0)
국가기관	5 (83.3)	1 (16.7)	6 (100.0)
일반단체	5 (45.5)	6 (54.5)	11 (100.0)
기업	4 (44.4)	5 (55.6)	9 (100.0)
언론사	4 (26.7)	11 (73.3)	15 (100.0)
합계	**55 (46.6)**	**63 (53.4)**	**118 (100.0)**

※ ( )안의 숫자는 %

〈표 2-6〉 공적 인물에 대한 결과

공적인물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정치인		1 (100.0)	1 (100.0)
연예인	1 (100.0)		1 (100.0)
기업가	1 (100.0)		1 (100.0)
언론인	1 (100.0)		1 (100.0)
기타	7 (87.5)	1 (12.5)	8 (100.0)
합계	**10 (83.3)**	**2 (16.7)**	**12 (100.0)**

※ ( )안의 숫자는 %

6. 매체유형별 결과

뉴스통신, 월간지 상대 원고승소율 높게 나타나

분석대상판결 118건 중 여러 언론사가 공동 피소된 사건을 매체별로 각 구분한 172건을 대상으로 매체유형에 따른 재판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뉴스통신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간지 60.0%, 방송 46.4%, 인터넷매체 45.6%, 일간신문 37.2% 순으로 나타났다.

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종합일간지의 원고승소율이 63.6%인 것에 비해 중앙종합일간지는 26.7%로 낮게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 지상파방송을 대상으로 한 원고승소율은 47.8%로 나타났으며, 지역방송, 케이블, 라디오의 경우에는 건수가 각 1~2건에 불과해 통계적 의미를 두기 어렵다. 인터넷매체에 대해서는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47.4%, 인터넷신문은 42.5%로 분석됐다.

〈표 2-7〉 매체유형별 재판 결과

매체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일간신문	16 (37.2)	27 (62.8)	43 (100.0)
주간신문	5 (35.7)	9 (64.3)	14 (100.0)
월간지	3 (60.0)	2 (40.0)	5 (100.0)
방송	13 (46.4)	15 (53.6)	28 (100.0)
뉴스통신	2 (66.7)	1 (33.3)	3 (100.0)
인터넷매체	36 (45.6)	43 (54.4)	79 (100.0)
합계	**75 (43.6)**	**97 (56.4)**	**172 (100.0)**

※ ( )안의 숫자는 %

〈표 2-8〉 일간지 유형별 재판 결과

일간지 유형별	원고승	원고패	계
중앙종합	8 (26.7)	22 (73.3)	30 (100.0)
지역종합	7 (63.6)	4 (36.4)	11 (100.0)
스포츠	1 (50.0)	1 (50.0)	2 (100.0)
합계	**16 (37.2)**	**27 (62.8)**	**43 (100.0)**

※ ( )안의 숫자는 %

〈표 2-9〉 방송 유형별 재판 결과

방송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지상파	11 (47.8)	12 (52.2)	23 (100.0)
지역방송	1 (50.0)	1 (50.0)	2 (100.0)
케이블	1 (50.0)	1 (50.0)	2 (100.0)
라디오		1 (100.0)	1 (100.0)
합계	**13 (46.4)**	**15 (53.6)**	**28 (100.0)**

※ ( )안의 숫자는 %

〈표 2-10〉 인터넷매체 유형별 재판 결과

인터넷매체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인터넷신문	17 (42.5)	23 (57.5)	40 (100.0)
언론사닷컴	18 (47.4)	20 (52.6)	38 (100.0)
포털	1 (100.0)		1 (100.0)
합계	**36 (45.6)**	**43 (54.4)**	**79 (100.0)**

※ ( )안의 숫자는 %

7. 보도유형별 결과

보도유형별 원고승소율

방송 외 매체 스트레이트기사 대상 45.1%, 방송매체 뉴스 대상 33.3%

분석 대상 판결의 매체별 건수 172건을 방송 외 매체 144건, 방송 매체 28건으로 각 분류한 후, 보도유형에 따른 재판결과를 살펴보았다. 방송을 제외한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매체 등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이는 보도유형은 스트레이트 기사였으며, 원고승소율은 45.1%로 나타났다. 방송매체의 보도유형에 따른 원고승소율은 뉴스가 33.3%, 시사 · 고발프로그램이 50.0%였다.

〈표 2-11〉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재판 결과

보도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스트레이트	51 (45.1)	62 (54.9)	113 (100.0)
스트레이트/사설	1 (16.7)	5 (83.3)	6 (100.0)
스트레이트/인터뷰	1 (100.0)		1 (100.0)
사설	3 (30.0)	7 (70.0)	10 (100.0)
칼럼	1 (50.0)	1 (50.0)	2 (100.0)
인터뷰		2 (100.0)	2 (100.0)
인터뷰/칼럼		2 (100.0)	2 (100.0)
사진	1 (100.0)		1 (100.0)
광고	3 (75.0)	1 (25.0)	4 (100.0)
기타	1 (33.3)	2 (66.7)	3 (100.0)
합계	**62 (43.1)**	**82 (56.9)**	**144 (100.0)**

※ ( )안의 숫자는 %

〈표 2-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재판 결과

방송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뉴스	4 (33.3)	8 (66.7)	12 (100.0)
시사 · 고발	5 (50.0)	5 (50.0)	10 (100.0)
교양 · 정보	3 (100.0)		3 (100.0)
드라마	1 (50.0)	1 (50.0)	2 (100.0)
교양 · 정보 / 드라마		1 (100.0)	1 (100.0)
합계	**13 (46.4)**	**15 (53.6)**	**28 (100.0)**

※ ( )안의 숫자는 %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분석대상 판결 118건 중 피고가 여러 언론사인 경우 각 매체별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청구별로 분류한 건수는 284건이었다. 청구건수 284건 중 손해배상청구 사건 151건을 대상으로 원고승소율과 청구액 및 인용액, 함께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등을 살펴보았다.

손해배상사건의 청구액 또는 인용액을 분석함에 있어 평균액의 경우, 건수가 매우 적은 최고액 또는 최저액이 평균액의 상승 또는 감소에 영향을 미쳐 중심 경향을 파악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액 또는 인용액의 중앙액[1]과 최빈액[2]을 함께 조사하였다.

또, 원고가 다수인 경우 원고들 각각의 청구액이나 인용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피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하여 산출된 매체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에는 해당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의 청구액 또는 인용액에 합산하였다.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 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36.4%

손해배상청구 사건 151건 중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55건으로 원고승소율은 36.4%로 나타났다.

〈표 3-1〉 손해배상청구 재판 결과

청구건수	원고승	원고패
151 (100.0)	55 (36.4)	96 (63.6)

※( )안의 숫자는 %

1) 중앙액이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을 말한다.

2) 최빈액은 전체 사례 중 건수가 가장 많은 값이다.

2. 청구액

손해배상사건 청구액 평균은 1억 8,374만 원, 중앙액은 5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대상으로 원고의 청구액 평균과 중앙액, 최고액, 최빈액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구액 평균은 약 1억 8,374만 원이었고, 중앙액과 최빈액은 각 5천만 원이었다. 한편, 전체 손해배상청구 151건 중 1억 원 이상인 고액 청구 사건이 54건(35.8%)을 차지하였으며, 최고 청구액은 30억 원, 최저액은 7,844원이었다.

〈표 3-2〉 손해배상 청구액

청구액(원) / 건수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151	183,744,076	50,000,000	50,000,000	7,844	3,000,000,000

3. 인용액

손해배상 인용액의 평균액은 2,711만 원, 중앙액은 1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151건 중 청구취지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55건에 대해 인용액을 살펴보았다. 인용액의 평균액은 2,711만 원, 중앙액은 1,000만 원으로 평균액이 중앙액의 약 2.7배 정도였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손해배상액인 최빈액은 500만 원이었다.

손해배상 인용 최고액은 3억 원으로, 원고들이 운영하는 휴게소에서 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였다는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고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3)]

한편,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55건 중 항소심 판결은 19건, 상고심 판결이 3건이었다. 위 상소심 판결 22건을 대상으로 상소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인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항소심 중 원심 판결의 인용액을 유지한 경우가 9건이었고, 증액한 경우(원심의 원고 패소판결을 번복한 경우 포함)가 7건, 감액한 경우가 3건으로 나타났다. 상고심의 경우 3건 모두 원심 인용액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0가합23150 판결

〈표 3-3〉 손해배상 인용액

인용액(원) / 건수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55	27,115,633	10,000,000	5,000,000	1,500,000	300,000,000

4.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 인용액은 500만 원 이하가 40.0%로 가장 많아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인용된 사건 55건의 인용액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5백만 원 이하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내 범위인 경우가 각 18.2%로 나타났다.

〈표 3-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인용액(원) / 건수	5백만 이하	5백만 초과 ~ 1천만	1천만 초과 ~ 2천만	2천만 초과 ~ 5천만	5천만 ~
55 (100.0)	22 (40.0)	10 (18.2)	10 (18.2)	9 (16.4)	4 (7.2)

※ ( )안의 숫자는 %

5.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승소율 26.5%

손해배상사건 151건을 침해유형별으로 분류하여 원고승소율과 인용액을 분석하였다. 침해유형 중 건수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26.5%로 나타났으며, 인용액의 중앙액은 5백만 원이었다. 재산권 침해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57.1%, 인용액의 중앙액은 2천만 원이었다. 한편, 명예훼손에 비해 초상권과 사생활 등 다른 인격권이 함께 침해된 경우 원고승소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기타 사례 중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4]의 인용액이 2억 6,856만 원으로 인용액 평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4) 전교조 교직원 명단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67097 판결

〈표 3-5〉 손해배상사건의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침해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원)	인용액의 중앙액(원)
명예	98	26	26.5	21,961,538	5,000,000
명예/모욕	6	1	16.7	5,000,000	5,000,000
명예/사생활	2	0	0	0	0
명예/재산권	1	1	100.0	11,000,000	11,000,000
명예/초상	5	5	100.0	9,200,000	10,000,000
명예/모욕/초상	1	1	100.0	5,000,000	5,000,000
명예/사생활/초상	1	0	0	0	0
재산권	21	12	57.1	20,983,316	20,000,000
초상	3	2	66.7	6,000,000	6,000,000
초상/음성	1	1	100.0	7,000,000	7,000,000
초상/모욕/사생활/음성	1	1	100.0	90,000,000	90,000,000
사생활	5	2	40.0	10,000,000	10,000,000
저작권	3	2	66.7	102,000,000	102,000,000
기타	3	1	33.3	268,560,000	268,560,000
합계	**151**	**55**	**36.4**	**27,115,633**	**10,000,000**

6.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일반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인용액의 중앙액은 950만 원

손해배상사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은 공적 인물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직자가 34.6%, 일반인은 37.5%로 나타났다. 단체의 경우, 기업의 원고승소율이 45.5%로 나타난 반면, 언론사는 4.8%로 낮게 나타났다.

손해배상의 원고유형별 인용액을 중앙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니, 일반인이 950만 원, 공직자가 1천만 원, 공적인물은 1천 5백만 원이었다. 단체의 경우, 일반단체가 1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업이 1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과 언론사의 경우,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각 1건으로 인용액은 각 5백만 원이었다.

〈표 3-6〉 손해배상사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원)	인용액의 중앙액(원)
개 인	공직자	26	9	34.6	10,666,667	10,000,000
	공적 인물	14	10	71.4	14,200,000	15,000,000
	일반인	64	24	37.5	36,491,658	9,500,000
단 체	국가기관	1	1	100.0	5,000,000	5,000,000
	일반단체	14	5	35.7	64,912,000	18,000,000
	기업	11	5	45.5	8,600,000	10,000,000
	언론사	21	1	4.8	5,000,000	5,000,000
합계		**151**	**55**	**36.4**	**27,115,633**	**10,000,000**

〈표 3-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인물 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원)	인용액의 중앙액(원)
정치인	1	0	0	0	0
연예인	2	1	50.0	5,000,000	5,000,000
기업가	1	1	100.0	15,000,000	15,000,000
언론인	1	0	0	0	0
기타 유명인	9	8	88.9	15,250,000	15,000,000
합계	**14**	**10**	**71.4**	**14,200,000**	**15,000,000**

7. 손해배상청구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인용액의 중앙액 지상파방송이 3천만 원으로 가장 높아

손해배상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은 중앙종합일간지가 20.7%, 지상파방송이 36.8%, 인터넷매체가 39.4%로 나타났다.

매체유형별 인용액의 중앙액은 지상파방송이 3,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앙종합일간지가 1,250만 원, 인터넷매체 1,05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표 3-8〉 손해배상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 \ 인용액		건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원)	인용액의 중앙액(원)
일간	중앙종합	29	6	20.7	13,333,333	12,500,000
	지역종합	8	5	62.5	7,900,000	5,000,000
	스포츠	2	1	50.0	5,000,000	5,000,000
	소계	39	12	30.8	10,375,000	10,000,000
방송	지상파	19	7	36.8	84,142,857	30,000,000
	지역방송	1	0	0	0	0
	케이블	2	1	50.0	90,000,000	90,000,000
	라디오	1	0	0	0	0
	소계	23	8	34.8	84,875,000	35,000,000
주간신문		12	4	33.3	4,500,000	5,000,000
월간지		5	3	60.0	6,333,333	5,000,000
뉴스통신		1	0	0	0	0
인터넷		71	28	39.4	23,244,993	10,500,000
합계		**151**	**55**	**36.4**	**27,115,633**	**10,000,000**

8.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손해배상사건에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율은 62.7%로 나타나

손해배상청구 151건 중 언론인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사건은 75건(49.7%)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다. 이 중 피고 언론인이 면책되어 승소한 경우는 47건(62.7%)이었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승소율 63.6%와 비슷한 수준이다.

〈표 3-9〉 손해배상사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청구건수	언론인 피고 사건	언론인 승	언론인 패
151	75 (100.0)	47 (62.7)	28 (37.3)

※ ( )안의 숫자는 %

9.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진실성이나 상당성과 관련해서 기각한 경우가 76.0%

언론소송 사건에서 법원은 판례와 학설에 의해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공익성과 상당성을 위법성 조각사유[5]로 인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기각사유 중 가장 빈번한 것도 공익성 및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된 경우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151 중 기각(원고 패소)된 96건의 기각사유를 살펴본 결과, 공익성 또는 보도의 진실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어 기각한 경우가 73건(76.0%)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보도내용에 사실의 적시가 없어 기각한 사례가 11건(11.4%)이었고,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아 기각한 경우가 6건(6.3%), 보도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경우 2건[6] 등이 있었다.

〈표 3-10〉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기각사유	건수	비율(%)
진실성	32	33.3
진실성/상당성	9	9.4
진실성/상당성/공익	1	1.0
진실성/상당성/불특정	1	1.0
진실성/상당성/사실적시 없음	2	2.1
진실성/사실적시 없음	2	2.1
상당성	26	27.1
사실적시 없음	11	11.4
불특정	6	6.3
기타	6	6.3
합계	**96**	**100.0**

5)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적법하게 되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6)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60307 판결

제5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재판 결과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31.4%

분석대상 판결을 매체별로 나눈 후, 다시 청구권별로 나눈 건수 284건 중 정정보도청구 사건은 105건이었다.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33건으로 원고승소율은 31.4%로 나타났다. 이 중 정정보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건수는 9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손해배상과 병합하여 청구하였다.

〈표 4-1〉 정정보도청구 사건 재판 결과

청구건수	원고승	원고패
105 (100.0)	33 (31.4)	72 (68.6)

※( )안의 숫자는 %

2. 정정보도청구 사건 기각사유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되어 기각한 경우가 61.1%를 차지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 72건을 대상으로 그 사유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진실성과 관련하여 기각한 경우가 44건(61.1%)이었고,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적시가 없어 기각한 경우가 13건(18.1%), 상당성이 인정되어 기각한 경우가 9건(12.5%) 등으로 나타났다.

〈표 4-2〉 정정보도청구 기각사유

기각사유	건수	비율(%)
진실성	41	56.9
진실성/사실적시 없음	3	4.2
상당성	9	12.5
사실적시 없음	13	18.1
평가저하 아님	1	1.3
불특정	3	4.2
기타	2	2.8
합계	**72**	**100.0**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재판 결과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69.2%

분석대상 판결 중 반론보도청구 건수는 13건으로 원고 승소 사건이 9건, 원고승소율은 69.2%로 나타났다. 반론보도만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은 1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과 병합하여 청구하였다.

〈표 4-3〉 반론보도청구 사건 재판 결과

청구건수	원고승	원고패
13 (100.0)	9 (69.2)	4 (30.8)

※( )안의 숫자는 %

4.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반론보도청구 사건 13건 중 기각된 사건은 4건이었다. 기각 사유는 반론을 구하는 내용이 원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어 기각된 경우가 2건, 반론을 구하는 내용이 지엽말단적이어서 기각된 경우가 2건이었다.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2012년 법원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 게재를 명한 사건은 총 40건이다. 이를 매체별로 분류하면 일간신문 8건, 주간신문 3건, 월간지 2건, 방송 7건, 뉴스통신 2건, 인터넷매체 18건으로 나타났다. 인용한 보도의 유형별로는 정정보도가 31건, 반론보도 8건, 정정 및 반론보도 1건이었다.

한편, 언론중재법 제27조(재판)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정보도등을 명하는 때에는 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게재 위치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위치, 제목, 본문 길이 등을 조사해 보았다.

〈표 4-4〉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

매체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정정 및 반론	계
일간신문	7	1		8
주간신문	2	1		3
월간지	2			2
방송	5	2		7
뉴스통신	2			2
인터넷매체	13	4	1	18
합계	**31**	**8**	**1**	**40**

가.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원보도와 같은 지면(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82.5%

법원이 인용한 정정보도등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원보도와 같은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33건(8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원보도와 다른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는 7건(17.5%)이었다. 이는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6항에서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매체별로 구체적인 보도위치를 살펴보면, 정기간행물의 경우 1면이 8건, 방송의 경우 첫머리가 6건, 인터넷매체의 경우 메인에 제목을 게시하고 보도내용은 하이퍼링크로 게시하도록 한 경우가 16건으로 각각 건수가 가장 많았다.

〈표 4-5〉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보도지면(프로그램)	건수	비율(%)
원보도문과 같은 지면(프로그램)	33	82.5
원보도문과 다른 지면(프로그램)	7	17.5
합계	**40**	**100.0**

〈표 4-6〉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구분	보도위치	건수	비율(%)
정기간행물	1면	8	20.0
	1면외	5	12.5
방송	첫머리	6	15.0
	후반	1	2.5
	기타	1	2.5
인터넷	제목은 메인에 게시하고 내용은 하이퍼링크	16	40.0
	VOD 영상 하단에 내용 게시	3	7.5
합계		**40**	**100.0**

나.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보도제목은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 형식이,
보도본문의 길이는 300자 초과 400자 이하가 가장 많아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 길이 등 형식을 분석하였다. 보도 제목의 경우,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으로 달도록 한 경우가 18건(45.0%), '…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나 '…에 대한 반론보도문' 형식이 15건(37.5%)으로 나타났다.

보도본문의 길이는 글자 수 기준으로 300자 초과 400자 이하가 15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자 이하가 11건(27.5%), 500자 초과가 8건(20.0%), 400자 초과 500자 이하가 6건(15.0%)으로 나타났다.

〈표 4-7〉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제목	건수	비율(%)
정정보도문	14	35.0
반론보도문	4	10.0
…에 대한 정정보도문	11	27.5
…에 대한 반론보도문	4	10.0
…에 대한 정정보도문 / …에 대한 반론보도문	1	2.5
바로잡습니다	4	10.0
기타	2	5.0
합계	**40**	**100.0**

〈표 4-8〉 정정보도등의 보도본문 길이

보도본문 길이	건수	비율(%)
300자 이하	11	27.5
301~400자	15	37.5
401~500자	6	15.0
500자 초과	8	20.0
합계	**40**	**100.0**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신청 비율

언론관련 소송사건 중 약 3분의 1은 위원회 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나

분석대상 판결의 매체별 건수 172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한 284건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언론조정신청 비율을 산정해보았다.

분석대상 판결 중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은 38.0%로 대략 3건에 1건은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 비율을 청구권별로 보면 정정보도청구 50.5%, 반론보도청구 76.9%, 손해배상청구 26.5% 등으로 나타났다.

〈표 5-1〉 조정신청 비율

청 구 명	소송건수	조정신청 건수	조정신청 비율(%)
정정보도	105	53	50.5
반론보도	13	10	76.9
손해배상	151	40	26.5
기사삭제	6	2	33.3
사과	5	3	60.0
보도금지	4	0	0
합계	**284**	**108**	**38.0**

2.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재판 결과 비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59.1%

분석대상 판결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 58건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재판결과를 비교해보았다. 위원회 조정 결과별로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22건으로 원고승소는 13건(59.1%), 원고패소는 9건(40.9%)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의 원고승소율이 90.9%인 반면,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의 원고승소율은 20.0%였다.

한편 위원회에서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던 27건의 경우,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14건(51.9%)이었으며, 위원회 조정 결과 기각,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소송결과 모두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표 5-2〉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재판 결과 비교

위원회 조정결과 \ 재판 결과		계	원고승	원고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10	2	8
	피신청인 이의신청	11	10	1
	신청인, 피신청인 이의신청	1	1	0
조정불성립결정		27	14	13
기각		4	0	4
각하		5	0	5
합계		58	27	31

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위원회 손해배상 조정액의 중앙액 150만 원, 법원 인용액의 중앙액 1,000만 원

2012년 한 해, 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조정성립 등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의 조정액과 법원에서 선고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인용액을 비교해보았다.

분석결과, 위원회 조정액의 평균은 189만 원, 중앙액은 150만 원으로 나타났고, 법원 인용액의 평균은 2,711만 원, 중앙액은 1,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액의 경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두 기관의 금전배상액을 비교해보았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의 조정액 평균은 175만 원, 중앙액은 200만 원이었고, 법원 인용액의 평균액은 2,196만 원, 중앙액은 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금전배상액을 비교해보면, 위원회 조정액의 평균액이 132만 원, 중앙액이 150만 원으로 나타났고, 법원 인용액의 평균액과 중앙액은 각 600만 원이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청구사건에 대해 두 기관이 판단한 손해배상액의 차이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분석은 두 기관이 각기 다른 청구사건을 각자 심리하여 판단한 결과에 대해 분석한 것이므로, 이 분석 결과를 단순 비교하여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액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두 기관에서 이루어진 손해배상액의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3〉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건수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54	1,895,000	1,500,000	3,000,000	300,000	10,000,000
인용액	55	27,115,633	10,000,000	5,000,000	1,500,000	300,000,000

〈표 5-4〉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건수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26	1,750,000	2,000,000	1,000,000	500,000	5,000,000
인용액	26	21,961,538	5,000,000	50,000,000	1,500,000	300,000,000

〈표 5-5〉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건수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19	1,320,000	1,500,000	500,000	300,000	3,000,000
인용액	2	6,000,000	6,000,000	–[1]	3,000,000	9,000,000

1) 분석대상 판결 중 초상권 침해만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건은 2건에 불과하여, 최빈액을 산정할 수가 없었음.

분석대상 판결목록(민사 118건)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	2012-01-06	2009가단350846	서울중앙	1심	손배	㈜ 조선일보사 외 1명	기각
2	2012-01-06	2010가합3752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대한민국 외 1명	기각
3	2012-01-13	2011나3885	광주고등	2심	정정/손배	㈜ 전광일보	인용
4	2012-01-13	2011나40856	서울고등	2심	손배	㈜ 뉴시스	기각
5	2012-01-18	2009가합55322	서울중앙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3명	기각
6	2012-01-19	2011가합4422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	㈜ 에스비에스	인용
7	2012-01-20	2011가합1900	청주지방	1심	정정/기사삭제	㈜ 청주방송	인용
8	2012-01-26	2011다88047	대법원	3심	손배	정○○	기각
9	2012-01-27	2011나11298	대전지방	2심	손배	㈜ 동아일보사 외 1명	기각
10	2012-01-27	2011나36512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조선일보사	인용
11	2012-02-02	2010가합1844	서울남부	1심	손배/보도금지	㈜ 문화방송 외 3명	기각
12	2012-02-03	2011나77704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 조선일보사 외 3명	기각
13	2012-02-07	2011가단9893	인천지방 부천지원	1심	손배	권○○ 외 1명	기각
14	2012-02-07	2011가단43086	서울남부	1심	손배	㈜ 에스비에스	인용
15	2012-02-10	2011가합13593	서울서부	1심	정정	한겨레신문 ㈜	인용
16	2012-02-10	2011나39078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 매일경제신문사 외 1명	인용
17	2012-02-10	2011나59348	서울고등	2심	손배	이○○ 외 1명	인용
18	2012-02-14	2010가단83902	서울남부	1심	손배	㈜ 경향북스 외 2명	인용
19	2012-02-17	2009나65081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	한국방송공사	기각
20	2012-02-23	2010가단418748	서울중앙	1심	손배	㈜ 조선일보사	인용
21	2012-02-23	2010가합23150	서울남부	1심	손배	㈜ 에스비에스	인용
22	2012-03-09	2011나89080	서울고등	2심	손배/기사삭제	㈜ 디스패치뉴스그룹 외 6명	인용
23	2012-03-15	2011다109111	대법원	3심	정정/손배/사과	㈜ 기독교텔레비전	인용
24	2012-03-15	2011다112025	대법원	3심	손배	㈜ 문화방송	인용
25	2012-03-22	2011나1717	광주고등(전주)	2심	정정/손배	㈜ 전북중앙신문 외 1명	인용
26	2012-03-23	2011나77100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 외 2명	인용
27	2012-03-30	2012라407	서울고등	2심	정정	㈜ 뉴시스	인용
28	2012-04-04	2011가합104944	서울중앙	1심	정정	김○○ 외 1명	기각
29	2012-04-04	2011가합12741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 외 3명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30	2012-04-12	2011가합20929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 미디어오늘	인용
31	2012-04-12	2012다3234	대법원	3심	손배	박○○	기각
32	2012-04-12	2012다8093	대법원	3심	손배	이피씨라인 ㈜ 외 1명	인용
33	2012-04-13	2011나3286	창원지방	2심	손배	㈜ 중앙일보사 외 1명	인용
34	2012-04-17	2010가단57976	서울중앙	1심	손배	㈜ 동아일보사 외 1명	기각
35	2012-04-20	2011가단386138	서울중앙	1심	손배	오○○ 외 1명	기각
36	2012-04-27	2011가합13890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 시사저널사	인용
37	2012-05-09	2010다12630	대법원	3심	손배	오○○ 외 4명	기각
38	2012-05-09	2011가합94276	서울중앙	1심	손배	대한변호사협회 외 2명	기각
39	2012-05-10	2010다15660	대법원	3심	손배	㈜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40	2012-05-10	2012다20093	대법원	3심	정정/손배	㈜ 오마이뉴스 외 1명	기각
41	2012-05-10	2012다20109	대법원	3심	정정/손배	㈜ 오마이뉴스 외 1명	기각
42	2012-05-11	2011나46892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3명	인용
43	2012-05-16	2009가합57915	서울중앙	1심	손배	박○○ 외 4명	기각
44	2012-05-16	2011가합116282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 외 3명	기각
45	2012-05-18	2011나67097	서울고등	2심	손배	조○○ 외 1명	인용
46	2012-05-24	2011가합100.37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안○○	인용
47	2012-05-30	2011가합958	창원지방 진주지원	1심	정정/손배	㈜ 엠비씨경남	기각
48	2012-05-30	2011가합3315	부산지방	1심	손배	㈜ 국제신문 외 2명	기각
49	2012-05-30	2011가합48808	서울중앙	1심	손배	이○○ 외 2명	기각
50	2012-06-01	2012나8354	서울고등	2심	손배	한겨레신문 ㈜ 외 1명	인용
51	2012-06-01	2012나9241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손배	㈜ 중앙일보사 외 2명	인용
52	2012-06-07	2012마597	대법원	3심	정정	㈜ 뉴시스	인용
53	2012-06-08	2011가합65346	서울중앙	1심	손배	나○○ 외 1명	기각
54	2012-06-13	2012가합4911	서울중앙	1심	손배	안○○ 외 1명	인용
55	2012-06-14	2010다20181	대법원	3심	정정/손배	㈜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56	2012-06-14	2011가합10441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김○○	인용
57	2012-06-14	2011가합11584	서울북부	1심	손배/기사삭제/보도금지	㈜ 뉴스타운 외 2명	인용
58	2012-06-14	2011가합13037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김○○	인용
59	2012-06-15	2012나3915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 조선일보사 외 1명	기각
60	2012-06-20	2011가합127404	서울중앙	1심	손배	최○○ 외 1명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61	2012-06-22	2011가단43570	수원지방 안산지원	1심	손배	김○○	인용
62	2012-06-22	2011나96965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 미디어오늘	기각
63	2012-06-26	2012다30885	대법원	3심	정정/반론	한국방송공사	기각
64	2012-06-28	2012다1030	대법원	3심	정정/손배	㈜ 문화방송 외 1명	인용
65	2012-07-04	2011가합13292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 에스비에스 외 5명	기각
66	2012-07-05	2011나11263	창원지방	2심	손배	박○○ 외 1명	기각
67	2012-07-13	2012나19309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	㈜ 에스비에스	인용
68	2012-07-19	2009가합1574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 코리아메디케어	인용
69	2012-07-19	2011가합10952	서울서부	1심	손배	㈜ 와이티엔 외 1명	기각
70	2012-07-26	2012나284	서울서부	2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기각
71	2012-08-10	2011나3469	부산고등(창원)	2심	정정/손배	㈜ 매일신문사	인용
72	2012-08-16	2011나22735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 조선일보	기각
73	2012-08-21	2011가단19863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이○○ 외 3명	기각
74	2012-08-22	2011가합125521	서울중앙	1심	반론	㈜ 크리스천투데이	인용
75	2012-08-22	2012가합2651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최○○ 외 4명	인용
76	2012-08-23	2011가합15971	서울서부	1심	정정	㈜ 시사저널사	기각
77	2012-08-23	2011다40373	대법원	3심	손배	㈜ 참언론 외 1명	기각
78	2012-08-23	2011나20721	의정부지방	2심	손배	경기도시공사 외 2명	기각
79	2012-09-06	2012가합13876	수원지방	1심	정정/사과	㈜ 경기일보 외 1명	인용
80	2012-09-11	2011가합8405	수원지방 성남지원	1심	손배	김○○	인용
81	2012-09-12	2012가합3283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	기각
82	2012-09-12	2012가합3285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 한국전기신문사	기각
83	2012-09-12	2012가합4415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 네오뉴스	기각
84	2012-09-13	2011가합18643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85	2012-09-13	2012가단11998	수원지방 안양지원	1심	손배	권○○○ 외 3명	인용
86	2012-09-19	2011가단102015	서울남부	1심	손배	㈜ 에스비에스	인용
87	2012-09-19	2012가합27310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 디지틀조선일보 외 5명	기각
88	2012-09-21	2012나38409	서울고등	2심	정정	㈜ 예스헬스	기각
89	2012-09-26	2011가합68703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 조선일보 외 4명	기각
90	2012-09-27	2011가합10564	서울남부	1심	손배	㈜ 뉴스프라임 외 7명	인용
91	2012-09-27	2012다62516	대법원	3심	정정/손배	㈜ 조선일보사 외 1명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92	2012-09-28	2011가합14797	수원지방	1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인용
93	2012-10-10	2011가합127350	서울중앙	1심	손배	디지털와이티엔 ㈜ 외 3명	인용
94	2012-10-10	2012가합5371	서울북부	1심	정정/반론	추○○	인용
95	2012-10-11	2011가합14931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손배	㈜ 한국일보사 외 2명	인용
96	2012-10-11	2011가합14948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손배	㈜ 오마이뉴스 외 3명	인용
97	2012-10-11	2011가합24341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98	2012-10-25	2011나15037	서울남부	2심	정정/손배	㈜ 조선일보 외 4명	기각
99	2012-10-25	2012가단7881	창원지방 진주지원	1심	손배	㈜ 경남신문사 외 1명	기각
100	2012-10-26	2011가합10637	수원지방 성남지원	1심	손배	이○○ 외 3명	기각
101	2012-10-26	2011나99162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오마이뉴스 외 1명	인용
102	2012-10-26	2012가합2267	수원지방 안양지원	1심	정정/손배/사과	㈜ 장애인신문 외 2명	인용
103	2012-11-01	2011가합15231	서울남부	1심	손배/기사삭제/사과	㈜ 에스비에스 외 2명	기각
104	2012-11-01	2011가합23621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 문화방송	인용
105	2012-11-09	2011가합42930	서울중앙	1심	손배	김○○ 외 7명	인용
106	2012-11-15	2011다86782	대법원	3심	정정/손배	㈜ 미디어오늘 외 1명	기각
107	2012-11-15	2012다65713	대법원	3심	정정/손배	㈜ 미디어오늘	기각
108	2012-11-22	2012가합14181	서울남부	1심	정정	신아매일 ㈜	기각
109	2012-11-23	2012나48222	서울고등	2심	손배	대한변호사협회 외 2명	기각
110	2012-11-30	2012나56018	서울고등	2심	손배	최○○ 외 1명	기각
111	2012-12-07	2012나14403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대한민국 외 1명	기각
112	2012-12-07	2012나60307	서울고등	2심	손배	㈜ 뉴스타운 외 2명	기각
113	2012-12-13	2012다85021	대법원	3심	손배	경기도시공사 외 2명	기각
114	2012-12-14	2012가합5957	서울서부	1심	정정/반론/손배	오마이뉴스	인용
115	2012-12-20	2012나17150	서울고등	2심	손배/보도금지	㈜ 문화방송 외 3명	인용
116	2012-12-21	2012가단632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	정정/손배	고양신문	기각
117	2012-12-26	2012가단197397	서울중앙	1심	손배	건치신문 외 2명	기각
118	2012-12-27	2010다61793, 61809(병합)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재) 씨비에스 외 4명	기각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사례

제 1 장 명예훼손 사례

제 2 장 재산권 침해 사례

제 3 장 초상권 침해 사례

제 4 장 기타 사례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명예훼손 사례 1

원고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각 기사는 대부분 진실에 부합하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6. 선고 2010가합375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14403 판결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2012년 1월 6일 前 국무총리 A가 대한민국과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언론사는 동아일보 2010년 4월 8일자에 『검찰, A 前 총리 새로운 혐의 수사』 제목으로 5만 달러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A 前 총리에 대해 검찰이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하였다. 또, 4월 9일자 『A 前 총리, 건설시행사서 9억 받은 혐의』, 『오늘 선고 앞두고 새 수사』, 4월 10일자 『9억 관련 A 前 총리 최측근 곧 소환…檢 '2차전'』, 4월 12일자 『'B 오찬' 당일 A 前 총리–건설시행사 대표와 만찬』, 4월 13일자 『2007년 3, 4, 8월 세 차례 A 前 총리집 찾아 9억 전달 건설시행사 前 대표 진술』 등의 후속기사를 게재. 원고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때 건설 시행사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검찰 소속 공무원이 공판 청구 전 언론사에 피의사실을 알려 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언론사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가 제17대 국회의원으로서 재임할 당시 원고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에 관련된 보도이고, 특히 기사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치자금은 원고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될 무렵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인상을 부여한 '검찰 내에서

이번엔 확실하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부분은 검찰 내부의 수사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하고, 그러한 의견 내지 평가를 내린 근거사실은 '검찰은 원고에게 현금과 달러로 9억 원을 건넸다는 E의 진술을 확보한 데다 자금의 출처와 흐름도 파악되었다', '검찰은 E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고에게 거액이 건네진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하였다'는 것인데, 관련사실이 모두 진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토대로 피고 동아일보가 나름대로 검찰내부에 종전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확실하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평가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12월 7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3. 2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 판 결 문

사　　건 : 2010가합37528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A

피　　고 : 1. 대한민국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변 론 종 결 : 2011. 12. 9.

판 결 선 고 : 2012. 1.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A1면 상단 부분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정정보도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하고, 만약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피고는 위 기간만료일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일 10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5. 30.부터 2004. 5. 29.까지 제16대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2004. 5. 30.부터 2008. 5. 29.까지 제17대 열린우리당 소속 경기 고양일산갑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제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중인 2006. 4. 20.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2007. 2. 22.경 열린우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위하여 국무총리직을 사퇴하였다. 이후 2010. 6. 2.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및 이에 관한 언론보도

(1) 원고는 국무총리로 재직할 무렵인 2007년경 B 전 C 통운 사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되었으나 2010. 4. 9.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2) 한편, 피고 대한민국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위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0. 3. 말경 원고가 주식회사 D 건영(이하 'D 건영'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종친관계에 있는 E로부터 위 대통령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D 건영의 부도가 임박할 무렵 이중 일부를 E에게 반환하였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원고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다.

(3) 이에 검찰은 2010. 3. 31. D 에리어 타워 사기분양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통영교도소에 수감 중인 E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후 2010. 4. 1.부터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D 건영 채권자 대표를 맡으면서 D 건영 직원 F와 함께 D 건영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한 G를 통해 E를 설득하여 같은 달 3. E로부터 원고의 대선 경선과 관련하여 9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원고에게 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들었다.

(4) 검찰은 같은 달 4. E로부터 더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받았고, 이를 뒷받침할 채권회수목록을 입수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그 다음날 D 건영의 경리부장이었던 H로부터 채권회수목록에 기재된 "의원", "500,000,000원", "접대비"에서 말하는 의원은 원고를 지칭한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5) 검찰은 2010. 4. 5. E로부터 원고에게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한 후 그 진술을 토대로 같은 달 7. 원고의 집 근처에서 현장검증을 하였고, 같은 달 8. E로부터 원고에게 2007. 4. 초순경, 2007. 5. 초순경 및 2007. 8. 하순경 현금과 달러를 섞어 각 3억 원 상당을 제공한 뒤 2008년 초 D 건영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들었다. 한편, H는 2010. 4. 6. 검찰에서 원고에게 전달된 자금이 5억 원이라고 잘못 진술하였기에 9억 원으로 정정한다고 진술하면서 2007. 3. 30.경, 2007. 4. 30.경, 각 3억 원, 2007. 8. 20.경 2억 원 및 같은 달 27.경 1억 원 합계 9억 원이 원고에게 건네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이와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라고 한다)는 2010. 4. 8. 동아일보 A1면에 "검찰, A 前총리 새로운 혐의 수사"라는 제목으로 [별지2] 제1항 기재 기사를 보도하였고, 같은 달 13.까지 6차례에 걸쳐 [별지2] 기재 각 기사(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6기사'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를 보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이후의 경과

원고는 위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2010. 7. 21. 이 법원 2010고합1046호로 '원고는 2007. 3. 하순경부터 2007. 8. 중순경까지 3차례에 걸쳐 E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 4억 8,000만 원, 1억 원권 자기앞수표 및 미화 32만 7,500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1. 10. 31.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는 항소하여 역시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 제13호증, 을 나 제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불법행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 피고 동아일보에게 알려주어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의사실과 같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피고 동아일보에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리고 피고 동아일보는 피고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하였다.

나. 일반론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

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

다. 판단

(1) 우선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피고 동아일보 등 언론사에게 공표 내지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는 2010. 4. 4., 같은 달 5., 및 같은 달 8. 검찰에서 원고에게 대통령 후보 경선 자금으로 현금과 달러를 섞어 약 9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 건영의 경리부장이었던 H는 "의원 500,000,000원 접대비"라고 기재된 채권회수목록을 바탕으로 같은 달 5. E가 원고에게 5억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다음날 제공된 돈을 약 9억 원으로 정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제7, 제10호증, 을 나 제1 내지 제5, 제8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될 무렵 검찰은 원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상황을 공보담당관을 통해 공식적인 방법으로 공표하지 아니하였다.

(나) E와 H는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E로부터 현금과 달러를 섞어 약 9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가 달러를 요구한 이유를 묻지 않았다고 하였고, 오직 수사관이 작성한 2010. 4. 7.자 수사보고서에만 달러를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피고 동아일보가 이 사건 제1기사를 통해 원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사실을 최초로 보도하였고, 2010. 4. 9.자 이 사건 제2기사에서 최초로 E가 원고에게 제공한 정치자금의 액수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정황을 E, H의 진술내용과 유사하게 보도하였으며, 그 기사에 원고가 아들의 유학비용 명목으로 E로부터 달러를 받았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다.

(라) 그리고 이 사건 각 기사에는 "…(중략)… 자세하게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K)는 …(중략)… 방침이라고 밝혔다."는 등 검찰이 피고 동아일보 소속 기자들에게 수사상황을 제공한 듯한 표현이 다수 발견된다.

(마) 검찰은 2010. 4. 7. 법원으로부터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달 8. 09:00경부터 12:00경까지 D 건영 사무실 등에 대하여 압수 · 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압수 · 수색이 시작된지 불과 약 2시간만인 같은 날 10:58경 조선닷컴에 위 압수 · 수색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고 검찰은 기자들에게 D 건영에 대한 압수 · 수색 사실을 시인하였다.

(바) 수사기관에 원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람은 E와 H뿐인데,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될 무렵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E는 언론에 원고의 수사상황을 제보하지 않았다.

(사) 이 사건 제1, 제3기사를 작성한 J는 E의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자들의 제보가 위 기사의 결정적인 출처이고 E 주변관계자(D 건영 관계자)들을 다각도로 취재하였다고 진술하나, E의 D 에리어 타워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자 중 원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은 L, M, N은 원고가 E로부터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E가 주최하는 기공식에 참석하였으므로 분양대금 일부

가 원고에게 지급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만 하고 있었다.

(아) 선고기일이 2010. 4. 9.로 지정된 종전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하였던 상황에서 불과 선고기일 하루 전에 이 사건 제1기사가 보도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수사기관이 원고의 정치자금법위반 피의사실을 비공식적으로 공표하거나 언론사에 제공하여 피고 동아일보 및 다른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제7, 제13, 제14호증, 을 나 제1 내지 제5, 제8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 E, R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도 인정된다.

(가) 2010. 3. 하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E가 2007년도에 원고의 대선 경선과 관련해 수억 원을 주었다가 D 건영의 부도가 임박했을 무렵 이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는데, 그 익명의 제보자가 피고 동아일보 등 언론사에도 제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기사가 보도되기 전 불법 정치자금의 액수, 제공시기 및 횟수는 오로지 E와 검찰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기사가 보도되기 전인 2010. 4. 6. H도 검찰에 E와 동일하게 불법 정치자금의 액수, 제공시기 및 횟수를 진술하였다.

(다) 피고 동아일보가 검찰의 피의사실 제공에 의해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면 특종보도 및 속보경쟁을 하는 취재 여건상 그 기사에서 보도된 것처럼 구체적인 혐의 내용 없이 수사 개시 사실만 간략하게 보도하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라) 피고 동아일보는 이 사건 제1기사에서 "검찰은 9일 선고 공판 때 새로운 수사 내용을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실제 검찰은 종전 사건과 관련하여 선고일인 2010. 4. 9. 재판부에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는 기자의 경험에 따른 개인적인 추측이나 평가를 기사화한 것으로,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추측이나 평가를 가미하여 기사를 작성하기도 한다.

(마) E는 검찰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달러가 아들의 유학비용 명목이라는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제2기사는 E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잘못 보도한 점 및 종전 사건에서 검찰은 원고가 B로부터 받은 5만 달러를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서도 달러가 등장하므로 기자들이 종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달러를 아들의 유학비용이라고 추측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바) 이 사건 각 기사 중 "검찰은 ~라고 밝혔다.", "~라고 검찰은 전했다." 등과 같이 수사상황을 제공한 듯한 표현은 기자들이 수사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사) D 건영의 사기분양 피해자들 사이에 D 에리어 타워 기공식에 원고가 참여하였고, 원고와 E는 종친관계에 있으므로 분양대금 일부가 원고에게 건네졌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었다.

(아) 원고는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 사람이 H와 E인데, E는 언론에 제보를 한 사실은 없고, H와 언론제보를 의논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므로 오직 검찰이 수사상황을 기자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 H 및 D 건영의 직원 F는 원고가 E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채권회수목록을 수감 중인 E에게 제시하면서 확인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보면, G, F도 H, E 못지 않게 구체적인 정황을 제보할 수 있을 정도로 내막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검

찰에서 조사하지 아니한 다른 사기분양 피해자들도 있으므로 검찰이 아닌 이들이 이 사건 각 기사의 취재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위와 같은 E의 증언만으로 H가 언론에 제보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 이 사건 제1기사가 보도된 이후 원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내용은 기자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을 것이고(이 사건 제1기사는 D 건영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 · 수색이 개시되기 전에 배포되었다), 속보경쟁을 하는 기자들의 취재 여건상 D 건영에 대한 검찰의 압수 · 수색이 개시된 때로부터 2시간 만에 조선닷컴에 압수 · 수색사실이 보도된 사정만으로 검찰에서 언론사에 압수 · 수색사실을 누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1)의 (바)항과 관련하여 검찰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압수 · 수색을 시인한 것만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차) 피고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등 다른 언론사들도 이 사건 제1기사가 보도될 무렵 독자적으로 원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취재를 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기자실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피고 동아일보 기자들이 이 사건 제2기사 이후의 각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다른 언론사의 원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관한 보도내용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사실 및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D 건영의 사기분양 피해자들 사이에 분양대금 일부가 원고에게 건네졌다는 소문이 있었는바, 이러한 피해자들, 앞서 본 익명의 제보자, H, F 등 D 건영 직원들, 다른 언론사 기자나 보도내용, 기타 취재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여러 정보를 종합하고 여기에 기자의 추측을 가미하는 이른바, 모자이크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기사가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기사에서 사용된 표현방법, 압수 · 수색 사실의 보도 경위 등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 검찰이 피고 동아일보에게 원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 동아일보가 취재원을 밝히길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을 피고 동아일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형법 규정은 수사기관에 적용될 뿐 언론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동아일보는 범죄혐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해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일반론

(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

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보도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에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보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보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수사과정과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야 보도시점에서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보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상당성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등 참조).

(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제3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기사는 원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만 보도하고 있고, 이 사건 제2기사는 제목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혐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본문에서는 D 건영에 대한 압수수색사실, E의 검찰진술과 검찰의 수사계획 등 전반적으로 수사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을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4기사는 종전 사건의 무죄판결과 별도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관한 수사를 가급적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과 수사계획 등을 언급한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5기사도 원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와 관련하여 O그룹 회장을 조사한다는 수사상황만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제6기사는 제목에서 "2007년 3, 4, 8월 세 차례 A 前 총리 집찾아 9억 전달"이라고 보도하여 마치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바로 이은 부제목에서 "건설시행사 前 대표 진술"이라고 하여 이러한 내용이 건설시행사 전 대표인 E의 진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결합하여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본문에서도 E의 진술과 검찰의 수사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3기사에 관하여

이 사건 제3기사도 전체적으로 원고에 대한 객관적인 수사상황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기사 내용에는 종전 사건과 달리 이번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이번엔 확실하다"는 기류가 검찰 내에 흐르고 있다는 주관적인 의견 내지 평가가 적시되어 있고, 당시 수사 초기임에도 검찰이 종전 사건과 상관 없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는 추측보도를 함으로써 위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는 인상을 갖도록 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3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기사는 원고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이 사건 제3기사는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위법성조각 여부

(1) 피고 동아일보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거나 가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도 진실한 보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일반론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16804 판결 등 참조).

(3) 공익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가 제17대 국회의원으로서 재임할 당시 원고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에 관련된 보도이고, 특히 기사에서 문제삼고 있는 정치자금은 원고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될 무렵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공익성이 인정된다.

(4) 진실성 내지 상당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3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기사에 관하여

검찰은 원고가 E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사실, E는 검찰에서

2007. 4. 초순경부터 2007. 8. 하순경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현금과 달러를 섞어 약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가 2008년 초 D 건영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돌려받았고, 원고가 달러를 요구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원고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검찰은 E가 원고에게 제공한 달러를 원고 아들의 유학비용 명목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사실, 검찰은 2010. 4. 8. D 건영 등에 대하여 압수 · 수색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제6,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검찰은 원고가 제17대 국회의원일 당시 원고를 보좌한 Q와 원고가 국무총리일 당시 함께 만찬을 한 O를 소환하여 조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기사에 적시된 객관적인 수사상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고, 이 부분 각 기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의 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악의적으로 원고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E는 검찰에서 원고가 달러를 요구한 이유를 모르고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기사에서 E가 원고에게 달러를 아들의 유학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할 것이지만, 적어도 검찰은 원고가 달러를 아들의 유학비용 명목으로 받았으리라 추측하고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진실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제3기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달리 원고가 E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보도의 진실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에 해당하고 이 부분 보도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과 관련한 원고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 부분 보도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 제14호증, 을 제8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사건은 주로 B 등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주된 증거인 B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됨으로써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원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사건에는 E, H 등 관련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채권회수목록, 접대비 세부내역, 달러환전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는 사실, E가 수사 초기 원고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금원 중 1억 원이 자기앞수표이어서 그 흐름의 추적이 가능하였는데, 위 1억 원의 자기앞수표는 E가 발행한 것으로 원고의 동생인 R이 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한 사실, 원고 및 원고 남편의 계좌에 2007. 4.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다액의 출처불명의 현금이 입금되어 있었고, 원고의 동생 R, S가 원고의 아들에게 출처 불명의 달러를 다액 송금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는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및 B는 사회적 지위나 경력에 비추어 달러를 소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는 반면, E는 다소 규모가 작은 국내분양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굳이 약 17만 달러라는 거액을 환전할 이유가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이 부분 보도가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원고를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이거나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3기사에서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인상을 부여한 '검찰 내에서 이번엔 확실하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부분은 검찰 내부의 수사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하고, 그러한 의견 내지 평가를 내린 근거사실은 이 사건 제3기사에 적시된 바와 같이 '검찰은 원고에게 현금과 달러로 9억 원을 건넸다는 E의 진술을 확보한 데다 자금의 출처와 흐름도 파악되었다.', '검찰은 E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고에게 거액이 건네진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관련사실이 모두 진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토대로 피고 동아일보가 나름대로 검찰내부에 종전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확실하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평가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동아일보가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한 데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론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나. 판단

이 사건 제3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제3기사에서 암시한 "원고가 E로부터 정치자금 약 9억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검찰에서 원고에게 정치자금으로 약 9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 및 원고 남편의 계좌에 다액의 출처불명의 현금이 입금되어 있고, 원고의 동생 R, S가 원고의 아들에게 출처 불명의 달러를 다액 송금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등 다른 증인은

여전히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제1심에서는 검찰이 원고가 E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서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러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정만으로 원고가 E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반대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E로부터 정치자금 약 9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별지 2〉 보도내용 생략

2심 판 결 문

사 건 : 2012나14403 손해배상(기) 등

원고, 항소인 : A

피고, 피항소인 : 1. 대한민국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6. 선고 2010가합37528 판결

변 론 종 결 : 2012. 11. 9.

판 결 선 고 : 2012. 12.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A1면 상단 부분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부문은 고딕체 50급 활자

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정정보도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하고, 만약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피고는 위 기간만료일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일 10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50호),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2. 1. 13. 항소기각 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호), 다시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에 계속중이다.'로, 제11면 제14행의 '어렵고, 달리'를 '어렵고, 당심 증인 C, A, B의 각 서면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로, 제20면 제4행의 '증거들에'를 '증거들 및 당심 증인 C의 서면증언에'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4항과 제5항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3기사 외에 나머지 각 기사도 원고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① 위 각 기사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였던 원고의 도덕성 ·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3기사의 위법성조각 여부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보도가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원고를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이거나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동아일보가 위 각 기사를 보도한 데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② 이 사건 제3기사와 관련하여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3기사 외에 나머지 기사와 관련된 정정보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명예훼손 사례 2

기사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의 학원 설립에 대해 '부도덕한 행위', '불공정행위'라고 표현한 것은 언론사의 평가적 의견을 적시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나40856 판결(확정)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2012년 1월 13일 A 주식회사가 뉴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뉴시스 2011년 2월 22일자 『교회가 영리업체와 학원 운영?』 제목으로 전북 익산의 한 교회가 사설 영리 업체와 협약을 체결, 교회 교육복지관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영어교육 전문 업체인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설 영리 전문업체로서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비슷한 학원운영계획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익산의 한 교회와 협력하여 영어교육사업을 함으로써 익산지역의 학원업계는 수백명의 학생을 하루아침에 교회 내 학원에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에 대해 "원고가 B 교회에 설립한 학원의 운영에 대하여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피고의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학원에서 소외계층 10%에 대하여는 수강료가 면제되나, 나머지 수강생들에 대하여는 수강료가 다른 학원보다 저렴하다거나, 감면된다는 등 일반 학원과 비교하여 특별한 혜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익산 지역의 다른 학원들도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하여 수강료를 감면하여 주는 등의 일정한 배려를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가 영어교육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회사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점을 더하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 전북학원연합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 '원고의 영어학원사업은 영세학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행위'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설립에 대하여 '사회공익형 교육기관'임을 내세우면서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학원 운영은 어디까지나 영리활동에 해당하고, 원고가 교회의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학원과 경쟁하는 것은 임대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다른 학원들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되어 불공정하다는 피고의 평가적 의견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11년 2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2011서울조정145, 146)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2011년 3월 7일 '원고가 익산에 개설하고자 하는 영어

학원의 모집정원은 400명 정도이며, 정원의 10%를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할애하는 등 사회교육형 교육기관을 지향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원고가 제기한 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11년 5월 25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96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11나40856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뉴시스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1가합25881 판결
변 론 종 결 : 2011. 11. 30.
판 결 선 고 : 2012. 1.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96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영어교육전문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 '뉴시스'(www.newsis.com)를 운영하고, 위 신문의 발행 및 뉴스제공업 등을 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는 2011. 2. 22. 피고의 위 인터넷신문 사회면에 "교회가 영리업체와 학원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전북 익산의 한 교회가 사설 영리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교회 교육복지관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별지 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2011서울조정145호, 2011서울조정146호)을 하였고, 원, 피고 사이에 2011. 3. 7. 피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불이행시 1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나머지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는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피고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사회공익형 교육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나 교회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학원으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학원설립 비용을 낮추어 수강료를 인하하고 일정 비율의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의 기회를 주는 '사회공익형 국제교육센터 SCG(Social Contribution Global Education Center)'를 개발하였고, 2010. 10. 9. 익산시에 있는 B 교회와 위 학원설립모델을 적용하여 원고가 위 교회의 일부를 빌려 익산시민들을 위한 영어학원으로 조성하고, 수강생 정원의 10%를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에서 선발하여 무상교육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영어학원의 수강생 모집정원은 최대 400명 정도에 불과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① 원고가 사설 영리 전문업체로서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비슷한 학원운영계획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익산의 B 교회와 협력하여 영어교육사업을 함으로써 익산지역의 학원업계는 수백명의 학생을 하루 아침에 교회 내 학원에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이하 '이 사건 제1보도'라고 한다)하고, ② 원고의 영어학원사업은 공익형으로 포장된 영리행위로 700여 영세학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행위이고, 불공정행위라고 보도(이하 '이 사건 제2보도'라고 한다)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의 이 사건 보도 이후 위 보도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와 '다음'(www.daum.net)에 메인 기사로 게재되어 원고의 신용과 명예가 실추됨으로써, 원고는 원고가 설립한 익산시 B 교회 내의 'C 학원'의 수강생의 감소로 인하여 5,280만 원, 인천시 D 교회와의 협약이 파기됨으로써 7,68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산상 손해 1억 2,960만 원(= 5,280만원 + 7,680만 원) 및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보도에 관한 판단

가) 언론 ·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할 것인바,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보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1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위 보도에서 원고를 '사설 영리 전문업체'라고 표현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회의 시설을 원고가 무상으로 제공받아 학원을 운영하되, 원고는 수강생 중 일부를 소외계층에 배정하여 무상으로 강의를 수강하게 하거나, 수강생들의 학원비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영어학원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 그 후 원고는 군포시청, 인천시 C 교회, 성남시 E 교회, 익산시 B 교회 등과 학원 설립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원고의 위와 같은 학원운영방식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새로운 방안의 하나로 신문, 방송매체를 통하여 널리 보도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보도 전체의 문맥이나 '영리 업체'라는 표현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보도에서 원고를 '사설 영리 전문업체'라고 표현한 것은 원고가 B 교회에 설립한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대하여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피고의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나, 한편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에서 소외계층 10%에 대하여는 수강료가 면제되나, 나머지 수강생들에 대하여는 수강료가 다른 학원보다 저렴하다거나, 감면된다는 등 일반 학원과 비교하여 특별한 혜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익산 지역의 다른 학원들도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하여 수강료를 감면하여 주는 등의 일정한 배려를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가 영어교육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회사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위 기사에서 원고가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비슷한 학원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적시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군포시청, 인천시 C 교회, 성남시 E 교회, 익산시 B 교회 등과 학원 설립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원고의 위와 같은 학원운영방식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새로운 방안의 하나로 신문, 방송매체를 통하여 널리 보도되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도에서 '전국의 교회'라고 표현한 부분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여겨지기는 하나, 원고가 익산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교회의 시설을 이용한 학원 운영을 추진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위 기사에서 익산 지역 학원들이 '수백명의 학생을 하루 아침에 교회 내 학원에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고 적시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원고의 이 사건 학원 설립으로 인하여 익산 지역 학원들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한 평가적 의견이라고 보일 뿐 아니라, 가사 이를 사실의 적시로 본다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정원이 400명으로서 아주 큰 규모라고 볼 수 없는 점, 새로 설립되는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정원에 비례하여 인근 학원들의 수강생이 감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보도에서 '하루 아침에' 수백명의 수강생을 빼앗긴다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학원의 설립으로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의 학원들에 어느 정도의 수강생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위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의 학원 설립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학원이 일정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기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보도에 관한 판단

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나) 피고는 이 사건 제2보도에서 전북학원연합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영어학원사업은 공익형으로 포장된 영리행위로 700여 영세학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행위'이고,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도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설립에 대하여 '사회공익형 교육기관'임을 내세우면서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학원 운영은 어디까지나 영리활동에 해당하고, 원고가 교회의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학원과 경쟁하는 것은 임대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다른 학원들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되어 불공정하다는 피고의 평가적 의견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보도는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기사 생략

〈별지 2〉 반론보도문 생략

명예훼손 사례 3

국내 최대 일간지 발행사의 대표인 원고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보도 내용 또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09가합55322 판결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2년 1월 19일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대표이사 A가 한국방송공사 및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9년 3월 14일부터 2009년 4월 17일 사이에 〈KBS 뉴스 9〉 등의 프로그램에서 배우 P가 자살 이전에 자신의 심경을 담은 자필 문건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원고 A가 P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A는 국내 최대의 일간지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 대표로서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위 각 방송 보도 당시 망인의 자살과 이 사건 문건을 둘러싸고 사회 전반에 제기된 의혹은 신인 연기자로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여성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통하여 자신의 입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요구받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연예계의 구조적 병폐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중요한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원고 A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신인 여배우인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자체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존재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 공사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원고 A가 이 사건 문건에 망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소에 따라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위 각 방송을 보도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방송을 통하여 보도된 내용들은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공사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각 방송을 보도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원고 조선일보사에 대한 보도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언론사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2월 8일 항소를 기각하였다.

판 결 문

사　　건 : 2009가합55322 손해배상(기)

원　　고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 A

피　　고 : 1. 한국방송공사

2. B

3. C

4. D

변 론 종 결 : 2011. 12. 21.

판 결 선 고 : 2012. 1.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각 5억 원, 피고 B, C, D는 각 1억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47. 3. 7. 신문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내의 최대 일간지로 성장한 '조선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언론 법인이고, 원고 A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공사는 1973. 2. 28.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 문화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법인이고, 피고 B, C는 피고 공사의 소속 기자로 활동한 사람들이며, 피고 D는 피고 공사의 보도본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1980년생 여배우인 P는 E가 운영한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F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는데, 2009. 3. 7. 자택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P를 '망인'이라 한다). 이후 여러 언론매체들을 통하여 망인이 자살 이전에 자신의 심경을 담은 자필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남겼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는데, 2009. 3. 10. 망인의 전(前) 매니저인 G가 망인이 작성하여 자신에게 건네주었다는 위 문건의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개한 것을 계기로 망인의 자살 배경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급속히 고조되었다.

다. 피고 공사는 소속 기자를 통하여 이 사건 문건의 사본을 입수한 다음, 2009. 3. 13. 위 문건에 '망인이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와 성 상납을 강요받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하고, 그 다음날인 2009. 3. 14. '위 문건에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사들 중에는 언론계 유력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후속 보도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문건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을 1호증의 1 내지 3), 그 중 「배우 P의 종합적인 피해사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문건에는 "2008년 9월경 조선일보 A 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싸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A 사장님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바, 망인의 오빠인 H는 G를 통하여 위 문건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2009. 3. 17. 원고 A를 비롯하여 위 문건에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람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등으로 경찰에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

마. 이후, 민주당 국회의원인 I가 2009. 4. 6.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P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A 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A 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라고 발언(이하 '이 사건 국회 발언'이라 한다)하였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인 J가 2009. 4. 10.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 'MBC 100분 토론'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이 사건 문건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관하여 토론하면서 "조선일보의 A 사장, 스포츠조선의 A 사장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I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거리끼지 말고 그냥 불러라. 그리고 조사를 해라."라고 발언(이하 '이 사건 토론 발언'이라 한다)하였다.

바. 피고 공사는 2009. 3. 14.부터 2009. 4. 17.까지 사이에, 뉴스 프로그램에서 ① 이 사건 문건의 내용 및 이 사건 고소에 따른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에 관하여 별지 제1, 2항, 제3의 가항,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방송을 보도하였고, ② 이 사건 문건 중 일부 내용이 지워져 있는 점에 관한 의혹 및 위 경찰 수사의 미진함에 관하여 별지 제3의 나항, 제8, 10항 기재 각 방송을 보도하였으며, ③ 별지 제9, 11, 12항 기재 각 방송을 통해서는, 이 사건 국회 발언 및 토론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위 국회 발언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촬영한 장면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보도하였다(이하 '별지 제1 내지 12항 기재 방송'을 '제1 내지 12항 방송'으로 표현하고, 위 각 방송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방송'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방송 중 피고 B는 제1, 4, 10항 뉴스, 피고 C는 제2, 6항 뉴스를 각 취재하여 보도하였다).

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이 사건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9. 8. 19. 원고 A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 내지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 공사는 ① 제1, 2항 및 제3의 가항, 제4 내지 7항의 방송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A가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고소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넘어 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② 제3의 나항, 제8, 10항의 방송에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문건 내용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고소 사건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며, ③ 제9, 11, 12항의 방송에서 국회의원 I, J가 원고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원고 A가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국회 발언 및 이 사건 토론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는바, 이는 모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공사

이 사건 각 방송 중 제11, 12항 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 보도에서는 원고들이 보도의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방송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방송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위 각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각 방송 중 제1항 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각 방송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의 2 내지 12,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방송은 이 사건 문건에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 A를 두고 '특정 신문사 고위 관계자', '신문사 유력 인사', '신문사 대표'라고 지칭한 사실, 위 각 방송은 망인의 유족이 원고 A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이후 각 보도되었는데, 위 고소의 피고소인들 중 신문사 대표는 원고 A가 유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앞서의 기초 사실을 종합하면, 위 각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 중 적어도 원고 A 및 망인의 유족들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위 각 방송에서 지칭하는 '신문사 대표' 등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A를 가리키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각 방송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원고들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제1항 방송의 경우, 이 사건 문건에 '언론계 유력인사'가 망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부분 방송이 보도된 날인 2009. 3. 14.은 피고 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문건의 전반적

인 내용이 최초로 공개된 직후로서 위 문건에 망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사들의 신상에 관한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이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언론계'는 신문사 이외에도 방송 등 다른 매체들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위 2009. 3. 14. 당시에는 망인의 유족에 의한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위 방송에서 거론된 '언론계 유력인사'가 원고 A임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방송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항 방송으로 원고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위 방송으로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방송은 원고 A가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적시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위 방송 내용을 근거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명예훼손 여부

1) 법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한편,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2) 제2항, 제3의 가항, 제4 내지 7항 방송에 대하여

가) 제2항, 제3의 가항, 제4, 5항 방송

갑 1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제2항, 제3의 가항, 제4, 5항 방송을 통하여, '이 사건 문건에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원고 A가 망인의 유족으로부터 성매매 혐의 등으로 고소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초 사실 및 을 4호증 내지 을 6호증, 을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보도 당시 이 사건 문건의 존재 및 그 주요 내용이 사회 일반에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었던 사실, 당시 위 문건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모두 신인 여배우인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언론계 유력인사와 연예기획사 대표, 방송사 연출자, 드라마 감독 등이었던 사실, 신인 여배우 등이 연예계에 진출하여 출

세하기 위해서는 연예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에게 술 접대 등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인 여배우인 망인의 자살을 계기로 연예계의 고질적 병폐인 여성 연예인을 이용한 연예기획사의 구조적인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의 문제가 공론화된 당시의 상황에서 피고 공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문건에 원고 회사의 대표인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방송한 것은, 그 자체로써 원고 A가 망인의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인 여배우인 망인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 및 원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역시 저하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 공사가 위 각 방송을 통하여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사실까지도 적시한 것인지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갑 1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방송에서는 '이 사건 문건에 원고 A가 거론되어 있고, 이에 따라 망인의 자살 배경과 위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 고소에 따라 위 원고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문건의 기재 내용 그 자체에 관한 보도이거나 이 사건 고소 사건의 객관적인 수사 상황에 관한 보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여기에 덧붙여서 위 각 방송에서 위 문건의 기재 내용 또는 이 사건 고소에 따른 혐의 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인상을 부여하거나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방송이 이 사건 문건의 존재 및 그 주요 내용과 이 사건 고소에 따른 경찰 수사 상황을 보도하였다고 하여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6, 7항 방송

먼저, 위 방송을 통하여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사실이 적시된 것인지 살피건대, 갑 1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사가 위 방송에서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망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었는데, 이는 원고 A에게도 접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진술은 위 원고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방송이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이 사건 고소 사건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통하여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망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인 점, '인터넷 언론사 대표'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일간지를 발행하는 신문사 대표인 원고 A를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점, 위 방송 중 원고 A의 성매매 혐의 사실 자체에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증거 또는 구체적인 정황을 다루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문제 삼고 있는 위 방송 내용은 이 사건 고소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의 성매매 혐의에 관한 진술증거가 원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피고 공사의 주관적 평가를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피고 공사의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각 방송을 통하여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적시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 방송 보도는 '이 사건 문건에 거론된 원고 A가 이 사건 고소에 따라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 전제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은 전제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전제 사실이 원고들의 사회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는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제3의 나항 및 제8항, 제10항 방송에 대하여

가) 제3의 나항 및 제8항 방송

갑 1호증의 3,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3의 나항 및 제8항 방송은 이 사건 문건의 발견 당시 원고 A의 실명을 비롯한 몇몇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 배경이 주목된다고 보도하면서도, 원고 회사의 소속 기자가 G를 통하여 위 문건을 확인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위 문건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대표이사인 원고 A에 관한 부분을 고의적으로 지웠을 가능성이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제3의 나항 방송의 경우 이 사건 문건 중 일부 내용을 지운 사람과 원고 회사 간에 어떤 조율이 시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피고 공사의 최초 보도 전에 위 문건 내용을 인지하였음에도 일부러 보도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방송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문건에 대표이사인 원고 A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그 자체로 원고 회사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제10항 방송

피고 공사가 제10항 방송을 통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문건에 관한 수사를 은폐하려 하였다거나 이 사건 고소 사건의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보건대, 갑 1호증의 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방송이 이 사건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들 중 유독 원고 A를 포함한 3명에 대하여는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경찰이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찰의 이 사건 고소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일 뿐 그 자체에 원고 회사가 경찰 수사에 개입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까지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방송 중 경찰 수사가 미진한 원인이나 배경에 관한 추가적인 보도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방송에서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방송 보도로 원고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9, 11, 12항 방송에 대하여

국회의원인 I, J가 이 사건 국회 발언 또는 이 사건 토론 발언을 통하여 이 사건 문건에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 공사는 위 각 방송을 통하여 위 국회 발언 또는 토론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위 국회 발언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위

각 발언 내용을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위 각 방송을 통하여 '이 사건 문건상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적시 사실은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명예는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위법성 조각 여부

1) 법리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바,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한편,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는 점,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등 참조).

2) 제2항, 제3의 가항, 제4 내지 7항, 제9, 11, 12항에 대하여

이 사건 문건에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 및 성 상납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공사가 위 각 방송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위 적시 사실 자체는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기초 사실 및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 내지 을 9호증, 갑 1호증의 2 내지 7, 9, 11,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는 국내 최대의 일간지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 대표로서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위 각 방송 보도 당시 망인의 자살과 이 사건 문건을 둘러싸고 사회 전반에 제기된 의혹은 신인 연기자로서 열

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여성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통하여 자신의 입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요구받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연예계의 구조적 병폐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중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원고 A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신인 여배우인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자체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존재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 공사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원고 A가 이 사건 문건에 망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소에 따라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위 각 방송을 보도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방송을 통하여 보도된 내용들은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공사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각 방송을 보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방송을 통하여 적시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 공사가 공익을 위하여 이를 보도한 것은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제9, 11, 12항 방송에서 원고들의 실명을 보도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가 공적인 인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각 방송의 보도 내용 자체가 중요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방송에서 원고들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원고들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방송에서의 각 실명 보도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제3의 나항 및 제8항 방송에 대하여

위 각 방송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문건에 원고 A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을 2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적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거대 언론사인 원고 회사에 대한 위 각 방송 보도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내지 을 2호증, 을 7호증의 1, 2, 갑 1호증의 3,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공사가 최초로 입수한 이 사건 문건에는 유독 원고 A의 이름이 검은 펜으로 지워져 있었던 점, 원고 회사의 소속 기자인 K는 피고 공사가 이 사건 문건의 내용 전반에 관하여 최초로 보도하기 이전인 2009. 3. 8.경 다른 언론사의 소속 기자인 L, M과 함께 G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문건의 존재를 확인한 다음 G의 허락을 받아 위 문건의 일부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점, 피고 공사는 제3의 나.항 방송을 보도하기 이전에 L로부터 'K 기자와 함께 이 사건 문건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진술을 청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 소속 기자인 N이 망인의 유족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메모지를 입수하였는데, 그 메모지에는 'E와 G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원고 회사 측에 모두 주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던 점, 원고 회사는 피고 공사가 이 사건 문건의 내용 전반에 관하여 보도하기 전까지 위 문건 중 부적절한 접대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은 점, 언론사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의 나항 및 제8항의 방송 보도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결국, 제10항 방송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각 방송은 그 내용이 원고 회사 또는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하나 그 위법성이 없으므로, 제1항 방송의 경우에는 설령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각 방송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① 피고 B는 제1, 4, 10항 방송의 담당 기자로서, ② 피고 C는 제2, 6항 방송의 담당 기자로서, ③ 피고 D는 피고 공사의 보도본부장으로서 각자 위 각 방송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방송 보도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내용이거나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위법성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12〉 방송 목록 생략

명예훼손 사례 4

보도의 기초가 된 위키리크스 문건에는 정부 관계자가 미국 하원의원에게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원문의 내용이 왜곡되었으므로 정정보도하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13593 판결

사실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012년 2월 10일 외교통상부가 한겨레를 대상으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11년 9월 15일자 한겨레에 『A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2015년 쌀시장 개방 때 미국, 특혜요구 가능성 커』 제목의 기사와 『A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 제목의 사설에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7년 8월 31일자 미 국무부 외교전문을 보면 A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하원 의원에게 쌀 추가 협상을 약속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위키리크스 문건에서는 A 본부장이 쌀 관세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쌀에 관하여 재논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임에도 피고가 더 나아가 이 사건 보도에서 섣불리 '약속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에 반하여 원문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FTA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키리크스 문건상 A 본부장이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하는 발언을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12월 14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3년 1월 4일 결정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11년 9월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2011서울조정1128)을 하였고,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정보도)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하여 자동 소제기 된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11가합13593 정정보도

원　　고 : 외교통상부

피　　고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 2012. 1. 13.

판 결 선 고 : 2012. 2. 10.

주　　문

1.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한겨레신문의 광고란을 제외한 종합 1면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와 활자체는 [별지2] 기재 제1기사와 동일하게 하여 1회 게재하라.

나. 만일 피고가 위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한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한겨레신문의 광고란을 제외한 종합 1면 기사 게재 부분에 '쌀개방 추가협상 약속 관련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4]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2. 만일 피고가 제1항 기재 기간 내에 제1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겨레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인데, 2011. 9. 15.자 한겨레신문 1면에 [별지2] 기재 제1기사를, 같은 신문 8면에 [별지2] 기재 제2기사를, 같은 신문 31면에 [별지2] 기재 제3사설(이하 위 각 기사 및 사설을 합하여 '이 사건 보도'라 하고, 그 기사 또는 사설을 특정할 때는 '제1기사', '제2기사' 또는 '제3사설'이라고만 한다)을 각 게재하였다.

나. 이 사건 보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제1기사

제목 : A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본문 : A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직후 2007년 8월 미국 쪽에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개방확대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14일 위키리크스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대가로 사실상 미국에 쌀 관세 특혜와 추가개방을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고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보면 A 본부장은 2007. 8. 29. 얼 포머로이 하원의원과 알렉산더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쌀 추가 협상을 약속했다.

ㅇ 제2기사

제목 : 2015년 쌀시장 개방 때 미국, 특혜요구 가능성 커

본문 : 2007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 뒤 미국 의회가 비준을 위해 내세운 '선결과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유예, 쌀 추가협상이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7. 8. 31.자 미 국무부 외교전문을 보면, 포머로이 의원이 쌀 협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돼 캘리포니아 곡물업자들이 반발한다고 지적하자 A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재논의할 것"이라며 그 시기를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끝나는 2014년 이후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재협상을 통해 쌀시장 전면 개방을 2014년까지 유예하였는데,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5년부터는 외국산 쌀에 대해 관세를 400% 이상 매기는 대신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 쪽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A 본부장의 추가협상 약속을 내세워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요구해올 가능성도 높다.

ㅇ 제3사설

제목 : A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

본문 : A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과 쌀 수입 협상을 따로 하겠다'고 미국 하원 의원에게 약속한 사실이 〈위키리크스〉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문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뒤인 2007년 8월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것으로, 김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까지 종료되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협정에 쌀은 제외됐다는 정부 설명과 완전히 배치된다.

다. 이 사건 보도는 [별지3] 기재 위키리크스(wikileaks) 문건(이하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이라 한다.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 기재에 따르면, 위 문건은 주한 미대사관에서 2007. 8. 31.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작성한 외교 전문을 위키리크스가 입수하여 2011. 8. 30. 공개한 것으로 되어 있다)에 기초하고 있는바, 위 문건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

1. Congressman Pomeroy spotlighted beef, rice, and autos as key concerns that need to be addressed to foster a more receptive Congressional climate. TM(trade minister) A responded · · ·

(2) rice, although excluded from the FTA, could be revisited once the current WTO rice quota arrangement expired in 2014.

5. Widely viewed as deserving "affirmative action", rice farmers had attracted enough public support to make the issue untouchable at this time. However, A indicated that the ROKG(Republic Of Korea government) would revisit the rice issue once the 2004 WTO arrangement on rice quotas expired in 20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도가 기초하고 있는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에 의하면, A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하 'A 본부장'이라 한다)이 쌀 개방에 관하여 추가협상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도는 A 본부장이 미국 측에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에 반하고, 그로 인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라 한다)의 협상을 주관한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에 기초하여 이 사건 보도에서 A 본부장이 미국 측에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했다고 기재한 것은, 위 문건의 전체 내용과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것이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가) 우선 이 사건 보도가 의견 제시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또는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가 먼저 구별되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

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참조), 이 사건 보도의 내용과 형식, 문맥과 전체적인 흐름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이 사건 보도는 사실과 의견이 혼재되어 있고, 그 중 의견이 기재된 부분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원고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보도 중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에 의하면 A 본부장이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에 A 본부장이 위와 같은 약속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적 문제로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정정보도의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의 내용은 A 본부장이 FTA 협상이 타결된 후인 2007. 8. 29.경 얼 포머로이(Earl Pomeroy) 미국 하원의원과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나눈 이야기 전반에 관한 것인데,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쌀과 관련하여서는, 쌀과 관련된 문제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었고, 2004년 WTO에서 정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2014년에 종료되는 상황에서, 'FTA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현재의 WTO 쌀 쿼터제가 2014년에 종료되면, 쌀 문제는 재논의될 수 있다(rice, although excluded from the FTA, could be revisited once the current WTO rice quota arrangement expired in 2014)' 또는 '2004년 WTO의 쌀 쿼터제가 2014년에 종료되면, 쌀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A indicated that the ROKG would revisit the rice issue once the 2004 WTO arrangement on rice quotas expired in 2014)'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2014년에 쌀 개방을 추가협상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위 문건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보아도 A 본부장이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없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을 인용하면서 "A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A 본부장은 … 쌀 추가 협상을 약속했다"(제1기사), "A 본부장의 추가협상 약속을 내세워 …"(제2기사) 또는 "A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 "A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 쌀 수입 협상을 따로 하겠다고 … 약속한 사실이 위키리크스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제3사설)고 보도한 점, ③ 쌀 개방과 관련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위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 관하여 언론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신중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에서는 A 본부장이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쌀에 관하여 재논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임에도 피고가 더 나아가 이 사건 보도에서 섣불리 '약속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에 반하여 원문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FTA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 15조에 따라 위키리크스 문건상 A 본부장이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하는 발언을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의 내용 및 그 표현방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한겨레신문의 광고란을 제외한 종합 1면 기사 게재 부분에 1회 게재하되, 그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와 활자체는 이 사건 보도 중 신문 1면에 게재된 이 사건 제1기사와 동일하게 하고, 간접강제금으로 만일 피고가 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기한만료일 다음날부터 이

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정한다{원고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별지4] 기재와 같이 피고가 명예훼손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정정보도문의 일부로서 구하고 있으나, 정정보도 청구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보도의 대상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경우 쉽게 명예훼손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그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제목 : 쌀개방 추가협상 약속 관련 정정보도문

본문 : 한겨레신문은 2011. 9. 15.자 신문 1면(종합) 〈A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8면(종합) 〈2015년 쌀 시장 개방 때 미국, 특혜요구 가능성 커〉 및 31면(오피니언) 〈A 본부장의 쌀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위키리크스 문건을 인용해 A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키리크스 문건에 따르면, A 본부장이 '쌀 문제는 2014년 세계무역기구 쌀 쿼터 협정이 종료되면 재논의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하거나 쌀 개방을 밀약한 발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알려 드립니다. 끝.

〈별지 2〉 제1기사 생략

〈별지 3〉 위키리크스 문건 생략

〈별지 4〉 정정보도문 생략

명예훼손 사례 5

원고들이 휴게소 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은 제작진이 사전에 정한 의도대로 취재 · 촬영하고 줄거리에 맞게 편집하여 제작한 악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0가합23150 판결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2012년 2월 23일 A 외 2명이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8년 9월 16일, 9월 30일, 10월 14일 SBS 〈긴급출동 SOS 24〉 프로그램에서 「찐빵 파는 소녀」라는 부제로 원고들이 운영하는 휴게소의 종업원이 원고들로부터 폭력과 학대를 당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내용은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 제작진이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취재를 하고 그로 인하여 도출되는 결론을 방송한 것이 아닌 피고 제작진이 이미 자신들만의 사실과 결론을 도출하고 줄거리를 구상한 다음 이에 맞추어 취재 및 촬영을 진행하고 줄거리에 맞게 편집을 하여 제작한 악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행위는 공익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에게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시청률의 증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성에 있어서도 "피고가 이 사건 방송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언론기관 및 그 소속 직원들의 부당한 취재행위와 윤리의식이 심대하게 문제되는 사안에서 그 위자료가 미미할 경우 언론 기관들이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감수하고라도 아주 쉽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염려가 있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언론 기업들은 명예훼손 등의 법익 침해로 인한 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를 배상하고 남은 이익이 있으면 명예훼손행위를 해서라도 기업 이윤을 축적해 가려는 영리성에 바탕을 두고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월 11일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10가합23150 위자료

원　　고 : 1. A

2. B

3. C

피　　고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변 론 종 결 : 2011. 12. 15.

판 결 선 고 : 2012. 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9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0. 15.부터 2012.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08.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강원 홍천군 ○면 ○○○리 소재 ○○○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는 원고 A, B의 딸이다.

2) 피고는 2005. 11. 1.부터 2011. 4. 15.까지 매주 1회 "긴급출동 SOS 24"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 · 방영한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다. 소외 D, E, F, G, H, I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한 피고 소속 PD이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성격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현장을 취재하여 보도하고 보도에서 나아가 해결

책 제시 및 사후 관리 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 고발프로그램이다.

피고는 제보를 통하여 위 프로그램의 소재를 확보한 후 초벌 조사 및 취재를 통하여 제보가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심층적인 취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솔루션 위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구제조치를 진행한 다음 이를 방송한다.

다. 원고들과 소외 J의 관계

1) 이 사건 휴게소는 편도 2차로의 44번 국도변에 있고, 위 국도 건너편에 J의 이모할머니인 소외 K의 집이 있으며, J의 할머니인 소외 L과 아버지인 소외 M이 거주하는 집은 위 휴게소에서 자전거로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다.

2) 원고 A는 2004. 5. 8.경 이 사건 휴게소에서 J에게 시간당 2,500원을 주기로 하고 J를 고용하였고, J로 하여금 위 휴게소에서 청소와 설거지 등 허드렛일 및 잔심부름을 시켰다.

3) J는 2007. 8. 하순경 이 사건 휴게소 화장실에서 찐빵 등을 훔쳐 먹다가 원고 A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원고 A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찬 물을 뿌리기도 하였다. J는 위 절도 사건으로 600만 원(3년 동안 하루에 5,000원씩 훔친 것으로 계산)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당시 L, K, M은 이 사건 휴게소에 찾아왔고, J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휴게소에 있는 찐빵 등을 훔쳐 먹다가 적발되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원고 A는 L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J를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4) J는 2008. 3.경(또는 2008. 4.경) 새벽에 이 사건 휴게소를 떠나 자신의 집으로 갔으나, 날이 밝은 뒤 집으로 찾아온 원고 B와 함께 위 휴게소로 돌아갔다.

라. 경찰의 J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내용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진(이하 '피고 제작진'이라 한다)이 J에 관한 취재를 하기 전에 홍천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찰관들이 J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J)이 얼굴에 상처를 크게 입는 등의 학대를 받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2008. 4. 27. 접수하고 이 사건 휴게소에 출동하여 J를 원고들과 분리하여 폭행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J는 넘어져서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하는 등 폭행사실을 부인하였고 J의 할머니 소외 L도 원고들의 학대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J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였다.

2) 지적장애인이 찐빵을 팔고 있는데 앵벌이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2008. 6. 1.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보호자인 L이 이미 알고 있는 사안으로서 특이사항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휴게소에서 상한 찐빵을 판매하고 있으니 처리하여 달라는 신고를 2008. 6. 22. 접수하고 위 사건(이하 '관광객 사건'이라 한다)을 조사한 결과 찐빵이 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신고한 사람이 민사문제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

마. 이 사건 방송의 방영 및 그 취재과정

1) 피고 제작진은 다음과 같이 제보를 받은 다음 J에 대한 취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순번	일시	제보자	내용	증거
1	2008. 1. 2.	권ㅇㅇ	제보자는 2008. 1. 1. 이 사건 휴게소에서 밥을 먹던 중 찐빵을 파는 20대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는 위 휴게소 주인의 눈치를 보는 듯 하였고, 정신은 정상인 듯 하였지만 얼굴에 맞아서 생긴 것 같은 멍이 들어 있었음	을1-1
2	2008. 5. 3.	I	이 사건 휴게소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20대 여자가 있는데 눈에 멍이 있고 얼굴이나 몸에 늘 상처가 있으며 누구에게 맞는 것 같음	을1-2
3	2008. 6. 22.	신ㅇㅇ	이 사건 휴게소에는 찐빵을 파는 10대 소녀가 있는데 행동이나 말이 이상하고 얼굴이 멍투성이임	을1-3
4	2008. 6. 25.	A	이 사건 휴게소에는 찐빵과 감자를 파는 여자가 있는데 얼굴의 반 이상이 멍이 들어있음	을1-4

2) 피고 제작진은 2008. 6. 25.부터 2008. 6. 29.까지 이 사건 휴게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다음 J를 몰래 촬영하였다(증인 G의 증언, 2011. 4. 28.자 피고 준비서면 5면 참조).

3) 피고 제작진은 2008. 6. 25.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J에게 얼굴에 난 상처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J는 그 당시 "눈은 왜 그래요?"라는 피고 제작진의 질문에 "눈이요 넘어져가지고 눈가가 다쳤는데, 피가 눈알로 들어가지고 치료는 받고 있는데, 아직 피가 안 빠져가지고 그런거예요."라고 대답하였고, "여기 멍든 건?"이라는 질문에는 "일요일날 술 취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찐빵이 쉬었다고 시비 거시면서 행패 부리면서 막 그러다가 손님말리다가 손님한테 맞았어요."라고 대답하였다(갑 제10호증의 2 중 1면 12행 내지 15행).

4) 피고 제작진은 2008. 6. 26.부터 2008. 7. 1.까지 이 사건 휴게소 길 건너편에 취재차량(72허ㅇㅇㅇㅇ호, 72허ㅁㅁㅁㅁ호)을 주차하고 원거리에서 위 휴게소 1층 내부를 몰래 촬영하였다(증인 G의 증언). 원고들은 2008. 7. 1. 72허ㅇㅇㅇㅇ호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홍천경찰서 남면파출소에 "봉고차량이 휴게소를 감시하여 불안하다."는 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M, 순경 O가 출동하여 피고 제작진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피고 제작진은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원고들에게 파출소에 가서 촬영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순찰차량을 따라 남면파출소로 향하던 중 서울방면으로 도망하였다(갑 제23호증의 1 제20면).

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P 팀장과 F는 2008. 7. 3. 이 사건 휴게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J와 인터뷰를 하던 중 원고 A, B에게 발각되었다. 원고 A와 B는 F에게 그동안 이 사건 휴게소 바깥에서 몰래 촬영한 사람이 아니냐고 추궁하였고 F는 이를 부인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그 후 P와 F는 원고들 및 J의 동의를 받아 원고들과 인터뷰를 하고 J와 면담을 하면서 촬영하였다. 당시 원고 A, B, J는 P와 F에게 다음과 같이 각각 설명하였다.

가) 원고 A, B

(1) 관광객 사건

J는 관광객 사건 발생 당시 누군가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다(을 제15호증 중 0130부분).

⑵ J의 몸에 난 상처

J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은 J에게 들은 바로는 넘어져서 그런 것이고, 목에 난 상처는 J가 자해를 한 것이며(을 제15호증 중 2100부분), 나머지 상처는 찐빵을 팔다가 승용차 또는 화물차 문에 끼어 난 상처이다(을 제15호증 중 1400, 2100부분, 을 제26호증 중 21:00 내지 21:30).

⑶ J가 생활하는 공간

원고 A, B는 F와 P를 이 사건 휴게소 2층으로 안내하면서 J는 이 사건 휴게소 2층 거실에서 잠을 자고 화장실은 이 사건 휴게소 1층을 사용하며, 화장실에서 씻고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J의 옷은 1층에 두었다고 설명하였다(갑 제9호증의 2 중 2, 3, 13면).

나) J

원고들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 목 부분의 흉터는 자해를 하기 때문에 생긴 상처이고(을 제22호증 중 0239부분). 눈에 생긴 상처는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다(을 제22호증 중 0305부분). 얼굴에 난 멍 중 일부는 관광객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이 판 찐빵이 쉬었다며 항의하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맞아서 생긴 것이고, 원고들이 얼굴에 생긴 멍 때문에 약을 사다준 사실도 있으며, 가끔 자동차에 부딪히기도 한다(을 제22호증 중 3832부분, 을 제25호증 중 28:11 내지 29:15).

6) F는 2008. 7. 3. 원고들과 J 몰래 J의 옷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위 녹음기로 원고들과 J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2 중 19면부터 42면까지).

7) P는 피고 제작진에게 "2008. 7. 3. J를 면담한 결과 J가 완강하게 원고들의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J가 실제로 학대를 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었다(갑 제12호증).

8) 피고 제작진은 2008. 7. 3. J의 할머니인 L을 전화통화로 취재하였는데 피고 제작진의 신분은 밝히지 않고 장애인인권단체라고 소개하였다.

9) 피고 제작진은 2008. 7. 4. 남면파출소를 방문하여 관광객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N과 관광객 사건에 관한 인터뷰를 하였는데 N은 피고 제작진에게 J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 사건 휴게소에서 폭행사건이 있었냐?"는 피고 제작진의 질문에 "폭행이 있다고 하면 사건 처리를 했을 것인데 그런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10) 피고 제작진은 2008. 7. 7. J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었던 소외 Q를 전화를 통하여 취재하고, 같은 날 교장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취재하였다. 피고 제작진은 Q가 여선생님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1) D를 포함한 피고 제작진과 변호사인 소외 R, 사회복지사인 소외 S,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아나운서 소외 T는 2008. 7. 8. 홍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이 사건 휴게소를 방문하여 원고들을 취재하고, J와 면담을 하면서 원고들과 J를 촬영하였다. 위 취재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제작진은 촬영할 당시 원고들과 J가 취재 및 촬영을 거절하면서 카메라를 치워달라고 항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 제작진이 원고들 및 J에게 J의 몸에 난 상처의 원인에 관하여 거듭하여 질문하자 원고들 및 J는 화를 내며 "2008. 7. 3. P에게 이야기하였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에게는 이야기한 적

이 없다."며 계속하여 대답을 종용하였다. 이에 취재 당시 동석하였던 경찰관은 피고 제작진에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인터뷰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촬영 및 취재를 제지하기도 하였다.

다) 당시 원고들 및 J는 피고 제작진에게 J의 몸과 얼굴에 난 상처의 원인에 관하여 그 상처 부위별로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 및 J에게 그 상처 발생원인을 그 부위별로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상처 발생원인이 J의 자해에 의한 것인지 여부만을 확인하려 하였으며, J가 자해를 하는 것이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거듭 질문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J는 관광객 사건 발생 당시 누군가 J를 때렸다고 말하였으나, 피고 제작진이 경찰에 확인한 결과 폭행 사건은 없었다고 한다(을 제16호증 중 0730 부분). 원고들은 2008. 7. 3. P에게 J의 얼굴에 난 상처가 관광객 사건 발생 당시 누군가에게 폭행당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을 제16호증 중 제10면)"고 추궁하였다. 이에 원고 B는 "자신이 P에게 말한 내용은 그러한 취지가 아니었고(을 제16호증 중 2400부분), 당시 J가 맞은 것은 사실이고 이를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경미한 폭행이었고 J의 얼굴에 상처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어서 따로 형사사건화 하지는 않았다(을 제16호증 중 3000, 3030부분)."고 설명하였고, 옆에 있던 J는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 전부가 관광객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였다(을 제16호증 중 2430부분).

12) 피고 제작진은 2008. 7. 9. 범죄심리학 교수인 U로부터 J의 몸에 난 상처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다(을 제6호증의 1).

13) 홍천경찰서 강력팀은 2008. 7. 10. 위 11)항 기재와 같이 피고 제작진과 동행하여 원고들 및 J를 수사한 것과 관련하여 "J가 지적장애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은 J의 퇴직을 종용하였으나 J가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4) 피고 제작진은 2008. 7. 14. 홍천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J의 얼굴 등에 폭행당한 상처가 있고, 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착취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취재하면서 녹음한 내용을 제출하였다(갑 제10호증의 1).

15) P는 원고 A로부터 J를 전문기관에 데려가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 A와 함께 2008. 7. 15. J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던 중 J는 피고 제작진인 G가 오자 G에게 "나는 도움을 원치 않는다. 나는 맞은 것도 아니고, 장애도 없다. 왜 장애인이라고 하냐."고 따지며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고 심리상담을 받는 것도 거절하였다(갑 제12호증).

16) 피고 제작진은 2008. 7. 29. J를 국립춘천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제작진은 국립춘천정신병원을 섭외하고 난 뒤 2008. 7. 29. J의 언니인 V와 J의 형부인 W를 찾아가 V와 W에게 J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 주면서 "원고들과 J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니 원고들이 J에게 답변 연습을 시키고 말을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J는 원고들 앞에서 불안해 하고 있으며 범죄심리학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니 J가 극한 상황에 있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제작진이 생각한 바로는 J를 원고들로부터 격리시키면 피해사실을 진술할 것 같다. 피고 제작진이 병원을 섭외해 놓았으니 입원 동의를 해달라."(을 제7호증의 2 중 1800 내지 1900부분)고 말한 다음 V의 동의를 받았고, 따로 J의 할머니인 L과 아버지인 M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나) 피고 제작진은 V, W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경찰관과 129구급대원에게 “V가 동의를 하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 J를 원고들로부터 데려와 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요청하면서 원고들이나 J에게는 자신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고(을 제7호증의 2 중 2348 내지 2530부분), “J가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입원시키려 하는 것”이라고도 말하였다(을 제7호증의 2 중 2730 부분). 이에 대하여 129구급대원은 “피고 제작진이 요구하는 사항은 90년대식처럼 그냥 잡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을 제7호증의 2 중 3130부분).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는 납치식이다(을 제7호증의 2 중 3200부분).”라고 말하였다.

다) 결국 J는 위 129구급대원에 의해 위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J가 입원한 이후에는 V와 W만이 면회가 가능하였으며, L과 M은 면회할 수 없었다. 한편 위 병원에서는 J를 정신장애인으로 진단한 적이 없다(갑 제15호증의 2).

17) 피고 제작진은 2008. 8. 4. 솔루션 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18) J는 국립춘천정신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자신은 학대당하지 않았고 얼굴의 멍은 손님이 폭행하여 생긴 것이고, 다른 상처는 찐빵이 잘 팔리지 않아 자해를 하여 생긴 것이다.”라고 말하며 학대사실을 부인하다가 2008. 8. 21.경 정신과 전문의 X에게 “자신은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일하는 동안 원고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편지(갑 제17호증의 1, 2)를 보냈고 이후 위 편지에 기재된 취지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였다.

19) 피고 제작진은 2008. 9. 3. 춘천정신병원에서 J의 변경된 진술내용과 관련한 취재를 하였다(갑 제15호증의 13).

20) 피고 제작진은 2008. 9. 7. J, V, W와 함께 별지 3 제38항(남이섬에서 J가 V, W와 닭갈비를 먹는 장면), 별지 4 제11항(J가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사고 화장을 하는 장면)에서 방영된 장면을 촬영하였다(갑 제15호증의 13).

21) 피고는 2008. 9. 8. 경찰에 J와 원고들을 계속 취재하여 2008. 9. 16. 및 2008. 9. 23.에 1, 2부 방송을 할 것임을 밝혔다(갑 제13호증).

22) J는 2008. 9. 9. 강원지방경찰청에 “① A(원고 A)가 2007. 4.경 이 사건 휴게소에서 주방용 칼이나 숟가락 등으로 자신(J)의 가슴과 머리를 찌르고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수십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② B(원고 B)가 2007. 10.경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졸랐으며, ③ A와 B가 2007. 8. 중순경 자신을 협박하여 6,000,000원짜리 변제각서를 받는 등 공책 한 권 가량의 각서를 쓰게 하고 임금을 착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3)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2008. 9. 11. “원고 A가 주방에 있는 식칼로 자신의 목과 오른쪽 가슴, 위 팔을 1회씩 찔렀다.”는 J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휴게소를 압수 · 수색하여 팔 부분이 훼손된 재킷과 식칼을 압수하였고, 피고 제작진은 이를 촬영하였다.

24) 피고는 2008. 9. 16. “찐빵 파는 소녀 1부(이하 ‘1부 방송’이라 한다)”라는 부제로 약 30분 동안 아래 바의 1)항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25) 피고 제작진은 2008. 9. 16. 신경외과 전문의인 Y를 취재하였다(을 제6호증의 2).

26) 2008. 9. 17. 경찰에서 원고 A, B는 피의자신문을, 원고 C는 J와 대질하여 피의자신문을 각 받았고, 피고 제작진은 위 조사과정을 촬영하였다.

27)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2008. 9. 24. 이 사건 휴게소에서 "원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린 적이 있다."는 J의 진술에 따라 혈흔을 채취하기 위해 이 사건 휴게소를 현장 검증하였고 J와 피고 제작진도 위 현장에 입회하였으며, 피고 제작진은 위 검증 장면을 촬영하였다(을 제6호증의 3).

28) 피고 제작진은 2008. 9. 24. 정신과 전문의 X를 취재하였다(을 제6호증의 3).

29) 원고 B는 2008. 9. 25. 경찰에서 J와 대질조사를 받았고, 원고 A는 2008. 9. 29. 경찰에서 J와 대질조사를 받았다.

30) 피고는 2008. 9. 30. "찐빵 파는 소녀 2부(이하 '2부 방송'이라 한다)"라는 부제로 약 40분 동안 아래 바의 2)항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31) 피고 제작진은 2008. 10. 2. J와 함께 별지 4 제13항에서 방영된 장면(J가 빵을 만드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32) 원고 A는 2008. 10. 7. J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피고 제작진은 위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33)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08. 10. 9. 강원지방경찰청에 위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2008. 9. 11. 이 사건 휴게소를 압수 · 수색하여 압수한 재킷, 식칼에 관하여 "재킷의 훼손된 부위가 식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상이나 일반적인 칼에 의하여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식칼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논단하기 어렵고, J의 우측 위팔 흉터 부위는 재킷의 우측 위팔 훼손된 부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동시점에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J의 목 아래 부분 흉터 부위는 재킷의 우측 가슴부분의 훼손된 부위와는 위치가 서로 상이하고, 위 재킷과 식칼의 혈흔반응은 음성"이라는 감정결과를 송부하였다.

34) 피고는 2008. 10. 14. "찐빵 파는 소녀 3부(이하 위 방송을 '3부 방송'이라 하고 1, 2, 3부 방송을 합하여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라는 부제로 약 15분 동안 아래 바의 3)항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35)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08. 10. 29. 강원지방경찰청에 위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2008. 9. 24. 이 사건 휴게소에서 검증을 하며 채취한 감정물은 혈흔이 아니거나 혈흔이지만 인혈이 아니라는 감정결과를 송부하였다.

36) J는 2008. 12. 12. 국립춘천정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바. 이 사건 방송 내용(생략)

사.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

가) 원고 A는, 피고 제작진이 2008. 9. 8. 자신들의 취재내용에 터잡아 강원지방경찰청에 원고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J가 2008. 9. 9.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을 고소함에 따라 개시된 수사과정에서 2008. 10. 7. 구속되었고, 2008. 11.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 · 흉기등상해) 등의 혐의로 춘천지방법원에 기

소되어 약 6개월 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나) 춘천지방법원은 2008고합103호로 원고 A에게, 위 원고가 자백한 J에 대한 일부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상습상해, 상습흉기휴대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순번	일시	장소	방법	피해자
1	2007. 9. 일자 불상 경	강원 홍천군 양덕원 ○○○리 ○○○ 휴게소(이 사건 휴게소)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목욕탕에 데리고 가 3차례 물을 끼얹음	J
2	2007. 12. 일자 불상 경		찐빵 개수가 맞지 않는다는 항의전화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놓은 곳으로 끌고 가 "씨발년 니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욕을 하면서 찬 물을 수 차례 뿌림	
3	2007. 12. 일자 불상 경		보일러실에서 피해자가 훔친 미녀 석류, 크런치 파이 등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림	
4	2008. 1. 일자 불상 13:00경		피해자가 훔쳐 둔 과자, 음료수 등을 먹은 것에 화가 나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손목 위 팔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라) 위와 같이 무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및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소사실

(가) 상습상해

피고인(원고 A)는 2005. 여름경부터 2008. 7.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J)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2008. 7. 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2008. 7.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상습으로 강요하였으며, B(원고 B)와 공동하여 2007. 8. 24. 의무 없이 "600만원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 위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에서 제하기로 하는 것을 기화로, 2008. 7. 29.까지 위 휴게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상습흉기휴대상해

피고인(원고 A)은 2007. 7. 초경부터 2008. 6.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J)를 폭행하고, 2008. 6.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이유

이 사건의 직접적 증거인 피해자 J의 법정진술 및 J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각 조서에 대한 진술기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신빙성이 없다.

① 진술 내용 중, 2007. 4.경 피고인으로부터 플라스틱 재떨이로 머리를 맞아 눈이 붓고 까맣게 되어 ○○○ 운영의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었다는 부분, 충주 가출건의 경위, 복귀과정 및 소개비 지급 부분, 고교 졸업 후 이 사건 휴게소에 계속 근무하게 된 배경 부분, 피고인이 칼 등을 이용하여 학대를 하여 주방, 복도, 창고 등에 피가 낭자하게 흘렀다는 부분 등은 ○○○, □□□, L, K의 각 법정진술과 이민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혈흔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2008. 3. 또는 4.경 피해자가 폭행을 못 이겨 이 사건 휴게소를 빠져나와 집으로 도망하였다는 진술 내용은 그 무렵 피해자가 280만 원을 훔쳐 피고인 가족과 갈등을 빚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진술 내용 중, 피고인이 파출소장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휴게소 근처에 전경을 배치하게 하였다는 부분, 방송 취재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를 흘릴 정도로 폭행을 하였다는 부분 등은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④ 왼쪽 팔, 가슴, 정강이 등의 상처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일하는 동안 거의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

⑥ 현금보관증 등 각종 확인서를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의해 억지로 작성하게 되었다는 진술은 작성 당시 피해자의 가족이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 대부분의 서면이 피해자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가운데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⑦ 피해자가 이 사건 휴게소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은 이 사건 휴게소의 위치, 개방성, 바로 인근에 이모할머니 K가 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⑧ 그 밖에 피해자의 평소 언행, 생활 습관, 국립춘천병원의 심리검사결과, 피고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 이 법정에 나타난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 밖의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이거나 폭행 등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증거가 아니다.

마) 검찰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노2611호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증거들을 위와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등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다.

① 피해자(J)는 이 사건 기간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상적인 지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립심이 강한 성격으로 보이고, 이 사건 휴게소 바로 건너편에 거주하는 이모할머니, 같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언니 V와 직업군인인 형부 W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지들도 주위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장기간의 가혹하고 불합리한 폭력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진지한 시도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쉽게 수긍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2007. 5.경 이전 즉, 가족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며 이 사건 휴게소로 출퇴근하던 시기에는 친구 등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을

것인데, 어느 누구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폭력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결국 이 사건 폭력의 근본 원인은 피고인(원고 A)의 찐빵 판매수입에 대한 과도한 욕심에 있고, 이는 때로는 피고인의 남편 B 몰래 찐빵 개수까지 속여 고객에게 판매할 정도로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찐빵 납품업자 △△△의 원심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이를 토대로 한 경찰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13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휴게소의 2005.경부터 2008. 7.경까지의 찐빵 판매수량은 대체로 월 200–300 박스(박스당 20–25개)이고, 2007.부터 2008. 7.까지의 판매수익은 합계 약 2,200만 원으로 추정되며, 다른 휴게소보다 약 1/3 정도 판매량이 많기는 하나(위 수사보고에는 2–3배 판매량이 많다는 것이나 △△△의 원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판매량에는 별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고객들의 항의가 예상되는데도 찐빵 개수까지 속여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다는 점이나 3년 이상에 걸친 가혹한 폭력 행사의 근원이 될 정도로 찐빵 판매수입에 집착하였다는 점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특정되고 있는데, 해당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50여 회에 이르는 범행의 일시, 경위, 방법, 도구, 결과 등을 달력을 보며 기억해냈다는 점에 비추어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정확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시기에는 폭행의 내용과 사용도구들이 유사한 경우가 꽤 있어 개별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기억에 바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2) 원고 B에 대한 형사사건

원고 B는 이 사건 휴게소의 사업자등록자로서, J에 대한 고용주로 간주되어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인 ① 미성년자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노동부신고의무위반, ② 강제노동, ③ 근로시 폭력, ④ 월급미지급을 사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었고,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대해 원고 B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 A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검찰은 공소사실 중 ② 강제노동과 ③ 근로시 폭력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였으며, 춘천지방법원은 2011. 1. 13. 나머지 ① 미성년자 야간근로 및 ④ 월급미지급을 사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이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 C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원고 C는 2008. 11. 4. J에게 폭력을 가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다가 2010. 8. 31. 심리개시결정 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았다.

아. J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J는, 원고들에 대한 위 고소와 관련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원고 A,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 A, B를 무고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0고단2539호로 "피고인(J)의 고소로 인한 A(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2008고합103호)에서 고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은 피고인이 실제로 고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으나 정신적, 심리학 장애로 인하여 객관적 진실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었으며, 가사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는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 당시 정신적, 심리학 장애로 인하여 객관적 진술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A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네 차례의 폭행 내용에 비추어 고소사실이 단순히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J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11노4419호)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1. 12. 28. 항소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자. 원고들의 소외 대한민국 등에 대한 소제기

원고들은 2011. 6. 20. 이 사건 방송 중 별지 2 제9 내지 20, 24, 25, 32, 33, 34항과 별지 3 제6, 7, 8항 방송내용과 관련하여 소외 대한민국 및 원고들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던 강원지방경찰청소속 경찰관 소외 AB, Z, AC를 상대로 피의사실공표 및 피고에 대한 촬영허가로 인한 불공정수사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2545)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 수사관들(AB, Z, AC)은 에스비에스 제작진(피고 제작진)에게 원고들에 관한 조사과정 촬영을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허락하여 원고들의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촬영을 허락한 행위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직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차.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한 광고 수입

1부 방송 방영일인 2008. 9. 16., 2부 방송 방영일인 2008. 9. 30., 3부 방송 방영일인 2008. 10. 14. 이 사건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는 15초당 10,665,000원이었고, 이는 같은 날 방송된 피고의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 중 3번째로 높은 금액이었다.

카.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게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정신보건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 · 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공개금지)

④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 · 답변강요 · 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 윤리강령〉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

1. 인권보호 지침

① 모든 범죄 피의자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2. 프라이버시 보호

② 전화 인터뷰나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대상자에게 보도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료나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리며,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는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③ 취재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취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개인의 주거나 건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해 취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실천지침

1. 취재활동

② 몰래 카메라를 비롯한 비밀 촬영기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다른 취재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도 부서장이나 실무 국장과 반드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 녹취할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몰래 카메라 사용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4, 갑 제23호증의 1, 갑 제27호증의 1, 갑 제28호증의 2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2, 을 제15, 16, 19, 20, 2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1, 을 제25, 26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실제 취재내용과 정반대 또는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을 편집하였고 그 부분은 별지 2, 3, 4 각 항 기재와 같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전체적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J에 대하여 잔인한 가해행위 등을 하면서 앵벌이를 시켰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의 특정 여부

이 사건 방송의 상당 시간 동안 이 사건 휴게소의 내 · 외부 전경이 여러 차례 그대로 방송되었고, 원고들 및 J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에 대하여도 그대로 방송되어 이 사건 휴게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적어도 원고들의 생활권역 내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음영처리 또는 변성처리된 사람들이 바로 원고들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 1, 2부 방송 이후 원고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비판 여론이 일었던 점(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원고들로 특정된다.

3)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

가) 일반론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참조).

나) 1부 방송의 취지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1부 방송의 내용은 "J의 몸에 난 상처는 원고들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따라서 1부 방송은 J의 상처 원인에 대한 원고들과 J 그 주변인물, 경찰의 진술과 J에 대한 구제조치를 그대로 보여 주었으므로 위 방송내용 중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1부 방송은 방송내용 및 구성면에서, 기초사실 바의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장면을 순차로 방영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J를 가해하여 상처를 입혔음에도 위 상처가 이 사건 휴게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폭행당하였거나 J가 자해를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고, J는 원고들에게 겁을 먹고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처리하였다.

⑵ 1부 방송에서 내레이션에 사용된 "상처로 봐선 누군가에게 맞은 자국인 듯 보였는데(별지 2 제3항)", "누가 봐도 맞은 흔적인 것 같다고 했는데(별지 2 제13항)"이라는 용어는 일반 시청자로 하여금 J의 상처가 원고들로부터 맞아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기 충분하고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 여자의 닫혔던 마음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별지 2 제29항)" 등의 용어는 J가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다) 2부 방송의 취지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2부 방송의 내용은 "원고들이 J를 흉기 등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가해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⑴ 2부 방송은 기초사실 바의 2) 가)항 기재와 같이 이미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1부 방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⑵ 2부 방송은 방송내용 및 구성면에서 기초사실 바의 2)항 기재 장면을 순차로 방영함으로써 J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원고들의 범행이 발각된 것처럼 처리하였다.

⑶ 2부 방송에 사용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걸까?(별지 3 제4항)","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별지 3 제13항)", "여주인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여전히 당당했다(별지 3 제16항)" 등의 용어는 원고들이 단순히 J를 학대한 혐의가 있다는 점을 넘어서서 실제로 학대하였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⑷ 2부 방송 이후에는 실제로 원고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라) 3부 방송의 취지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방송 또한 "원고들이 J를 흉기 등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가해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⑴ 3부 방송은 기초사실 바의 3)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1, 2부 방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⑵ 3부 방송은 방송내용 및 구성면에서 기초사실 바의 3)항 기재 장면을 순차로 방영함으로써 2부 방송과 같이 J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원고들의 범행이 발각되었으며 원고 A가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를 한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처럼 처리하였다.

⑶ 3부 방송에 사용된 "드러나기 시작하는 끔찍한 진실(별지 4 제2항)", "휴게소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력(별지 4 제5항)", "지난 4년 휴게소 안에서 은밀히 이뤄졌던 폭력과 학대가 처음 경찰 수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날(별지 4 제8항)", "꿈 많던 어린 소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던 폭력의 굴레(별지 4 제10항)", "단지 찐빵을 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끔찍하게 가해졌던 폭력, 차마 믿기 힘들었던 그 현실이 또 한번 사실로 확인됐다(별지 4 제14항)."등의 용어는 그 자체로 원고들이 단순히 J를 학대한 혐의가 있다는 점을 넘어서서 실제로 학대하였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마) 이 사건 방송의 전체 취지

위 나) 내지 라)항에서 본 각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휴게소에서 찐빵을 파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J를 위 휴게소에 수년의 기간 동안 사실상 감금한 후 일에 대한 대가인 월급 등 보수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찐빵을 못 판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떨이로 J의 머리를 수십 회에 걸쳐 가격하고, 흉기인 칼로 J의 목, 가슴, 팔 부위를 찌르고, 연탄집게 등으로 J의 신체부위를 가격하는 등 상습적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J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J를 강요하여 그로 하여금 현금보관증,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J에 대하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잔인한 가해행위 등을

가하는 방법으로 J로 하여금 앵벌이를 시켰다는 것이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방송내용'이라 한다)을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방송은 J의 상처 원인을 취재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방송의 개별적인 장면에 관한 검토

아래에서는 별지 2, 3, 4 각 항 기재 방송 부분 중 피고 제작진이 실제 취재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작출하거나 본래의 취재 내용을 오인하게 할 정도로 편집을 한 부분으로서 이 사건 방송의 성질 및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가) 1부 방송

⑴ 별지 2 제1항 부분

① 이 부분 방송의 취지

J가 심하게 맞은 것 같다는 취지의 음성, J의 정강이 상처와 눈 상처를 촬영한 장면, "휴게소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찐빵을 팔고 있는 한 여자를 도와달라는 SOS입니다."라는 진행자의 멘트를 고려하면 이 부분 방송은 "피고 제작진에게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면서 휴게소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찐빵을 팔고 있는 한 여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동영상 제보가 들어왔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실제 취재 내용

㉠ 피고는 방송내용과 같이 동영상 제보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 F와 P가 2008. 7. 3. 이 사건 휴게소를 방문하여 J를 면담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제26호증)을 보면 F가 J를 세워 놓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J의 상처를 촬영하는 장면(42:48 내지 43:37)이 나오고 위 방송내용에 나온 J의 복장 및 그 배경과 위 영상에 나온 J의 복장과 배경이 동일한 점, ㉢ 피고 제작진이 원고 A, C 및 J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내용(갑 제9호증의 2 중 29면) 중에는 J가 F가 자신을 휴대폰으로 계속하여 찍었다고 말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방송에 방영된 영상은 F가 직접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인 것으로 보인다.

③ 판단

피고 제작진은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동영상 제보를 만들어 방영함으로써 이 사건 방송 내용을 보다 더 신빙성 있고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⑵ 별지 2 제2항 부분

①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에 출연한 인터뷰 대상자와 피고 제작진 사이의 실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15호증 중 4700부분, 을 제26호증 중 47:00 내지 48:00)

피고 제작진 : 거기서 찐빵 파는 여자애 있잖아요. 아세요 혹시?

인터뷰 대상자 : 우리는 모르는데 손님들이 얘기를 해줘서

피고 제작진 : 뭐라고 하던가요

인터뷰 대상자 : 좀 이상하다고 하던데

피고 제작진 : 뭐가 이상하다고 하던가요?

인터뷰 대상자 : 어디서 나오셨는데

피고 제작진 : 저희는 단체에서 좀 도움을 줄까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인터뷰 대상자 : 좀 모르겠어요. 손톱자국도 있고 막 강요를 한대 손님들한테 쫓아다니면서 화장실이랑 막 손님들이 오시면 스트레스 쌓이고 싫다는 얘기를 간간이 듣고(이하 생략)

② 판단

위 실제 취재 내용에 의하면 인터뷰 대상자는 자신은 J에 관하여 잘 모르고 손님들에게 들은 사실만 이야기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제작진은 위 인터뷰 내용 중 밑줄로 표시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방영함으로써 인터뷰 대상자가 J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송하였다.

⑶ 별지 2 제4항 부분

① 이 부분 방송의 취지

피고 제작진이 J에게 몸에 난 상처에 대해 묻자 J는 대답을 회피하여 자리를 피하였다는 취지이다.

② 실제 취재 내용

앞서 본 이 사건 방송내용과 기초사실에 의하면 J는 피고 제작진이 재차 원고들 및 J에게 취재를 요구한 2008. 7. 8. 이전에는 피고 제작진의 질문에 모두 답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방송에 나오는 장면은 J가 휴게소 주차장에서 손님에게 아이스커피를 갖다 주고 돌아가는 장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③ 판단

피고 제작진은 J가 피고 제작진의 질문에 답을 해주었음에도 J가 대답을 회피한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하였다. 결국 이 부분 방송은 피고 제작진이 실제 취재 내용을 조작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⑷ 별지 2 제5항 부분

①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취지

원고 A가 J의 얼굴에 난 멍은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취지이다.

② 실제 취재 내용

이 사건 방송 부분에서 피고 제작진이 "저분이 얼굴에 멍이 들어 있잖아요. 상처도 있고요"라고 질문하는 부분은 피고 제작진이 2008. 7. 8. 이 사건 휴게소에 찾아왔을 당시 D가 원고들에게 한 J의 얼굴에 난 멍에 관한 질문(을 제11호증 0648부분)이고, 이 사건 방송 부분에서 원고 A가 "넘어져서 그래요. 뒤에 보면 뛰어다니잖아요."라고 답하는 부분은 피고 제작진이 2008. 7. 3. 이 사건 휴게소에 찾아왔을 당시 원고들에게 J의 눈에 난 상처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제7호증의 1 중 9면 16행 내지 24행 참조)이다.

그리고 이 부분 방송 중 원고 A의 실제 음성은 "넘어졌대요(을 제15호증 2100부분). 뒤에 보면 뛰어다니잖아요."로서 J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원고들은 2008. 7. 3. 피고 제작진에게 J의 얼굴에 난 멍은 차문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또한 J는 2008. 7. 3. 피고 제작진에게 얼굴 에 난 멍과 상처 여러 군데에 관하여 상처 부위를 구분하면서 2008. 6. 22. 관광객들에게 맞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을 제22호증 3832 부분)

③ 판단

피고 제작진은 다른 일시, 다른 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임의로 편집하고, 원고 A가 마치 "넘어져서 그래요"라고 말한 것처럼 자막과 함께 방송하여 원고 A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결국 피고 제작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이 J의 얼굴에 난 멍에 대하여도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대답한 것처럼 방송하였다.

그리고 피고 제작진이 위와 같이 임의로 편집한 이 부분 방송 내용은 아래 별지 2 제11항 부분이 방영됨으로써 원고들이 J의 몸에 난 상처의 원인에 관하여 그 주장을 계속하여 번복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⑸ 별지 2 제7항 부분

①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취지

J는 앉을 틈조차 없이 하루 종일 일하였는데 원고들은 J가 밥을 먹는 중에도 일을 계속 시켰고, 그러면 J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몸을 움직여 시키는 일을 모두 하였으며 J는 원고 A 앞에서 연신 굽신대는 모습이었다.

②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에서 방영된 장면은 피고 제작진이 멀리서 몰래 촬영한 장면으로서 음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어떤 장면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증인 G의 증언). 또한 이 부분 방송 중 J가 연속하여 상체를 구부린 장면은 실제로는 한번 구부린 장면을 연속하여 재생한 장면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③ 판단

피고는 이 부분 방송에서 방영된 전체 장면에 관하여는 "이 부분 방송에 나간 장면 이외에도 당일 촬영 원본에는 원고들이 J에게 무엇인가 이야기 하는 모습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 J는 식사를 마친 후에도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장면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숟가락을 가져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일부 화면을 편집하여 방송한 결과 구체적인 내용과 화면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이 부분 장면 중 J가 연속하여 상체를 구부린 장면은 "J가 원고들에게 허리를 구부리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해당장면이 원고들과 J의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낸다는 판단하에 상징적 방법으로 연속재생이라는 편집기술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방송의 나레이션 내용과 이 부분 방송 중 방영된 장면은 서로 무관한 것인데 피고는 나레이션 내용과 이 부분 방송에 사용된 장면을 함께 방영함으로써 이 부분 방송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 장면을 원고들이 위 나레이션 내용과 같이 J에게 쉴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장면으로 오인하도록 방송하였고, J가 원고들을 향하여 허리를 구부린 장면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지 않은 채 연속하여 재생하고 위 장면에 해당하는 나레이션을 함께 방영함으로써 마치 J가 원고들이 지시하면 무슨 일이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방송한 것이다.

⑹ 별지 2 제9항 부분

①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취지

"J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4년째 이 사건 휴게소의 주방 한편에서 생활하고 있고 마땅히 머무는 거처도 없다."는 취지이다.

② 실제 취재 내용 및 사실관계

피고 제작진은 2008. 7. 3. 이 사건 휴게소에서 원고들 및 J를 취재할 당시 원고들의 안내로 이 사건 휴게소 2층으로 올라가서 원고들로부터 위 휴게소 2층 거실이 J가 생활하는 공간이고, J가 1층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J의 옷을 1층에 두었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28호증의 21의 기재에 의하면 J는 이 사건 휴게소 2층 거실에서 거주한 사실, 이 사건 휴게소 2층에는 방 2개와 거실이 있는데 거실공간은 방 2개에 가려져서 2층 출입구에서는 거실공간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③ 판단

피고는 이 부분 방송내용에 대하여 "피고 제작진은 성인 여성인 J가 원고 B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도 거실에서 생활한다는 점, 거실에는 천도성법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책 이외에는 J의 생활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때문에 J가 이 사건 휴게소 2층에서 상시적으로 생활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J의 소지품은 모두 주방 한편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머무는 거처도 없는 듯 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피고 제작진은 위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었다면 1부 방송일인 2009. 9. 16. 이전에 이미 J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J를 통하여 충분히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이 부분 방송과 같이 피고 제작진의 일방적인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할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도 함께 방송했어야 한다. 결국 이 부분 방송은 피고 제작진이 J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취재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⑺ 별지 2 제11항 부분

①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원고들은 종전에는 J의 상처가 자해를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J가 자신의 상처가 손님에게 맞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니 이에 동조하여 J의 상처가 손님에게 맞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이다.

② 실제 취재 내용

J는 2008. 6. 25. 취재 당시 "눈은 왜 그래요?"라는 피고 제작진의 질문에 "눈이요 넘어져가지고 눈가가 다쳤는데, 피가 눈알로 들어가가지고 치료는 받고 있는데, 아직 피가 안 빠져가지고 그런거예요."라고 대답하였고, "여기 멍든 건"이라는 질문에는 "일요일날 술 취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찐빵이 쉬었다고 시비 거시면서 행패 부리면서 막 그러다가 손님말리다가 손님한테 맞았어요."라고 대답하였다.

J는 2008. 7. 3. 피고 제작진에게 목 부분의 흉터는 자해를 하기 때문에 생긴 상처이고, 눈에 생긴 상처는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며, 얼굴에 난 멍 중 일부는 자신이 판 찐빵이 쉬었다며 항의하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맞아서 생긴 것이고, 가끔 자동차에 부딪히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들은 2008. 7. 3. 피고 제작진에게 “J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은 J에게 들은 바로는 넘어져서 그런 것이고, 목에 난 상처는 J가 자해를 한 것이며, 나머지 상처는 찐빵을 팔다가 승용차 또는 화물차 문에 끼어 난 상처이다.”라고 설명하였고, 피고 제작진이 그 이후인 2008. 7. 8. 원고들에게 다시 인터뷰를 요청하자 원고들과 J가 피고 제작진에게 상처 발생 원인에 관하여 그 부위별로 설명하려 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 방송내용 중 원고 A가 답변한 부분은 J의 상처에 관하여 질문을 하던 중 답변한 내용이 아니라 관광객 사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을 제15호증 중 0130부분).

③ 판단

이 부분 방송내용과는 달리 J는 갑자기 말을 바꾼 사실이 없고 자신의 얼굴에 있는 멍자국 전부가 술취한 관광객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부분 방송내용 중 J가 답변한 부분은 J가 2008. 7. 3. 피고 제작진에 설명한 내용 중 일부로서(을 제22호증 중 3832부분), J가 ‘자신의 상처가 전부 관광객들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 A가 답변한 내용도 J의 상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단지 J가 관광객한테 맞았다는 내용일 뿐 폭행으로 인해 상처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 방송에 관하여 피고 스스로도 “원고들의 설명이 명확하지도 일관되지도 않았던 탓에 상처 하나하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상처가 타인의 가해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해나 사고 등 가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취재 및 방송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결국 피고 제작진은 그 인터뷰 내용 전체로 볼 때 원고들이 그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실제 취재 당시 의도한 내용을 왜곡하여 방송하였다. 이는 앞서 본 별지 2 제5항 부분과 순차로 방송됨으로써 “가해자인 원고들이 범죄사실을 숨기는 듯 주장을 번복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⑧ 별지 2 제14항 부분

①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일단 이 부분 방송은 “주장1 행패를 부리던 손님에게 맞은 상처?”라는 자막을 표시하고 있는데 위 자막 중 “?”은 그 자체로 원고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점과 이 부분 방송의 각 인터뷰 내용을 고려하면 이 부분 방송은 “J의 상처가 손님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 제작진의 조사결과 폭행사건이 없었다고 밝혀졌으므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② 판단

㉮ 관광객 인터뷰 부분

피고는 이 부분 방송의 취재과정에 관하여 “피고 제작진은 당시 관광객이 어떤 경위로 J의 상처를 확인했는지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관광객 1은 피고 제작진과의 첫 통화에서부터 J의 얼굴 전체, 목, 등 부분에 대한 상처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고, 관광객 2 역시 제작진에게 등에 있는 상처가 자해로 인한 것일 수는 없다는 대화를 경찰관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관광객들의 진술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관광객들은 경찰과 J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과거에 J에 관한 신고나 조사 내용을 언급하여 관광객들이

J의 등에 있는 상처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광객 1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 관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8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을 제8호증은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작진은 2008. 6. 22. AD로부터 J에 관한 제보를 받은 점, ㉯ 을 제8호증의 상단에는 "AD씨"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갑 제28호증의 15의 기재에 의하면 AD는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한 사실은 없고 단지 전화상으로 인터뷰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방송의 관광객 1이 아닌 AD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보인다.

또한 이 부분 방송에서 관광객 2는 자신이 J의 가슴, 등, 팔에 있는 상처를 모두 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 관광객이 성인 여자인 J의 옷을 벗겨 상처를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관광객 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 소외 N은 "관광버스의 사람들이 찐빵이 쉬었다는 문제로 출동한 사실만 있을 뿐 J의 등, 가슴, 팔에 있는 상처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갑 제34호증의 2) 등을 고려할 때 "관광객 2가 경찰관들로부터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1부 방송일은 J가 원고들이 고소한 이후인 2008. 9. 16.로서 J와 원고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점인데 피고는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광객들의 진술내용의 진위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방송은 피고 제작진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그 내용을 그대로 방송한 것이다.

㉯ 경찰관 인터뷰 부분

이 사건 방송 중 경찰관과의 인터뷰 내용 "직원이 나갔었는데 맞았다고 했으면 저희가 그때 사건 처리를 했죠. 맞은 얘기는 없고 그냥 상한 찐빵 팔았어요. 그거는" 부분은 피고 제작진이 2008. 7. 4. N과 인터뷰를 하면서 나눈 대화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갑 제23호증의 1 22면 4행).

N은 피고 제작진에게 "폭행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당시 경찰은 관광객이 상한 찐빵을 팔았다는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것일 뿐이다. J는 피고 제작진에게 관광객 사건 당시 맞은 적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원고 B는 피고 제작진에게 경미한 폭행이고 상처가 나지 않아 형사사건화 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경찰관은 관광객으로부터 상한 찐빵을 팔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만 처리한 것이고, 반대로 J가 관광객으로부터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형사사건화 하지 않은 것이며, N은 피고 제작진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제작진은 N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방송함으로써 마치 관광객 사건 당시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였고 이를 통해 마치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⑼ 별지 2 제16항 부분

① 이 부분 방송 내용의 취지

원고들이 피고 제작진으로부터 'J의 상처'에 관한 질문을 받자 J에게 상처에 대해 물어오면 답변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내용이다.

②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에 방영된 부분은 피고 제작진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몰래 원고들과 J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 중 일부로서 피고 제작진의 위와 같은 취재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 부분 방송은 갑 제9호증의 2 중 26면 내지 30면의 대화내용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부분의 실제 대화 내용은, 원고 A가 J에게 "난 그게 이상해. 니가 어떻게 얘기 했길래 니를 갖다 지적장애인이라고 딱 판정을 내릴 수 있지? 니 한테 막 이렇게 하는거 있지?"라고 말한 점(갑 제9호증의 2 중 26면 26542부분), "근데 2층에 올라가서 하는 행동이 딱 지적장애인이래"라고 말한 점(갑 제9호증의 2 28면 27030) 등을 고려하면 "피고 제작진이 취재를 하고 돌아간 후 원고들로서는 피고 제작진이 J를 장애인처럼 대했던 행동과 말들이 이해되지 않아 J에게 장애인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잘 행동하라고 충고"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③ 판단

피고 제작진은 원고 A, C의 실제 대화의 취지를 왜곡하여 이 부분 방송을 방영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J를 협박하여 J가 대답할 내용까지 일일이 지시할 정도의 악인으로 받아들여지게 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 A가 '그래야 우리가 처신을 하지'라고 말한 부분은 녹취록에는 없는 내용인바, 제작진이 존재하지 않는 음성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조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 먼저 프리뷰 요원인 아르바이트생이 촬영 또는 녹음한 음성을 듣고 녹취록을 작성하는데 들리는 부분은 누락되는 부분 없이 모두 작성하고 다만 들리지 않는 부분은 "??"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하고, 방송작가는 방송 대본을 작성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작성한 녹취록과 영상을 다시 체크하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는 점(증인 G의 증언), ㉯ 원고들과 J 사이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을 제23호증)에는 "그래야 우리가 처신을 하지"라는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는 반면, 위 음성파일에 관한 녹취록(갑 제9호증의 2)과 작가가 작성한 2부 방송 대본(을 제3호증의 2)에는 "그래야 우리가 처신을 하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갑 제9호증의 2 중 26337부분 참조, 을 제3호증의 2 중 제9면 하단 4행 참조)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⑩ 별지 2 제17항 부분

① 이 부분 방송의 취지

㉮ 통상 학생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그 학생의 담임선생님인 점, ㉯ 피고 제작진이 위 방송 부분의 자막에 실제 취재하였다고 자인하는 "교장선생님"이 아닌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방송의 취지는 "피고 제작진이 J의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확인해 보니 J는 고등학교 재학시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② 실제 취재 과정

이 부분 방송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은 교장선생님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고(을 제19호증 중 0409부분), 당시 교장선생님은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거절하였다(을 제19호증 중 1519부분). 그리고 피고는 2008. 7. 7. J의 담임선생님인 Q를 전화로만 인터뷰하였으며, Q가 여선생님인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는 위 인터뷰 장면의 음성은 J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과의 인터뷰 음성이고 영상은 교감선생님과의 인터뷰 할 당시의 영상이라고 자인하고 있다(2011. 9. 7. 피고 준비서면).

③ 판단

피고 제작진은 스스로 J의 담임선생님이 여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남자인 교장선생님의 음성과 교감선생님을 촬영한 영상을 내보내면서 담임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취재 내용을 조작하였다. 이 부분 방송 내용은 원고들의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피고 제작진은 이 부분 방송 장면의 신빙성을 높여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방영하여 원고들을 가해자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이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장선생님이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방송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그 요구 내용을 무시한 채 임의로 방송하였다.

⑾ 별지 2 제18항 부분

① 이 부분 방송의 취지

J의 할머니인 L은 "J는 원고들에게 6,000,000원의 빚이 있어 이 사건 휴게소에서 머무는 것이고, J는 종전에 이 사건 휴게소에서 빠져 나와 자신을 찾아 온 적이 있는데 당시 J는 자신에게 원고 C가 J를 폭행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이후 원고 B가 J를 다시 이 사건 휴게소로 데려갔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다.

② 실제 취재 내용

피고 제작진이 J의 할머니인 L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7호증의 1)을 살펴보면, L은 "가기 싫으면 나한테 와서 사장이 때렸다고 그러고 또 거기 가서는 또 딴말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뭘 일을 두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라고 진술하였고(을 제7호증의 1 중 21면 6행, 7행), "먼저 때린 게 주인이 때렸다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거짓말이예요. 주인이 때렸을 거 같으면은 거기를 왜 가느냐고 지가 그렇죠?"라고 진술하였으며(을 제7호증의 1 중 21면 26행 내지 28행), J의 거짓말과 관련된 제작진의 질문에 대하여 "J가 거짓말을 잘한다. 집에서도 거짓말을 한다. 지가 하고서는 안했다고 한다. 내가 인제 한 거를 뻔히 아는데 지가 안했다고 잡아떼고. 물건 훔친다던지 그런 걸 했지요."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을 제7호증의 1 중 22면 26행 내지 35행), "난 내가 보기에는 주인이 때릴 거 같으면 거길 걔가 안 가지요. 왜 왜 안 때렸냐 하면은 그 충준가 어디 머시매하고 갔을 때요 그래 가지고 거기 갔는데도 집으로 전화를 안 하고 그 집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집에서 내려왔어요. 그 수시로 때릴 거 같으면 지가 안 갈 거 아니예요 그죠? 맞는데 뭐 하러 가겠어요 그지"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7호증의 1 중 23면 23행 내지 30행). 즉 L의 진술내용은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③ 판단

피고 제작진은 L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만 일부 발췌하여 방송하였다.

⑿ 별지 2 제19항 부분

① 이 부분 방송의 취지

피고 제작진이 2008. 8. 4. 솔루션위원회 회의 결과 J를 원고들과 격리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서 이 사건 휴게소를 찾아가 J를 설득하여 원고들과 격리시키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취지이다.

② 실제 취재 내용

살피건대, 피고가 솔루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날은 2008. 8. 4.이고, J가 국립춘천정신병원에 입원한 날은 그 이전인 2008. 7. 2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판단

이 부분 방송은 실제 취재한 내용의 시간적 순서를 반대로 편집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방송내용이 보다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여 이 사건 방송내용의 신빙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행하여진 '악의적 편집'으로 보인다.

⑬ 별지 2 제28, 29항 부분

①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이 부분 방송은 앞서 별지 2 제19 내지 27항 기재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 제작진은 2008. 8. 4. 솔루션회의를 한 후 J를 도와주고자 휴게소로 갔으나 거절을 당해 돌아 왔는데, J의 언니 V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가자, V는 피고 제작진에게 J를 제발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 제작진은 V와 함께 J를 설득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는 취지이다.

② 실제 취재 내용

피고 제작진이 먼저 W와 V를 찾아가 그들에게 J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J와 원고들이 말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J는 원고들 앞에서 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고 제작진이 미리 병원을 알아 두었으니 동의를 해달라."고 이야기한 사실과 피고 제작진의 주도로 V의 동의 아래 J를 국립춘천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판단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의 주도로 J를 춘천국립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숨긴 채 J의 가족들의 요청으로 J에 대한 구제 조치를 한 것처럼 방송하여 J를 폭력상황에서 구제하고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였다는 이 사건 방송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피고 제작진이 위와 같은 조작을 한 이유는 취재의 자연스러움을 부각시켜 방송 내용의 신빙성을 더하고, 반사적으로 원고들의 비행을 사실처럼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2부 방송

⑴ 별지 3 제4항 부분

① 이 부분 방송의 취지

J의 대상포진 흉터 자국 장면을 장시간 비추면서 "아줌마가 칼로 저를 찌르면서 저를 죽이고 싶다고 칼로 찔렀어요."라는 자막과 음성을 함께 방송한 점에서 이 부분 방송의 취지는 "원고들이 J의 등을 칼로 찔러 방송된 장면과 같은 상처가 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실제 취재 내용

갑 제28호증의 10(41면)의 기재에 의하면 J의 등에 난 상처는 대상포진으로 인한 상처이고, J는 피고 제작진에 위와 같은 점을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판단

이 부분 방송은 피고 제작진은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가혹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처에 관한 장면과 J의 피해 진술내용을 동시에 방영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방송 장면의 상처가 원고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오인하도록 실제 취재 내용을 조작하였다.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의 가학성을 부각시켜 이 사건 방송내용이 보다 더 신빙성 있게 보이도록 할 의도로 위와 같은 조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⑵ 별지 3 제28항 부분

①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원고 C가 자신보다 5살이나 많은 J에게 반말을 하고 있으며, "엄마가 파출소에 가서 데리고 올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책임질 일 잘 생각해보고."라고 협박을 하기도 한다.

②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내용은 피고 제작진이 불법 도청한 내용으로서 갑 제9호증의 2 중 26면 내지 30면의 대화내용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원고 C는 실제로는 "엄마가 파출소에 가서 들을 거야. 씻으면서 잘 생각해보고."라고 말하였다(을 제27호증 중 3:49:31 내지 3:49:35).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9호증의 2 중 26면 내지 30면의 대화내용은 "피고 제작진이 취재를 하고 돌아간 후 원고들로서는 피고 제작진이 J를 장애인처럼 대했던 행동과 말들이 이해되지 않아 J에게 장애인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잘 행동하라고 충고"하는 내용이므로 그 문맥상 원고 C가 위와 같이 말한 내용 중 "엄마가 파출소에 가서 들을거야"라는 부분은 제작진이 2008. 7. 3. J를 지적장애인으로 취급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원고 A가 이날 출동한 경찰들에게 그 내용을 들으러 간다는 취지이고, "씻으면서 잘 생각해보고"라는 부분은 J가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기에 제작진이 장애인 취급하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취지로 보인다.

③ 판단

피고 제작진은 원고 C가 한 말을 '파출소에 가서 데리고 온다'와 '책임질 일 잘 생각해보고'라고 각색하여 마치 원고 C가 J를 협박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방송하였다.

⑶ 별지 3 제37항 부분

①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이 부분 방송은 원고들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J의 상황에 관한 장면인 별지 3 제35, 36항 장면과 순차로 방송된 점에 비추어 S가 경찰수사가 마무리 될 때에 J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인터뷰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② 실제 취재 내용

을 제3, 4, 5호증의 각 1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부 방송의 솔루션 위원회에 나온 S와 이 부분 방송에 나온 S의 인터뷰 장면에서 S의 귀걸이, 옷 등이 모두 일치하는 점에서 이 부분 방송의 인터뷰 장면은 피고 제작진이 2008. 8. 4. 솔루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촬영한 장면인 것으로 보인다.

③ 판단

J에 대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것은 결국 원고들의 범죄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인데, 피고 제작진이 J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지 않았던 위 2008. 8. 4. 이 부분 방송 장면을 촬영한 것은 이미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을 가해자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⑷ 별지 3 제38항 부분

①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이 부분 방송은 별지 3 제36, 37항 기재 방송 부분과 함께 순차로 방송되었고, 별지 3 제36, 37항은 원고들에 대한 경찰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J에 대한 사후 구제책을 논의하는 장면인 점, 이 부분 방송은 구체적인 날짜는 적시되지 않은 채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라고만 적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방송은 "J가 경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 가족들과 외출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피고 제작진에 의한 구제 조치로 인하여 그 피해를 서서히 회복해 가고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②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 장면이 실제로는 원고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08. 9. 7. 촬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판단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방송의 가장 마지막 장면인 이 부분 방송을 촬영한 점에서 피고 제작진은 이미 원고들이 가해자이고 J가 피해자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러한 결론에 맞추어 촬영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3부 방송

⑴ 별지 4 제11항 부분

①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이 부분 방송은 "원고들이 J를 가해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해보상을 거절하면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재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는 취지이다.

② 실제 취재 내용

살피건대, 원고들의 재산인 이 사건 휴게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강원 홍천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부분 방송은 위 휴게소에 관한 보전처분의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인 R(솔루션 위원)이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는 장면을 방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방송 내용과 달리 원고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판단

피고 제작진은 이 부분 방송을 통하여 원고들이 가해자임을 강조할 의도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 내어 방송하였다.

⑵ 별지 4 제12항 부분

①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이 부분 방송은 원고 A의 범죄혐의가 모두 밝혀진 후에 사후 구제조치를 방영하는 부분인 별지 4 제9 내지 11항 기재 장면과 순차로 방영된 점과 "당분간 여자가 살게 될 쉼터를 찾았다."라는 내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J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②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이 방영된 2008. 10. 14. 당시 J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③ 판단

피고 제작진은 실제 촬영일시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J가 마치 쉼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허위의 방송을 하였다.

5) 이 사건 방송의 성격 및 그 내용에 대한 검토

가) 앞서 본 사실 및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내용은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방송은 피고 제작진이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취재를 하고 그로 인하여 도출되는 결론을 방송한 것이 아닌 피고 제작진이 이미 자신들만의 사실과 결론을 도출하고 줄거리를 구상한 다음 이에 맞추어 취재 및 촬영을 진행하고 줄거리에 맞게 편집을 하여 제작한 악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⑴ 원고 A는 J의 고소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4회의 폭행사실을 제외하고 이 사건 방송내용에서 적시된 원고들의 범죄사실(별지 3 제34항)을 포함한 상습상해 및 상습흉기휴대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J)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 및 정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평소 언행, 생활 습관, 국립춘천병원의 심리검사결과, 피고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 이 법정에 나타난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 밖의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이거나 폭행 등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증거가 아니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J는 이 사건 방송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들을 고소한 행위에 관하여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서 이 사건 방송내용은 허위사실이라 보인다.

⑵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과 J가 폭행 및 피해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던 2008. 7. 14. 홍천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J의 얼굴 등에 폭행당한 상처가 있고, 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착취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수사를 촉구하였던 점, 이 사건 방송 제작에 참여하였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 제작진은 취재 당시부터 원고들을 학대행위자로 보았고, 학대로 인한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쉽게 진술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원고들의 주장 및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J의 진술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작진은 이 사건 방송을 위한 취재 초기부터 원고들이 가해자이고 J가 피해자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⑶ 이 사건 방송제작을 위한 취재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이 내린 결론에 따라 원고들이 J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만 관심을 두고 취재를 하였고 원고들의 주장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 한 채 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해석한 내용이 맞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① J의 변경된 진술 등과 같은 자신들의 결론에 부합하는 현상과 ② 원고들의 주장과 J의 종래 진술에 부합하는 L의 진술, U의 의견 등과 같은 반대되는 현상이 존재하고 ③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의 인터뷰 내용, N과의 인터뷰 내용 등과 같이 그 결론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반대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현상이 존재하였지만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의 결론에 반대되는 현상은 모두 배제하고, 자신들의 결론에 부합하는 현상만을 발췌하였으며, 중립적인 현상은 편집기술을 통하여 자신들의 결론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J를 이미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음에도 그 이후에 솔루션 위원회를 개최하는

장면을 촬영한 다음 솔루션 위원회 개최 장면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장면보다 앞에 배치하고, ② 경찰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경찰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 J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③ 이 사건 방송 초기에 방영되는 동영상 제보나 사후 구제조치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 제작진이 허위로 만들어 내어 방영하였으며, ④ 이 사건 방송 전반에 걸쳐 피고 제작진의 결론에 반하는 J의 말이나 원고들의 말은 실제 있었던 진실한 문맥이나 시간적 순서, 상황과 다르게 목소리와 영상, 자막을 편집하는 기술을 통해 신빙성이 없어 보이도록 방송하고, 피고 제작진의 결론에 부합하는 말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도록 방송하였다.

⑷ 피고 제작진은 J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경찰에 원고들을 고소하기 전인 2008. 9. 8. 이미 1, 2부 방송 계획을 세워 놓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1부 방송과 함께 2부 방송의 예고까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2, 3부 방송까지 모두 방송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주장 요지

피고는, J의 진술이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이 사건 방송내용은 진실하다고 주장한다.

㈎ 피고 제작진은 이 사건 제보자 중 3인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였는데, 제보자들은 각기 다른 시점에 수차례 J를 목격하였거나 목격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J가 항상 얼굴과 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호증의 1, 2, 3).

㈏ 피고 제작진이 J를 직접 만나기 위해 휴게소를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J의 얼굴과 몸에 많은 상처가 있었으며, 그 정도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 또한 L은 J가 평상시 원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한다고 말한 바 있고 몸에 항상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의 1).

㈑ 과거에 J를 진료한 적이 있는 동네 의사는 진료 당시 J는 몸에 멍이 들고 각막 출혈이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2 18면).

㈒ J가 폭행을 부인하던 시점에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인 U는 J 본인의 진술, 상처의 상태, 주변 환경이나 여건, 제보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J가 상당히 오랜 기간 감금과 폭행을 당하고 자유 박탈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 확실하며, J가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장기간의 폭행, 학대의 결과 외부인에 대한 극단적인 경계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을 제6호증의 1).

㈓ J를 진찰한 신경외과 전문의인 Y도 J의 상처가 후두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자해가 아니라 타인에 의한 가해의 결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을 제6호증의 2).

㈔ J의 주치의인 정신과 전문의 X도 J와의 면담 결과 J가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놀란 반응 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학대의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을 제6호증의 3).

㈕ 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일부 폭행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⑵ 위 각 근거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출한 위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일부 폭행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J에 대한 제보내용(을 제1호증의 1 내지 4)에 관하여

기초사실 마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의 찐빵 파는 행태, 멍자국 등을 보고 제보자들이 내린 추측에 불과한 내용으로서 이는 피고 제작진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에 불과하다.

㈏ J의 몸에 난 상처에 관하여

J의 몸에 난 상처는 원고들과 피고 및 J 사이에 그 발생 원인에 관한 다툼이 있는 부분으로서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피고 제작진이 방송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 L의 진술에 관하여

L이 "J가 원고들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은 J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J가 거짓말을 잘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을 제7호증의 1) 그 전체적인 내용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다. 피고 제작진이 근거로 한 부분은 그 인터뷰 취지를 왜곡하여 자신들이 의도한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만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 동네 의사의 진술에 관하여

과거에 J를 진료한 적이 있는 동네 의사의 진술에 관한 근거로 피고가 제시한 을 제4호증의 2는 2부 방송의 대본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동네 의사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고 그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인터뷰 내용도 "2006. 12.경 감기로 인하여 진료하고, 2008. 7. 10. 대상포진 때문에 진료할 당시 J에게 각막출혈도 있고 몸에 멍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J에게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일 뿐 그 상처의 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 U의 의견에 관하여

① 피고가 U의 의견 중 J의 변경된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뜻 믿기 어렵다.

㉮ U는 범죄심리학자로서 J의 상처가 자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스스로도 상처에 대한 의학적 분석은 법의학자의 몫이라고 하였다(을 제14호증).

㉯ 피고 제작진은 U가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이미 "J의 빚이 1,000만 원이 있다. 얼굴 왼쪽이 다 멍인데 이게 다 자해라고 한다. 그러다 집요하게 물으면 말을 바꿔서 손님이 때렸다고 하다가 손님에게 맞았다는 주장을 반박하니 다시 말을 바꿔 차문에 부딪힌 것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을 제6호증의 1) 원고들을 가해자임을 전제로 U의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였다.

② 오히려 U는 "자신의 손이 잘 닿는 목이나 다리, 상체 전면부 등에 난 상처의 원인에 대해서는 단정이나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다만 눈에 난 깊은 상처와 눈 주위 짙은 멍은 자기보호본능 있는 인간의 보편적 특성상 대단히 특별한 상황에서 고도의 계획과 준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자해행위로 발생하기 어렵다. 특히 안와골이 눈주위에 돌출해 두덩을 이루며 안구를 보호하고 있는 인간골격의 특성과 위급상황에서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는 반사신경작용의 특성상 의도하지 않은 충돌 등의 사고로 눈 안 부위가 상처입고 멍들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을 제14호증). 이는 목은 자해를 한 것이고 눈은 넘어져서 생긴 상처

라는 원고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의 주장과 일치한 부분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만 발췌하여 그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 Y의 의견에 관하여

Y는 "J의 머리에 난 상처가 가해자 측이 주장하는 자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냐?"라는 피고 제작진의 질문(을 제6호증의 2 중 4000부분)에 "일반적으로 자해는 접근하기 쉬운 쪽인 머리 앞면부나 측면부에 가하고, 보이지 않는 후두부를 자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상처의 위치상 머리를 뒤로 박더라도 상처가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해라기보다는 타인의 가해로 인한 상처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라고 대답(을 제6호증의 2 중 4053부분)하였다. 또한 Y는 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J의 후두부 상처는 이미 치료가 종료된 상황으로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갑 제28호증의 18 중 제10내지 12면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의견은 J의 상처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일반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 제작진의 위 질문 자체도 원고들이 J의 머리에 난 상처에 관하여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 X의 의견에 관하여

X는 J와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환자의 말을 믿고 진료를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J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갑 제28호증의 19).

또한 X는 J가 입원할 당시부터 피고 제작진 및 X로부터 "구타 사실 확인 원한다. 구타 심하게 당한 것 같다. 일하고 돈 주지 않았다. 감금당했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들어(갑 제15호증의 12), 이미 J가 학대의 피해자라는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 J의 피해진술 또는 이 사건 방송내용은 원고들이 상습적으로 흉기를 이용하여 J에게 폭력과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단순 폭행으로서 그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위법성 조각사유 항변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방송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행위의 고발 및 재발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작되었고, 이 사건 방송내용은 진실하다. 가사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J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J의 가족, 제보자들, 과거 J를 진료한 동네 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범죄심리학과 교수, 정신과 전문의 등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쳤는데, 이들은 J의 상처가 상습적인 상해, 폭행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고 이 사건 방송을 계기로 본격적인 수사를 한 경찰과 검찰도 원고들을 기소하기 이르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방송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2) 공익성

가) 일반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방송의 공익성 여부

이 사건 방송은 "원고들의 J에 대한 폭력행사를 고발하고, J를 폭력적 상황에서 구제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였다는 내용"이고, 이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외형상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5호증의 9, 갑 제28호증의 23, 25,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행위는 공익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에게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시청률의 증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⑴ 이 사건 방송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작진이 사실을 취재하여 이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여 제작한 방송이 아니라 피고 제작진이 이미 원고들을 가해자로 J를 피해자로 단정한 다음 피고 제작진이 미리 구상한 줄거리 즉 "원고들의 J에 대한 폭력행사를 고발하고, J를 폭력적 상황에서 구제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였다는 내용"에 맞추어 취재 및 촬영을 한 다음 편집을 하여 만들어진 허구의 사실에 불과하다.

⑵ 피고 제작진은 이 사건 방송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① J의 대상포진으로 인한 흉터를 원고들이 칼로 찔러서 발생한 상처인 것처럼 방영하고, ② J의 피해진술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 없이 그대로 방영하는 등 자극적인 장면을 방영하였고, ③ 원고들의 말은 실제 있었던 진실한 문맥이나 시간적 순서, 상황과 다르게 목소리와 영상, 자막을 편집하는 기술을 통해 신빙성이 없어 보이도록 방영하고, 피고 제작진의 결론에 부합하는 말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도록 방영하는 등 J의 피해는 보다 극심해 보이도록 하고 원고들의 가학성은 보다 강하게 표현하여 극적 재미를 강조하였다.

⑶ 피고 제작진이 이 사건 프로그램이 표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 제작진이 경찰에 원고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J에 대한 구제조치를 하는 과정만을 방영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피고 제작진이 원고들의 수사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보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이 가해자라는 자신들의 결론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의 원고들에 대한 수사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촬영한 다음 원고들이 위 수사과정에서 하였던 주장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편집하는 기술을 통해 신빙성이 없어 보이도록 방영하고, J의 피해진술과 같이 피고 제작진

의 결론에 부합하는 말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도록 방영하였다.

⑷ 이 사건 방송 중 1부 방송은 원고들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였고, 2부 방송은 원고들을 가해자로 단정한 다음 이들에 대한 경찰수사과정을 방영하였으며, 3부 방송은 원고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점에서 이 사건 방송은 J에 대한 구제조치보다는 원고들에 대한 처벌에 더 초점을 맞추어 방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⑸ 이 사건 방송에 사용된 자료 중 이 사건 휴게소 1층을 원거리 촬영한 장면, 원고들과 J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은 그 자료의 입수 과정이 정당하지 못한데다가 원고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촬영 또는 녹음한 자료로서 시청자들의 관음증적 심리를 자극하는 자료이다.

⑹ 피고 제작진의 J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J의 보호의무자는 직계혈족인 L이나 M임에도 피고 제작진은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V의 동의만을 받아 J를 2008. 7. 29.부터 2008. 12. 12.까지 약 4개월 간 국립춘천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J는 위 병원으로부터 정신장애인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는 정상적인 성인여성이므로 J의 안정이 필요하였다면 일반병원에 입원시켜 가족들을 면회하게 하고 외출도 가능하게 하면서 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그 치료를 위해 더 필요한 조치였음에도 피고 제작진은 굳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외출이 불가능한 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V와 W만이 면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따라서 피고 제작진의 위 조치가 J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⑺ 오히려 ① 피고 제작진이 J의 입원기간 동안 X에게 계속적으로 전화하면서 진술이 변경되면 알려달라고 부탁한 점(갑 제28호증의 23), ② J가 원고 A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W가 자신에게 '힘들다 사실대로 말해주면 좋겠다. 피고가 도와준다고 한다.'고 하여 변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갑 제28호증의 25 중 제21면), ③ X가 J와 면담하면서 "방송국(피고)이 J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J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적 도움과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니까 이에 대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느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아버지가 입원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J가 피해사실을 진술할 필요가 있다. 방송에 출연하더라도 J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도 바꿔어서 나간다."는 취지로 J를 회유하는 말을 하였던 점(을 제20호증 중 23 내지 26면 참조), ④ 위 정신병원은 외부와 단절된 병원이고 병원규칙을 위반할 경우 사지가 묶이는 징계를 받는 곳으로서 실제로 J는 병원규칙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징계를 수차례 받았는바(갑 제15호증의 9), 이처럼 위 정신병원은 정상인인 J가 지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이는 점, ⑤ J는 진술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다가 진술을 변경한 이후인 2008. 9. 8.에서야 피고 제작진과 함께 외출을 나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제작진이 J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그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J를 압박하여 피고 제작진이 의도하는 진술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보인다.

3) 상당한 이유

이 사건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론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

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바,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비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그리고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제작진이 L, Y, U, X를 인터뷰한 사실, 검찰이 2008. 11. 3. 원고 A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기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방송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J의 변경 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위 사건에 관한 판결은 확정되었다. 또한 J는 원고들을 고소한 일로 인하여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즉, J의 피해 진술이 허위내용임이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⑵ J는 당초 원고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피고 제작진의 주도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에 갑자기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위 "2-나-2)-나)-⑺항"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J가 입원기간 도중 자신이 처한 환경과 피고 제작진의 압박으로 인하여 피고 제작진이 의도한 바와 같이 그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⑶ 게다가 J의 변경된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있거나 "원고들이 자신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휴게소 주변에 전경을 배치하였다."는 주장(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과 같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믿지 못할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제작진은 J의 위와 같은 진술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⑷ 피고 제작진이 인터뷰하였다는 사람들의 진술내용 중에는 위 "2-가-5)-나)-⑵의 ㈐, ㈑, ㈒, ㈓항"기

재와 같이 선뜻 믿기 어려운 부분이나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존재한다. 또한 피고 제작진이 위 사람들로부터 확인하려한 내용은 원고들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함이지, J의 변경된 진술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 확인한 내용도 원고들이 주장한 적이 없는 질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 제작진이 위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한 것은 자신들의 결론에 부합하는 내용일 뿐,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의 주장과 J의 변경된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내용은 어떠한 현상이 존재하고 피고 제작진이 제3자 입장에서 이를 취재하여 도출한 결론이 아니라 피고 제작진이 이미 결론을 도출하고 이에 맞는 현장을 수집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 내어 그 결론에 맞게 편집한 내용에 불과하다.

⑹ J는 이 사건 방송 이전에 이미 원고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평범한 사인(私人)에 불과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도를 신속히 할 필요성이 없었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던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1부 방송 이전인 2008. 9. 11. 원고 A가 자신을 식칼로 찔렀다는 J의 피해 진술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휴게소에서 압수 · 수색을 실시한 다음 재킷과 식칼을 압수하였다. J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었던 피고로서는 위 재킷과 식칼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J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에도 위 감정결과가 도착하기 이전에 1부 방송을 하였다.

⑺ 피고는 수사가 개시된 시점에 1부 방송을 방영하였고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이미 나머지 2, 3부 방송을 모두 마친 점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하여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방송 이후에 검찰도 원고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기소를 하였으나 형사사건은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인의 유 · 무죄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원고들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과 추후에 기소여부 등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원고들이 가해자라고 단정하여 보도할 수는 없다.

⑻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이 사건 휴게소 내에서 원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렸다는 J의 진술에 따라 혈흔을 채취하기 위해 이 사건 휴게소에서 현장 검증을 한 것은 2부 방송일 이전인 2008. 9. 24.이다.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채취한 감정물이 혈흔인지, 혈흔이라면 그것이 인혈인지 여부가 J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피고 제작진은 이러한 점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위 감정물에 대한 감정결과가 도착하기 이전인 2008. 9. 30. 2부 방송을 방영하였다.

⑼ ①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2008. 9. 24. 채취한 감정물에 대한 감정결과가 도착하기 전인 2008. 10. 14. 3부 방송을 한 점, ② 위 경찰관들이 2008. 9. 11. 압수한 칼과 재킷에는 혈흔이 남아 있지 않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2008. 10. 9. 강원지방경찰청에 도착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수사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취재하고 있던 피고 제작진으로서는 위 감정결과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3부 방송을 방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3부 방송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방송의 방영행위는 진실성, 상당성, 공익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에게 위자료로 일부 청구로서, 원고 A는 500,000,000원, 원고 B는 200,000,000원, 원고 C는 300,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보도동기, 당사자의 동의 여부, 유포의 정도 및 횟수, 보도의 진실성, 사회적인 관심도, 보도 후 정황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45호증, 갑 제50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50,000,000원,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60,000,000원, 원고 C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90,000,000원으로 각 정하기로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을 넘어서 피고 제작진이 ① 시청률 상승으로 인한 광고수입확대와 같은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②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결론에 따라 취재한 내용을 고의로 왜곡하고,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③ 원고들을 힘없는 여성을 가해한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조작한 내용이다.

나) 피고 제작진은 ① 수일에 걸쳐 원고들 몰래 원거리에서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휴게소 내부를 촬영하여 이를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방영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② 2008. 7. 3.경에는 J의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하는 방법을 통해 원고 A, C와 J의 대화를 녹음하여 녹음한 내용을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취재 방식은 은폐된 폭력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은 보도 탐사 프로그램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취재방법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관심을 끌어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이 더 크므로, 이 사건 방송 제작을 위한 위 각 취재 행위도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 제작진은 수일에 걸쳐 외부에서 원고들의 거주지를 몰래 촬영하고 원고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을 하자 도주를 한 점에서 위 각 취재행위가 수단의 적합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제작진은 촬영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는 "강제취재 · 답변강요 ·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제21조 제4항 및 "취재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취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피고의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집요하게 J의 상처원인에 관한 진술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고들을 괴롭히면서 취재하였고, 2008. 7. 8.에는 원고들이 촬영을 거부함에도 원고들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위와 같이 촬영한 장면을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방영하였다.

라) 피고 제작진은 J와 원고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관하여, J의 진술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반면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일부 장면에서는 편집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위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도하고 극적흥미를 위하여 불필요하게 원고들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촬영하여 방송하였다.

마) 이 사건 방송은 단 하루만의 1회적 기사보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08. 9. 16., 2008. 9. 30., 2008. 10. 14. 3회에 걸쳐 각 30분, 40분, 15분 간 방영되었다.

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전국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방영되는 것이므로 그 유포의 정도가 매우 크다. 실제로 이 사건 방송 이후에 원고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회적 약자인 J를 학대한 범인으로 일반 시청자들에게 인식되어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송을 위한 피고 제작진의 취재 등으로 인하여도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 이 사건 프로그램의 홈페이지 관리자는 이슈 게시판에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한 기사내용을 게시하였는데 그 조회수는 다른 회차 방송에 비해 높은 13,302건(갑 제45호증)으로 피고는 그 의도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방송 당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광고단가는 15초당 10,665,000원으로서 이는 같은 날 방송된 피고의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 중 3번째로 높은 광고 단가였다. 이 사건 방송의 전 · 후로 10분씩 합계 20분의 광고를 한다고 가정할 때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는 광고 수입은 2,559,600,000원[= 240{= (10분 × 2 × 3부)/15초} × 10,665,000원]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자) ① 피고 제작진의 팀장 AD는 불법 도청을 한 부분에 관하여 "녹취는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으며, 그것은 우리만의 노하우다. 법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3년동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바 있고(갑 제50호증의 2), ② 피고 제작진의 PD G는 이 법정에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내부규정이 있는데 정확히는 모른다."라고 증언하였으며, ③ 피고 제작진은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솔루션 위원인 변호사 R로부터 자문을 얻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 제작진이 2008. 7. 8. 원고들을 찾아가 촬영할 당시 R도 동행하였음에도 당연한 듯이 도청을 하고, 자신들의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강행하였으며, ④ 피고도 이 사건에서 도청행위와 원거리에서 원고들의 집을 촬영한 행위에 관하여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취재방법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피고와 피고 제작진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미명하에 부당한 취재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차) 이 사건과 같이 언론기관 및 그 소속 직원들의 부당한 취재행위와 윤리의식이 심대하게 문제되는 사안에서 그 위자료가 미미할 경우 언론 기관들이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감수하고라도 아주 쉽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염려가 있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언론 기업들은 명예훼손 등의 법익 침해로 인한 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를 배상하고 남은 이익이 있으면 명예훼손행위를 해서라도 기업 이윤을 축적해 가려는 영리성에 바탕을 두고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카) 위와 같은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한편, 언론보도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손해배상액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90,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8. 10.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2.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여부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 제작진은 이 사건 방송을 위한 취재과정에서 ① 원고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방송함으로 인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② 원고들의 사적 대화내용을 도청하고 그 내용을 방송함으로 인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며, ③ 원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모습을 촬영한 다음 방송하고, ④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의 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⑤ 원고들이 조사받는 장면을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원인도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적시된 개별적 불법행위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가 행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이어서 주위적 청구원인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것이므로 따로 별개의 독립한 불법행위로는 주장하지 않겠다."(2011. 11. 5.자 원고들 준비서면)는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생략

〈별지 2~4〉 1~3부 방송 내용 생략

명예훼손 사례 6

집단의 성격과 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정신과 의사들'이라는 표현이 신경정신과 의사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4.선고 2011가합1049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1.선고 2012나38409 판결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2년 4월 4일 A외 64명이 주식회사 예스헬스와 B를 대상으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경과 의사인 피고 B는 국회 공청회에서 '환자를 정신과로 보내는 것은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피고 언론사는 코리아 헬스로그에 B와의 인터뷰 기사를 작성, 게재하였다. 이에 신경정신과 의사인 원고들은 '정신과 의사들이 약을 많이 쓴다'는 취지의 발언을 보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진료 기록이 남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취업이나 보험가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게재해 원고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① 원고들은 각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에서 정신과 병원을 개업하여 진료 중인 정신과 의사의 수는 약 813명에 이르고, 최근 정신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연간 100명을 초과하며, 2008년 현재 정신과 전문의가 2,349명에 이르러 그 구성원의 수가 매우 많은 점, ② 정신과 의사는 전국에 분포되어 개업을 하거나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고, '정신과 의사들'이라는 말속에는 정신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정신과 수련의까지도 포함될 수 있으며, 원고 C, D, E, F는 신경과 전문의 및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모두 포함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 더더욱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집단의 성격이 비조직적이므로 집단으로 표시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특정의 정도를 강화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희석시키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은 모두 피고 B가 발표하는 공청회 장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발언 및 기사에 의하여 원고들 각자가 피해자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 개개인이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 G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9월 21일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 판 결 문

사　　건 : 2011가합104944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A 외 69명

피　　고 : 1. B

2. 주식회사 예스헬스 (변경 전 : 주식회사 헬스로그)

변 론 종 결 : 2012. 3. 21.

판 결 선 고 : 2012. 4. 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피고 B는 각 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예스헬스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코리아 헬스로그 사이트(www.koreahealthlog.com) 메인 화면 좌측 최상단에 고정된 상자기사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고, 피고 B는 신경과[1]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서울○○병원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예스헬스(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헬스로그'였는데, 2011. 10. 26.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예스헬스'라 한다)는 온라인 정보제공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코리아 헬스로그' 사이트(www.koreahealthlog.com)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의약품으로 항우울제 중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이하 'SSRI'라 한다)의 투여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정신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시에는 아래의 우울 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

1)'신경정신과(Neuropsychiatry)'라는 임상영역은 1982.경 '신경과(Neurology)'와 '정신과(Psychiatry)'로 분리되었다.

되는 경우에는 정신과로 컨설트(Consult) 함이 바람직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 (①우울한 기분 흥미나 관심 소실 ②피곤감 / ③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와

– 7가지 증상 (①집중력, 주의력 저하 ②자신감 저하 ③죄책감 ④비관, 염세적 사고 ⑤자살사고 ⑥수면장애 ⑦식욕감퇴) 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

다. 피고 B는 2011. 3. 11. 개최된 국회 공청회에서 SSRI 처방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위 규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 B의 발언 전체를 '이 사건 발언'이라 하고, 특정 부분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발언 ㉮ 부분' 등으로 지칭한다).

라. 이후 피고 B는 2011. 6. 26. 대한신경계질환우울증연구회 창립총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위 연구회의 신임회장으로서 '환자를 정신과로 보내는 것이 사회적 낙인을 찍힐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전문신문인 청년의사 소속 기자 H는 2011. 7. 7. 피고 B와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한 뒤, 다음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터뷰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예스헬스가 운영하는 '코리아 헬스로그' 사이트에 게재하였다(다만 '괄호 부분'은 2011. 7. 12. 피고 예스헬스가 스스로 추가하여 정정한 부분이다).

Q. 정신과와 협진을 하면 해결이 되지 않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중증 신경계 질환자들은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신과로 가서 약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에 화를 내거나, 담당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싶다고 때를 쓰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사회적 낙인이다. SSRI 항우울제 처방이 필요해서 정신과로 보냈을 경우에 이런 기록이 고스란히 남고, 결국 이들은 재활 후 취업이나 보험가입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생각을 가진 환자들이 많다). 이 때문에 학회에서도 4대 신경계 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회도 이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발언에서, ① 정신과는 누구나 흔하게 걸릴 수 있는 가벼운 불면증부터 심한 정신병까지 다양한 정신질환을 다루고 있는데,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고, 치매 등은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라는 취지(이 사건 발언 ㉰ 부분)로, ② 정신과 의사들은 타과에 비하여 적은 약을 처방하고 있음에도 '정신과 의사들이 약을 많이 쓴다'는 취지(이 사건 발언 ㉱ 부분)로, 각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정신과 의사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③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진료 기록이 남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취업이나 보험가입에 문

제가 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여 피고 예스헬스로 하여금 허위 내용인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정신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각 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피고 예스헬스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3. 쟁점 및 판단

가. 원고들 각자의 피해자 해당 여부 – 부정

1) 이 사건의 전제 되는 쟁점은, 원고들 각자가 이 사건 발언 및 기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이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그것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만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및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즉, 집단 간에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과 악감정의 표현을 의사토론의 공론장에서의 건전한 토론과 비판으로 걸러내기보다는, 일단 상대방에 대한 민 · 형사소송 등으로 틀어막고자 하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활발한 소통에 의한 여론 형성의 기회를 상실하고 소송의 남발로 점점 서로를 질식시키게 될 것이며, 건전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집단 상호간의 의견 교환 및 비판까지도 위축시키게 될 위험이 매우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 및 기사가 어떠한 추상적인 집단을 표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내부에 있는 개개인을 특정한 발언이라고까지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만 그 개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그와 같은 발언 및 기사에 법적인 제재를 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정신과 전문의인 원고들 각자가 이 사건 발언 및 기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각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에서 정신과 병원을 개업하여 진료 중인 정신과 의사의 수는 약 813명에 이르고, 최근 정신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연간 100명을 초과하며, 2008년 현재 정신과 전문의가 2,349명에 이르러 그 구성원의 수가 매우 많은 점, ② 정신과 의사는 전국에 분포되어 개업을 하거나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고, '정신과 의사들'이라는 말속에는 정신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정신과 수련의까지도 포함될 수 있으며, 원고 C, D, E,

F는 신경과 전문의 및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모두 포함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 더더욱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집단의 성격이 비조직적이므로 집단으로 표시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특정의 정도를 강화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희석시키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은 모두 피고 B가 발표하는 공청회 장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발언 및 기사에 의하여 원고들 각자가 피해자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 개개인이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들 주장의 구체적 피해발생 여부 – 부정

설령, 이 사건 발언 및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 각자가 피해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의 구체적인 피해발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인정할 수 없다.

1) 명예훼손 여부(원고들 주장 ①②항 부분)

피고 B의 이 사건 발언 중 위 부분이 허위사실로서 '정신과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보면, 먼저, ① 피고 B의 이 사건 발언 ㉮ 부분에 '… 뇌졸중 환자, 치매환자, 파킨슨 환자는 다 활동이 불편해요. 모든 사람이 와서 약하나 탈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의 병이 아니거든요.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 정신과 병이 아니에요. 뇌손상 증상이지. 그런데 왜 정신과로 가야 됩니까? 정신과로 가면서 나는 미쳤나? 나 이런 환자가 그럼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뭐 잘못되었나? 더 괴로워집니다. 환자 자신이…'라는 표현이 있는바, 피고 B가 위 발언에서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그와 같이 판단하는 주체를 '환자 자신'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환자들의 생각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B가 위 발언에 의해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 B의 위 발언이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다'는 사실을 전제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 '미치다'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정신과'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 장애자(정신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진단·치료를 행하는 의학'을 가리키므로,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이 반드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부분 발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하여는 다소 모욕적인 언사일 수는 있지만, 위 발언이나 '치매 등이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는 발언이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사회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 중 위 ①항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피고 B는 이 사건 발언 ㉲ 부분에서 '정신과 선생님들은 ……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을 너무 많이 쓰세요. 제가 보기에는'이라고 말하였는바, 그 자체에서 '저희들 또는 제가 보기에는'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발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 B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정신과 의사가 아닌 자신이 60일 이상 환자들에게 SSRI를 처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가 지급되도록 보건복지부의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60일 이후 환자를 정신과에 보낸 경우 정신과 의사들이 SSRI 이외에 다른 약을 추가로 처방하고 있는바, 이는 환자의 연령,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을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는 상대적인 개념에 불

과하고, 피고 B의 위 발언은 정신과의 경우에는 신경과 보다 상대적으로 약을 많이 쓴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발언은 피고 B의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설령 그것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들 주장 중 위 ②항 부분 역시 이유 없다.

2) 업무방해 여부(원고들 주장 ③항 부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취업이나 보험 가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 B와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정신과 의사인 원고들의 진료업무가 방해받았는지 보건대,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 중 위 ③ 부분도 이유 없다.

3) 허위사실 보도 여부(정정보도청구 부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 중 '바로 사회적 낙인이다. SSRI 항우울제 처방이 필요해서 정신과로 보냈을 경우에 이런 기록이 고스란히 남고, 결국 이들은 재활 후 취업이나 보험가입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 원고들의 모든 입증으로도 위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게다가 피고 헬스로그는 위 기사 부분을 환자들의 생각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정정한 바 있고, 위 정정된 기사에 의하면 위 기사 내용이 더욱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의료법 제22조 제1, 2항), 을나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부 보험회사들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던 사람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자격증 취득 및 국가공무원 임용(또는 고용유지)이 제한되는 것이 현실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여기에 앞서의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이 사건 기사 중 '사회적 낙인'이라는 용어는 위와 같은 취업 또는 보험가입의 제한에 대한 압축적 표현에 불과할 뿐, 이를 별개의 사실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원고들 목록 생략

〈별지 2〉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3〉 이 사건 발언 생략

2심 판 결 문

사　　건 : 2012나38409 손해배상(기) 등

원고, 항소인 : G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예스헬스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헬스로그)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가합104944 판결

변 론 종 결 : 2012. 9. 12.

판 결 선 고 : 2012.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8.부터 2012. 2.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코리아 헬스로그 사이트(www.koreahealthlog.com) 메인 화면 좌측 최상단에 고정된 상자기사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가 피해자인지 여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 중 "SSRI 항우울제 처방이 필요해서 정신과로 보냈을 경우에 이런 기록이 고스란히 남고, 결국 이들은 재활 후 취업이나 보험가입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보도내용에서 원고가 직접 지명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전후 기사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위 보도내용은 우울병 증상을 가진 신경계질환자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자신이 치료받던 신경과가 아닌 정신과에서 SSRI 항우울제 처방을 받아야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그러한 경우 해당 환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한 것으로 위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것은 해당 환자들이지 원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사 중 위 보도내용으로 인한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를 위 보도내용으로 인한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일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면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바(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어떤 환자가 우울병으로 진단되어 SSRI 항우울제를 투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환자의 진료를 정신과에서 하든 신경과에서 하든 진료기록에 남거나, 취업 또는 보험가입에 제한이 있는 것은 동일함에도 이 사건 기사에서는 마치 해당 환자를 정신과에서 진료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기사는 B를 인터뷰하여 B로부터 들은 부분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고,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전후 기사의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위 보도내용은 B가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던 우울병 증상을 가진 신경계질환자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SSRI 항우울제 투약에 따른 요양급여를 인정받기 위하여 신경과 진료 외에 정신과 진료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꺼려하는 해당 환자들의 입장을 기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면에서 진실과 일부 차이가 나거나 다소 수사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위 기사의 중요부분은 진실에 합치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보도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정정보도문 생략

명예훼손 사례 7

‘원고가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돈벌이를 위한 자발적 지원자로 규정했다’는 보도는 원고의 기자회견 발언을 바탕으로 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진실성, 공공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4.선고 2011가합127411 판결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2년 4월 4일 국회의원 A가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주식회사 프레시안,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재・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은 B 후보에 대해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였고, B 후보 측은 ‘할아버지에게 나온 징용영장에 응해 작은 할아버지가 대신 사할린에 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대를 잇기 위해 B 후보의 할아버지가 B 후보를 작은 할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시켰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한나라당 소속인 원고는 기자회견을 통해 ‘작은 할아버지가 대신 사할린에 강제징용 되었다는 해명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만약 B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1941년 일본으로 갔다면 모집에 응하여 간 것이지, 형에게 나온 징용을 대신해서 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가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돈벌이를 위한 자발적 지원자로 규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돈벌이를 위한 자발적 지원자(또는 기업체에 의한 모집)로 규정했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기사들은 모두 ‘징용이 시기적으로 3단계로 구분된다.’는 법(일제의 국가총동원법) 규정을 대전제로 하고, ‘B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1941년에 일본으로 건너갔다.’라는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논리법칙을 적용한 결과 ‘B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는 일본 기업체의 모집에 응한 것이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즉 ‘1941년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간 징용피해자들은 모두 일본 기업체의 모집에 응한 것이다’는 법규 해석의 논리에 따라 위 시기에 징용에 응한 B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도 일본 기업체의 모집에 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부분 기사에서 ‘원고가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돈벌이를 위한 자발적 지원자(또는 기업체에 의한 모집)로 규정했다’고 표현한 것은,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기자회견의 발언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와 같은 논리에 따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두고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11가합127411 정정보도 등

원　　고 : A

피　　고 : 1.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2. 주식회사 프레시안

3.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4.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변 론 종 결 : 2012. 3. 21.

판 결 선 고 : 2012. 4.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1)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게시되는 온라인 한겨레신문(http://www.hani.co. kr)에 별지 1-1-1 기재 정정보도문을 2011. 10. 11.자 〈음주방송 A, 이번엔 징용피해 매도〉라는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글씨체 · 크기의 표지기사로 4일간(96시간) 초기화면에 게시하되, 위 기사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고,

2)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제6면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그 다음 날 사설란 왼쪽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각 별지 1-1-2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사진식자 24급 고딕체로, 내용은 본문 기사 활자체 · 크기로 각 1회씩 게재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프레시안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게시되는 웹사이트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에 별지 1-2 기재 정정보도문을 2011. 10. 12.자 기사 "C, 'B, 대기업서 돈 뜯어먹고 사나'" 라는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글씨체 · 크기의 표제기사로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게시하되, 위 기사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1)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게시되는 온라인 경향신문사(http://www.khan.co. kr)에 별지 1-3-1 기재 정정보도문을 2011. 10. 11.자 기사 "A, 역사 왜곡 B 때리기"와 동일한 글씨체 · 크기의 표제기사로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게시하되, 위 기사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고,

2)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경향신문사 제4면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별지 1-3-2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사진식자 24급 고딕체로, 내용은 본문 기사 활자체 · 크기로 1회 게재하라.

라.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게시되는 온라인 웹사이트(http://www.ohmynews.com)에 별지 1-4 기재 정정보도문을 2011. 10. 11.자 기사 "음주방송 A, 강제징용 의혹 제기로 또 역풍?"라는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글씨체 · 크기의 표제기사로 48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게시하되, 위 기사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라.

마. 만약, 피고들이 각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기사를 게시 또는 게재하는 날 이후에도 위 각 게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각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게재 또는 게시의무 1건당 1일 각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6,000만 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소속 제18대 국회의원이고,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이하 '피고 한겨레신문', '피고 경향신문사'라 한다)는 각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각 일간지('한겨레신문' 및 '경향신문')를 발행하며 신문 웹 사이트('http://hani.co.kr' 및 'http://khan.co.kr')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프레시안 및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이하 '피고 프레시안' 및 '피고 오마이뉴스'라 한다)는 각 신문 웹 사이트('http://pressian.com' 및 'http:// www.ohmynews.com)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2011. 10. 26. 실시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B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위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1. 10. 8.경 한나라당 측에서는 B 후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였다.

B 후보는 만 13세인 1969. 7.경 자손이 없는 작은 할아버지의 양 손자로 입양 되어 '부 선망 독자'가 됨으로써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B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는 행방불명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입양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호적 쪼개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B 후보 측은 '1941년경 B 후보의 할아버지에 대한 징용영장이 나왔는데, 작은 할아버지가 장남인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사할린에 가면서 실종되었고, 이에 작은 할아버지의 가계를 잇기 위하여 B 후보

가 양손으로 입양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B 후보 측의 위 해명을 반박하기 위하여 2011. 10. 1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07나4288) 판결문을 보면, '일제가 1939. 7. 8.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했지만, 한반도 등에는 1943. 10. 1.부터 위 법을 적용했다'고 되어 있고,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니 첫 번째 단계(1939-1941)는 기업체 모집, 두 번째 단계(1942-1943)는 조선총독부의 알선, 세 번째 단계(1944-1945)는 국민징용령을 근거로 한 징용영장(영서)에 의한 징용이 실시되었다.

그렇다면 1941년에 B 후보의 할아버지에게 징용영장이 나왔고, 작은 할아버지가 대신 사할린에 강제징용 되었다는 해명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만약 B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1941년에 일본으로 갔다면 이는 모집에 응하여 간 것이지, 형에게 나온 징용을 대신해서 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보도

(1) 피고 한겨레신문은 2011. 10. 11. 한겨레신문 웹 사이트에 ①「음주방송 A, 이번엔 '징용피해 매도'」, ②「'음주방송' A, 이번엔 '역사왜곡' 논란」, ③「'음주방송' A, B 공격하려다 또 '헛발질'」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2-1-1, 2-1-2, 2-1-3과 같은 내용의 각 기사(갑 1호증의 1, 2, 3)를, ④ 2011. 10. 12.「A 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라는 제목으로 별지 2-1-4와 같은 내용의 사설(갑 1호증의 4)을 각 게재하고, 위 ① 기사를 2011. 10. 12.자 한겨레신문 제6면에, 위 ④ 사설을 2011. 10. 13.자 한겨레신문 제31면에 각 게재하여, 각 보도하였다(갑 1호증의 5, 6).

(2) 피고 프레시안은 2011. 10. 12. 웹 사이트에 ⑤「C "B, 대기업서 돈 뜯어먹고 사나"」는 제목으로 별지 2-2와 같은 내용의 기사(갑 2호증)를 개재하여 보도하였다.

(3) 피고 경향신문사는 2011. 10. 11. 경향신문 웹 사이트에 ⑥「A '역사 왜곡' B 때리기」라는 제목으로 별지 2-3과 같은 내용의 기사(갑 3호증의 1)를 게재하고, 2011. 10. 12.자 경향신문 제4면에 위 기사(갑 3호증의 2)를 게재하여 각 보도하였다.

(4) 피고 오마이뉴스는 2011. 10. 11. 웹 사이트에 ⑦「'음주방송' A '강제징용' 의혹 제기로 또 역풍?」, ⑧「A의원 주장은 일본이 좋아할 얘기」라는 제목으로 별지 2-4-1, 2-4-2와 같은 내용의 각 기사(갑 4호증의 1, 2)를, 2011. 10. 12. ⑨「일제강제징용이 '자발적 돈벌이'? '음주방송' A, 정신 차리세요」라는 제목으로 별지 2-4-3과 같은 내용의 기사(갑 4호증의 3)를 각 게재하여 각 보도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 하고, 개별 기사를 특정하는 경우 '① 기사' 등으로 표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B 후보의 해명, 즉 '할아버지에게 나온 징용영장에 응하여 작은 할아버지가 대신 끌려갔었기 때문에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대를 잇기 위하여 B 후보 아버지가 B 후보를 작은 할아

버지의 호적에 입적시켰다'는 설명이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거짓말임을 반박하였을 뿐, '자발적 징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없고, B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징용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① 피고 한겨레신문은 '원고가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돈벌이를 위한 자발적 지원자로 규정했다'는 취지의 기사와 '원고가 자발적 징용론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사설을, ② 피고 프레시안은 '원고가 B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강제징용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 돈벌이 징용을 갔다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③ 피고 경향신문사는 '원고가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돈벌이를 위한 자발적 지원자로 규정하거나 자발적 징용자로 왜곡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④ 피고 오마이뉴스는 '원고가 1938년부터 1943년까지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당했던 피해자들을 기업체에 의한 모집으로 규정하고, 1944년 이전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자발적 징용자로 규정하였다'는 취지의 허위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와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정정보도청구

1)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한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써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기사 중에서 원고가 문제 삼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본다.

가) ①, ②, ③, ⑥, ⑦ 기사(① 내지 ③ 기사 : 피고 한겨레신문, ⑥ 기사 : 피고 경향신문사, ⑦ 기사 : 피고 오마이뉴스)는 '원고가 B 후보를 공격하면서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돈벌이를 위한 자발적 지원자(또는 기업체에 의한 모집)로 규정해 비판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으로 시작되고, 이어 '원고가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 즉 '첫 번째 단계(1939-1941)는 기업체 모집, 두 번째 단계(1942-1943)는 조선총독부의 알선, 세 번째 단계(1944-1945)는 국민징용령을 근거로 한 징용영장에 의한 징용이 실시되었으므로, B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1941년에 일본으로 갔다면 이는 모집에 응하여 간 것이다'는 원고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으며, 끝으로 원고의 이 사건 기자회견 발언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등에 배치된다'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위 부분 기사들 중 '원고가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돈벌이를 위한 자발적 지원자(또는

기업체에 의한 모집)로 규정했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기사들은 모두 '징용이 시기적으로 3단계로 구분된다.'를 법 규정을 대전제로 하고, 'B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1941년에 일본으로 건너갔다.'라는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논리법칙를 적용한 결과 'B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는 일본 기업체의 모집에 응한 것이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즉 '1941년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간 징용피해자들은 모두 일본 기업체의 모집에 응한 것이다'는 법규 해석의 논리에 따라 위 시기에 징용에 응한 B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도 일본 기업체의 모집에 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부분 기사에서 '원고가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돈벌이를 위한 자발적 지원자(또는 기업체에 의한 모집)로 규정했다'고 표현한 것은,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기자회견의 발언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와 같은 논리에 따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두고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④ 사설(피고 한겨레신문)에 '원고가 「자발적 징용론」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고, 「자발적 징용론」이라는 용어를 원고가 직접 사용한 바는 없으나, 이는 위 사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원고의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평가하여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역시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⑤ 기사(피고 프레시안)에 '원고가 B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강제징용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 돈벌이 징용을 갔다고 주장했다'는 표현이 있는바, 이는 C 대표의 주장을 주로 언급하면서 이와 대비하는 원고의 주장을 그 발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언급한 것에 그치고 있어, 과연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면 증거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실의 적시로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⑧ 기사(피고 오마이뉴스) 후단부에는 원고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달한 뒤, '원고의 주장은 1944년 이전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자발적 징용자」로 몰아세운 것이나 다름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위 표현은 그 자체로 원고의 이 사건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⑨ 기사(피고 오마이뉴스)는 원고의 이 사건 기자회견과 그 직전에 있었던 B 후보의 해명을 소개한 뒤, '논란의 핵심은 B 후보 작은할아버지의 1941년 사할린행이 돈벌이를 위해 스스로 간, 즉 자발적 징용인지, 아니면 총독부 당국의 조선인 강제동원인지입니다'로 되어 있는바, 이는 B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에 관하여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주관적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문제 삼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것이 '허위'인지 본다.

가) 언론 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또한 복잡한 사실 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B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1941년에 일본으로 갔다면 이는 모집에 응하여 간 것'이라는 표현이 '진실'인지 보건대, 사전적인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모집'이라고 함은 「사람이나 물품을 일정한 조건 아래 널리 구하여 모음」을, '응하다'라고 함은 「물음이나 요구, 필요에 맞추어 대답하거나 행동하다」를 각 의미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B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일정한 조건 아래 사람을 구하는 일본회사의 모음에 맞추어 행동(또는 승낙)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기사, 특히 ⑤ 기사 중 '원고가 B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강제징용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 돈벌이 징용을 갔다고 주장했다'는 부분은, '돈벌이' 등의 수사적인 과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 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된다.

다) 나아가, 원고가 B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 이외의 징용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징용에 응하였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펼친 원고의 논리구조에 비추어 보면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그 전제로서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국,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문제 삼는 부분은 대부분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고, 일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진실하다고 판단되므로, 허위 보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기사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은 국회의원인 원고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의 진위를 탄핵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거기에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1-1, 1-1-2, 1-2, 1-3-1, 1-3-2, 1-4〉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2-1-1, 2-1-2, 2-1-3〉 기사 생략

〈별지 2-1-4〉 사설 생략

〈별지 2-2, 2-3, 2-4-1, 2-4-2, 2-4-3〉 기사 생략

명예훼손 사례 8

‘KBS 총무국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민주당사까지 가는 버스를 지원하였다’는 보도는 성명을 인용하거나 전문의 형식으로 표현되었지만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고 그 내용 또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정정보도하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24. 선고 2011가합10037 판결(확정)

사실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12년 5월 24일 한국방송공사가 언론사 대표 A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인터넷신문 미디어스에 2011년 6월 27일 『KBS, ‘수신료인상 관제집회’에 직원 동원했다』, 『미디어행동 “집회 참석 독려 문자 돌리고, 차량까지 지원”』 제목으로 KBS 노동조합이 2011년 6월 24일 민주당 규탄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KBS 총무국이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아 민주당사까지 가는 버스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도내용으로 인한 정정보도 여부나 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 기사는 미디어행동의 성명을 인용하거나 전문의 형식으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암시된 내용 자체를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KBS 총무국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민주당사까지 가는 버스를 지원하였다’는 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로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고 위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사 중 문제된 부분은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2011서울조정771, 772)을 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11가합10037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기)

원　　고 : 한국방송공사

피　　고 : A

변 론 종 결 : 2012. 4. 19.

판 결 선 고 : 2012. 5. 24.

주　　문

1.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24시간 동안 인터넷신문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의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되, 제목은 초기 화면 우측 상단에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큰 제목과 동일한 활자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나. 피고가 위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의 홈페이지 첫 번째 화면 우측 상단에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큰 제목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본문은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가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정정보도문 게재를 이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을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를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1. 6. 27. 11:28:02 B 기자가 작성한 「"KBS, '수신료인상 관제집회'에 직원 동원했다"」, 「미디어행동 "집회 참석 독려 문자 돌리고, 차량까지 지원"」이라는 제목의 [별지 2]의 제1항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원고의 노동조합이 2011. 6. 24. 민주당 규탄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KBS 총무국이 KBS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아 민주당사까지 가는 버스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정정 보도를 요청하자, 피고는 같은 날 18:13 위 기사 말미에 「KBS 사측은 KBS 총무국이 KBS 노동조합의 민주당 규탄 집회에 버스를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KBS 총무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버스 지원 요청을 받은 바도 없으며, 노동조합 측에 확인한 결과 노동조합 측이 관광버스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당일 전세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인했다. C KBS 노동조합 편집국장 역시 "버스 한 대당 15만 원씩 주고 직접 대절했다"며 "회사 총무국에서 버스를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는 내용의 원고의 반론을 덧붙인 [별지 2]의 제2항 기재 수정 기사를 「"KBS, '수신료인상 관제집회'에 직원 동원했다"」, 「미디어행동 "집회 참석 독려 문자 돌리고, 차량까지 지원"…KBS "사실무근"」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이하 별지 2의 제1, 2항 기재 각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노동조합은 2011. 6. 24. 민주당 규탄 집회를 하면서 자신의 기금으로 직접 버스 회사와 사이에 버스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버스 임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총무국이 원고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버스 지원 요청을 받거나 이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1일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기사는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가 원고의 노동조합의 민주당 합의 파기 규탄 집회에 회사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사에 허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인용보도에 있어서 허위 여부의 판단 기준

(가)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와 같은 보도내용으로 인한 정정보도 여부나 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기사는 「미디어행동 "집회 참석 독려 문자 돌리고, 차량까지 지원"」, 「KBS 총무국이 KBS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아 민주당사까지 가는 버스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행동은 27일 성명을 내어…"24일 KBS 구 노조가 주최한 '정치독립 합의파기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에는 구 노조 조합원 등 KBS 직원 200여명이 참가했는데 (배경에는) KBS의 물심양면 지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KBS 총무국이 KBS 노조의 요청을 받아 민주당사까지 가는 버스도 지원했다는 것이다」는 등 미디어행동('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라는 단체 명칭의 줄임말이다. 이하 같다)의 성명을 인용하거나 전문의 형식으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위와 같이 적시된 내용의 존재를 암시하는 이상 암시된 내용 자체를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한다.

(2) 이 사건 기사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여부

(가)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 중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의 노동조합이 2011. 6. 24. 민주당 규탄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총무국이 원고의 노동조합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민주당사까지 가는 버스를 지원하였다는 부분인데, 위 보도의 표현으로 볼 때 원고의 총무국이 원고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민주당사까지 가는 버스의 지원을 요청받았는지 여부, 원고의 총무국이 원고의 노동조합에게 민주당사까지 가는 버스를 지원하였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점,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가 원고가 수신료인상을 촉구하는 원고의 노동조합의 민주당 규탄 집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그 지원의 구체적인 예시로 원고가 직원들에게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집회에 직원들을 동원한 것과 원고의 총무국이 집회장소인 민주당사까지 가는 버스를 지원한 것을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 중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에 사실적 주장과 비판의견의 표명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 중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기사의 허위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노동조합이 2011. 6. 24. 민주당 규탄 집회를 가졌는데, 원고의 노동조합 총무국장 D가 집회 전날인 2011. 6. 23. 위 집회 장소로의 이동에 이용할 버스 10대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평소 원고의 노동조합에서 사용할 차량의 섭외 문제로 접촉을 한 적이 있던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KBS 비즈니스의 주차사업소 소장 E에게 문의하였던 사실, 이에 E가 D에게 주식회사 KBS 비즈니스가 원고의 직원들의 출퇴근용 버스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던 주식회사 F 투어와 G 투어 주식회사를 소개해 준 사실, 원고의 노동조합이 주식회사 F 투어로부터 버스 6대, G 투어 주식회사로부터 버스 4대를 각 임차하고 위 두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직원들의 출퇴근용 버스에 대한 계약 체결, 관리 등 제반 업무는 주식회사 KBS 비즈니스가 담당하고 원고의 총무국은 위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총무국이 원고의 노동조합에게 민주당사로의 이동에 필요한 버스를 지원해 준 적은 없고, 주식회사 KBS 비즈니스의 주차사업소 소장이 원고 노동조합의 총무국장에게 버스 대절이 가능한 버스 회사 2군데를 단순히 소개해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의 총무국이 원고의 노동조합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2011. 6. 24. 민주당 규탄 집회 장소인 민주당사까지 가는 버스를 지원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보도한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의 총무국이 원고의 노동조합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2011. 6. 24. 민주당 규탄 집회 장소인 민주당사까지 가는 버스를 지원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해당 기사부분을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분량, 표현방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24시간 동안 인터넷신문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의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되, 제목은 초기 화면 우측 상단에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큰 제목과 동일한 활자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가 원고의 노동조합의 민주당 합의 파기 규탄 집회에 회사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KBS 총무국이 개입되어 있지 아니함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의혹은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일 뿐, 피고의 보도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언론 ·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와 관련하여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보도한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의 총무국이 원고의 노동조합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2011. 6. 24. 개최되는 민주당 규탄 집회에 버스를 지원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 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미디어행동이 2011. 6. 27. 'KBS 총무국은 KBS 구 노조의 요청을 받아 출퇴근용 통근버스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H 관광에 의뢰해 민주당사까지 버스 운행을 지원했다'는 논평을 한 직후에 이를 보고 동일한 내용의 보도를 한 점,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B 기자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 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원고의 총무국, 노동조합이나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 회사 측에 사실 확인을 한 바 없고, 원고의 홍보국장 I에게 문의 전화를 하여 I로부터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을 들었음에도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2011. 6. 27. 11:28경 최초로 게재한 이후 다른 인터넷신문인 프레시안은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같은 날 15:13경에 게재하면서 원고의 노동조합 관계자가 버스 대절계약을 원고의 노동조합

이 직접 했고 원고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는 내용의 반론까지 함께 실었으며, 피고 또한 같은 날 18:13경 원고가 원고의 총무국이 원고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버스 지원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원고의 노동조합이 버스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였다면서 부인했다는 내용의 반론을 실었던 점에 비추어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전인 2011. 6. 25. J 민주당 의원이 KBS 생방송심야토론에 출연하여 KBS 국제방송팀장과 콘텐츠운영팀 명의로 원고의 직원들에게 민주당 규탄 집회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면서 문자메시지를 폭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수신료 인상을 촉구하는 원고의 노동조합의 민주당 규탄 집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면서 위 문자메시지 발송 이외에 차량 지원이라는 또 다른 지원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위 부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다만,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기사 중 문제된 부분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국가기간방송이고, 원고의 수신료 인상은 국민 대다수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정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이러한 수신료 인상안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을 가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도로서 그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의 노동조합이 민주당 규탄 집회에 이용한 버스가 실제로 원고의 직원들의 출퇴근용 버스를 임대한 버스 회사의 차량이어서 원고 측의 지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의 제기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사가 최초 게재된 이후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가 이를 반영하여 원고의 반론을 실은 수정 기사를 최초 게재 후 약 7시간 만에 게재한 점, 이 사건 기사와 유사한 내용의 기사가 다른 언론사를 통하여 이 사건 기사를 전후하여 보도되기도 한 점, 비록 피고가 원고의 총무국이 원고의 노동조합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2011. 6. 24. 개최되는 민주당 규탄 집회에 버스를 지원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이 부분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인 원고가 스스로 가진 매체를 통하여 이에 대하여 반박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문제된 부분은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가. 제목 : "KBS, '수신료 인상 관제집회'에 직원 동원했다"관련 바로잡습니다.

나. 내용 : 본 인터넷신문사는 지난 6월 27일자 미디어뉴스 면에 "KBS, '수신료 인상 관제집회'에 직원 동원했다"라는 제목으로 KBS노동조합의 민주당 항의 집회에 KBS총무국이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아 민주당사까지 가는 버스를 지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KBS에 확인한 결과, 노동조합이 직접 버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기금에서 비용을 지불한 것이며, 총무국은 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이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별지 2〉 기사 전문 생략

명예훼손 사례 9

'수사를 담당한 군 검찰'이라는 표현은 국방부 검찰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소속 구성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보도의 공익성, 진실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가합48808 판결(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2012년 5월 30일 C(선정당사자)가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및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는 주간조선 2011. 4. 25.자에 『흔들리는 軍 사법기관』, 『軍 검찰단 2인자 1000만원 받고 사건 덮었다』 제목으로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으로 재직하였던 G의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국방부 검찰단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고, 돈을 준 인물에 대해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으며, 군 검찰 및 수사관이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하였고,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관행처럼 만연하다는 등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 소속인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① '국방부가 공소장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다가 결국 일부 핵심 내용을 가린 상태로 공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 부분 보도에 적시된 '국방부'는 문언 그대로 행정기관으로서의 국방부를 지칭할 뿐 그 집단에 속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그 비난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 이르러서는 정도가 희석되어 이들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② '수사를 담당한 군 검찰은 돈을 받은 A씨만 기소하는데 그쳤을 뿐, 돈을 준 B씨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민간 검찰에 알리지 않았으며, B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군 검찰 고위관계자가 또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공소내용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수사를 담당한 군 검찰' 또는 '군 검찰'이라는 표현은 국방부 검찰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방부 검찰단은 그 구성원의 수가 39명에 불과하다는 점,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되기 전 이미 다수의 언론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G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수사를 담당한 군 검찰' 또는 '군 검찰'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③ '군 수사기관 안팎에선 일부 군 검찰 수사관계자와 장기복무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간의 커넥션을 지적하는 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 '군 검찰 관계자', '군 검찰 간부

들'은 국방부 검찰단 뿐만 아니라 군 수사기관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군 사법기관에 소속된 군 법무장교, 준사관 등의 인원은 총 855명(=군 법무장교 553명 + 군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준사관 등 302명)이고 이 중 군 수사기관인 국방부 검찰단 및 각 군 법무실 검찰부 등에 소속된 인원은 상당한 숫자에 이를 것으로 보이므로, 군 수사기관 전체를 표시하여 이루어진 명예훼손은 그 집단에 속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그 비난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 이르러서는 정도가 희석되어 이들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위 ② 기사의 내용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나 공익성 및 진실성과 상당성 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육군본부 고등검찰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2011서울조정651, 652)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된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11가합48808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 C
피　　고 : 1. D
2. E
3.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변 론 종 결 : 2012. 5. 11.
판 결 선 고 : 2012. 5. 3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군 사법기관의 구성 및 당사자들의 지위

(1) 군 사법기관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은 그 직속하에 군사법원,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을 두고 있고, 이하 각 군 본부 참모총장 아래 각 군 본부 군사법원과 각 군 법무실을 두고 있는데, 각 군 법무실은 검찰부, 법무과, 법제과, 인권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방부 검찰단과 각 군 법무실 소속 검찰부이다.

(2) 군 법무장교는 총 553명이고, 군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은 302명인데, 이 중 국방부 검찰단에 소속되어 있는 군 법무장교는 10명이고, 검찰수사관은 15명이며 사건 및 기록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14명이다.

(3) 국방부 검찰단은 검찰단장을 정점으로 하여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에는 부장과 검찰관 및 검찰수사관이 배속되어 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2 기재 각 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가 보도될 무렵 국방부 검찰단에서 법무장교로서 군 검찰관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무부사관 또는 군무원으로서 검찰수사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4) 피고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간조선'이라는 주간지를 발간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D, E는 피고 회사 소속 기자들로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한 사람들이다.

나. 국방부 검찰단의 F, G에 대한 수사

(1) G는 2008. 1. 18.부터 2010. 1. 7.까지 국방부 검찰단의 고등검찰부장으로 재직하였고, F는 2008. 12. 22.부터 2009. 12. 31.까지 국방부 검찰단의 검찰단장으로 재직하였는데, G에 대한 감사관실의 고발 및 G, F에 대한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자 국방부 검찰단은 2010. 9.경 G, F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하여 내사를 개시하였다.

(2) 국방부 검찰단은 'G가 ① H 중령의 오·폐수처리시설 공법선정에 대한 불공정심사 의혹에 관한 내사사건의 주임검찰관으로서 위 내사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2009. 2. 28.자로 중령으로 전역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I로부터 2009. 1.경부터 2009. 5.경까지 사건처리 및 변호인 활동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 및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고, ② 국방부 검찰단의 과학수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그 사업을 용역받은 ○○앤시스(주)의 대리인 J에게 노트북 3대 등 개인용도 물품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고,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계상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하였고, 그 결과 일부 범죄사실은 혐의가 없으나 위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011. 1. 12. G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하였다(다만, 위 노트북 3대 등 개인용도 물품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고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계상한 부분은, 주위적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예비적으로 뇌물수수로 기소하였다).

(3) 국방부 검찰단은 'F가 2009. 1. 12.부터 같은 해 5. 22.까지 사이에 H에 대한 내사사건과 관련하여 I로부터 사건처리 편의제공 명목으로 액수 미상의 금전 및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내사하였고, 그 결과 금전을 받았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가사 향응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사교적인 의례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1. 1. 4.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하였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은 G의 위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과학수사 시스템 구축업무는 G가 독단적으로 추진하였고 F는 결재만 하였을 뿐 G의 업무상배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하여 F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하였다.

(4)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2008. 1.부터 2010. 1.까지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전역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K에 대하여 H에 대한 내사사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I로부터 G, F와 함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K는 H에 대한 내사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I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으며, G가 I로부터 받은 현금 중 500만 원을 G로부터 수령하였으나, 그 돈의 출처나 성격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G에 대한 유죄판결 및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1) 국방부 검찰단은 2011. 1. 12. G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F에 대하여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심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으며, 관련자 I, K에 대하여는 G에 대한 재판이 종료된 후 관련 자료를 민간에 이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은 그 무렵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I, K에 대한 선처 필요성에 관하여 기재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관련자 I · K, G에 대한 재판 종료 후 관련 자료 민간 이첩

관련자들은 검찰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바, 선처의 필요성이 있음

재판종료 후 변협 및 민간검찰 이첩 여부 별도 보고 예정

(2)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1. 3. 28. G의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등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G 및 검찰관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1.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 D, E는 2011. 4. 25.자 주간조선에 〈흔들리는 軍 사법기관〉, 〈軍 검찰단 2인자 1000만원 받고 사건 덮었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에는 〈'사건 무마' 드러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죄판결〉, 〈국방부 내부서는 사건 '쉬쉬'… 공소장 단독 입수〉라는 부제목 아래 ① 〈국방부는 사건 공소장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군사기밀"이라며 거부해 취재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방부는 시간을 끌다가 결국 사람 이름과 장소 등 일부 핵심 내용을 가린 상태로 공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② 〈그러나 수사를 담당한 군 검찰은 돈을 받은 A씨(G)만 기소하는데 그쳤을 뿐, 돈을 준 B씨(I)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민간 검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③ 〈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I)로부터 향응을 받은 군 검찰 고위관계자가 A씨(G) 이외에 또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이를 공소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가 주목된다.〉, ④ 〈군 수사기관 안팎에선 '일부 군 검찰 수사관계자와 장기복무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간의 커넥션'을 지적하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그 내용은 "일부 군 검찰 관계자들이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다" …(중략)… 는 것이다. …(중략)… 최근 군 검찰 수사를 받았던 한 군인은 익명을 전제로 "수사를 담당했던 군 검찰의 한 준사관(준위)이 특정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기라고 권했다"고 증언했다. …(중략)… 다른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던 일부 사람들도 특정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준

사관들의 이름을 거론했다. “군 검찰·군사법원의 고위층과 잘 통하는 사람이라며 군 검찰 수사관계자가 특정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것이다. …(중략)… 익명을 요구한 군 수사기관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략)… “변호사를 소개해주면 착수금의 30%를 수사관계자가 커미션으로 받는다는 말이 있다” …(중략)… 한 피의자는 “왜 이렇게 수임료가 비싸냐고 항의했더니, 변호사가 ‘군 검찰 간부들한테도 줘야하고, 수사관에게도 줘야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중략)… 군 내부에서도 이같은 군 검찰관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의 관계에 대해 “고질적으로 뿌리박힌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기사 중 ① 내지 ④번 보도’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에는 〈군 검찰-변호사 ‘검은 커넥션’ 사실로〉라는 부제목 아래 〈이에 대해 이 사건의 한 관계자는 “A씨(G) 한 사람이 노트북 3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군 검찰 관계자 3명이 각각 한 대씩 받은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되자 이들 3명이 부랴부랴 노트북을 돌려주느라 난리를 쳤다”로 주장했다. 그는 “3명 중 한 사람은 사건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대신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다른 한 명은 조용히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군 검찰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을 감해주는 거래’인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했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형사소송법상 플리바게닝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라. 국방부 검찰단의 F, I, K에 대한 조치

(1) 국방부 검찰단은 2011. 1. 4. 전역심사위원회 및 명예퇴직수당 심의위원회에 ‘F는 부하직원인 G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업무상배임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직무태만을 하였고, 과학수사시스템 구출 관련 업자로부터 약 30만 원 상당의 아이팟 1대를 수수하고 변호사인 I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군사법 종사자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여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비위사실을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F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2) 국방부 검찰단은 2011. 4. 25. I를 민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K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3) 국방부 검찰단은 위 보고 내용에 따라 2011. 5.경 I를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같은 달 17. ‘2009. 1. 22. 레이크호텔 지하 룸싸롱에서 I로부터 향응 및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K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을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3 내지 20, 2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D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각 기사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근무하였던 G에 대한 사건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G가 저지른 비리가 단순히 개인의 비리가 아닌 국방부 검찰단 구성원 대부분의 비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점, 국방부 검찰단을 지칭할 때 ‘군 검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보도와 군 검찰 전반에

대한 보도가 혼동되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기사의 표지사진에 국방부 검찰단 현판이 실려있고, 나머지 사진도 전부 국방부 검찰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찰관 및 수사관으로 특정된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기사는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D, E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는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우선 일부 청구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각 500만 원(단, 선정자 L은 국방부 검찰단의 일원으로 300만 원, 준사관의 일원으로 200만 원을 구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기사 배포일인 2011. 4.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들로부터 G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장 등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1기사 중 ①번 보도내용을 통해 국방부가 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하였다거나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나) 국방부 검찰단은 I를 민간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고, K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통보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I, K에 대한 처벌을 계획하였고, 실제 위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1기사 중 ②, ③번 보도내용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I를 처벌하지 않았고, K 또한 알 수 없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다) 군 검찰 및 수사관이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하고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G의 경우 이외에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1기사 중 ④번 보도를 통해 마치 이러한 변호사 선임권유 및 금품수수행위가 관행처럼 만연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라) 이 사건 제2기사에서 과학수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업체관계자로부터 노트북을 받은 것으로 적시된 사람은 G, F, K인데, 피고들은 위 기사를 통해 군 검찰이 수사협조 대가로 K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F를 조용히 처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대한변호사협회에 K에 대한 징계개시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처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였다. 또한 F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만한 비위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전역심사위원회 및 명예퇴직수당 심의위원회에 직무태만 및 공직자윤리규정위반 비위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위 기사는 허위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각 기사에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고 개인 신상을 추지할 만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며, 군 검찰조직은 유기적 통일체로서 존재할 뿐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개성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원고 및 선정자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각 기사에 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국방부 검찰단은 G, K, F가 I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노트북을 1대씩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K, I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각 기사를 보고 비로소 민간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F를 업무상배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선

에서 처벌을 마무리한 점, 이 사건 보고서에 'I, K를 민간 검찰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첩 및 통보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나 이는 계획에 불과한 것이었고, 또한 위 보고서에는 'I, K가 수사에 협조하였으므로 선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기사는 진실한 보도에 해당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공직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명예훼손 피해자의 특정 여부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기사 중 ①번 보도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보도는 피고들의 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한 주체가 '국방부'라고 명시하고 있고, G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주체가 국방부 검찰단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사건에 대한 자료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 역시 국방부 검찰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보도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국방부가 피고들의 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보일 뿐 달리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개인적 판단이나 관여하에 자료 공개가 거부되었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 전체적인 문맥상 독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보도에 적시된 '국방부'는 문언 그대로 행정기관으로서의 국방부를 지칭할 뿐 그 집단에 속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그 비난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 이르러서는 정도가 희석되어 이들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설령 이 부분 보도가 국방부 검찰단에 관계된 것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집단에 속한 원고 및 선정자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고 또 이 부분 보도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갑 제28 내지 33호증,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피고 D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2011. 2.경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 국방부에 'G에 대한 공소장과 최근 5년간 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 때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공소장과 '계룡대 군사법원의 최근 2년간 변호사 선임 내역'을 전달받았으며, 위 공소장은 관련자의 이름과 장소 등 일부 내용이 가려진 상태였고, 위 '계룡대 군사법원의 최근 2년간 변호사 선임 내역'에는 개별 변호사의 구별 없이 전체 변호사의 선임 건수만 기재된 사실, 이에 피고 D는 2011. 4. 19.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인 M과 통화하면서 다시 위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M은 N 법무실장에게 피고 D에게 위 자료를 주라고 지

시하였는데 N은 피고 D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국방부 검찰단이 2011. 3. 4. O 의원으로부터 위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고 같은 달 7.과 17.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위 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 자료 제공을 요청한 때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야 이를 전달받게 되었고, 그나마 제공받은 자료도 피고 D가 요청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추후 위 자료들에 대하여 다시 제공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으므로 피고 D로서는 국방부에서 자료 제공을 지체하거나 거부하여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보도는 국방부의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익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언론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이 사건 제1기사 중 ②, ③번 보도 및 이 사건 제2기사에 관하여

국방부 검찰단의 인원은 39명 정도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각 기사의 핵심 소재인 G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이 모두 국방부 검찰단 소속 전·현직 군 검찰관이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기사에 국방부 검찰단의 현판 및 건물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기사가 수록된 주간조선의 겉표지에는 '軍 검찰 간부 돈 받고 사건 무마'라는 글 아래 국방부 검찰단의 현판에 금이 간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기사 중 군 검찰 및 수사관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다는 부분에 〈국방부 검찰단은 4월 22일 이에 대해 '그런 소문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 2010. 12. 말경부터 2011. 1. 중순경까지 사이에 G에 대한 형사사건이 여러 매체에 보도되었는데, 그 보도 내용에 국방부 검찰단이 G와 F를 수사하고 있다는 점이 적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기사 중 ②, ③번 보도 및 이 사건 제2기사에 있는 '수사를 담당한 군 검찰' 또는 '군 검찰'이라는 표현은 국방부 검찰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방부 검찰단은 그 구성원의 수가 39명에 불과하다는 점,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되기 전 이미 다수의 언론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G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수사를 담당한 군 검찰' 또는 '군 검찰'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1기사 중 ④번 보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제1기사 중 ④번 보도 가운데 〈최근 군 검찰 수사를 받았던 한 군인은 익명을 전제로 "수사를 담당했던 군 검찰의 한 준사관(준위)이 특정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기라고 권했다"고 증언했다.〉는 부분과 〈다른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던 일부 사람들도 특정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준사관들의 이름을 거론했다. "군 검찰·군사법원의 고위층과 잘 통하는 사람이라며 군 검찰 수사관계자가 특정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것이다.〉라는 부분(이하 '준사관 지칭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7호증의 기재, 피고 D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재 군대에서 법무 병과원으로 검찰수사관 업무를 담당하는 준사관(준위)는 육군, 해군, 공군을 모두 합하여 11명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집단의 일부를 지칭하더라도 그 집단의 구성원 숫자가 적고 지칭되지 아니한 일부를 구별할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군 검찰의 한 준사관(준위) 및 특정 변호사를 추천

했던 준사관들'(위 표현은 문맥상 준사관들의 일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라는 표시는 준사관들 내의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될 무렵 검찰수사관 업무를 담당하는 준사관(준위)였던 선정자 L은 위 '군 검찰의 한 준사관(준위) 및 특정 변호사를 추천했던 준사관들'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1기사 중 ④번 보도 가운데 준사관 지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기사 중 ②, ③번 보도와 달리 ④번 보도는 국방부 검찰단이 담당하였던 사건에 한정된 내용이 아닌 점, ② 위 ④번 보도에는 '군 수사기관', '군 검찰 관계자', '군 검찰 간부들'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③ 위 ④번 보도는 국방부 검찰단에 한정하지 않고 군 검찰 전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전체적인 문맥상 독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각 기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한 G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작성되었고 또한 위 기사에 국방부 검찰단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군 검찰과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 간의 비리가 판결로 확인된 첫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일 뿐이고, 위 ④번 보도에 게재된 각종 의혹들을 국방부 검찰단에 한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④번 보도에 적시된 '군 수사기관', '군 검찰 관계자', '군 검찰 간부들'은 국방부 검찰단 뿐만 아니라 군 수사기관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군 사법기관에 소속된 군 법무장교, 준사관 등의 인원은 총 855명(= 군 법무장교 553명 + 군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준사관 등 302명)이고 이 중 군 수사기관인 국방부 검찰단 및 각 군 법무실 검찰부 등에 소속된 인원은 상당한 숫자에 이를 것으로 보이므로, 군 수사기관 전체를 표시하여 이루어진 명예훼손은 그 집단에 속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그 비난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 이르러서는 정도가 희석되어 이들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기사 중 ④번 보도 가운데 준사관 지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보도에 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 여부에 관한 판단

(1) 일반론

(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는데(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참조),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뿐만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기사 중 ②번 보도

이 부분 보도는 뇌물을 수수한 G가 기소된 것과 대비하여 뇌물을 공여한 I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민간 검찰에 알리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그와 동시에 I가 G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I가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민간 검찰에 알리지 않았다고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방부 검찰단이 I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제해 주었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국방부 검찰단의 업무처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제1기사 중 ③번 보도

이 부분 보도도 I로부터 향응을 받은 G 이외의 군 검찰 고위관계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기사는 ③번 보도 부분에 앞서 국방부가 G에 대한 형사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였고, G에게 돈을 준 I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에 바로 이어서 위 ③번 보도가 이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③번 보도의 문맥과 이 사건 제1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면, 위 논평과 동시에 향응을 받은 군 검찰 고위 관계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방부 검찰단의 업무처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③번 보도에 적시된 "B씨(I)로부터 향응을 받은 군 검찰 고위 관계자"를 K라고 보았으나, G를 기소할 당시 K는 민간인이었으므로 국방부 검찰단은 관할권이 없어 K를 기소할 수 없으므로 위 군 검찰 고위관계자는 당시 군인신분을 가지고 있어 기소가능성이 있었던 F를 지칭한다고 보이고, 피고 K를 포함하여 지칭한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부 검찰단은 피고 K를 민간 검찰에 송치하는 방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암시된 사실이 진실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이 사건 제1기사 중 ④번 보도 가운데 준사관 지칭 부분

이 부분 보도는 '수사를 담당했던 군 검찰의 한 준사관(준위)이 특정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기라고 권했다'는 내용과 '군 검찰·군사법원의 고위층과 잘 통하는 사람이라며 군 검찰 수사관계자가 특정 변호사를 소개했

다'는 내용의 진술을 전달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도 바로 앞 부분에 〈군 수사기관 안팎에선 '일부 군 검찰 수사관계자와 장기 복무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 간의 커넥션'을 지적하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중략)… "일부 군 검찰 관계자들이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다" …(중략)…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문맥과 이 사건 제1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이 부분 보도는 군 검찰의 준사관(준위)들이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다는 구체적 사실을 암시하여 검찰수사관 업무를 담당하는 준사관(준위)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으므로, 선정자 L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제2기사 중 문제되는 부분

이 사건 제2기사 중 원고 및 선정자들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G 한 사람이 노트북 3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F, G, K 3인이 노트북 1대씩을 각 받은 것이고, K가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대신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고 F는 조용히 처리되었다'는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전달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점, G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하여 최종 결재권자인 F에게도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의 표명 다음에 이 부분 기사가 나오는 점 등 이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면, 결국 F, K도 업무상 배임 또는 뇌물수수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을 기소하거나 민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동시에 사건관계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전제로, 노트북을 받은 F를 명예퇴직 수당 미지급이라는 내부적인 불이익을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여 조용히 처리하고, K는 수사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민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음으로써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 또는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방부 검찰단의 업무처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플리바게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군 검찰의 사건 처리방식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거나 평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1) 일반론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공익성

이 사건 제1기사 중 ②, ③번 보도와 이 사건 제1기사 중 ④번 보도 가운데 준사관 지칭 부분 및 이 사건 제2기사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군 수사기관 종사자와 군 검찰 출신 변호인간의 부당한 유착관계에 관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국방부 검찰단의 관련자들에 대한 업무처리의 공정성 및 적절성에 관하여 의문 내지 비판을 제기하는 취지의 기사로써 여론의 주요 관심사항에 관한 보도이므로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진실성 내지 상당성

(가) 이 사건 제1기사 중 ②번 보도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3, 9,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방부 검찰단은 G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으므로 G에게 뇌물을 공여한 I에 대하여도 곧바로 민간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보이는 점, ②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은 G와 I가 수사단계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인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G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I를 민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보류하였다고 주장하나, G는 처음에는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하다가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자 점차 혐의를 인정하였고 기소하기 이틀 전인 2011. 1. 10. 제6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며, I도 처음에는 G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뇌물공여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뇌물공여의 일시・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적어도 공판단계에서 G가 자백을 한 이후에는 I를 민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방부 검찰단은 G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열흘 동안 I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야 비로소 I를 민간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보고체계를 중시하는 군의 특성과 당시 공군 시설공사 비리 사건의 처리 때문에 I의 송치 여부에 관하여 신경쓸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판결 확정 시부터 열흘이 지체된 것만으로 I에 대한 처벌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G에 대한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다수 언론매체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된 직후인 2011. 4. 25. 국방부 검찰단은 I를 민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보고만 하였을 뿐 실제 송치는 2011. 5.경에나 이루어졌으며, I를 민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사나 기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에 대한 민간 검찰 송치가 열흘 정도 지체된 것을 두고 I에 대한 처벌의지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I에 대한 처벌의지에 의문을 품는 방식으로 비판하는 것이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재판 종료 후 변협 및 민간 검찰 이첩 여부 별도 보고 예정'이라는 문언에 비추어 I를 민간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는 위 보고서 작성 당시까지도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국방부 검찰단은 위 보고서에서 I에 대한 선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민간인인 I에 대하여 국방부 검찰단이 할 수 있는 선처란 민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처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된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I를 민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기사 중 ②번 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위 보도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수사 협조를 이유로 I에 대한 선처를 고려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비판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보도가 공직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언론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제1기사 중 ③번 보도 및 제2기사 중 문제되는 부분에 관하여

1) 제1기사 중 ③번 보도

갑 제3, 8, 13, 18, 19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2010. 12. 5. 제1회 진술조서 작성시 2009. 1.경 H에 대한 내사사건의 변호인으로 I가 선임되었다는 사정을 알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단장으로 재직할 무렵인 2009.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I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0. 12. 17.자 제2회 진술조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2009. 3.경 G, K와 함께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시고 비용은 I가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K도 2010. 12. 17.자 제1회 진술조서 작성시 2009. 3. 11. F, G와 함께 와인바에서 I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였고, I도 2010. 12. 28.자 제3회 진술조서 작성시 2009. 3. 11. F, K, G와 함께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시고 150만 원 정도를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G도 2011. 1. 4.자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2009. 3. 11. F, K, I와 함께 참치집에서 저녁을 먹고 와인바로 이동하여 와인을 마셨는데 비용 150만 원을 모두 I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F, G, K가 참치집과 와인바에서 I로부터 접대를 받을 당시 F는 검찰단장으로 G의 직속 상관이었으며, G는 I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H에 대한 내사사건의 주임검찰관이었던 사실, 국방부 검찰단은 G에 대하여는 위 참치집과 와인바에서 I로부터 접대받은 부분을 뇌물수수죄로 의율하여 2011. 1. 12. 기소하였으면서도, 같이 접대받은 F에 대하여는 와인바의 2009. 3. 11.자 매출장부에 앞서 본 바와 같이 I가 F, G, K를 접대하였다는 매출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접대받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가사 I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직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는 모순된 판단을 한 사실{그러나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방부 검찰단은 G 뿐만 아니라 F도 I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음에도 F를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 부분 보도 말미에서 'F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주목된다'고만 하여 F의 형사처벌 가능성이나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같은 접대를 받고도 직속 상관이라는 차이만 있는 F를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보도가 공직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언론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설령 이 부분 보도에 적시된 "B씨(I)로부터 향응을 받은 군 검찰 고위 관계자"를 K라고 본다 하더라도, 앞

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고서에 K에 대하여 수사 협조를 이유로 선처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K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K에 대하여 해줄 수 있는 선처는 민간 검찰에 송치하지 않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통보를 하지 않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점, ② I는 2010. 12. 28.자 제3회 진술조서 작성시 500만 원씩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G에게 주면서 K와 나누어 사용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는 2011. 1. 4.자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I로부터 받은 각 500만 원이 든 2개의 봉투 중 1개를 K에게 주면서 I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비록 K가 G로부터 I가 건넨 500만 원을 전달받으면서 돈의 출처나 성격을 알지 못하였다고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K를 위 500만 원에 대한 뇌물수수죄로 의율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국방부 검찰단은 K가 H에 대한 내사 사건의 주임검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전 수수와 직무관련성이 없어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민간 검찰에 이 부분을 이첩하지 않았다고 하나,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바(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 등 참조), K는 위 5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국방부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H에 대한 내사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의 고등검찰부장인 G가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③ 국방부 검찰단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한 K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은 G가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로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국방부 검찰단은 K에 대하여도 민간 검찰에 송치하는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K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통보만 하였을 뿐 민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협력을 이유로 K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다{K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도하여 마치 국방부 검찰단이 K를 직접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기소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기사가 작성되어 있으나, K는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기소할 수 없고, 민간 검찰에 이첩하는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민간 검찰에 이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이 K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2) 제2기사 중 문제되는 부분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4호증의 3, 4,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노트북 3대는 G가 과학수사시스템 구축사업을 용역받은 ○○앤시스(주)의 J 대리로부터 받은 것이기는 하나, F도 이것이 계약외 물품임을 알고 있었으며, K도 위 과학수사시스템 구축사업의 검수에 관여하여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F, K는 위 3대 중 각 1대를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F, G, K가 J로부터 각 1대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G의 업무상 배임 행위 당시 F는 G의 직속 상관으로서 과학시스템구축 사업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 검찰단은 F의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선에서 F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

하였고, K에 대해서도 민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고서에 K에 대하여 수사 협조를 이유로 선처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보도는 진실이거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가 K를 업무상배임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하거나 민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보도가 공직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언론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제1기사 중 ④번 보도 가운데 준사관 지칭 부분에 관하여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피고 D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전직 장교들과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람 등으로부터 준사관들이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다는 진술을 들었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N 법무실장과 군 검찰단 공보관에게 유선 등으로 질의하였으나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F를 인터뷰하면서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관 등 군 내부에서 사건을 소개받아 피고인이나 피의자 가족을 접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기사가 진실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군 검찰의 준사관(준위)는 공직자로서 그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가급적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점, ② 피고 D는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직접 위 보도내용과 같은 제보를 받은 점, ③ 이 사건 보도 직전까지 군 검찰의 고위직을 역임한 사람으로부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관들로부터 사건 소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진술을 들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군 검찰의 준사관들이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다는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보도가 공직자인 위 선정자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언론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기사 중 ①번 보도와 ④번 보도 가운데 준사관 지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가 원고 및 선정자들로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②, ③번 보도와 ④번 보도 가운데 준사관 지칭 부분 및 이 사건 제2기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들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선정자목록 생략

〈별지 2〉 기사 생략

명예훼손 사례 10

국회의원의 역사관이라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임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기사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2012. 6. 1.선고 2012나8354 판결(확정)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2012년 6월 1일 국회의원 A가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 언론사는 한겨레 2008년 12월 29일자 『18년 계속된 '수요시위' 허망하게 끝낼 수 없다』 제목으로 "심지어 뉴라이트 A 의원은 '정신대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였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해서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기고문을 작성한 여성단체 대표 B와 한겨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기고문의 성격상 이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공개할 것이 요청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및 피고 B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사관이라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기사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정도로까지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 B는 20,000,000원, 피고 한겨레신문은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12나8354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A

피고, 항소인 : 1.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2. B

제 1 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7431 판결

변 론 종 결 : 2012. 5. 23.

판 결 선 고 : 2012. 6. 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나라당 소속 제18대 국회의원이었고,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겨레신문'이라고만 한다)는 종합일간지인 '한겨레'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B는 여성단체인 '전국여성연대'의 공동대표이다.

나. 피고 한겨레신문은 2008. 12. 29. '한겨레' 25면의 독자 토론란인 '왜냐면'란에 피고 B가 작성한 〈18년 계속된 '수요시위' 허망하게 끝낼 수 없다〉라는 제목의 별지 기재 기고문(이하 '이 사건 기고문'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다. 당초 피고 B는 2008. 12. 23. 피고 한겨레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i.co.kr)의 '한겨레투고'

란에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사건 기고문과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입력하였고, 2008. 12. 28.경 피고 한겨레신문 소속 여론팀 담당자에게 '한겨레'의 '왜냐면'란에 이 사건 기고문을 게재하는 것을 승낙하여 이 사건 기고문이 같은 날 피고 한겨레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왜냐면'란에 입력되었으며, 2008. 12. 29. 위와 같이 '한겨레'에도 실리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기고문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심지어 뉴라이트 A 의원은 "정신대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였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해서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라는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마. 그 후 피고 한겨레신문은 원고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항의를 받고 2009. 1. 21. '한겨레'에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지난달 29일치 25면 "18년 계속된 '수요시위' 허망하게 끝낼 수 없다" 기고 "정신대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였다"는 발언은 A 의원이 하지 않았습니다. 필자의 착오로 잘못 나갔습니다. A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바. 한편,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피고 B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과 신문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09. 7. 17. 2009고단633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망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2. 17. 2009노848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피고 B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0. 4. 8. 2010도631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고문을 통해 원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관하여 이 사건 기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한겨레'에 게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소외 C가 임의로 '한겨레'에 기고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피고 B와 같은 비전문가에게는 기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의 과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피고 한겨레신문 담당자에게 '한겨레'에 이 사건 기고문을 게재하는 것을 승낙한 점 및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피고 A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에게 최소한 민

사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되는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밖에 원고는 이 사건 기고문 중 '일본 사람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한국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할머니들이 분개했다.' 및 '신문방송법이 통과되어 방송마저 대자본과 보수언론이 장악하면 위안부 문제는 꺼내서는 안 될 치부 거리로 매도될 것이며 할머니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인 매춘을 한 창녀들로 낙인찍힐 것이다'라는 기사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분은 원고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피고 A의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고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이 발언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역사관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공적 인물이고, 피고 B가 단체의 대표이므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일반론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언론이 보도를 함에 있어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21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나) 공익성

이 사건 기고문은 전체적으로 일제시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기사는 국회의원인 원고의 공인으로서의 역사관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진실성 또는 상당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허위의 사실이므로,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자유주의연대'의 대표였고, 뉴라이트 재단의 상임이사였던 점, 원고 등 뉴라이트 인사들이 주도한 '교과서포럼'이 2008. 3. 일제통치 내지 식민지시대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며 식민지시대를 미화한 내용의 대안교과서를 편찬한 점,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고,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인식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근대화로 미화하고 안중근 · 김구 등 대표적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 취급하며 일제 정신대 문제를 자발적 경제활동이었던 것처럼 주장한다는 면에서 역사왜곡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점, 교과서포럼의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인 D 교수가 정신대는 위안부가 아니었고, 위안부는 당사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매춘을 행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이자 교과서포럼의 고문인 E 교수 또한 위와 거의 동일한 주장을 한 점, '자유주의연대'는 2006년 전국을 돌며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 관한 강연을 하였고, 그 내용 또한 위와 같은 역사관과 유사한 점, 원고가 역사관을 해명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시하는 위 근거들은 이 사건 기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사나 취재활동이 아닌 정황적 근거에 불과하거나 그 진실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이 사건 기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D 교수가 그런 말을 하였는데 착각을 일으킨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 한겨레신문은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원고 본인에 대한 확인 등 기초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B가 이 사건 기고문을 작성할 당시 인터넷에는 '정신대는 일제가 강제동원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 주장〈2006년 11월 뉴라이트주도 A 도봉갑 18대〉'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뉴라이트 단체는 어떤 인간들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강릉시지부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었던 것 외에는 원고의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발언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기고문의 성격상 이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공개할 것이 요청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및 피고 B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사관이라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기사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정도로까지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그 위법성이 인정되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고문의 게재 경위와 목적,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작성 동기, 이 사건 기고문에서 이 사건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 사실 확인을 위한 피고들의 노력 정도, 이 사건 기고문을 게재한 후 보인 피고들의 태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 피고 한겨레신문이 언론기관으로서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과 영향력,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B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피고 한겨레신문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8. 12. 29.부터 피고 A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2.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한겨레신문은 피고 B와 각자 위 금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8. 12. 29.부터 피고 한겨레신문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2.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기사 생략

명예훼손 사례 11

취재기자가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보도 이후 원고가 사기죄로 기소된 점, 타 언론사에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가합65346 판결(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2012년 6월 8일 A 및 B(주)가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화방송은 2011년 6월 25일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사인 원고 회사와 회사의 대표인 원고 A가 경전철 청평역 부근 호명산에 위치한 임야를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소개하여 분양하였으나, 알고 보니 분양자들이 구매한 땅은 현장에서 소개받은 땅이 아닌 개발할 수 없는 산 정상 부근의 엉뚱한 땅으로 이로 인한 피해가 수십억 원에 달해 원고들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보도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에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보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보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수사과정과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야 보도시점에서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보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상당성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C는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 A를 고소한 측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평군청 공무원, 인근 부동산중개업자 및 원고 회사의 관계자를 취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 지적도, 가평군수의 사전심사처리 결과통지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원고 A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수사 내용을 문의하여 사기죄로 기소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현장인 이 사건 임야에도 가 보았던 점, 이 사건 보도 이후인 2011. 6. 30. 원고 A가 사기죄로 기소된 점, 피고들 이외에도 연합뉴스, 경인일보 등에서 그 무렵 이 사건 보도내용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 결 문

사　　건 : 2011가합65346 손해배상

원　　고 : 1. A

2. B 주식회사

피　　고 : 1. C

2. 주식회사 문화방송

변 론 종 결 : 2012. 4. 27.

판 결 선 고 : 2012. 6. 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매매, 개발 및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분할한 후 분양희망자들에게 분양하여 매매차익을 취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이고, 원고 A는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고 한다)은 "MBC 뉴스데스크"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는 공중파 방송사이고, 피고 C는 피고 문화방송의 소속 기자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 매입, 분할 및 분양

1) 원고 A는 2008. 1. 22.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산7 임야 86,479㎡[26,159평(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15억 원(평당 57,341원)에 매입한 후 107필지로 분할하였다.

2) 원고 A는 2008년 5월경부터 분할된 각 임야를 원고 회사에게 분양 대행을 의뢰하여 140여 명에게 평당 20만 원 내지 40만 원 상당에 분양하였는데, 분양대금 매출 합계가 약 70억 원 상당이 되었다.

다. 피고 문화방송의 이 사건 보도

피고 문화방송은 2011. 6. 25. 20:00경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피고 C가 위 나.항에 관하여 취재한 별지 보도내용 기재와 같은 방송을 『“사고 보니 엉뚱한 땅”-부동산 사기 기승』이라는 제목으로 약 2분 49초간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취재 경위

1) D, E는 피고 문화방송의 경기 북부 담당기자에게 ‘피해자 50여 명이 기획부동산업체에 속아서 경기도 가평군 일대의 땅을 잘못 사서 수천만 원에서 1, 2억 원까지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이 기획부동산업자들을 의정부지검에 고소하여 현재 수사 중’이라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고, 피고 C는 2011년 5월경 경기 북부 담당기자가 되면서 위 제보내용을 전달받았다.

2) 피고 C는 2011. 6. 17.경 제보자 D를 직접 만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그 때부터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 지적도, 가평군수의 사전심사처리결과통지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들을 교부받았다.

3) 피고 C는 2011. 6. 20. E 등에게 전화하여 추가 취재를 하였고, 2011. 6. 21. 가평군청 개발민원 담당 공무원인 F, G에게 전화하여 D로부터 교부받은 사전심사청구서 처리결과회신(을 제11호증)이 이 사건 분할된 임야에 관하여 가평군청에서 발송한 공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날 수 없고 이 사건 임야 중 도로 모양으로 난 토지 부분에 도로개설계획이 없으며 인근 지역에 하천개발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4) 피고 C는 2011. 6. 22. 원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H 및 제보자들 등과 함께 이 사건 임야가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위 임야를 둘러보고 현장 촬영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어 가평군청을 방문하여 개발민원 담당 공무원인 F를 인터뷰하면서 종전 전화통화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위 피고는 가평군청 인근 부동산업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임야의 시세를 확인하고 녹취하였다.

5) 당시 원고 A는 이 사건 보도내용과 같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 C는 2011. 6. 21.경부터 6. 24.경까지 의정부지방검찰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위 원고에 대한 수사 내용을 확인하였고 검찰 측에서 위 원고를 곧 기소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6) 피고 C는 2011. 6. 23. 원고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무인 I를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2011. 6. 25. I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원고 회사측의 해명을 들었다.

마. 원고 A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원고 A는 수사를 받으면서 위 사기 혐의 사실을 부인하여 왔으나, 2011. 6. 30.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1927호로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바. 수분양자들 28명의 민사소송 제기 및 소 취하

이 사건 분할된 각 임야를 분양받은 자들 28명은 원고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3238호로

위 원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각 분양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수분양자들은 2012. 2. 28.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 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다만,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내지 5, 갑 제10호증의 6의 경우 각 일부 기재), 피고 C의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임야는 호명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것이 아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할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분할된 각 임야의 위치를 속인 적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임야 분양 당시 위 임야 부근에 경전철 청평역이 공사 중이었고 현재 개통되었는바, 이 사건 임야 부근은 조금씩 개발되어 가고 있어 이 사건 임야도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수분양자들 역시 그 투자가치를 보고 분양을 받았으며, 원고들은 위 각 분양을 통하여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일부 수분양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기초하여 원고들이 분양 당시 산 정상 부근인 이 사건 임야가 아니라 경사가 완만하고 평평한 다른 땅을 보여주었고, 이 사건 임야가 장차 개발되거나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분양하여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보도를 하였는바, 위 보도내용은 허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허위보도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보도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명예훼손 여부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

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보도내용의 요지는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해서 경전철 청평역 부근 호명산에 위치한 임야를 샀는데 알고 보니 현장에서 소개받은 땅이 아닌 산 정상 부근의 엉뚱한 땅이었고, 위 임야는 도로가 없고 심하게 경사가 져 개발할 수 없는 땅이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수십억 원이고 해당 부동산업체는 40억 원 가까이 벌었는바, 위 부동산업체는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이 위 부동산업체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보도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내지 5, 갑 제10호증의 6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200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3호증의 8, 10, 갑 제4호증의 4,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 5,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8 내지 12,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다만,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6의 경우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야는 호명산 자락에 있어 분양 당시인 2008년 5월경부터 7월경 사이에는 수목이 우거져서 지적도 등의 자료만으로는 분할된 각 임야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힘든 점, 관련 민 · 형사사건에서 일부 수분양자들 및 원고 회사의 종전 직원들은, 당시 원고 회사측에서 분양대상에 관하여 산 아랫부분 평평한 지역으로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산 윗부분이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호명산 정상은 해발 632미터인데 이 사건 임야는 해발 약 150미터 내지 약 475미터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분할된 임야 중 높은 부분은 산 정상 부근으로 볼 수 있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가평군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야의 평균경사도는 30.19도인 점, 2011년 1월경 일부 수분양자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하여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사전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개발행위 및 건축물 진출입을 위한 도로가 미확보되어 있고,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및 경관 등의 저해가 우려되며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점, 피고 C는 취재하면서 일부 수분양자들로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부근의 개발과 관련하여 경전철 복선화 이외에도 청평역 건너편에 체육공원이 건립되고 인근 하천인 조종천에 다리가 놓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체육공원 건립 계획은 이 사건 임야 분양 이전인 2006. 12. 18. 이미 취소되었고 조종천에 다리를 놓으려는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던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수분양자들이 당해 부동산 위에 건물 신축 등 구체적인 계획하에 분양받는 실수요 목적이 아니라, 당장은 개발이 안되더라도 일정한 기간 경과 후 개발 등을 예상하여 이를 매수한 후 지가가 상승하면 이를 처분하여 양도차익을 남기는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평균경사도 등 개발가능성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위치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원래의 위치보다 낮은 곳에 있는 평평한 땅이라며 개발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소개하였고, 이 사건 임야 부근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 자체가 개발될 수 없는 곳이라면 그 지가가 상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임야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 개발될 가능성도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으로 보이고(매매 당시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난 현재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지가 상승의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 당시

이 사건 임야의 평당 공시지가는 20,495원 내지 22,115원이었는바 평당 3만 원이 안 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평당 20만 원 내지 40만 원인 분양대금은 거의 10배 값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1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분할된 각 임야의 분양대금 매출 합계가 약 70억 원 상당이었는바, 외관상 원고들이 취득한 이익은 40억 원 이상인 점(다만, 공소장에는 피해자 58명으로부터 2,613,884,8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 A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보도 당시 검찰에서 원고 A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 산 중간 경사도에 위치한 산이고, 관련 민, 형사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면서 산 정상에 위치한 토지를 최저점에 위치한 것인 양 기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산의 중간 경사도에 위치한 토지를 최저점에 위치한 것인 양 속였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산 정상 부근의 임야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 보도의 핵심은 이 사건 임야가 현장에서 소개받은 임야와 달리 그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고 심하게 경사져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된 임야 중 높은 부분은 산 정상 부근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가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다만,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의 제목에서 '부동산 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보도내용에서도 수분양자들이 매수한 임야는 현장에서 소개받은 땅이 아닌 산 정상 부근의 엉뚱한 땅으로서 심하게 경사가 져 개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수십억 원이고 해당 부동산업체는 40억 원 가까이 벌었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나. 위법성조각 여부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도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에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보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

되어야 하지만, 보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수사과정과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야 보도시점에서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보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상당성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는 원고들과 같은 기획부동산업체가 임야를 매입하여 분할한 후 분양하였는데 현장에서 보여준 땅과 위치가 다르고 현재로서는 개발되기도 어려운 땅이어서 사기 분양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에 관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3) 또한 이 사건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는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 A를 고소한 측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평군청 공무원, 인근 부동산중개업자 및 원고 회사의 관계자를 취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 지적도, 가평군수의 사전심사처리결과통지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원고 A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수사 내용을 문의하여 사기죄로 기소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현장인 이 사건 임야에도 가 보았던 점, 이 사건 보도 이후인 2011. 6. 30. 원고 A가 사기죄로 기소된 점, 피고들 이외에도 연합뉴스, 경인일보 등에서 그 무렵 이 사건 보도내용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보도내용 생략

명예훼손 사례 12

특별히 신속성이 요구되지 않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별도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익명의 취재원의 말을 믿고 '원고가 카바 수술 관련 부작용으로 병원과 마찰을 빚어 사직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그대로 기사화하였으므로 정정보도하고 손해배상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19.선고 2009가합1574 판결(확정)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2012년 7월 19일 흉부외과 의사인 A가 주식회사 코리아메디케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코메디닷컴 2008년 11월 11일자 『'200억 기부' 심장수술 명의가 '왕따'된 까닭?』, 12월 1일자 『'흉부외과 스타' A, 절차 무시하고 임상시험?』, 12월 24일자 『수술명의는 수술 불필요한 환자도 수술하나요?』, 11월 17일자 『'스타의사' A 200억 기부?…'글쎄?'』, 11월 20일자 『수술법 개발, '佛도둑' – '韓 명의' 이렇게 달랐다』 제목으로 심장판막수술에 있어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일명 CARVAR, 이하 '카바수술'이라 한다)을 개발한 원고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다섯 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가 서울○○병원에서 카바 수술과 관련한 사고가 잦아 병원 측과 마찰을 빚었으며, 이를 제재하려는 병원에 반발해 2007년 여름에 사표를 냈다'는 보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카바 수술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심층적인 취재를 해왔는데 원고의 사직경위와 관련하여 익명의 취재원의 말을 듣고는 이를 원고 혹은 서울○○병원에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히 신속성이 요구되지 않는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별도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 익명의 취재원의 말을 믿고 위 허위 사실을 그대로 기사화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허위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며, "이 부분에 관하여 정정보도하고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과학적 이론은 언제나 정당한 것이거나 증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학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므로 불확실성은 과학의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특성이다. 이렇듯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연구를 다루는 언론으로서는 과학의 불확실성을 확신하고 그 과학적 연구의 가정과 전제를 잘 살펴서 신중한 자세로 보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과학수준이나 연구 성과에 의하여 논쟁적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어느 쪽으로든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음이 분명하고, 아직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학계에서 일반적·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 언론이 논쟁적인 주

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그 과학적 연구의 한계나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관한 언급 없이 그 과학적 연구에서 주장된 바를 과학적 사실로서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면 그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정정보도를 청구한 내용 중 ① '원고가 카바 수술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구인 특수원형고리형태의 카바링이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채 환자들에게 시술되고 있다', ② '원고의 카바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하거나 다른 심장 관련 질병이 발생하였다', ③ '원고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상시험이나 수술을 하였다', ④ '원고의 카바 수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으나 이를 반박하는 원고의 주장을 비중 있게 싣는 등 독자들로서는 보도의 내용이 논쟁적이고 과학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고, 피고가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에 관하여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년 3월 13일 항소를 취하하였다.

판 결 문

사　　건 : 2009가합1574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원　　고 : A

피　　고 : 주식회사 코리아메디케어

변 론 종 결 : 2012. 6. 14.

판 결 선 고 : 2012. 7. 19.

주　　문

1.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피고가 발행하는 코메디닷컴 인터넷 사이트 http://www.kormedi.com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7일간 게재하되, 메인 화면 중앙 상단에 통상의 기사 제목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통상의 기사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와 줄 간격으로 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별지 2. 정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라.

나.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1.부터 2012. 7.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피고가 발행하는 코메디닷컴 인터넷 사이트 http://www.kormedi.com에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7일간 게재하되, 메인 화면 중앙 상단에 통상의 기사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통상의 기사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표시하게 하며, 그 이후에는 정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라.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교수로서 심장판막수술에 있어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일명 CARVAR 수술, 이하 '카바 수술'이라 한다)을 개발한 자이다.

나. 피고는 의료부문에 대한 기사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인터넷 언론매체로서 2008. 11.경부터 원고 및 원고가 개발한 카바 수술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다음과 같은 일시에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 www.kormedi.com에 게재하였다.

1) 2008. 11. 11.자 "'200억 기부' 심장수술 명의가 '왕따'된 까닭?"

2) 2008. 12. 1.자 "'흉부외과 스타' A, 절차 무시하고 임상시험?"

3) 2008. 12. 24.자 "수술명의는 수술 불필요한 환자도 수술하나요?"

4) 2008. 11. 17.자 "'스타의사' A 200억 기부? …'글쎄?'"

5) 2008. 11. 20.자 "수술법 개발, '佛 도둑' – '韓 명의' 이렇게 달랐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2.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08. 11. 11.자 기사 중 동물실험과 관련된 보도 내용

가) 피고는 원고의 카바 수술의 안전성에 대하여 의학계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의학계에서 원고가 카바 수술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구인 특수원형고리형태의 카바링이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채 환자들에게 시술되고 있어 모르모트식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카바링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동물에게 이식하는 실험을 하였으므로 "사실확인결과 A 교수는 동물실험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한다.

2) 2008. 11. 11.자 기사 중 카바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자의 심장기능이 떨어지거나 사망한 환자가

있다는 보도 내용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 중 1명이 심장 기능이 떨어져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익명의 흉부외과 의사가 "카바 수술과 관련해 2명이 숨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여 마치 원고의 카바 수술의 부작용으로 1명의 환자의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2명의 환자가 숨진 것처럼 보도하였다.

나) 그러나 카바 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사망한 환자는 없으므로 "사실확인결과 위 보도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한다.

3) 2008. 11. 11.자 기사 중 원고의 서울○○병원 사직경위와 관련된 보도 내용

가) 피고는 원고가 서울○○병원에서 카바 수술을 계속하다 사고가 잦아 병원 측과 마찰을 빚었으며 이를 제재하려는 병원에 반발해 2007년 여름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좋은 조건을 제시받고 서울○○병원을 그만둔 것일 뿐 이는 카바 수술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사실확인결과 A 교수의 사직은 CARVAR 수술의 안정성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한다.

4) 2008. 12. 1.자 기사 중 원고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상시험이나 수술을 하였다는 보도 내용

가) 피고는 원고가 카바링에 대한 서울○○병원 IRB 심사 및 식품의약안전청의 임상시험 허가를 받기 전부터 카바링을 사용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였다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바 수술을 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카바링을 사용하여 카바 수술을 하기 전에 서울○○병원 IRB 심사 및 식품의약안전청의 임상시험 허가를 모두 받았으므로 "사실확인결과 A 교수는 절차를 무시하고 임상시험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한다.

5) 2008. 12. 24.자 기사 중 원고의 카바 수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였다는 보도내용

가) 피고는 선천성 심장병을 가졌지만 10㎞ 마라톤까지 완주할 정도로 건강하였던 20대 남성 E씨가 원고로부터 카바 수술을 받고 40일만에 사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나) 그러나 위 환자는 원고의 카바 수술의 부작용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확인결과 위 보도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2011. 11. 11.자 기사 중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식품의약안전청에 대하여 한 2009. 7. 16.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카바 수술에 사용되는 카바링과 관련하여 동물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환경인 대동맥 혈관 내에 카바링을 이식한 후, 발열성시험, 아급성 독성시험, 감작성 시험, 가스잔류량 시험, 무균시험, 세포독성 시험, 피내반응 시험, 급성독성시험, 이식시험 등을 거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카바링을 동물의 대동맥 판막에 치환, 시술하는 형태의 동물실험을 거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을 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2, 을 제10호증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08. 11. 6. 개최된 대한흉부외과학회 제40

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제주△△병원 흉부외과 교수인 소외 B는 카바링과 같은 장치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카바 수술과 같은 경우 큰 동물을 대상으로 직접 동일한 수술을 한 후 이를 장기간 관찰한 결과를 기록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자료가 없다는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그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단순히 동물실험을 거친 적이 있으나 특허 문제로 그 자료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는 대답만을 한 사실, 이에 반해 원고와 유사한 수술법을 개발하고 있던 프랑스의 소외 C 교수는 자신의 동물실험 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던 사실, 의료계 내에서도 원고가 거친 동물실험만으로 카바 수술이 안전하고 유효한 동물실험을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당시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과학적 이론은 언제나 정당한 것이거나 증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학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므로 불확실성은 과학의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특성이다. 이렇듯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연구를 다루는 언론으로서는 과학의 불확실성을 확신하고 그 과학적 연구의 가정과 전제를 잘 살펴서 신중한 자세로 보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과학수준이나 연구 성과에 의하여 논쟁적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어느 쪽으로든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음이 분명하고, 아직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학계에서 일반적 ·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 언론이 논쟁적인 주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그 과학적 연구의 한계나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관한 언급 없이 그 과학적 연구에서 주장된 바를 과학적 사실로서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면 그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카바 수술이 안전하고 적절한 동물실험을 거쳤는지 여부는 논쟁적인 과학적 사실로서 그 진위가 어느 쪽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동물실험을 거쳤는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가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면 이는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다른 한편, 이 사건 카바 수술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 수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전문적인 의료계 내의 논란으로만 머물게 되어, 막상 국민 개개인이 카바 수술을 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을 할 때에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론의 활발한 논쟁을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충분한 정보에 기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다. 그런데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을 일반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에 있어 다소 과장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및 그에 따라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에 비추어 보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논쟁적인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 중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여도, 그 기사의 다른 기재 내용 등을 전체적 ·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당해 기사에 그에 반대되는 견해도 기재되어 있어 그 기사를 읽는 독자로서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⑸ 피고의 2011. 11. 11.자 기사 중 동물실험에 관한 보도내용을 보건대, 피고는 일부 의학자들, 특히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의학자들이 원고의 카바 수술과 관련하여 동물실험도 거치지 않은 채 시행되어 모르모트식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가감 없이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같은 기사에서 원고가 동물실험결과는 특허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내용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비록 원고가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부 의학자들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형식으로 기재하였고, 곧이어 이에 대한 원고의 반박 내용을 소개하였으므로, 이런 점들에 비추어보면 위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서는 카바 수술과 관련하여 적절한 동물실험이 시행되었는지에 관하여 논쟁적이고 과학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달리 피고가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에 관하여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⑹ 따라서 비록 피고가 카바 수술에 있어 요구되는 동물실험의 정도에 대한 의료계의 논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모르모트식 수술'과 같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썼다 하여도 이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표현으로 이것만을 이유로 위 기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2) 2008. 11. 11.자 기사 중 카바 수술 후 환자의 사망 등 부작용과 관련한 보도내용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2008. 11. 11.자 기사에서 "취재 결과 A 교수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 중 1명이 심장기능이 떨어져 이식을 기다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흉부외과 의사는 '카바 수술과 관련해 2명이 숨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하였는데, 같은 일자 기사에서 곧이어 '혈관이 좁아지는 것은 카바 수술의 직접적 부작용이 아니며 최근 추가 연구를 통해 해결하였고 카바 수술로 인한 사망사고는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함께 보도하였다.

⑵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 2008년 보고서, □□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2007. 10.경부터 2008. 6.경까지 카바 수술 대상 환자 101명 중 3명이 사망하였고, 4명의 경우 관상동맥협착증이, 2명의 경우 심내막염이 발병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결과들이 카바 수술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⑶ 식품의약안전청은 2006. 11. 21. 카바링에 대한 임상시험을 허가하였는데, 2009. 3. 25. 개최한 의료기기위원회에서는 □□대병원에서 카바 수술 후 보고된 부작용 20건이 카바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카바링)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⑷ □□대학교에서 원고가 시술한 카바 수술에 관한 부작용 보고는 16건 있었는데, □□대학교 병원 조사결과 그 중 6명은 재수술을 받아 완쾌하였거나 건강에 큰 지장이 없는 부작용이고, 나머지 경우도 카바 수술과 무관한 부작용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나아가 카바 수술이 기존의 판막치환술보다 수술 후 사망률이 더 낮다고 평가하였다.

⑸ 그러나 2009년 유럽흉부외과학회지(European Journal of Cardio-thoracic Surgery)에는 카바 수

술 후 일부 환자가 사망하거나 관상동맥협착증이 발생한 것은 카바 수술을 할 때에 삽입하는 카바링의 면역반응에 의한 섬유화가 원인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문이 제출되었다.

⑹ 또한, 카바 수술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카바 수술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이견이 있어 "동 시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므로 3년 후에 검증과정을 거쳐 요양급여여부를 재평가하는 조건으로 비급여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였다.

⑺ 이에 2009. 6. 15. 시행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9호는 카바 수술을 조건부 비급여로 최종 결정, 고시하였다.

⑻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CARVAR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무위원회는 한국보건의료원이 서울○○병원 및 □□대학교병원에서 카바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2010. 2. 17. 제7차 회의를 열고 CARVAR 수술 후 발생한 26례의 심각한 유해사례 보고에 대하여 중대한 이상반응과 사망률이 기존 시술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유해성에 대한 최종 판단까지 시술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안전청, □□대학교병원, □□대학교 심장혈관내과 D 교수에 대하여 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카바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하거나 다른 심장 관련 질병이 발생한 것은 의료계 내에서 큰 이견이 없으나, 그 원인이 카바 수술에 고유한 부작용 때문인지에 관하여는 의료계에서도 논쟁적인 주제로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되지 못한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⑵ 특히,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원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일 뿐 그 재수술의 원인이 원고의 카바 수술에 있다고 한 것이 아니며, 카바 수술의 부작용과 사망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의사의 진술을 인용한 것으로 이와 같은 비중으로 원고의 주장 내용을 함께 보도한 점 등 위 기사의 전체적인 문맥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는 카바 수술의 안전성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의료계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고 논쟁적이라는 점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가 단정적으로 카바 수술이 안전하지 않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의 보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2011. 11. 11.자 기사 중 원고의 서울○○병원 사직 경위에 관한 보도내용

가)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 11월경 원고가 당시 재직 중이던 서울○○병원에서의 이직을 결심하고 ◇◇대학교병원 E 교수, ◉◉의료원 G 교수, ■■대학교 H 교수, ▣▣대학병원 I 교수에게 앞으로 1~2년 후에 서울○○병원을 퇴직하고 새로운 병원에서 일하려는 계획을 전달한 사실, 그 후 2006년경 원고는 서울○○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병원 측의 만류로 사직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고 2007년 여름경 서울○○병원을 사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가 서울ㅇㅇ병원에서 카바 수술과 관련한 사고가 잦아 병원 측과 마찰을 빚었으며, 이를 제재하려는 병원에 반발해 2007년 여름에 사표를 냈다는 사실은 허위인 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4) 2008. 12. 1.자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식품의약안전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유럽흉부외과학회지 2006년 4월호에 발표한 '대동맥 판막 성형술의 새 테크닉'이라는 논문에서 카바 수술을 1997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6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그런데 위 카바 수술에 사용되는 카바링에 대한 식품의약안전청의 임상시험 계획승인은 2004. 11. 22.경에 이루어진 사실, 서울ㅇㅇ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에서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위 카바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하고, 원고는 2006. 7. 19. 서울ㅇㅇ병원에 위 카바링에 대한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최종승인은 2006. 7. 24.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위 논문내용을 인용한 다음, 원고가 임상시험 중간에 서울ㅇㅇ병원의 IRB 심사를, 임상시험 막바지에 식품의약안전청의 임상시험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식품의약안전청의 2004. 11. 22.의 임상시험 계획승인이나 서울ㅇㅇ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의 대상이 된 의료기기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막성형기구인 카바링에 관한 것인데, 원고는 2004년 11월 이전에는 이 판막성형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헤마실드와 테프론펠트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링을 만들어 수술을 하여 왔고, 이는 이미 식품의약 안정청의 허가를 받은 재료로서 이것을 사용하는 데에는 별도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카바링에 대한 서울ㅇㅇ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최종승인을 얻기 위하여 원고가 원래의 연구계획서에 명시하였던 피험자 수인 20명을 초과한 40명을 모집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피험자 수를 초과한 사람에게 임상시험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서울ㅇㅇ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 스스로 논문에서 카바 수술을 1997년부터 실시하였다고 기재하여 마치 그때부터 원고가 개발하여 이후 식품의약안전청 등의 승인을 받은 카바링을 이용하여 시술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5) 2008. 12. 24.자 기사와 관련한 정정보도 청구

가) 선천성 심장병을 앓던 소외 J(위 기사에서의 'E씨')이라는 20대 남성의 환자가 원고의 카바 수술을 받은 후 2008. 10. 14.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환자의 사망원인은 카바 수술의 부작용이 아니라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폐렴이므로 마치 위 환자가 카바 수술의 부작용으로 사망하였다는 듯이 보도한 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기사에서는 E씨가 원고의 카바 수술을 받고 40일 후에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사망의 원인이 카바 수술에 고유한 원인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큰 수술에 일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 때문인지에 관하여는 기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위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및 흐름을 살펴보면 이는 원고가

기존 판막치환술에 따르면 수술을 하지 않을 환자들에 대하여도 카바 수술을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인바, 피고는 일반적으로 큰 수술을 할 경우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 기초하여 원고가 권유하는 바와 같이 수술을 조기에 실시할 경우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그러한 수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조기 수술 권유를 비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원고의 수술을 받은 후 불상의 원인에 기해 사망한 위 E씨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 E씨가 카바 수술의 부작용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2008. 11. 11.자 기사 중 원고의 서울ㅇㅇ병원 사직경위에 관한 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보도로서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나머지 정정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그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위 나머지 기사들에 대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정정보도 청구 대상 중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인정된 기사에 관한 판단

1) ① 2008. 11. 11.자 기사 중 원고가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고 카바 수술을 하였다는 보도내용, ② 2008. 11. 11.자 기사 중 원고의 카바 수술과 관련하여 환자들이 사망하거나 심장기능이 떨어졌다는 보도내용, ③ 2008. 12. 1.자 기사 및 ④ 2008. 12. 24.자 기사는 모두 원고가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적법한 안정성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종 수술기법인 카바 수술을 환자들에게 시술하여 환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인바, 이는 원고가 환자의 생명을 도외시한 채 자신의 수술기법의 발전만을 위해 힘쓰는 의사인 것처럼 묘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도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2008. 11. 11.자 기사 중 원고가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고 카바 수술을 하였다는 보도내용, ② 2008. 11. 11.자 기사 중 원고의 카바 수술과 관련하여 환자들이 사망하거나 심장기능이 떨어

졌다는 보도내용, ③ 2008. 12. 1.자 기사 및 ④ 2008. 12. 24.자 기사의 경우는 비록 그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이거나 그 보도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4) 그런데 피고의 위 각 보도내용은 모두 원고의 카바 수술의 안전성 혹은 카바 수술이 사람에게 시술되는 데에 있어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서, 좁게는 심장 판막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넓게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각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정정보도 청구 대상 중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인정된 기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2008. 11. 11.자 기사 중 원고의 서울ㅇㅇ병원 사직경위와 관련한 보도내용은 원고가 카바 수술과 관련하여 서울ㅇㅇ병원과 마찰을 빚어 사직하게 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은 원고가 서울ㅇㅇ병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못한 수술을 강행하다 사직에 이르렀다는 내용이므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인바,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도내용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도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카바 수술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심층적인 취재를 해왔는데 원고의 사직경위와 관련하여 익명의 취재원의 말을 듣고는 이를 원고 혹은 서울ㅇㅇ병원에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히 신속성이 요구되지 않는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별도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 익명의 취재원의 말을 믿고 위 허위 사실을 그대로 기사화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허위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2008. 11. 17.자 기사에 관한 판단

1) 기사내용 및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8. 11. 17.자로 제목 "'스타의사' A 200억 기부? … '글쎄?'"로 된 기사를 게재하면서 ① 원고가 2007. 12. 7.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이 만든 의료기기에 대하여 전 세계에서 수출 문의가 폭주한다고 밝혔지만 2008년 11월 현재 수출액이 전무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② 원고가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점과 관련하여 이는 원고가 카바 수술 안전성 논란이나 건강보험 적용신청과 관련하여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기사를 보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2007. 12. 7.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전 세계에서 '수출' 문의가 아닌 '수술' 문의가 폭주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를 고의적으로 왜곡하여서 원고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포장하였

고, ② 원고의 재산 기부 목적에 관하여도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07. 12. 7.자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에서는 '원고가 제조한 제품으로 수술하고 싶다는 요청이…전 세계에서 폭주했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전 세계에서 수출 문의가 폭주했다고 밝혔다'라는 기사는 위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내용과 그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나, 한편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내용 중 '그의 제품은 국내외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미국 · 유럽 · 일본 등 전 세계에서 특허도 받았다.'라는 기사에 이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의 전체 문맥과 기사 내용을 종합하면, 위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는 원고의 새로운 수술법뿐 아니라 그 수술에 필요한 원고의 제품의 우수성과 세계적 인지도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피고가 수술이 아닌 제품의 수출 문의라고 인용하였다 하여도 사소한 불일치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과 현재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적시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가 재산을 기부한 의사가 어떤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보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의 재산 기부가 원고의 카바 수술에 대한 언론에서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카바 수술의 보험 적용을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적시한 후, 위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재산 기부가 순수하지 않은 의도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의 재산기부의 의도가 의심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와 같이 보는 근거 즉,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까지 따로 밝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표명한 의견 부분은 이른바 순수의견에 해당하여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따로 밝히고 있는 의견의 기초가 되고 있는 사실, 즉 '원고가 카바 수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카바 수술의 보험 적용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재산 기부를 하였다는 사실'은 그 속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기사 부분은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2008. 11. 20.자 기사에 관한 판단

1) 기사 내용 및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2008. 11. 20.자에 제목 "수술법 개발, '佛 도둑'-'韓 명의' 이렇게 달랐다."로 된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와 유사한 수술기법을 개발하고 있는 프랑스의 C 박사의 경우를 소개하면서, 원고는 특허권을 이유로 수술과 관련한 자료의 검증을 피하고 있는 데에 반해 C 박사는 동료 학자에 의한 검증 절차를 공개적으로 거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① 원고를 '청기와 장수'라고 지칭하고, ② C 박사가 졸지에 '도둑의사'로 몰렸다고 표현하였으며, ③ 원고가 "'해외 의사가 내 기술을 도용하고 있으며 특허 문제 때문에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청기와 장수란 자신의 기술을 남에게 전수하지 않고 독점하면서 이를 통해 부를 쌓는 행태를 지칭하는 말인데 원고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청기와 장수라는 표현에 전제되어 있는 사실에 의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② 원고가 C 박사를 도둑으로 몬다거나, C 박사가 원고의 기술을 도용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도하여 마치 원고가 C 박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청기와 장수'라는 표현에 관한 판단

⑴ '청기와 장수'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익을 혼자 차지할 생각으로 남에게 그 기술을 알려주지 아니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다.

⑵ 그런데 피고가 작성한 위 기사에서는 원고가 C 박사에 비해 자신의 수술법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허권을 이유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을 적시한 후, 이와 같은 원고의 행동은 새로운 기술인 카바 수술에 관한 자료를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청기와 장수'와 같다고 보도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를 청기와 장수라고 표현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까지 따로 밝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표현은 순수의견에 해당하여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⑶ 한편 피고가 따로 밝히고 있는 의견의 기초가 되고 있는 사실 즉, '원고가 C 박사와는 달리 제3자의 검증을 받고 있지 않고, 동물실험과 지난 10여 년 간의 수술 데이터 공개를 미루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실만으로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고, 설사 위 사실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 하여도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⑷ 한편 순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그런데, '청기와 장수'라는 표현이 피고에게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부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였다고 보도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위 기사 제목에 '佛-도둑'이라고 기재하고, C 박사가 원고에 의해 졸지에 '도둑 의사'로 몰렸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의 '해외 의사가 내 기술을 도용하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기재하면서, 이를 토대로 C 박사가 원고에 의해 도둑으로 몰렸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가 C 박사를 도둑으로 몰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까지 따로 밝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표현도 순수의견에 해당하여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은 표현에 원고가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므로(오히려 C 박사를 '도둑'이라고 표현한 것은 C 박사가 카바 수술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사실이 전제된 것이라 하겠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한편 원고가 "'해외 의사가 내 기술을 도용하고 있으며 특허 문제 때문에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고 주장했지만 이는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보건대, 위 기사는 C 박사는 특허 문제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고 있는 데에 반해 원고는 특허를 이유로 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내용인바, 그와 같은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취지에 비추어보면, 위 문장에서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은 '해외 의사가 원고의 기술을 도용하고 있는 점'에 관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아니라 '특허 문제 때문에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보도로 인해 마치 원고가 C 박사에 대하여 부당히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비쳤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자료의 액수

1) 결국 피고의 기사 중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기사는 2008. 11. 11.자 기사 중 원고의 서울ㅇㅇ병원 사직경위를 허위로 보도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이러한 명예훼손에 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의료 부문에 대한 보도만 하는 인터넷 신문에 불과하여 일반 대중에 대하여 그 영향력이 넓다고 볼 수 없는 점, 명예훼손이 인정된 부분은 전체적인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봤을 때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는 점, 당시 다른 언론매체에서 원고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도 상당히 게재되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원고가 적절히 반론할 기회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데에 대한 위자료로서 2,000,000원을,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기사가 게재된 날인 2008.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7.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11월 11일에 "200억 기부 심장수술 명의가 왕따된 까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신문은 이 기사에서 A 교수가 서울ㅇㅇ병원에서 CARVAR 수술과 관련하여 사고가 잦아 병원과 마찰을 빚어 사표를 낸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만, 사실확인결과 A 교수의 사직은 CARVAR 수술의 안정성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위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별지 2〉 기사 생략

〈별지 3〉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명예훼손 사례 13

국회의원인 원고의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해 감시 · 비판 · 견제의 의도에서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발언 내용을 심하게 왜곡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이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하라.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2. 8. 10. 선고 2011나3469 판결

사실개요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는 2012년 8월 10일 전 국회의원 A가 주식회사 매일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번복,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2010년 대구시 ·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대구 · 경북이 이 나라 민주화의 요람인데, 대구 · 경북이 보수세력의 총본산이라거나, 심지어는 폄하하는 용어로 수구 꼴통 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는 매일신문 2010년 10월 15일자 『"대구경북은 보수 꼴통 도시" 수차례 매도, A · B 의원 사과하라』는 제목과 「시 · 도 교육청 국감, 공식석상서 막말」, 「"상식 이하 발언" 지역민 분노 · 반발」이라는 소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고, 이후 6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후속 보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① 이 사건 기사는 대구 ·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발언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구 · 경북 지역을 보수꼴통의 총본산이라는 취지로 매도할 의도였다기보다는 과거 민주화의 요람이었던 대구 · 경북 지역의 빛나는 전통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경북일보, 영남일보 등 다른 신문에서도 2010. 10. 15.자로 「野의원들 '대구 · 경북 수구꼴통' 발언 눈총」, 「野의원들, 대구 · 경북민 싸잡아 "보수꼴통"」이라는 제목으로 매일신문과 거의 유사한 제목하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긴 하였으나 그 기사 내용에 있어서는 매일신문과는 달리 비교적 원고의 발언 내용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사실에 가깝게 보도한 점, ④ 더구나 피고는 소속 취재기자인 C가 직접 국정감사장을 방청한 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고, 매일신문은 석간신문이어서 다른 조간신문들보다 국정감사 회의록 등의 검토를 통해 원고의 실제 발언 내용, 발언 의도 등을 충분히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당시 국정감사장의 분위기에만 편승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심지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 전날인 국정감사 당일 인터넷 기사로 원고의 발언을 보도한 연합뉴스나 뉴시스에서는 원고의 발언 내용과 그 취지 등을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그 적시

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비록 피고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인 원고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하여 감시 · 비판 · 견제의 의도에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의 보도 내용은 심하게 왜곡된 것이거나 심지어 악의적인 것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원고의 수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정정보도 및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1심 판결문은 『2011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59~163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창원)2011나346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A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매일신문사
제 1 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0가합10573 판결
변 론 종 결 : 2012. 3. 28.
판 결 선 고 : 2012. 8.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매일신문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게재 부분의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고딕체 활자로, 본문을 18급 명조체 활자로 하여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2)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2012.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매일신문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게재 부분의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고딕체 활자로, 본문을 18급 명조체 활자로 하여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③ 피고가 위 ②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 내지 12, 1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일간지 '매일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0. 14.경 대구시 ·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1960. 2. 28. 대구학생의거와 1946. 10. 민중항쟁 등에서 보듯 역사적으로 대구 · 경북이 이 나라 민주화의 요람인데, 대구 · 경북이 보수 세력의 총본산이라거나, 심지어는 폄하하는 용어로 수구 꼴통 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별지2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0. 10. 15.자 일간지 '매일신문'의 제1면에 「"대구경북은 보수꼴통 도시" 수차례 매도, A · B 의원 사과하라」는 주제목과 「시 · 도 교육청 국감, 공식석상서 막말」, 「"상식 이하 발언" 지역민 분노 · 반발」이라는 소제목 하에 "민주노동당 A 의원(창원을)은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대구경북은 보수 세력의 총본산이라고 하는데, 두 분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문을 뗐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A 의원은 '대구경북은 보수꼴통 도시 아니냐'고 쏘아붙였다"는 취지의 별지3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고, 매일신문의 2010. 10. 16.자 제1면, 같은 일자 제5면, 2010. 10. 18.자 제1면, 2010. 10. 19.자 제1면, 2010. 10. 20.자 제6면, 2010. 10. 22.자 제30면에 각 후속 기사를, 2010. 10. 23.자 제4면에 「국감이 할퀴고 간 상흔」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기사 게재 이후 뉴데일리, 아시아뉴스통신 등 인터넷 언론매체들이 매일신문의 기사를 인용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원고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010. 10. 15.경부터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들이 게시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발언 요지는 대구 · 경북이 이 나라 민주화의 요람이고, 대구에서 민주화의 싹이 피어서 이 땅에 민주화의 꽃이 피었다는 것으로 대구 · 경북 지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음에도, 피고는 선정적인 제목 하에 원고가 대구 · 경북을 보수꼴통 도시라고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위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고, 발언 배경과 취지까지 함께 보도하였으므로 위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보도는 오로지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거나,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또한 피고의 이 사건 기사 게재 행위는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며,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와 같은 법리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과거 민주화의 요람이었던 대구 · 경북이 보수 세력의 총본산, 심지어는 폄하하는 용어로 수구 꼴통 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것임에도 피고는 매일신문에 "민주노동당 A 의원(창원을)은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대구 · 경북은 보수 세력의 총본산이라고 하는데, 두 분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문을 뗐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A 의원은 '대구 · 경북은 보수꼴통 도시 아니냐'고 쏘아붙였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가 국정감사장에서 대구 · 경북지역을 보수꼴통이라는 막말로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가 국정감사장에서 대구 · 경북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꼴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왜곡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기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구독자들은 원고가 국정감사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대구 · 경북 지역민을 비하하였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발언을 왜곡하

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성 조각여부

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이 경우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이 보도를 함에 있어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2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사가 왜곡된 허위의 사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5호증, 을 제2, 3,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기사는 대구 ·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발언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구 · 경북 지역을 보수꼴통의 총본산이라는 취지로 매도할 의도였다기보다는 과거 민주화의 요람이었던 대구 · 경북 지역의 빛나는 전통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경북일보, 영남일보 등 다른 신문에서도 2010. 10. 15.자로 「野의원들 '대구 · 경북 수구꼴통'발언 눈총」, 「野의원들, 대구 · 경북민 싸잡아 "보수꼴통"」이라는 제목으로 매일신문과 거의 유사한 제목 하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긴 하였으나 그 기사 내용에 있어서는 매일신문과는 달리 비교적 원고의 발언 내용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사실에 가깝게 보도한 점, ④ 더구나 피고는 소속 취재기자인 C가 직접 국정감사장을 방청한 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고, 매일신문은 석간신문이어서 다른 조간신문들보다 국정감사 회의록 등의 검토를 통해 원고의 실제 발언 내용, 발언 의도 등을 충분히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당시 국정감사장의 분위기에만 편승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심지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 전날인 국정감사 당일 인터넷 기사로 원고의 발언을 보도한 연합뉴스나 뉴시스에서는 원고의 발언 내용과 그 취지 등을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그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비록 피고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인 원고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하여 감시 · 비판 · 견제의 의도에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의 보도 내용은 심하게 왜곡된 것이거나 심지어 악의적인 것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

므로 원고의 수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3) 정정보도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기사의 게재 방식과 그 비중,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 하여금 ①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매일신문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게재 부분의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고딕체 활자로, 본문을 18급 명조체 활자로 하여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게 하고, ②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이행강제금으로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4) 위자료 부분

피고는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지위,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표현방법, 허위의 정도, 그 파급력, 언론사로서의 피고의 비중 및 사회적 영향력, 이 사건 기사 보도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으로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8.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매일신문은 2010년 10월 15일자 1면에 '대구 경북은 보수꼴통 도시 수차례 매도, A・B 의원은 사과하라'는 제목 하에 "A 의원이 대구시・경북도 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대구경북은 보수꼴통 도시 아니냐고 쏘아붙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경북민들이 지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A 의원은 1960년 2월 28일의 대구학생의거 등을 예로 들며 대구・경북이 이 나라 민주화의 요람인데,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 위와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위 기사는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여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일신문은 법원에서 위와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A 의원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끝.

〈별지 2〉 발언 내용 생략

〈별지 3〉 보도 내용 생략

명예훼손 사례 14

네티즌이 창작한 '가상 기도문'을 원고가 북한에서 실제로 한 기도인 것처럼 허위 보도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 노력도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2가합26515 판결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2년 8월 22일 A 목사가 뉴데일리 주식회사와 소속기자,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인 원고는 2010년 6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북하였고, 이에 2010년 6월 28일 한 네티즌이 〈A 목사의 기도(추측)〉라는 제목으로 가상 기도문을 작성하여 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 B는 2010년 7월 16일 인터넷신문 인사이드더월드에 『A가 북한에서 외친 대한민국 멸망 기도문』 제목으로, 피고 C는 2010년 7월 17일 뉴데일리에 『A "대한민국 멸망시켜 달라" 기도』라는 제목으로 위 기도문을 인용한 기사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와 중앙일보사는 2010년 7월 23일 중앙일보 및 인터넷 중앙일보에 『A와 어깨동무했던 인사들에게 묻는다』 제목으로 위 기도문과 관련한 사설을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① 원고의 북한체류 중 기자회견 내용이나 환영집회 연설 내용만이 개략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을 뿐 2010. 6. 27. 평양 칠골교회에서의 설교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되고 있지 않았고, 그 내용을 알아낸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의 기자 혹은 언론기관인 피고들은 입수된 기도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그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기사 및 사설을 작성하였다(특히 원고가 방북중이어서 이 사건 기도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이 사건 제1기사 작성자인 피고 B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기도문을 이메일로 보내준 G에게 그 출처를 알아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고, 인터넷상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이 사건 기도문이 가상기도문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② 일간신문사의 기자가 타 신문사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재를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는 일간신문에 있어서의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피고 뉴데일리, C가 이 사건 제1기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제2기사를 작성 · 게재하였고,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중앙일보사가 이 사건 각 기사를 근거로 이 사건 사설을 작성 · 게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는 기사의 내용만을 확인하

고 달리 그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재 노력을 다하지 않은 이상(특히 뉴데일리, C의 경우 F가 이 사건 기도문이 가상 기도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의 글을 재차 올린 상태에서 이 사건 제2기사를 보도하였고,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중앙일보사의 경우 오마이뉴스의 보도 등을 통하여 네티즌들 사이에 이 사건 기도문이 허위라는 논란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사설을 보도하였다), 위 피고들의 보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가 북한에서 현 정부 정책 등을 비판하고 북측의 언동에 동조하는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도문의 주된 내용은 6 · 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멸망을 기도한다는 것과는 그 성격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 뉴데일리와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중앙일보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11.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피고 B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판 결 문

사　　건 : 2012가합26515 손해배상(기)

원　　고 : A

피　　고 : 1. B

2. 뉴데일리 주식회사

3. C

4.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5.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변 론 종 결 : 2012. 7. 18.

판 결 선 고 : 2012. 8.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6.부터,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C는 각자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7.부터,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각자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3.부터 각 2012.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1)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뉴데일리 사이트(http://newdaily.co.kr)의 초기화면 좌측 프레임 첫 기

사로 별지 1-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처음 게재하는 날부터 14일간 게재하되,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1-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검색되도록 하고(초기화면의 제목과 연결된 화면의 제목 및 본문은 정정보도 대상 기사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한다), 14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2)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는 인터넷 중앙일보(http://joongang.joinsmsn.com) 의 초기화면 우측 프레임 세 번째 박스 3행('사설'란과 '분수대'란 사이)에 별지 1-2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처음 게재하는 날부터 7일간 게재하되, 위 제목을 클릭하면 그 별지 1-2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검색되도록 하고(초기화면의 제목과 연결된 화면의 제목 및 본문은 정정보도 대상 사설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한다), 7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정정보도 대상 사설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 사설이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중앙일보 제30면 "사설"란 하단에 별지 1-2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 대상 사설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하라.

나. 만약 위 피고들이 위 가.항을 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각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6.부터,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이하 '뉴데일리'라 한다), C는 각자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7.부터,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이하 '제이큐브인터랙티브'라 한다),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중앙일보사'라 한다)는 각자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뉴데일리,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이 판결문이 송달된 후 즉시 "뉴데일리", "인터넷 중앙일보" 사이트의 각 우측 상단에 피고 뉴데일리는 별지 2-1 기재 정정보도 요구문을,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별지 2-2 기재 정정보도 요구문을 각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 활자로 하여 각 게재하라. 만약 위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각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3. 피고 중앙일보사는 이 판결문 송달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중앙일보의 제1면 우측 상단에 별지 2-3 기재 정

정보도 요구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 활자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만약 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주 D 교회 담임목사로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면서, 2010. 6. 12.부터 2010. 8. 20.까지 사이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는 미합중국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둔 인터넷 언론매체인 '인사이드더월드'(Inside the World, http://www.usinsideworld.com)의 서울취재본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 뉴데일리는 인터넷신문인 뉴데일리(Newdaily, http://newdaily.co.kr)를 관리하는 언론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뉴데일리의 소속 기자이며,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인터넷신문인 '중앙일보'(http://joongang.joinsmsn.com)를 관리하는 언론법인이고, 피고 중앙일보사는 일간지인 '중앙일보'를 발행하는 언론법인이다.

나. 원고의 방북 및 언행 등

1) 원고는 2005. 9. 11.경 '분단 60주년 반미자주선포대회'를 개최하여 예속적 한미동맹 해체·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성명을 통하여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로 분단의 원흉이요 전쟁과 학살의 책임자이며 이 땅 만악(萬惡)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몰아 내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다."고 주장하였으며, 2005. 9. 14.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맥아더는 말하자면 분단의 집달리, 전쟁광이었다. 평화를 위해 반미해야 하며, 반미반전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모두 함께 나아갈 길이다."고 주장하였다.

2) 원고는 2010. 5. 23. 인천 국제공항에서 중국 남방항공편(CZ-682)으로 출국하여 심양공항에 도착하였고, 2010. 6. 12. 북경 수도공항에서 북경발 평양행 북한 고려항공(JS-152편)에 탑승하여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였다.

3) 이후 2012. 6. 12.부터 2010. 8. 20.까지의 방북기간 동안 원고의 주요 행적 및 발언은 별지 '3. 원고의 방북행적'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2010. 8. 20.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열린 귀환환송식에 참석한 후 북한 통전부 소속 핵심 간부들의 환송을 받으며 같은 날 15:01경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지나 유엔군측 경비구역인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다. 이 사건 기사 등의 게재

1) E가 운영하는 시스템클럽(http://www.systemclub.co.kr)에서 '초록'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F는 2010. 6. 28. 17:05경 시스템클럽의 게시판에 〈A 목사의 기도(추측)〉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4. 가상기도문' 기재와 같은 기도문(갑 2호증, 을가 4호증, 이하 '이 사건 기도문'이라 한다)을 올렸다.

2) 피고 B는 2010. 7. 15.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G로부터 이 사건 기도문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10. 7. 16. 〈A가 북한에서 외친 대한민국 멸망 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5-1. 기사' 기재와 같은 기사(을가 5호증, 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 같은 날 15:50경 인터넷신문인 '인사이드더월드'에 이를 게재하였다.

3) 이에 F(초록)는 2010. 7. 17. 11:33경 위 시스템클럽의 게시판에 '이 사건 기도문은 자신의 추측에 의해 작성된 가상기도문이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글을 재차 올렸다. 그런데, 피고 C는 2010. 7. 17. 19:12경 〈A "대한민국 멸망시켜 달라"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제1기사를 인용하며 별지 '5-2. 기사' 기재와 같은 기사(갑 6호증, 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뉴데일리가 인터넷뉴데일리 사이트의 초기화면 첫 기사로 이를 게재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제2기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트(http://www.nate.com)에서 급상승 관심뉴스 1위에 오르게 되면서 블로그 등을 통하여 널리 전파되었다.

4) 위와 같은 기사를 접한 F(초록)는 인사이드더월드 및 피고 뉴데일리에게 각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다. 이후 피고 B는 2010. 7. 18.경 이 사건 제1기사에서 이 사건 기도문을 삭제하고 기사의 끝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수정하였다(갑 5호증).

〈社告〉 이 기사에 첨부됐던 A 목사 기도문은 필명 '초록'님의 가상 기도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혼돈을 피하기 위해 가상 기도문을 삭제, 기사를 수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지적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5) 또한, 오마이뉴스는 2010. 7. 19. 22:24경 "이 사건 기도문이 '초록'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인터넷 누리꾼의 창작물이었고, 인사이드더월드가 기사를 수정하였으며, 네이트에서 기사를 삭제하였고, 뉴데일리의 기사가 보도된 포털 사이트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뉴데일리의 기사가 오보라는 내용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뉴데일리가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있어 원고 측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6) 이후 2010. 7. 23.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중앙일보사는 인터넷 중앙일보의 사설란(초기화면 우측 프레임의 세 번째 박스 2행 '[사설]'란에 제목이 표시되어 있고, 그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는 방식이다) 및 일간지 중앙일보 제30면 사설란에 각 〈A와 어깨동무했던 인사들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별지 '5-3. 사설' 기재와 같은 사설(갑 8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 탈출)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68)은 2011. 1. 21. 제1의 나.항과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및 검사가 항소한 결과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노292)은 2011. 6. 30.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 중 제1항 및 제2항 중 ①, ③, ⑧, ⑩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으며, 원고 및 검사가 상고(대법원 2011도9240)하였으나 2011. 11. 24. 각 상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가 피고 B, C 등을 상대로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12. 29.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이후 원고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 B, C에 대한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고,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4941)은 2012. 2. 3. 피고 B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B만이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527)하였으나 2012. 4. 2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B의 상고(대법원 2012도5413)로 현재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가 1, 4, 5, 6, 7호증, 을나 1호증의 1 내지 4, 을라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기도문은 F에 의하여 창작된 것임에도, 이 사건 각 기사 및 사설은 마치 원고가 북한에서 이 사건 기도문과 같이 기도하였다고 허위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사 및 사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뉴데일리는 별지 2-1,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별지 2-2, 피고 중앙일보사는 별지 2-3 기재 각 정정보도 요구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중앙일보사의 이 사건 사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하므로, 원고가 문제 삼는 일부 표현이 다소 진실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기사 및 사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 긍정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2003. 8. 19. 선고 2001다3214 판결,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

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4487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기사의 경우 그 제목이 〈A가 북한에서 외친 대한민국 멸망 기도문〉이고, 본문은 현 대한민국 정부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다음, 원고가 적군의 진지에서 '조국의 멸망'을 기도하였음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과 이 사건 기도문 전문(全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2기사는 그 제목이 〈A "대한민국 멸망시켜 달라" 기도〉이고, 본문은 이 사건 제1기사를 상세히 소개한 내용과 이 사건 기도문 전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기도문은 F(초록)에 의하여 창작된 가상기도문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도문과 같은 기도를 실제로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이 사건 각 기사들은 모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분명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설의 경우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제목이 〈A와 어깨동무했던 인사들에게 묻는다〉이고, 본문은 '원고의 평양기자회견 내용 중 천안함 사건에 관한 원고의 발언 요지', '김정일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적시하고, 이어 〈기도에서도 김정일은 "장군님", 우리 정부는 "괴뢰도당"이다〉라고 표현(이하에서 이 부분 표현을 '쟁점 표현'이라 한다)함으로써 원고를 반국가주의자로 규정한 다음,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등에 동참하였던 야당 및 진보인사들에게 원고의 반국가적인 행태에 동조하는 것인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밝히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① 이 사건 사설의 전개 형태에 있어서, 쟁점 표현은 F에 의해 창작된 이 사건 기도문을 마치 원고가 실제로 한 기도인 것처럼 암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설에 적시된 다른 사실들(즉 천안함 사건에 대한 원고의 발언 요지 또는 김정일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호칭)에 못지않게 원고의 반국가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허위인 점, ② 원고가 실제 북한에서 예배에 참석한 바 있기는 하나(별지 3 기재 중 제2의 ③항), 그 예배에서 반국가성을 나타내는 언행을 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설의 게재 당시 원고가 북한에 체류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1기사는 정정되었지만 이 사건 제2기사는 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점, ④ 이미 오마이뉴스의 보도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이 사건 기도가 허구인 것이 밝혀진 상태였던 점, ⑤ 이 사건 사설의 문언과 구성 형태,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 표현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간접적 · 우회적으로 원고가 북한에서 이 사건 기도문과 같은 기도를 하였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설은 주요 부분에 있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명예훼손 여부 – 긍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 사건 사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목사 신분인 원고가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멸망을 바라는 이 사건 기도문과 같은 기도를 하였다'는 취지로서, 이를 접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원고가 반국가주의자이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 부정

1) 언론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사설은 대한민국의 존립 및 안전을 위하여 반국가적인 행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일반 독자의 이해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므로 일응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가 규정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한 피고 B, C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법 제70조 제2항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특히 피고 B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기사 및 사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북한체류 중 기자회견 내용이나 환영집회 연설 내용만이 개략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을 뿐 2010. 6. 27. 평양 칠골교회에서의 설교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되고 있지 않았고, 그 내용을 알아낸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의 기자 혹은 언론기관인 피고들은 입수된 기도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그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기사 및 사설을 작성하였다(특히 원고가 방북중이어서 이 사건 기도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이 사건 제1기사 작성자인 피고 B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기도문을 이메일로 보내준 G에게 그 출처를 알아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고, 인터넷상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이 사건 기도문이 가상기도문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②일간신문사의 기자가 타 신문사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재를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는 일간신문에 있어서의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등 참조), 피고 뉴데일리, C가 이 사건 제1기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제2기사를 작성 · 게재하였고,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중앙일보사가 이 사건 각 기사를 근거로 이 사건 사설을 작성 · 게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는 기사의 내용만을 확인하고 달리 그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재 노력을 다하지 않은 이상(특히 피고 뉴데일리, C의 경우 F가 이 사건 기도문이 가상기도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의 글을 재차 올린 상태에서 이 사건 제2기사를 보도하였고,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중앙일보사의 경우 오마이뉴스의 보도 등을 통하여 네티즌들 사이에 이 사건 기도문이 허위라는 논란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사설을 보도하였다), 위 피고들의 보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가 북한에서 현 정부 정책 등을 비판하고 북측의 언동에 동조하는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도문의 주된 내용은 6 · 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멸망을 기도한다는 것과는 그 성격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위자료 및 정정보도의 범위와 간접강제

1) 목사이자 시민운동가인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 및 사설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제1기사의 게재에 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 뉴데일리는 이 사건 제2기사의 게재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중앙일보사는 이 사건 사설의 게재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경력 및 사회적 지위, 앞서 본 이 사건 각 기사와 사설의 작성과 게재 경위 및 전파 정도[피고 B는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하였다가 이후 수정하였고, 피고 뉴데일리, C는 이 사건 기도문을 작성한 F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이 사건 제2기사를 수정하지 아니하였으며(이 사건 제2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중앙일보사는 이 사건 기도문이 허위라는 논란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기사를 근거로 이 사건 사설을 보도하였다], 이 사건 각 기사와 사설의 전체 내용과 그 중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가 기도하는 사진을 첨부하면서 이 사건 기도문을 상세히 소개하였으나, 이 사건 사설은 원고의 반국가성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쟁점 표현만을 적시하였다), 인사이드더월드, 피고 뉴데일리,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피고 중앙일보사의 규모와 위 각 언론사들이 국내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일반인에 대한 공신력,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면서 기울인 사실 확인의 노력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위자료로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기사 게재일인 2010. 7. 16.부터, 피고 뉴데일리, C는 각자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기사 게재일인 2010. 7. 17.부터,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중앙일보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자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설 게재일인 2010. 7. 23.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각 기사와 사설의 내용 및 보도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위 금전배상만으로는 원고가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불완전하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언론기관인 피고 뉴데일리,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중앙일보사에게 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 및 사설에서 허위내용이 차지하는 비중,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및 정정 보도의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① 피고 뉴데일리는 뉴데일리 사이트(http://newdaily.co.kr)의 초기화면 좌측 프레임 첫 기사로 별지 1-1 기재 제목을 처음 게재하는 날부터 14일간 게재하되, 그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1-1 기재 제목 및 본문이 검색되도록 하고(초기화면 제목과 연결된 화면의 제목 및 본문은 정정보도 대상 기사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한다), 14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②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인터넷 중앙일보(http://joongang.joinsmsn.com)의 초기화면 우측 프레임 세 번째 박스 3행('사설'란과 '분수대'란 사이)에 별지 1-2 기재 제목을 처음 게재하는 날부터 7일간 게재하되, 그 제목을 클릭하면 그 별지 1-2 기재 제목 및 본문이 이 검색되도록 하고(초기화면 제목과 연결된 화면 제목 및 본문은 정정보도 대상 사설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한다), 7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정정보도 대상 사설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 사설이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③ 피고 중앙일보사는 중앙일보 제30면 사설란 하단에 별지 1-2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 대상 사설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4)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 뉴데일리,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중앙일보사가 위 3)항의 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위 3)항의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각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1 정정보도문〉

제 목 :「A 대한민국 멸망시켜 달라 기도」 관련 정정보도문

본 문 : 뉴데일리는 2010. 7. 17.「A 대한민국 멸망시켜 달라 기도」라는 제목으로 A가 기도하는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멸망을 기도한다는 취지의 기도문을 첨부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는 네티즌에 의해 창작된 '가상기도문'을 A 목사가 북한에서 한 기도로 오인하여 보도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하여 A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끝.

〈별지 1-2 정정보도문〉

제 목 : A 기도 관련 사설 정정보도문

본 문 : 중앙일보는 2010. 7. 23.자 「A와 어깨동무했던 인사들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A 목사가 기도하면서 김정일을 '장군님', 우리 정부를 '괴뢰 도당'으로 표현했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설은 네티즌에 의해 창작된 '가상기도문'을 A 목사가 북한에서 한 기도로 오인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하여 A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끝.

〈별지 2-1, 2-2, 2-3〉 정정보도 요구문 생략

〈별지 3〉 원고의 방북 행적 생략

〈별지 4〉 가상기도문 생략

〈별지 5-1, 5-2, 5-3〉 이 사건 제1기사, 이 사건 제2기사, 이 사건 사설 생략

명예훼손 사례 15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그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하므로,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사실개요

대법원 제3부는 2012년 8월 23일 A 외 9명이 주식회사 참언론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 언론사는 시사IN 2007년 12월 4일자에 L 대통령 후보자의 주가조작 고발 사건을 수사한 원고들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M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검찰의 구형량을 무기 삼아 M을 협박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M 측근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해 검사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를 접한 일반인들은, 원고들이 유력한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형량을 수단으로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기사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종래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에서 그 수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의혹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데도 수사내용에 대하여 국민의 의구심을 없애기에 아쉬움이 있었던 일이 없지 않았고 바로 이러한 경우에 정당이나 언론의 역할이 필요함은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그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하므로,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적 존재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이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에 앞서 검찰의 해명을 듣거나 M의 변호인에게 확인해 보지 않은 등 피고들의 행위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사정도 없지 않으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행위가 위와

같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9년 1월 14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1,000만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2011년 4월 21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2심 판결문은 『2011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16~128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11다40373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피고, 피상고인 : 1. 주식회사 참언론
2. K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09나14267 판결

판 결 선 고 : 2012. 8.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 방

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08조)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 · 방어방법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한편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 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검사가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 등에 대하여도 수사하여 검찰의 수사절차가 적법하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검찰이 구형량을 수단으로 M을 회유 · 협박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한 M 가족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기사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위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름을 전제로 그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명시적 판단 없이 곧바로 위법성 판단을 한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해당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그 직무집행이나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M은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인 2001. 12. 20. 미국으로 도피하여 법무부가 2004. 1.경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였으나 M이 미국에서 인신보호청원을 하는 등으로 국내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L 전 서울특별시장이 2007. 8. 19. 한나라당의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었는데, L 후보자가 M의 주가조작 및 횡령 등에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 제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L 후보자가 M의 범행에 관련되었는지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하였고, L 후보자가 대통령 후보자로서 충분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었는지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2) M은 2007. 10.경 미국 당국에 인신보호청원을 취하하고 국내 송환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2007. 11. 6. 구성되어 M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대상 범죄, 대통합민주신당의 L 후보자 주가조작 고발사건 등(이하 'BBK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되었다. 원고들은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참언론(이하 '피고 참언론'이라 한다)은 시사주간지 '시사IN'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K는 '시사IN'의 뉴스팀 소속 기자이다.

3) 피고 K는 2007. 11.경 M의 누나 N에게 전화하여 인터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2007. 11. 26.경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하여 2007. 11. 27.과 같은 달 28. N과 인터뷰를 하였다. 피고 K는 2007. 12. 3. N의 연락을 받고 다시 만났는데, N은 2007. 12. 5.로 예정된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볼 필요도 없이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 하면서 피고 K에게 M이 검찰로부터 회유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보여주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전화통화 녹음테이프를 들려준 후 위 메모지와 녹음테이프를 건네주었다. 위 메모지는 M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장모와 면회 중 필담을 나누면서 작성된 것이고, 위 녹음테이프는 M이 검사와 수사관의 입회 아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N과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4) 피고 K는 위 메모지와 녹음테이프의 내용이 일치하고, 위 메모지의 작성 장소나 전화 통화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피고 K는 위 메모지와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피고 참언론의 편집국에 보내 다른 기자들 및 변호사와 상의하고 다른 언론기관의 보도내용 등 확보 가능한 자료와 비교 · 검토하였다.

5) 그 후 피고 K는 위 메모지 사진을 첨부하고, 메모지, 녹음테이프의 내용, N 및 M의 처 O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수단으로 M을 회유 · 협박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 [별지 1]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피고 참언론은 2007. 12. 4.자 '시사IN'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6) 검찰은 2007. 12. 5. 11:00경 BBK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요지는 BBK는 M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이고, L 후보자가 M의 BBK 관련 주가조작 및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7) 국민의 상당수가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믿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오는 등 BBK 사건이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L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 12. 28. 공포 ·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특별검사는 40일에 걸친 수사 끝에 2008. 2. 21. 검사의 회유 ·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의 수사절차가 적법하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없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라.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BBK 사건에 관한 검사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인 한편, 피고 K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위 메모지와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이 사건 기사가 작성자의 의견을 보류하고 메모 내용을 옮기거나 M 가족의 진술을 인용하는 중립적 태도로 작성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의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마.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를 접한 일반인들은, 원고들이 유력한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형량을 수단으로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기사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종래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에서 그 수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의혹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데도 수사내용에 대하여 국민의 의구심을 없애기에 아쉬움이 있었던 일이 없지 않았고 바로 이러한 경우에 정당이나 언론의 역할이 필요함은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그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하므로,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적 존재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이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에 앞서 검찰의 해명을 듣거나 M의 변호인에게 확인해 보지 않은 등 피고들의 행위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사정도 없지 않으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행위가 위와 같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예훼손 사례 16

원고가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Access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14931 판결(확정)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2012년 10월 11일 한국방송공사와 사장 A가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및 소속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11년 6월 20일 TV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였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가결하였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2011년 6월 23일 비공개 최고위원 · 문방위원 연석회의(이하 '민주당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다음 날 개최된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D가 민주당 회의에서 나온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E의 발언을 상세히 소개하자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가 도청당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언론사는 2011년 6월 30일 『KBS, 민주당 대표실 도청 연루 '굳어지는 심증'』 제목으로 "KBS A 사장이 KBS 이사회 야당 측 인사들과 만나 " '벽치기'는 취재 기법으로 다 해왔던 것인데 문제될 게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민주당 회의 내용 유출에 대해 자사 기자가 연루됐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정치권 일부에서는 A 사장의 언급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 외부 유출에 자사 기자가 연루됐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보도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KBS A 사장이 KBS 이사회 야당 측 인사들과 만나 "'벽치기'는 취재 기법으로 다 해왔던 것인데 문제될 게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보도는 KBS 이사의 말을 근거로 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한국방송공사와 사장은 국민들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언론사는 반론보도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이른바 'Access권')이 반론보도청구권의 이론적 근거 중 하나임은 피고 한국일보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반론보도청구권이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이상 Access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한국일보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A 사장이 벽치기와 관련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 게재를 명하였다.

판 결 문

사　　건 : 2011가합14931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원　　고 : 1. 한국방송공사

2. A

피　　고 : 1.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2. B

3. C

변 론 종 결 : 2012. 9. 6.

판 결 선 고 : 2012. 10. 11.

주　　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발행하는 한국일보 신문 제2면 우측 하단에 상자기사로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별지1 기재 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게재하라.

나. 만일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원고들에게 이 판결 확정 후 7일이 지난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이 판결 송달 후 3일 이내에 한국일보 신문 2면 우측 하단에 상자기사로 별지3 기재 정정보도청구문을 제목은 별지1 기재 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게재하고, 이 판결 송달 후 3일 이내에 인터넷 한국일보의 홈페이지(http://news.hankooki.com/)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3 기재 정정보도청구문을 제목은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3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3 기재 정정보도청구문 본문이 통상 기사 본문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하고, 별지1 기재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본문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별지3 기재 정정보도청구문을 게재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이 판결 송달 후 3일 이내에 한국일보 신문 2면 우측 하단에 상자기사로 별지4 기재 반

론보도청구문을 제목은 별지1 기재 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게재하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원고들에게 위 7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이 판결 송달 후 3일 이내에 인터넷 한국일보의 홈페이지(http://news.hankooki.com/)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4 기재 반론보도청구문을 제목은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3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4 기재 반론보도청구문 본문이 통상 기사 본문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하고, 별지1 기재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본문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별지4 기재 반론보도청구문을 게재하며,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원고들에게 위 7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에 대하여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한국방송공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이며,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이하 '피고 한국일보사'라고 한다)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B, C는 피고 한국일보사 소속 기자들이다.

나. 이 사건 민주당 회의 개최 및 민주당의 도청 의혹 제기

(1) 방송법 제64조, 제65조에 의하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원고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이 사건 수신료'라고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신료의 금액은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가 심의 ·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2) 국회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11. 6. 20. 이 사건 수신료를 기존의 월 2,500원에서 월 3,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인상안을 상정하여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이를 가결하였으나 야당인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였고, 이후 절차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었다.

(3) 민주당은 2011. 6. 23.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위 안건에 관해 비공개 최고위원 · 문방위원 연석회의(이하 '이 사건 민주당 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4) 위 안건에 관해 2011. 6. 24.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D는 이 사건 민주당 회의에서 나온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E의 발언을 상세하게 소개하였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가 도청당했다고 주장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 게재

(1)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11명 중 야당이 추천한 4명의 이사인 F, G, H, I는 2011. 6. 27.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원고 A는 I의 연락을 받고 위 자리(이하 '이 사건 저녁식사 자리'라고 한다)에 참석하게 되었다.

(2) 피고 한국일보사는 2011. 6. 30. 위 I에 대한 취재를 바탕으로 피고 B, C가 작성한 별지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KBS, 민주당 대표실 도청 연루 '굳어지는 심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간지 한국일보 제7면에 게재하였고, 같은 날 같은 기사가 인터넷 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고 한다) 정치란에도 게재되었다.

(3) 이 사건 기사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다.

> 이와 관련, KBS A 사장이 최근 KBS 이사회 야당 측 인사들과 만나 " '벽치기'는 취재 기법으로 다 해왔던 것인데 문제될 게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벽치기'는 기자들이 회의실 문 바깥에 붙어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엿듣는 취재 방법을 뜻한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부에서는 "A 사장의 언급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 외부 유출에 자사 기자가 연루됐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는 이 사건 저녁식사 자리에서 "'벽치기'는 취재 기법으로 다 해왔던 것인데 문제될 게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은 허위내용의 기사를 작성 · 게재하여 원고들에게 피해를 입게 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 한국일보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해 별지3 기재 정정보도청구문을 일간지 한국일보 및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재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게재를 통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한국일보사는 민법 제764조에 기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3 기재 정정보도청구문을 일간지 한국일보 및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으로, 피고 한국일보사는 이 사건 기사 게재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 별지4 기재 반론보도청구문을 일간지 한국일보 및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재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기사는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성도 있으므로 피고들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나) ①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정치외교부장 J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 민주당 회의에 관해) 귀를 쫑긋 세우고 취재하였다"고 말하였으므로 원고 한국방송공사는 '벽치기'를 하였음을 시인한 것이고, ② 원고 A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는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불과하며, ③ 원고 A가 위와 같은 발언을 전혀 한 바 없다는 정정보도청구 내지 반론보도청구는 청구된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④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이라는 수단을 갖지 못하는 자에게 언론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 한국방송공사는 언론사로서 스스로 반론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으며, ⑤ 원고 한국방송공사는 자신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정정보도청구 내지 반론보도청구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이익이 없다.

(다) 이 사건 홈페이지는 주식회사 인터넷한국일보(이하 '인터넷한국일보'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피고들과는 무관하다.

나. 판단

(1) 언론중재법에 기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등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위 조항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만 인정되므로 의견표명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는 제외되며, 이 때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쟁점 부분 중 「이에 대해 정치권 일부에서는 "A 사장의 언급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 외부 유출에 자사 기자가 연루됐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①부분'이라 한다)에 관해 살피건대, 이는 원고 A의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쟁점 부분 중 「KBS A 사장이 최근 KBS 이사회 야당 측 인사들과 만나 "'벽치기'는 취재 기법으로 다 해왔던 것인데 문제될 게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②부분'이라 한다)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해당하므로 나아가 위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4, 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한 이사들 중 F는 "원고 A가 'KBS 기자가 취재한 게 그쪽으로 넘어간 게 아닌지 걱정된다'는 말을 하였을 뿐 다른 발언은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G는 "'벽치기'는 제가 과거 경험을 들먹이면서 먼저 꺼냈던 것 같으며, A 사장도 옛날 일선기자 시절의 취재행태에 대해 저의 얘기에 공감하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KBS기자들의 벽치기를 통해 민주당 회의 내용을 엿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A 사장이 한 기억은 없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

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는 "원고 A가 '취재를 하면서 옛날 관행으로 벽치기가 있지 않았느냐. 벽치기는 취재 기법으로 다 사용해왔던 것인데 뭐 문제될 것이 있느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민법에 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표현행위에 적시된 사실 중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이 사건 ①부분에 관해 살피건대, 이는 원고 A의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건 ②부분에 관해 살피건대,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이는 진위가 불분명한 사실에 해당하고,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인 원고 A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민주당 회의 도청에 원고 한국방송공사가 관련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기사 작성 및 게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위불명한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

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먼저 공익성에 관해 살펴보면, 이 사건 ②부분은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이 사건 민주당 회의를 도청당한 사건에 원고 한국방송공사가 관련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 · 게재한 주된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위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2011. 6. 29. I로부터 위 부분과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이나 원고들에 대한 사실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이 사건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총 5명으로 매우 소수이고, ② I는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로서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③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민주당은 도청의 주체가 원고 한국방송공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④ I는 이 사건 저녁식사가 있은 직후인 2011. 6. 29. 피고 C에게 위 부분과 같은 내용을 말하였으므로, I의 말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원고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자 언론사로서 국민들의 폭넓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현저히 지나치거나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한 이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 A 또한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이라는 공인으로서 그 직책에 기한 발언과 행동에 관하여는 국민들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들이 위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②부분 기사 작성 및 게재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쟁점 부분 중 이 사건 ①부분이 원고 A의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으나, 이 사건 ②부분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한국일보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한국일보 일간지에 이에 관한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홈페이지는 피고 한국일보사가 아닌 인터넷한국일보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사실인 인정되고, 피고 한국일보사와 인터넷한국일보가 동일한 회사라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언론사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취지는 ①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

인에게도 신속 · 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며,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론권제도가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점, ②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아래 일방적으로 수집 · 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있다(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5헌바25 전원재판부 참조).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이른바 'Access권')이 반론보도청구권의 이론적 근거 중 하나임은 피고 한국일보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반론보도청구권이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이상 Access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한국일보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라는 항변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언론사등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원고들이 청구한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고 A가 이 사건 저녁식사 자리에서 벽치기와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인바,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정치부장 J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 민주당 회의에 관해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귀를 쫑긋 세우고 파악해야 했다. 그날 회의도 파악해놓은 게 있다. (비교적)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비공개회의라고 해도... 현장에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취재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귀대는 것도 있고,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온갖 적극적 방법 동원해 취재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 A가 이 사건 저녁식사 자리에서 '벽치기'와 관련된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고, 그 밖에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아도 원고 A가 위 자리에서 '벽치기'와 관련될 발언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한국일보사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항변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언론사등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고, 여기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방송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져서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 A는 이 사건 저녁식사 자리에서 벽치기와 관련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다른 언론사들에게 공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와 같은 원고 한국방송공사 자신의 입장 표명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피고 한국일보사를 통하여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원고 A가 이 사건 저녁식사 자리에서 '벽치기는 취재 기법으로 다 해왔던 것인데 문제될 게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이 보도된 내용의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한국일보사의 이 부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한국일보사에 대한 이 사건 기사 중 이 사건 ②부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있고, 나아가 반론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분량, 그 표현방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청구문 중 이 사건 ② 부분에 관한 부분을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되, 반론보도문의 활자 크기와 게재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한국일보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한국일보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1〉 이 사건 기사 생략

〈별지 2〉 반론보도문

제목 : KBS A 사장의 '벽치기' 발언 관련 반론

내용 : 본지는 2011. 6. 30.자 「KBS, 민주당 대표실 도청 연루 '굳어지는 심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KBS A 사장이 2011. 6. 27. KBS 야당 추천 이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벽치기'는 취재 기법으로 다 해왔던 것인데 문제될 게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공사와 A 사장은 "A 사장이 위 자리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별지 3〉 정정보도청구문 생략

〈별지 4〉 반론보도청구문 생략

명예훼손 사례 17

원고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두문자나 이니셜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원고가 소속된 통신사 및 주재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명 또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도로 인한 피해자로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10. 25. 선고 2012가단7881 판결(확정)

사실개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2년 10월 25일 모 인터넷 통신사 기자 A가 주식회사 경남신문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언론사는 경남신문 2012년 2월 2일자 『"일 잘 처리되게 해주겠다" 돈 받은 일간지 기자 구속』 제목으로 "진주경찰서가 일처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를 구속하고 동행한 모 인터넷 통신사 기자인 원고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서부 경남 지역의 인터넷 통신사 기자 중 45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고뿐임에도 진주경찰서 보도자료에 나온 나이와 직업을 밝혀 원고임을 알 수 있도록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를 '모 인터넷 통신사 기자 B(45세)씨'라고 표현하여 원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음은 물론 원고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두문자나 이니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진주경찰서의 보도자료와는 달리 원고가 소속된 통신사 및 원고의 주재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명 또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1968년생인 원고를 유추할 수 있도록 '45세'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신문기사나 방송에서는 당사자의 만(滿) 나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에 '45세'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나이를 명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실제 나이를 그대로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주 등 서부경남에 주재하는 원고와 비슷한 40대 중반의 인터넷 통신사 기자로는 T, U 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신문사의 이 사건 기사의 위 표시가 원고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설사 피고 신문사의 이 사건 기사의 '모 인터넷 통신사 기자 B(45)씨'가 원고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2012경남조정16~19)을 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판 결 문

사　　건 : 2012가단7881 손해배상(기)

원　　고 : A

피　　고 : 1.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2. B

변 론 종 결 : 2012. 9. 20.

판 결 선 고 : 2012. 10.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통신사 서부경남 주재 기자이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경남신문사(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의 사회2부 진주 주재기자이다.

나. 진주경찰서 지능수사팀은 2012. 2. 2. '『공갈 ·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이비 기자 검거 보고'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실의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 민사소송 관계자에게 "잘 처리 되도록 해 주겠다"고 하고, 형사사건 관계인으로 하여금 고소하도록 한 뒤 피고소인에게 일처리 명목 등으로 금품수수한 혐의 사이비기자 검거《보도자료 제공예정》

ㅇ 피의자

1) D (44세, E 일보(본사 서울) 진주주재 기자, 前 F 신문(폐간)기자, 협박 등 20범)

2) A (45세, C 뉴스통신(인터넷 언론) 서부경남 주재기자, 前 G 일보 광고부 근무)

ㅇ 주요 혐의요지

1)은

가. 10. 24. 하대동 H 주점에서 I와 그의 전 처 J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피해자 K가 위 I와 채권 · 채무관련 민사소송 중인 것을 알고 “일이 잘 처리 되도록 해 주겠다”면서 승소시 1,000만원을 요구하여 우선 착수금으로 200만원을 수수

나. 10. 28. 하대동 피해자 L이 운영하는 Z 호프주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M을 시켜 미성년자 N(16세)과 같이 술을 먹게 한 뒤 뒤따라 들어가 사진촬영 후 112에 신고, 단속되게 한 후 다음날 “잘 처리 되도록 해 주겠다”하고, 위 L이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을 초과 징수한 것을 알고 채무자에게 고소를 종용한 후 L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 수수 등 3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 수수

1), 2)는

다. 10월 중순 일자불상경 하대동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노래연습장에서 1층의 피해자 소유 Q 갈비 식당 전 · 월세 사항을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고하면 거액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면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침

※ 1피의자 단독 : 공갈미수 1, 폭행 1, 강요 2, 사기 2, 사기 · 변호사법위반 3회 1,100만원 수수

1, 2피의자 공동 : 공갈미수 2

○ 수사 진행사항

– “가”항에 대해 고소 접수, 여타 혐의 첩보 입수하여 수사 확대

– 피의자들의 행위에 대해 구증 후 1)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1.5) → 실질심사 불응

– 법원 2차 구인장 발부(1.21) → 불응,

– 구속영장 발부(2.1) : 2. 1. 23:30 가좌동 혜람빌딩 앞에서 검거, 유치장 입감

다. 피고 B는 위 보도자료를 접한 당일 오전 ‘공갈 · 변호사법 위반 사이비 기자 구속’이란 제목의 아래와 같은 기사를 작성, 피고 신문사에 송고하였다.

진주경찰서는 2일 “일 처리가 잘 되도록 해주겠다”며 일처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갈 · 변호사법위반)로 모 일간지 기자 A(44)씨를 구속했다. 또 모 인터넷 통신사 B(45)기자와 최모(5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진주시 하대동 소재 모 호프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을 시켜 미성년자와 함께 술을 먹이게 한 뒤 뒤따라 들어가 사진촬영후 경찰에 신고한 후, 다음날 “일 처리가 잘 되도록 해 주겠다”며 업주로부터 일처리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900만원을 수수하고 또 같은 달 24일 하대동 모 주점에서 채권 · 채무관련 민사소송 중인 것을 알고 접근해, “일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며 2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또 A씨는 지난 해 10월 중순께 하대동 소재 모 식당 주인에게 전 · 월세 사항을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고하면 거액의 과징금을 물을 수 있다”며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 기자

일간지 : E 일보 D

통신사 : C 인터넷 통신 A, R(51)씨(D 내연녀)

라. 피고 신문사는 피고 B가 송고한 기사를 바탕으로 편집과정을 거쳐 2012. 2. 2. 자신들이 발행하는 경남신문 6면(사회)에 「"일 잘 처리되게 해주겠다" 돈 받은 일간지 기자 구속」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1단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 진주경찰서는 2일 일처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갈 · 변호사법 위반)로 모 일간지 기자 A(44)씨를 구속했다.
>
> 또 A씨의 범행 때 동행한 모 인터넷 통신사 기자 B(45)씨와 C(51 · 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진주시 하대동 모 호프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을 미성년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한 뒤 뒤따라 들어가 사진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후, 다음날 "일 처리가 잘 되도록 해 주겠다"며 업주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
> 또 같은 달 24일 하대동 모 주점에서 업주가 채권 · 채무관련 민사소송 중인 것을 알고 접근해 "일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며 200만원을 받는 등 총 1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기자

마. 검사는 2012. 2. 22. D와 원고를 『피고인들은 피해자 O(53세)가 진주시 하대동 ○○○-○○ 4층 건물 1층에 임대한 Q 갈비 식당의 전 · 월세 사항이 세무서에 축소 신고된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 18:00경 위 식당 건물 지하에 있는 O의 P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E 일보 진주주재 사회부 기자 D, C 뉴스통신 경남서부 광역본사 부장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위 "Q 식당의 전 · 월세 사항을 축소 신고한 것을 알고 있다. 신문 광고를 하나 실어 달라. 500만 원만 주면 이를 보도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무마해 주겠다."라고 겁을 준 뒤, 신문광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등의 공소사실로 이 법원(2012고단316)에 기소하였다.

이 법원은 2012. 5. 22. D와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D에게 징역 2년을, 원고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 D와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2012노1085)은 2012. 9. 13.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기사는 원고를 모 인터넷 통신사 기자 B(45)씨라고 익명으로 표현하였으나 진주를 포함한 서부경남 지역의 인터넷 통신사 기자 중 45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고뿐임에도 진주경찰서 보도자료에 나온 나이를 여과 없이 적시하고 직업까지 밝혀 위 기사를 접하는 다른 언론사 기자들 및 독자들이 원고임을 알 수 있도

록 하였다.

2) 또한 원고는 D의 범행 중 피해자 O에 대한 공갈미수의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을 뿐 피고 신문사가 이 사건 기사에서 D가 저지른 것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한 파렴치한 범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위 범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악의적으로 기사화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진주경찰서는 위 보도자료에서 원고를 '김00'으로, 연령도 실제 만(滿) 나이인 43세보다 2살 많은 45세로 표현하였고, 피고 신문사도 원고를 'B씨'로, 연령도 위 경찰서 보도자료와 같이 표현하였으며 '서부경남 주재'라는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 표현을 생략함으로써 원고의 신분 노출 방지 및 익명성 보장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통신사 기자는 대략 30명 정도가 되는 등 이 사건 기사 중 '모 인터넷 통신사 기자 B(45)씨'라는 표현만으로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없다.

2) 설사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를 특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1)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모 인터넷 통신사 기자 B(45)씨'가 원고를 지목하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를 '모 인터넷 통신사 기자 B(45세)씨'라고 표현하여 원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음은 물론 원고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두문자나 이니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진주경찰서의 보도자료와는 달리 원고가 소속된 통신사 및 원고의 주재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명 또한 전혀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1968년생인 원고를 유추할 수 있도록 '45세'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신문기사나 방송에서는 당사자의 만(滿) 나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에 '45세'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를 나이를 명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실제 나이를 그대로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진주 등 서부경남에 주재하는 원고와 비슷한 40대 중반의 인터넷 통신사 기자로는 S 뉴스통신 소속의 T(1969. 9. 13.생), V 뉴스 소속의 U 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신문사의 이 사건 기사의 위 표시가 원고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가정적 판단)

설사 피고 신문사의 이 사건 기사의 '모 인터넷 통신사 기자 B(45)씨' 가 원고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1)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판단 기준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2)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 조각의 판단기준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기초사실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일부 기자들이 취재를 빙자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국민들을 공갈하거나 관공서 출입 기자로서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송사건 등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다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사실을 보도한 내용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기사가 진실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판단해 보건대, 이 사건 기사는 크게 4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첫 문단은 진주경찰서가 공갈 · 변호사법위반으로 주범 A기자를 구속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단은 A의 범행 때 동행한 B

씨와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는 내용이며, 세, 네 번째 문단은 각 A의 범행 중 공갈과 변호사법위반의 대표적인 혐의사실을 하나씩 소개하는 내용으로, 위 4문단은 따로 분리하여 보면 모두 사실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사의 전체적인 주된 취지는 주범인 A의 혐의사실과 그로 인한 구속사실을 다루고, 부가적으로 A의 범행에 동행한 B와 C도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다만 두 번째 문단과 세, 네 번째 문단을 연결하여 보면, 자칫 일반 독자들이 입장에서 B씨와 C씨가 A가 저지른 이 사건 기사의 세, 네 번째 단락 범행에 동행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세, 네 번째 문단은 행위의 주체를 'A씨 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명확히 'A씨'라고 표현하고 있어 'A씨'의 단독 범행으로 읽힐 여지 또한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 B가 진주경찰서로부터 받은 보도자료를 근거로 송고한 기사를 피고 신문사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문단의 연결방법에 의해 다소 해석 또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는 이 사건 보도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예훼손 사례 18

원고들이 '수요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는 익명의 취재원 등 신빙성이 부족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하라.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나99162 판결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2012년 10월 26일 한국방송공사와 소속 직원 9명이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와 전 KBS 사장 J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 J는 오마이뉴스에 〈J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특별 기획 기사를 매주 연재하였고, 피고 오마이뉴스는 2010년 10월 15일 『KBS의 '하나회'인 '수요회'를 아시나요–사장 퇴진 논의한 그들, 지금 무엇 하고 있나』, 2010년 10월 28일 『"X만한 새끼!" KBS 기자는 왜 욕설을 날렸나–KBS의 하나회 '수요회' 기자들의 "활약"』 제목으로 ① KBS 보도 본부 내에 K를 사장으로 옹립하려는 '수요회'라는 사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주요인사 9인이 그 핵심멤버이며, ② 수요회가 KBS 경영협회장 이 · 취임식에 '수요회' 이름으로 화환을 보낼 정도로 공공연히 활동하였으며, ③ K 사장 옹립을 위해 활동한 대가로 주요 보직을 차지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기사삭제를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①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내부 전자게시판 게시글들은 익명이거나 작성자를 알 수 없는 글이 다수이고, 일부 게시글은 '수요회'의 존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며, 각 게시된 글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조직인 '수요회'가 존재함을 기정사실로 하여 위 사조직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의견을 담은 내용이거나, 제3자가 보거나 들었다는 불확실한 내용을 '수요회' 존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요회'에 관한 각종 언론 기사들은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내부 게시판에 위와 같이 글들이 게시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출처를 인용하지 않거나, 익명의 취재원 발언을 인용하여 '수요회'라는 모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사들이 대부분이며,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인 N의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인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N이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수요회'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는 위 기사의 내용으로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J가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는 내부 보고 문건은 작성 명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KBS 최근 동향 보고 문건에는 '수요회('08년 사장 선임시 K를 지지하기 위해 결성', '보도본부장 A(수요회 회장)','수요회를 이끌고 있는 D 보도총괄팀장'을 K의 측근들로 표현한 내용은 있

으나 KBS 최근 동향 보고 문건은 2009. 12. 29.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는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K가 2009. 12. 1. 부사장, 본부장, 실 · 국 · 팀장 인사를 단행한 후 각종 언론 매체에서 위 인사에 대한 논평 기사를 게시하던 상황이었고, 위 보도 문건의 내용은 당시 보도된 기사 내용과 거의 유사하며, 원고 D의 당시 직위를 잘못 기재하는 오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보고 문건에 기재된 '수요회' 관련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②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영협회장 이 · 취임식에 화환을 보낸 모임은 피고 J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지적한 '수요회'가 아니라 한민족방송 프로듀서들의 수요 점심모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고, ③ 부분에 대해서는 "2008. 4. 16. 한국방송공사 소속 기자들 약 30여 명이 가진 모임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선 · 후배 기자들 사이의 비정기적인 친목모임으로 보일 뿐 K를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차기 사장으로 옹립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수요회'의 구성원 기자들이 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한 모임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기사 부분은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 중 ①, ②, ③ 부분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A 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관하여는 위법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기사 중 ③ 부분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관하여는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으로 보호되어야 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등에게 1심 판결대로 각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고 오마이뉴스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쌍방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한국방송공사 제외)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1심 판결문은 「2011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54~264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11나9916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한국방송공사
2. A
3. B
4. C
5. D
6. E

7. F

8. G

9. H

10. I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2. J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가합2846 판결

변 론 종 결 : 2012. 9. 19.

판 결 선 고 : 2012. 10. 26.

주 문

1.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가 운영하는 '오마이뉴스' 인터넷신문 홈페이지(http://www.ohmynews.com)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1일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활자체와 크기로 하고, 위 홈페이지의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의 기사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가 전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는 원고 A, B, C, D, E, F, G, H, I에게 각 위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이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전항 기재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한국방송공사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는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홈페이지(http://www.ohmynews.com)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3 목록 기재 각 기사를 삭제하고, 제목은 위 인터넷 홈페이지 첫 번째 화면 우측 상단에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큰 제목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본문은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별지 1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가 제2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는 원고들에게 각 위 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이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 C, D, E, F, G, H, I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이 사건 각 기사의 주요 내용은, ① 우리나라의 대표 공영방송인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보도본부 내에 K를 사장으로 옹립하려는 목적을 가진 군부독재시절의 '하나회'에 빗댈 수 있는 '수요회'라는 사조직이 존재하고, 원고 A 등이 핵심 멤버이며, ② '수요회'가 2008년 봄의 어느 수요일에 피고 J 퇴진의 당위성과 차기 사장 후보

로 K를 옹립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짐으로써 대외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고, 피고 J가 회사를 떠난 후에는 경영협회장 이 · 취임식에 '수요회' 명의로 화환을 보낼 정도로 공공연히 활동하였으며, ③ K 사장 옹립을 위해 활동한 대가로 '수요회' 멤버인 원고 A 등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였다는 내용이다.

아래에서는 위 세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각 기사 중 ① 부분

1) '하나회'란 1963년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김복동 등 육군사관학교 11기생들의 주도로 비밀리에 결성된 조직으로서, 주로 육군사관학교의 경상도 출신 소장파 장교들로 구성되었으며, '하나회' 회원들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보안사령부 내사과 등의 진급 담당 요직을 점거하여 승진이나 자리 이동 때 선배가 후배를 추천하고 밀어주는 식으로 군내 주요 요직을 독점하였던 사실, 1979년과 1980년에는 군내 각 요직에 배치된 '하나회' 회원들이 보안사령부 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의 뜻에 따라 12 · 12 군사반란과 5 · 17 쿠데타를 주도하였고, 5 · 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였으며, 이후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하나회' 회원들은 육군참모총장, 보안사령관, 특전사령관과 같은 군내 요직을 독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사실, '하나회'는 1993년 '군정 종식'을 슬로건으로 내건 김영삼 문민정부에 의하여 와해된 사실은 모두 공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하나회'가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갖는 부정적인 의미, 일반인의 '하나회'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 등이 K를 사장으로 옹립하기 위하여 '하나회'에 비견할 만한 '수요회'라는 사조직을 구성하여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위 기사는 원고 A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히 직원들의 일부로 구성된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그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각 기사 중 ② 부분

이 사건 각 기사 중 ② 부분은 '수요회'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2008년 봄의 어느 수요일에 있었던 원고 한국방송공사 직원들의 모임이 K를 사장으로 옹립하려는 목적을 가진 '수요회'의 모임이고, 이후 '수요회'가 화환을 보내는 등으로 공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을 하였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므로, ① 부분과 마찬가지로 원고 A 등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비록 이 사건 제2 기사에서 원고 B, C, D를 '수요회'의 회원으로 거론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제1 기사와 제2 기사는 연재물로 기획된 것이어서 이 사건 제2 기사를 읽는 독자는 '수요회'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 사건 제1 기사를 자연스럽게 읽게 될 것이므로, 위 ② 부분에 의하여 원고 B, C, D의 명예 또한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하는 내용의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각 기사 중 ③ 부분

이 사건 각 기사 중 ③ 부분은 원고 A 등이 '수요회' 구성원으로서 K를 사장으로 옹립하려는 활동을 한 대가로 핵심 보직을 받았다고 지적하는 내용으로, 원고 A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해서도 인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여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 A 등은 이 사건 각 기사 중 ①, ②, ③ 부분에 의하여, 원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각 기사 중 ③ 부분에 의하여 각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가. 기본 법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 시점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다만,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

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 ·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나. 공익성

원고 한국방송공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간방송으로,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할 공적 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인사가 사조직과 사장에 대한 충성이라는 정실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지위와 언론기관으로서 갖는 영향력 등에 비추어 이는 공적인 관심 사안으로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고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에게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고 게시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위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진실성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 중 ①, ②, ③ 부분으로 적시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들은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2) 기사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다. 다만,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먼저 2008년 봄의 어느 수요일에 '수요회'가 K를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차기 사장으로 옹립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는 내용(이 사건 각 기사 중 ②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는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관한 내용인바, 갑 제5, 7호증, 갑 제9호증의 3, 갑 제12, 13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한국방송공사 소속 기자들 약 30여 명이 2008. 4. 16. 수요일에 근처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 위 모임을 위한 연락은 특정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 · 후배 사이에 서로 아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모임의 성격이나 목적을 특정하여 연락하지는 아니한 사실, 위 모임은 개방적 성격의 모임으로 참석한 기자 선 · 후배들 사이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최근의 회사 사정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던 사실, 위 모임에는 K가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차기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기자들뿐만 아니라 그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기자들 또한 참석한 사실, 위 모임에 참석한 일부 기자들 사이에 당시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이었던 피고 J의 사퇴문제와 차기 사장으로 K가 적합하다는 내용의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문제가 위 모임에 참석한 전체 기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통일하거나 조율하지는 않았던 사실, 위 모임에 참석한 기자들이 그 이후로도 조직적 ·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동일한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08. 4. 16.자 모임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선 · 후배 기자들 사이의 비정기적인 친목 모임으로 보일 뿐 K를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차기 사장으로 옹립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수요회'의 구성원 기자들이 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한 모임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기사 부분은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수요회'가 그들 명의로 KBS 경영협회장 이 · 취임식장에 화환을 보냈다는 내용(이 사건 각 기사 중 ②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는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관한 내용인바,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6. 8. 개최된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영협회장 이 · 취임식에 화환을 보낸 모임은 피고 J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지적한 '수요회'가 아니라 한민족방송 프로듀서들의 수요 점심모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사 부분도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K를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차기 사장으로 옹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보도본부 내의 사조직인 '수요회'가 존재하고, 원고 A 등이 그 핵심 구성원이라는 내용(이 사건 기사 중 ①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기사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내용인바, 피고들이 '수요회'라는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근거 자료로는, ① '수요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내부 전자게시판 게시글(을 제2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9), ② '수요회'에 관한 각종 언론 기사(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 ③ 당시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이었던 피고 J가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는 '수요회' 모임 관련 보고 문건(을 제10호증), ④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KBS 최근 동향 보고 문건(을 제9호증의 1)이 있다.

우선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내부 전자게시판 게시글들은 익명이거나 작성자를 알 수 없는 글이 다수이고,

일부 게시글은 '수요회'의 존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며, 각 게시된 글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조직인 '수요회'가 존재함을 기정사실로 하여 위 사조직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의견을 담은 내용이거나, 제3자가 보거나 들었다는 불확실한 내용을 '수요회' 존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요회'에 관한 각종 언론 기사들은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내부 게시판에 위와 같이 글들이 게시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출처를 인용하지 않거나, 익명의 취재원 발언을 인용하여 '수요회'라는 모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사들이 대부분이며, 을 제4호증의 3은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인 N의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인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N이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수요회'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는 위 기사의 내용으로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J가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는 내부 보고 문건(을 제10호증)은 작성 명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KBS 최근 동향 보고 문건(을 제9호증의 1)에는 '수요회('08년 사장 선임시 K를 지지하기 위해 결성)', '보도본부장 A(수요회 회장)', '수요회를 이끌고 있는 D 보도총괄팀장'을 K의 측근들로 표현한 내용이 있으나, 한편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5, 을 제4호증의 1, 7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BS 최근 동향 보고 문건은 2009. 12. 29.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는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K가 2009. 12. 1. 부사장, 본부장, 실 · 국 · 팀장 인사를 단행한 후 각종 언론 매체에서 위 인사에 대한 논평 기사를 게시하던 상황이었고, 위 보고 문건의 내용은 당시 보도된 기사 내용과 거의 유사하며, 원고 D의 당시 직위를 잘못 기재하는 오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보고 문건에 기재된 '수요회' 관련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수요회'라는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제출된 근거 자료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아울러 앞서 이 사건 각 기사 중 ② 부분의 허위성 판단 부분에서 든 각 증거들과 이를 토대로 인정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수요회'가 존재하고, 원고 A 등이 그 핵심 구성원이라는 취지의 위 기사 또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그렇다면, '수요회'가 존재함을 전제로, 원고 A 등이 '수요회'의 핵심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K가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후 주요 보직을 차지하였다는 내용(이 사건 각 기사 중 ③ 부분)도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상당성 등

1) 원고 A 등에 대한 부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 중 ①, ②, ③ 부분으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보았듯이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라고 하는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내부 전자게시판 게시글(을 제2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9), '수요회'에 관한 각종 언론 기사(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 당시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이었던 피고 J가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는 '수요회' 모임 관련 보고 문건(을 제10호증),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KBS 최근 동향 보고 문건(을 제9호증의 1) 등은 모두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를 특정하기 어

려운 자료가 다수여서 확실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J는 원고 A, D를 제외하고는 원고 B, C, E, F, G, H, I가 위 자료들에서조차 '수요회' 멤버로 언급된바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위 원고들 또한 '수요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고 게시함에 있어 직접 원고 A 등에게 '수요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 중 ①, ②, ③ 부분에서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들이 그 밖에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기사 중 ①, ②, ③ 부분으로 적시된 내용이 국가기간방송인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인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공공적 · 사회적 의미를 가진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부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 중 ③ 부분에 의하여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관하여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명예훼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 수사적인 과장 표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제에서 위 부분이 원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들이 '수요회'가 존재한다는 의혹과 '수요회'의 핵심 구성원들이 K가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으로 선임된 이후 사장 옹립 활동의 대가로 핵심 보직을 차지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별다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고,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 한국방송공사 내에 '수요회'라는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의혹에 관하여는 피고 J가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기 약 2년 6개월 전에 이미 원고 한국방송공사 내부의 전자게시판에서 먼저 그 논의가 촉발되었고, 내부 전자게시판에는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직원이 아니면 글을 쓸 수 없는 점, ② 사조직이란 본래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집단이어서 그것이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친목 모임과 그 경계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 구성원을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들이 '수요회'라는 사조직의 존재를 명확하게 밝혀낸 후 기사를 작성할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③ 피고 J가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언론사들이 '수요회'가 존재한다는 의혹에 대하여 수차례 보도를 하였고,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지위나 언론기관으로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내부에 사조직이 존재

하여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기사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공적 존재인 언론사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언론사인 원고 한국방송공사는 이를 실제로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스스로 가진 매체를 통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 중 ③ 부분으로 적시한 내용은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으로 보호되어야 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 중 ①, ②, ③ 부분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A 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관하여는 위법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기사 중 ③ 부분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J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자로서, 피고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로서 원고 A 등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등이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및 그 중 명예훼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경위와 게재 이후의 상황, 각 보도의 시기, 원고 A 등과 피고들의 지위 및 역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이 원고 A 등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별로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등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기사가 피고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2010. 10. 2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0.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기사 중 ①, ②, ③ 부분으로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원고 A 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오마이뉴스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 2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A 등의 이 부분 청구 중 위에서 인용하는 내용을 넘어서는 부분 및 별지 3 목록 기재 각 기사의 삭제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방식과 그 비중, 명

예훼손의 정도, 고려해야 할 공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 오마이뉴스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별지 2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1일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은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활자체와 크기로 하고, 위 홈페이지의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의 기사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로는 이 사건 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원고 A 등의 이 부분 청구 중 위에서 인용하는 내용을 넘어서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오마이뉴스가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 A 등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 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오마이뉴스가 위 정정보도문의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 오마이뉴스로 하여금 원고 A 등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원고들 청구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2 – 정정보도문〉

1. 제목 : 정정보도문

2. 내용 : 주식회사 오마이뉴스는 2010. 10. 15.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에 「KBS의 '하나회'인 '수요회'를 아시나요」라는 제목과, 2010. 10. 28. 위 홈페이지에 「"X만한 새끼!" KBS 기자는 왜 욕설을 날렸나」이라는 제목 하에 2008년 봄에 30여 명의 KBS 기자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이 모임은 K를 사장으로 옹립하기 위한 '수요회'라는 사조직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기사들이 '수요회'라고 지칭한 2008. 4. 16. 모임은 K를 사장으로 옹립하기 위한 사조직이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 3〉 이 사건 각 기사 생략

명예훼손 사례 19

대법원이 특정한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피고 방송사가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극심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사항에 대한 여론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1가합23621 판결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년 11월 1일 MBC 프로듀서 A 외 3명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 프로그램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제목의 방송(이하 '광우병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는 광우병 방송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당시 프로그램 제작자인 원고들은 광우병 방송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광우병 방송과 관련한 민 · 형사 소송 결과에 대해 2011년 9월 5일 사고(社告)를 발표하고, 같은 날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MBC, 'PD수첩 책임 통감…재발 방지 약속'』 제목의 사과 방송을 하였다. 또, 2011년 9월 6일 주요 일간지 1면 하단에 위 사고와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대법원이 PD수첩 보도 중 ①' 방송에 나온 주저앉은 소(이른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보도와 ②'최근 사망한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었다'는 보도(이하 '이 사건 제1, 2쟁점'이라 한다)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법원이 해당 보도 내용을 허위로 결론 내렸다고 잘못 보도하였다며 주위적으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과방송이 의견표명인지 여부에 관해 "이 사건 사과보도에는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스스로 취재 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과보도는 그와 같은 피고의 반성 및 다짐의 계기가 된 사실로서 대법원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였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별도로 보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사과보도가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의 판시 내용 및 그 취지를 함께 보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안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이 사건 대법원 각 판결의 판시 취지에 관한 보도내용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 사건 제1, 2 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

록 정정보도청구사건의 1, 2심,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2심이 모두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고 판시하였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사과보도는 위 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나온 보도로서 대법원의 판시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 ② 하급심의 판단내용이 상고되지 않아 대법원의 판단범위에서 제외되어 그 하급심의 판단대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이 하급심 법원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은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 쟁점에 관한 보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이라고 판단하였고, 원고들도 여전히 그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등, 위 제1, 2 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였는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극심한 의견 대립이 있는 점, ④ 이와 같이 극심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사항이 상고법원의 심리 또는 심판 범위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그에 관해 대법원이 특정한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하급심에서의 판단한 내용을 대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이를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한 수사적 과장에 머문 것이었을 뿐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과방송에 포함된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시의 보도내용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보도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판 결 문

사　　건 : 2011가합23621 손해배상 등

원　　고 : 1. A
2. B
3. C
4. D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변 론 종 결 : 2012. 9. 27.

판 결 선 고 : 2012. 11. 1.

주　　문

1.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피고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

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1주일 내에 발행되는 주요 일간신문의 1면 하단 광고란에 별지 3. 정정보도문을 각 제목은 24급 고딕체 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체 활자로, 피고 사고(社告) 형식으로 1회 게재하며,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각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에게 각 1,96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4.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1주일 내에 발행되는 주요 일간신문의 1면 하단 광고란에 별지 5. 반론보도문을 각 제목은 24급 고딕체 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제 활자로, 피고 사고(社告) 형식으로 1회 게재하며,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각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에게 각 1,96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PD 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 A는 위 'PD 수첩'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기획 · 취재 · 편집 등 제작 전반을 지휘 · 감독하였고, 원고 B는 피고 시사교양 부국장 겸 'PD 수첩'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을 진행하였으며, 원고 C, D는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취재 및 편집에 참여하였다.

다.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방영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 6. 3.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가합10694호로 이 사건 광우병 방송과 관련하여 아래 7가지 사항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이와 같이 소가 제기된 사건을 이하 '선행 정정보도청구사건'이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구한 아래 표의 각 사항은 그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 쟁점'이라고 한다)하였다.

① 방송에 나온 주저앉은 소(이른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 한 보도

② 최근 사망한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었다는 보도

③ 소의 월령이 30개월 미만의 경우 SRM(특정위험물질)은 2가지 부위에 한정되는데 소의 월령과 무관하게 SRM을 7가지 부위로 정의한 보도

④ 한국인의 특정 유전자형(MM형)이 영국인이나 미국인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고 한 보도

⑤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 보도

⑥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에도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므로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에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고 한 보도

⑦ 우리 측 협상 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 미국의 위험성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점과 함께 우리 측 협상 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지, 보려 했는지 의문이라고 한 보도

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8. 7. 31. 농림수산식품부의 위 청구 중 위 제1, 4쟁점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제3쟁점에 대하여는 반론보도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당사자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08나80595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09. 6. 17. 위 제4, 5, 7쟁점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제3쟁점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사자 쌍방은 대법원 2009다52649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1. 9. 2. 피고가 제기한 상고와 관련하여 항소심 판결이 제5, 7쟁점에 대한 정정보도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면서 파기된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광우병 방송과 관련하여 200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458호로 제1, 2, 3, 4, 7 쟁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이하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이라 한다)되었다.

바. 원고들은 2010. 1. 20.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검사가 2010. 1. 21. 항소하였으나 2010.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380호로 원고들에게 다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2010. 12. 3. 제기한 상고는 2011. 9. 2. 대법원 2010도17237호로 기각(이하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과 함께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2011. 9. 5. 별지 6. 기재와 같은 사고(社告,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보냈고 '뉴스데스크'라는 프로그램 첫머리에 「MBC, 'PD수첩 책임 통감 … 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인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보도(이하 '이 사건 사과보도'라 한다)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1. 9. 6. 주요 일간지 1면 하단에 이 사건 사고와 동일한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사과보도

권○○ 아나운서: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법원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최종 판결한 데 대해, 오늘 MBC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배○○ 아나운서:MBC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사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PD수첩의 보도 중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것은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것처럼 언급한 부분과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지적한 부분도 '허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데 대해서는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오늘 社告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실보도를 해야 할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절차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 것은 정당한 취재행위였지만 핵심 쟁점들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PD수첩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보도를 위한 취재, 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내부시스템을 재점검해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안○○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과보도와 관련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과보도를 통해 대법원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제1, 2쟁점에 대한 보도가 허위보도임

을 인정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정정보도, 예비적으로는 반론보도를 구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과보도를 통해,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이 원고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였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위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라는 전제 하에서 위법성을 조각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인데,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은 원고들의 고의를 부정하여 구성요건 단계에서 범죄 성립을 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과보도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에 대한 정정보도, 예비적으로는 반론보도를 구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통해 대법원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핵심쟁점이 허위라고 판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과보도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핵심쟁점이 허위라고 판시한 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정보도, 예비적으로는 반론보도를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과보도는 이 사건 광우병 방송 및 이를 방영한 피고의 언론사로서의 책임에 관한 보도내용일 뿐,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과보도에 의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과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혹은 반론보도를 구할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

나) 이 사건 사과보도의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으로 보면, 이 사건 사과보도의 중점은 대법원에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 내용 중 일부 사실을 허위로 판단하였다는 점이 아니라 피고 스스로 취재 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다짐과 사과의사를 표시한 데 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사과보도와 사고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므로 허위의 보도라고 할 수 없다.

라) 원고들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이미 PD수첩 후속방송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도되었고, 그 내용 자체가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허용할 경우 오히려 올바른 여론 형성에 저해될 수 있으므로, 결국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이익이 없다.

나. 개별적 연관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과보도를 하면서 원고들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PD수첩 프로그램을 명시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과보도를 통해 대법원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일부 쟁점에 대한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과보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에서의 피고인들이다.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에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은 원고들이 제작한 방송이고,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도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지를 판단 대상으로 삼고 있다.

라) 이처럼 선행 정정보도청구사건과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허위성 여부가 공통된 쟁점으로 심리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은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

결은 위 민사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방영된 후 원고들이 2008. 5.경 '이달의 PD상', 2008. 5. 30. 제212회 '이달의 기자상', 2008. 12. 11. 제7회 '송건호 언론상'을 각 수상하게 되면서 원고들 개인의 성명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과 관련하여 자주 보도되었다.

바) 이처럼 이 사건 광우병 방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제작한 원고들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자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사)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위 업체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한 소를 취하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사과보도를 한 후 2011. 9. 19.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는 정직 3개월, 원고 B에게는 감봉 6개월, 원고 C에게는 감봉 6개월, 원고 D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각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9, 16, 17,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과보도 자체로서는 원고들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여도 위 사과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대법원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판시하였다는 것인데,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과보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에서의 피고인들로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보도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은 비록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에서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위 민사판결 대상이 된 방송을 제작한 점, 나아가 ③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은 위 대법원 형사판결과 쟁점을 상당 부분 같이 하여 원고들이 피고인들로서 재판을 받은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과 밀접히 연관을 갖고 있는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피고로부터 징계처분까지 받는 등,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점, ⑤ 원고들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제작진으로서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의 피고인들이었다는 사실은 공중에 널리 알려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보도를 한 이 사건 사과보도는 원고들과 관련된 보도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이해관계를 가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사과보도에 대하여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에 대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이 사건 제1, 2쟁점과 관련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정정보도청구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과방송이 의견표명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과보도에는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스스로 취재 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과보도는 그와 같은 피고의 반성 및 다짐의 계기가 된 사실로서 대법원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였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별도로 보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사과보도가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사흘 후 방송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과보도는 단순히 피고의 반성과 다짐을 보도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의 판시 내용 및 그 취지를 함께 보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안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이 사건 대법원 각 판결의 판시 취지에 관한 보도내용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선행 정정보도청구사건에 있어 1심 판결은 위 제1, 2쟁점에 관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하여는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정정보도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피디수첩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항소심 판결도 위 제1, 2쟁점에 관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보

도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였는데 위 각 쟁점에 관하여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정정보도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 위 항소심 판결의 제1, 2쟁점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위 제1, 2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원심은 별지 1. 기재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에 관한 보도 및 별지 2. 기재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에 관한 보도에 관하여 그 각 판시와 같은 피고의 후속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정도의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를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이 판시한 2008. 5. 13.자 보도내용, 2008. 6. 17.자 보도내용, 2008. 7. 15.자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및 대법원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⑵ 판단

㈎ 민사소송법은 상고이유와 상고심리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상고법원의 심리범위는 결국 당사자가 불복신청한 범위와 그 상고이유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쟁점에 대해서는 당시 원고인 농림수산식품부만 그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상고하면서 그 상고이유로 정정보도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므로, 결국 그 상고심의 심리범위는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정정보도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에서도 정정보도의 이익이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판시만을 하였을 뿐 그 전제인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의 허위 여부가 그 정정보도 이익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논리적으로 선결문제이고,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도 이를 당연한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할지라도,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하급심 판결 및 검사의 상고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은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하여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하여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검사만이 상고하였다. 검사의 상고이유 중 원고들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

① 이 사건 제1쟁점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장에는, ㉮ 원고 B가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고 한 발언 부분과 ㉯ 마이클 그래거가 "젖소"라고 말한 것을 "심지어 이런 소"로 자막 처리한 부분, ㉰ "동물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더니"라고 말한 것을 "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느냐고) 물었더니"라고 자막 처리한 부분이 각 허위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다.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해서도, 공소사실에는, ㉮ 아레사 빈슨의 모친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이 질병에 관여한다는 것이 놀라웠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라고 자막 처리한 부분, ㉯ 미국의 방송이 "의사들은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는지 의심합니다"라고 보도한 것을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라고 자막 처리한 부분, ㉰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CJD 의심 진단을 받았음에도 아레사 빈슨의 모친이 아레사 빈슨에 대한 MRI 검사 결과를 말하는 인터뷰 내용 중 'CJD'를 임의로 'vCJD(인간 광우병)'로 바꾸어 자막 처리한 부분, ㉱ 버지니아 보건당국의 보도자료 제목은 "버지니아 보건당국 포츠머스 여성 질병 조사"인데 이를 "버지니아 보건당국 vCJD 사망자 조사"인 것처럼 보도하고 버지니아 보건당국 관계자가 "지금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라고 말하였는데도 이를 "지금 (인간 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라고 자막 처리한 부분이 모두 허위라고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판결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상과 같은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 위법에 관한 상고이유는 당시 '검사의 상고이유 제2점'이었다).

② 원심판결이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설시한 것과 관련하여, 아레사 빈슨은 MRI 검사 결과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는 위법하다(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당시 '검사의 상고이유 제3점'이었다).

③ 원심판결은 이 사건 광우병 보도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광우병 보도가 공익적 사안에 관한 보도였으며, 그에 따른 피해자들도 모두 공직자로서 보도내용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법리를 사용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위 상고이유는 당시 '검사의 상고이유 제6, 7점'이었다).

㈐ 대법원의 판시 내용

위와 같은 검사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나. 상고이유 제2점(판단유탈 및 이유불비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공소사실에 별도 항목으로 적시되어 있는 진행자의 발언, 인터뷰 번역 내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판결이유에 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부적 방송내용이 포함된 전체 방송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중략)

다. 상고이유 제3, 4점(아레사 빈슨 사망 및 특정위험물질 수입 관련 보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계 증거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중략)

마. 상고이유 제6, 7점(보도내용과 피해자의 연관성 및 명예훼손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전략)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작한 이 사건 방송보도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중략)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언론보도와 피해자의 연관성,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⑵ 판단

㈎ 형사소송법 제384조 본문은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대법원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제기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한정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하여 네 가지 점에 있어서 상고이유를 주장하였는바, 대법원이 위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쟁점에 대한 보도가 허위였는지에 대하여도 판단하였는지에 관해 나누어 살펴본다.

㈏ 상고이유 제2점과 관련한 설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제1, 2 쟁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구체적 사실들의 허위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며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에 그치고 검사가 주장한 개별적 사실들에 대한 허위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 상고이유 제3점과 관련한 설시

또한, 검사는 이 사건 광우병 보도 중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도한 부분이 허위임에도 원심판결이 이를 진실이라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은 위 보도가 진실이라는 원심판결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이 "원심판결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이 사건 광우병 방송 중 위와 같은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이고, 원심판결이 허위로 판단한 부분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의 판시라고 볼 수 없다.

㈑ 상고이유 제6, 7점과 관련한 설시

또한, 검사는 원심판결 중 보도내용과 피해자의 연관성 및 명예훼손의 고의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만 상고하였고, 그와 같은 원심판결의 판단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허위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는 상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이 검사의 위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한 것은 검사가 상고이유로 삼은 보도내용과 피해자의 연관성 및 명예훼손의 고의에 관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는 것이지, 대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았던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의 허위성 여부에 관한 항소심 판결의 판단의 정당성을 판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소결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의 허위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시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의 허위 여부가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판단한 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의 존부라는 쟁점에 대하여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에서처럼 반드시 논리적 선결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라) 정정보도청구에 있어서의 허위성에 관한 판단

(1) 정정보도청구에 있어서 허위성의 판단기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법원 각 판결은 원고들이 위 제1, 2쟁점에 관하여 허위로 보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과방송을 통해 대법원이 그와 같이 판시하였다고 보도하였으므로 피고의 사건 사과방송에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과보도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된다 하여도 그것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⑵ 인정사실

㈎ 선행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1심 및 항소심,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은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보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실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사과보도는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사흘 후인 2011. 9. 5.에 이루어졌으며, 대법원이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원고들은 2008. 5. 1. 'PD 수첩'을 통해, 이 사건 제1쟁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광우병 방송에 나온 주저앉은 소들이 반드시 광우병에 걸렸다고 볼 수 없고,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광우병뿐만 아니라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 사건 제2쟁점과 관련하여 미국 농무부 레이먼트 차관이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원고들은 2008. 6. 17. 'PD 수첩'을 통해 이 사건 제2쟁점과 관련하여 미국질병통제센터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보도하였다.

㈒ 원고들은 2008. 7. 15. 'PD 수첩'의 방송 전체를 할애하여 이 사건 제1, 2쟁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란 및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광우병 방송에서 잘못 보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방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고들의 자발적 후속보도'라 한다). 원고들은 위 방송을 통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에 일부 오역이 존재하고 단정적인 표현들이 사용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허위보도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 원고들의 위 각 후속보도는 모두 피디수첩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⑶ 판단

살피건대, 비록 정정보도청구사건의 1, 2심,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2심이 모두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고 판시하였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사과보도는 위 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나온 보도로서 대법원의 판시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 ② 하급심의 판단내용이 상고되지 않아 대법원의 판단범위에서 제외되어 그 하급심의 판단대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이 하급심 법원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은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이라고 판단하였고, 원고들도 여전히 그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등, 위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였는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극심한 의견 대립이 있는 점, ④ 이와 같이

극심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사항이 상고법원의 심리 또는 심판 범위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그에 관해 대법원이 특정한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하급심에서의 판단한 내용을 대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이를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한 수사적 과장에 머문 것이었을 뿐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과방송에 포함된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시의 보도내용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보도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한편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언론사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①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언론사등을 통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② 정정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참조).

가) 충분히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⑴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정정보도와 관련하여 이미 다른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도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드는 2008. 5. 13.자, 2008. 6. 17.자, 2008. 7. 15.자, 2008. 11. 4.자 각 'PD 수첩' 방송은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쟁점에 관한 이 사건 광우병 방송 중의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각 방송은 이 사건 사과보도에 있어 대법원 판결 내용을 허위로 소개한 부분에 관하여 이를 바로잡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⑵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과보도에 뒤따르는 보도로 "'PD 수첩' 의미와 파장 … '자유 누리되 책임져야'"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도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사는 '원고들 무죄, 일부 보도 허위'라는 판결이 사회에 대하여 갖는 의미에 대한 해석의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소개하는 데에 불과하고, 대법원이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보도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과보도에 이어 위 보도를 시청한 시청자들로서는 대법원이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보도를 허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의미에 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보도만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사항에 불과한지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하급심에서 이미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판결하였고 그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것이 대법원의 심리 또는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은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사항에 관련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광우병 방송과 관련한 여론의 극심한 대립을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허용할 경우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항변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 선행 정정보도청구사건의 1심 및 항소심,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및 항소심의 각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언론사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위 각 하급심 판결들의 결론 및 그 이유에 대한 보도가 언론사들을 통해 이미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였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을 방영할 당시에는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불명인 상태였고, 그 중 인간광우병이 사망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방영된 이후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2. 다. 1) 라)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정된 하급심 판결 이유에서 제1, 2쟁점에 관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대법원의 판단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였는지는 논쟁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논쟁의 여지가 심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심판 또는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에도 대법원이 특정 방향으로 판단하였다고 보도하는 것은 오히려 여론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과보도는 이 사건 광우병 방송에 대한 각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대법원 각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이루어진 방송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과보도는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라는 사실을 보도하는 데에 중점이 있다기보다 이 사건 대법원 각 판결의 내용을 보도하는 데에 중점이 있는 보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대법원 각 판결 내용을 허위로 보도한 것이 단순히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한 보도는 원고들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을 방영한 이후에 비로소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제2쟁점과 관련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는 허위사실의 판단시점을 행위시로 삼을 것인지, 변론종결시로 삼을 것인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비록 선행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1심 및 항소심,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각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한 보도가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

사건에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한 원고들의 보도가 허위였음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는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 보도가 무죄를 다투고 있던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인 원고들에게 있어 단순히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허위성을 대법원이 판단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들의 정정보도청구가 단순히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사항에 관련된 것에 불과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사과보도 내용 중에 대법원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고 판시하였다고 보도한 내용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의 기재에만 의하면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법원이 이 사건 제1, 2 쟁점에 관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보도에 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갖게 될 여지가 있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정정보도청구의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한 정정보도청구 내용에 각 하급심 판결에 관한 내용을 부가한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라. 원고들의 무죄 이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원고들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광우병 방송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본 다음, 원고들에게 피해자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검사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상고를 한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중략) …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3)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이 원심판결의 명예훼손의 고의에 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설시한 법리는 아래와 같다.

>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

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⑷ 이 사건 사과보도는 원고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라는 이유에 있다고 보도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었는데,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보도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이 설시한 법리를 살펴보건대, 위 판결은 원고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공공적 · 사회적 사안에 대한 보도였다는 점, 공익적 사항에 관한 보도로 인해 보도 대상이 된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이처럼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성부를 판단하면서 구성요건 단계에서 명예훼손적 표현내용이 공익적 사안에 관한 것인지를 고려하여, 그 보도내용이 공익적 사안 또는 국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관한 공직자에 대한 것이라면 구성요건 단계에서 명예훼손 성립의 인정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 사안 및 공직자에 관한 보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인정함에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였으므로 대법원이 원고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2)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원고들에 대한 무죄판결 선고 이유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핀다.

나)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중재법이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언론중재법 제1조)이란 점을 감안하면, 언론중재법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언론보도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 또는 권리, 그 밖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법상 명예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된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상의 반론보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원고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과보도는 원고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으로 오히려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무죄판결의 이유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 사안에 해당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보도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보도는 결국 대법원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을 허위라고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공익적 보도였는지 여부를 판단 요소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공익적 보도였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하여서 반드시 원고들의 이 사건 광우병 보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설사 원고들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여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과보도내용 중 대법원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는 보도 부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이어서 이에 대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구하면 족하고, 별도로 원고들의 보도내용이 공익적 사안임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보도한 부분에 의해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반론보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결국 원고들이 구하는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 또한 이유 없다.

마. '핵심부분이 허위'라고 보도한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과보도에서 피고의 이 사건 사고를 인용하면서 "MBC는 오늘 사고를 통해 … (중략) … 한미 쇠고기 협상절차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 것은 정당한 취재행위였지만 핵심 쟁점들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고 인정했습니다."고 보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이 사건 사과보도가 단순히 인용보도인지 여부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위에 적시된 부분은 피고의 이 사건 사고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는 형식을 취하기

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과보도 및 이 사건 사고의 방송 주체는 모두 피고로 동일하다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방송된 직후에 이 사건 사과보도가 방송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과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위 내용을 보도한 것은 단순한 인용을 넘어 이 사건 사고에 담긴 위 내용을 "뉴스데스크"의 기사의 형식을 빌려 재차 보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담긴 내용의 정정 또는 반박을 위해 이 사건 사과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다.

3)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언론중재법 제14조 및 제16조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언론보도등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 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보도에서 제3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반론보도 청구를 하면서 문제삼는 대상이 그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였는지의 여부라면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나, 원보도가 제3자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으로 보도하였고, 반론보도문에서도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의 여부를 문제삼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 표명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① 대법원이 비록 제1, 2 쟁점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보도가 허위인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도, 원고들의 위 쟁점들에 대한 보도가 허위라고 판시한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의 선고로 확정된 점, ②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대법원은 이 사건 제4쟁점에 관한 원고들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시한 사실, ③ 피고의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발표된 것이기는 하나, '핵심쟁점이 허위라면'이라고 표현한 문장에는 허위의 판단주체가 등장하지 않아 반드시 대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광우병 방송 내용 중 무엇이 '핵심 쟁점'인지에 대한 판단은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핵심쟁점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고 기술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된 항소심 판결 및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광우병 방송 내용 중 핵심 쟁점이 허위라는 피고의 의견을 전제로 위 방송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피고의 의견을 다시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원고들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구하는 이 사건 사과보도 부분이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광고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주요 일간지에 이 사건 사고를 광고 형태로 게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주요 일간지에 광고 형태로 게재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 한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주요 일간지 광고면에 게재한 것은 굳이 언론이 아닌 개인들도 광고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불하기만 하면 게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광고를 두고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주요 일간지 광고면에 게재된 것을 문제 삼으며 피고에게 그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문을 주요 일간지에 게재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주요 일간지에 특정 광고를 게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당해 일간지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들로서는 위 주요 일간지에 대하여 직접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게재 여부에 대한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사고, 사과보도 및 광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각 1,9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방송 등 언론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등 참조).

다. 우선 이 사건 사과보도의 허위성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대법원이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하여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음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과보도를 방영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라.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사과보도는 언론보도에 있어서 언론사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보도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나아가, ①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 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을 방송한 방송국으로서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보도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②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분석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점, ③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 및 그 각 항소심 판결을 대조하여 면

밀히 분석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제1, 2쟁점이 대법원의 심판 또는 심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④ 법률에 대한 문외한으로서는 대법원이 위 각 쟁점들에 대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설시한 것을 토대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의 이 사건 제1, 2쟁점의 허위성에 관한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고 여길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대법원이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원고들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시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사과보도는 대법원이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였다고 보도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서 피고가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정정보도문〉

제목 : PD 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내용 :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11년 9월 5일 방영된 〈뉴스데스크〉의 헤드라인으로 「MBC, PD수첩 책임 통감 … 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이 지난 2008년 4월 29일 PD 수첩의 보도 중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것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판결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사건의 2심과 형사사건의 2심은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하고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한 PD수첩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미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상고를 기각하였을 뿐, PD수첩이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것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도한 것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지 2, 3〉 정정보도요청문 생략

〈별지 4, 5〉 반론보도요청문 생략

〈별지 6〉 社告 생략

제2장 재산권 침해 사례

재산권 침해 사례 1

보도내용이 이례적이어서 발생가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이 큰 방송사로서는 진실 여부 확인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1가합14797 판결

사실개요

수원지방법원은 2012년 9월 28일 유치원 원장 A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11년 3월 1일 MBC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밥상에? 수상한 유치원」 제목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해 급식하고, 원장 등 관계자는 따로 준비된 식사를 먹으면서 원생들에게는 반찬이 없는 맨밥만을 주었으며, 한 겨울에도 제대로 난방이 되지 않는 곳에 원생들을 방치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① 원고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해 급식했다는 보도에 대해 "유치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여 조리한 음식을 유치원생들에게 급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유치원생들이 배탈을 일으켰을 개연성 역시 충분하므로 이 부분은 진실에 합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②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반찬 없는 급식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대상 내용이 이례적이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리고 그러한 사안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방송사의 지명도나 신뢰성이 높아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방송사로서는 보도되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사안보다 더욱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그러한 자료들의 신빙성 여부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통의 상식을 가진 자라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누구라도 그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이를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신속성이 요구되는 뉴스 속보의 경우에는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진실 여부를 떠나 그와 같은 보도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신속하게 시

청자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더 클 때가 많은 반면,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은 심층취재 보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와 달리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진실 여부를 규명할 시간적 여유나 수단도 비교적 충분하기 때문에 단지 의혹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일방의 진술이나 신빙성 없는 자료에만 의존하여 쉽게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고 밝히고, "제작진이 식단이 부실했다는 퇴직 교사의 증언 및 출처와 촬영 동기를 알 수 없는 사진을 취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작진이 반찬 없는 급식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③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겨울철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제작진이 퇴직 교사의 증언 중 '많이 추웠다'는 부분만을 부각시켜 방송하였고, 유치원의 난방시설을 확인하거나 다른 학부모나 원생들을 추가로 취재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원고에게 보도 내용을 알리고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유치원의 겨울철 난방 문제를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양당사자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4월 1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11년 6월 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2011서울조정653, 654)하였고, 담당중재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하여 자동소제기 된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11가합14797 손해배상
원　　고 : A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변론종결 : 2012. 8. 31.
판결선고 : 2012. 9.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2.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의 방송 첫 머리 화면 상단에 24급 크기의 고딕활자로 "정정방송"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 제목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방송문을 18급 크기의 명조활자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

방송문을 원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1회 낭독하게 하여야 하고,

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주소 http://www.imbc.com의 '생방송 오늘 아침' 해당 페이지에 위 가.항 기재 크기 및 종류의 활자로 별지 1 정정방송문을 함께 게시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2 기재 내용을 피고가 운영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08:30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아침'의 도입부에 제목은 24급 고딕활자, 본문은 18급 명조활자 크기의 문자와 함께 음성으로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방송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iMBC)의 위 프로그램 페이지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로 게시하고, 원고에게 489,995,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읍 ○리에 위치한 B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을 구별하여 지칭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통틀어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건물 및 그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유치원을 각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생방송 오늘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 방송하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다.

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둘러싼 원고와 학부모들 사이의 갈등 발생

(1) 이 사건 유치원에 아들 C를 등원시키고 있었던 D는 C가 유치원을 다녀온 후 복통을 호소하자 2011. 1. 13. 유치원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E와 함께 조리실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식자재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김, 전분, 생률 등의 식자재(이하 '이 사건 식자재'라고 한다)를 위 냉장고에서 발견하였다.

(2) 위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유치원에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있었던 학부모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식자재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2011. 2. 21. 1차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원고와 E를 제외한 일부 재직 교사와 조리사 J가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3) 위 1차 간담회 후 원고는 2011. 2. 22. 학부모들에게 '최근 유통기한이 넘은 식자재가 냉장고 안에 있었고, 그 중 소량의 생크림이 간식시간에 빵과 함께 나왔으며, 유통기한이 넘은 감자가루를 이용하여 조리한 사실도 있었다. 조리실 안전 점검이 부실했던 원고의 과실을 깊이 뉘우치며 용서를 구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원장인 원고는 위 사실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취지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그러나 원고는 다음날 유치원 7세반 졸업식 행사 도중 위 가정통신문과는 달리 이 사건 식자재를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4) 이에 학부모 대표 F는 2011. 2. 24. 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가 여전히 원장직 사퇴 등 학부모들 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자 경기도 화성오산 교육지원청과 화성시청에 이 사건 유치원을 폐원하고 원고의 보육교육 관련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민원 등을 제기하였으며, YTN과 피고 등 언론매체에 이 사건 식자재를 발견한 사건 등을 제보하였다.

(5) 이에 따라 2011. 2. 25. YTN 뉴스에서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 사건을 보도하기에 이르렀고, 다수의 언론매체도 그 무렵 위 보도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인터넷뉴스를 게시하였다.

다. '생방송 오늘 아침' 제작진의 취재 및 방송

(1) 학부모 대표 F의 제보를 받은 피고의 '생방송 오늘 아침' 제작진(이하 '이 사건 제작진'이라 한다)은 2011. 2. 27. F의 자택에서 학부모들을 만나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한 취재를 시작하면서, F가 자신의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식자재와 원생들의 진단서, 원고가 보낸 가정통신문 등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28.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이 사건 유치원을 방문하여 원고, E, 퇴직교사 등을 취재하였으며, 같은 날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를 취재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2011. 3. 1. 08:30경부터 '생방송 오늘 아침' –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밥상에? 수상한 유치원"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약 15분 50초 동안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대본은 별지 4 기재와 같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전 토크 부분 : 엠씨 G가 유아대상 어학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가 발견되었던 것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리포터 H가 경기도의 한 유치원에서 무려 유통기한이 2년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여 파문이 일었고 이에 해당 유치원을 밀착 취재하였다고 밝히는 장면.

(나) 학부모들에 대한 취재 부분 :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와 아이들에 대한 진단서를 보여주고, 학부모들이 유치원 냉장고를 열어보게 된 계기가 비슷한 시기에 아이들에게 장염 등 유사한 병명의 질환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장면.

(다) 유치원 측에 대한 취재 부분 : ① 유치원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찾아 갔으나 원장인 원고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다른 유치원 관계자는 피하기만 하였다는 설명에 이어, '나가세요',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연이어 배치한 장면. ② 학부모들이 위 유치원 관계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위 유치원 관계자가 이를 부인하면서 '아이들의 생명을 제 생명처럼 생각한다'라고 답변하는 장면. ③ 곧이어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퇴직교사로부터 전혀 다른 내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퇴직교사가 '식단에 대하여 몇 번 이야기를 하였고, 원장 등은 따로 음식을 해 먹으며 음식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는 장면.

(라) 반찬 없는 급식 문제에 대한 취재 부분 : ① 불량 식자재 뿐 아니라 학부모들을 분노케 한 또 다른 문제는 반찬 없는 급식 사진이라는 설명에 이어 아이들의 식판 사진을 비추고 엠씨 I가 '맨밥을 먹였다는 건가요?'라

고 말하는 장면. ② 퇴직교사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장면에 이어 퇴직교사가 이야기하는 부실 급식의 실태는 심각했다는 설명과 함께 퇴직교사의 '자장밥이 나오는 경우 야쿠르트나 단무지 정도만 주고 반찬은 따로 없었다. 일주일에 거의 그런 식단이 제공된다.'는 취지의 인터뷰가 방송되는 도중에, 엠씨 I가 '이 건 뭐 포로 수용소도 아니고'라고, 리포터 H가 '충격적이죠'라고 말하는 장면.

(마) 난방 문제에 대한 취재 부분 : 교사들과 인터뷰를 하던 중 또 다른 문제점도 드러났다는 설명과 함께 퇴직 교사가 '매우 추웠다. 보일러는 항상 절약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10시 반이면 보일러를 꺼야 한다. 원장이 보일러 끄라고 방송을 한다. 몰래 보일러를 켤 때도 있으나 원장이 있으면 돌아다니기 때문에 켤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는 장면.

(바) 원고에 대한 취재 부분 : ① 직접 음식을 만든 조리사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는 유치원을 떠난 상태라는 설명 후 학부모들의 격앙된 반응을 연이어 배치하고 '더 가슴이 미어지는 건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불량 식자재 사용을 인정하는 듯 했던 유치원 측의 태도 변화입니다.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요'라고 말하는 장면. ② 이어 대표자로서의 입장을 묻는 이 사건 제작진의 질문에 원고가 '지쳐 가지고 그냥 아무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다. 문을 닫는다.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다. 지금 너무 떠들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뭐가 미안한 건데? 그러니까 미안한 이유를... 그냥 미안합니다 이건 아니죠', '먹이지 않았거든요?'라고 답변하자, 리포터 H가 '먹이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죠 계속해서'라고 말하는 장면.

(사)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대한 취재 부분 :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관내 학부모에게 사과하면서 해당 유치원의 원장이 사임의사를 표시하였고 앞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는 장면.

(아) 후 토크 부분 : ① 엠씨 I가 '폐기해야 마땅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여 놓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아이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제재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리포터 H가 '진상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행정조치만 취할 수 있다. 관계당국의 소홀한 관리도 문제인데 아이들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장면. ② 가정의학과 전문의 O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쓴 것을 보니 조리 위생상태도 불량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복통이나 설사 같은 가벼운 증상 뿐 아니라 뇌막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장면.

라. 이 사건 방송 이후의 정황

(1) 화성시장은 2011. 2. 28.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 보관한 점을 위반사항으로 하여 3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하였고, 화성서부경찰서에 이 사건 유치원 종사자의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2) 또한 학부모 대표 F 등은 화성시청의 위 수사의뢰와 유사한 내용의 진정을 화성서부경찰서에 제기하였고, F 등의 진정 및 화성시청의 수사의뢰에 대하여 화성서부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후 원생들에게 급식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모두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위 내사 과정에서 조리사 J가 원고에게 법률적으로 자문한 결과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며 출석을 거부하여 J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3) 한편 경기도 교육청장은 2011. 3. 21. 타인이 이 사건 유치원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소하였다.

(4) 이 사건 식자재 등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은 150명가량이었으나 그 후 10명가량으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약 50명의 원생이 위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 8, 9, 11, 17 내지 20, 22, 24 내지 29, 31 내지 34, 39, 40, 43, 44호증, 을제1, 3, 5 내지 9, 11 내지 13, 15,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제2, 16호증의 각 영상, 증인 P, E, D, F의 각 증언,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화성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책임자로 특정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을 타인에게 맡겨 오다 2011. 3. 21.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원장 자격을 박탈당하였고, 어린이집은 처음부터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도 아니어서 어느 모로 보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를 유치원 대표자, 이 사건 유치원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유치원이라고 표시하면서 모자이크처리 및 목소리 변조처리를 하여 원고의 이름과 유치원의 명칭 등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들 사이에 이 사건 식자재에 관한 문제가 알려져 학부모 1, 2차 간담회까지 개최되었고, YTN 등 다른 언론매체에서도 위 문제를 보도한 이후였으므로, 위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 중 적어도 위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나 평소 원고를 알고 지내던 주변 사람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유치원 대표자가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원고로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이 있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치원을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상 이 사건 유치원의 대표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제작진 역시 원고가 위 유치원의 대표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방송을 보도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유치원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방송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의 당사자 적격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1]의 요지

(1) 이 사건 식자재를 보관, 사용, 급식한 부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적시에 폐기하지 못한 불찰로 이 사건 유치원 냉장고에 이 사건 식자재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사용하여 급식을 한 적은 없으므로 유치원생들의 배탈은 이 사건 유치원과는 무관하다. 원고가 섣부르게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생크림, 전분의 사용을 인정한 적은 있으나 그 후 J로부터 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원고의 결백을 알리기 위하여 입장을 변경하였을 뿐 태도를 번복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식자재 중 생률은 발견 당시 진공 포장된 상태로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곰팡이가 필 가능성이 없었고, 곰팡이가 핀 생률을 보관한 적도 없다. 오히려 생률에서 발견된 곰팡이는 학부모들이 이 사건 유치원 냉동실에서 생률을 꺼내어 50일 넘게 들고 다니며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반찬 없는 급식 부분

이 사건 유치원에서는 식단표에 기재된 대로 반찬을 준비하여 유치원생들에게 급식을 하였다. 피고가 반찬 없는 급식이라면서 방송에 사용한 사진은 아이들이 반찬을 가리지 않고 맛있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학부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담임교사가 찍어서 유치원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것이며, 원고 등 유치원 관계자들이 원생들과는 별도로 식사를 준비하여 먹은 적은 없다.

(3) 겨울철 난방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기록적인 강추위로 이 사건 유치원의 가스보일러 1대가 동파된 적은 있으나 그 대신 전기 난방기 등을 가동하였기 때문에 난방에는 문제가 없었고, 또한 바닥 난방이 가능한 3층으로 이동하여 교육을 하였으므로 추운 교실에 아이들을 방치한 적은 없다.

(4)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사실들과는 다르게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실제 운영자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액은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5) 원생수 감소로 인한 손해

또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수가 급감하였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설립자 부담금을 전입한 후 상환 받지 못한 금액 중 2010년도와 비교한 차액으로, 유치원의 경우는 31,500,000원,

1) 원고는 ① 곰팡이가 핀 생률을 보관한 부분, ② 이 사건 식자재의 사용으로 유치원 원생들이 배탈이 났다는 부분, ③ 원고 등 유치원 관계자들이 별도로 준비된 식사를 하였다는 부분, ④ 원고가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조리실에 CCTV를 달아주기로 하였으며, 유치원장에서 물러나기로 하였다가 태도를 바꾸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 주장은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식자재 보관, 사용, 급식 부분 또는 반찬 없는 급식 부분과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① 내지 ④항 기재 주장을 이 부분에 포함하여 함께 판단하도록 한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26,795,079원에 이르며, 이 사건 방송 전 수준으로 원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생수 감소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의 합계는 174,885,237원{= 94,500,000원(31,500,000원 × 3년) + 80,385,237원(26,795,079원 × 3년)}이다.

(6) 기타 재산상 손해

또한 이 사건 방송 전 이 사건 유치원이 있는 건물과 토지의 시세는 30억 원 정도였으나 방송 이후 시세가 급락하였고, 위 건물과 토지를 급매로 거래할 경우의 손해액은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데, 이 또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로 보아야 한다.

(7)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및 정정보도 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합계 339,885,237원(= 174,885,237원 + 165,000,000원) 및 정신적 손해 1억 5,000만 원을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금전배상만으로는 원고가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불완전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기재 정정방송문을 방송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해당 프로그램 페이지에 위 정정방송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은 그 내용이 진실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작진은 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피고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에는 위법성이 없다.

4. 이 사건 방송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일반 법리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나아가 보도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 ·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

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표현행위자의 내심의 의도나 상대방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제목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밥상에? 수상한 유치원'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 및 구성에 있어 1. 다. (2)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장면을 순차로 방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식사를 원생들에게 급식하고, 원장 등 관계자는 따로 준비된 식사를 먹으면서 원생들에게는 반찬이 없는 맨밥만을 주었으며, 한겨울에도 제대로 난방이 되지 않는 곳에 원생들을 방치하였는데, 책임자인 원고가 태도를 바꿔 부인과 회피로만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과 구성으로 편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까지 감안하여 위와 같은 방송제목,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문맥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적어도 강하게 암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일부에서 '이건 뭐 포로 수용소도 아니고',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등의 이 사건 유치원 관계자를 비판하거나 전문가의 소견을 밝히는 내용의 의견표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강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5.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일반 법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먼저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도123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의 공익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식자재 등 문제는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로서 그 자체로 중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점, ② 특히 맞벌이 부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유로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는 부모들로서는 그 시간 동안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오로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수밖에는 없어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매우 예민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점, ③ 그럼에도 이 사건 식자재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무렵 유아대상 어학원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등을 사용하여 적발되거나, 어린이 보육기관에서 아동을 학대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이에 영유아 보육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있었던 점, ④ 이에 따라 이 사건 제작진은 이와 관련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식자재를 보관, 사용, 급식한 부분

이 사건 유치원 조리실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전분, 생률 등의 식자재가 발견되었고, 이에 대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2011. 2. 14. 이 사건 유치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식자재를 발견한 학부모 D는 이를 유치원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자신의 과일 가게에 가져와 곶감 냉동고에 보관하였고, 학부모 대표 F가 학부모 1차 간담회날인 2011. 2. 21. 이를 넘겨받아 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옮겨 바로 사진을 찍은 후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한 사실, 다수의 유치원생들이 이 사건 유치원에 다니는 동안 위장염 또는 대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중 유치원생 K, L, M, N은 2010. 12. 22.부터 같은 달 23. 사이 모두 대장염 등 유사한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D와 F가 위 생률을 옮기고 이 사건 제작진 등에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를 실온에 노출시켰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유치원과 D의 가게, 위 가게와 F 집 사이의 거리, 이후의 보관 방법에 비추어 발견 당시에는 없었던 곰팡이가 위 과

정에서 갑자기 번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발견 당시 생률의 유통기한이 75일이나 지난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생률의 보관장소가 유치원 냉장고의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발견 당시 이미 부패했을 가능성이 있고, F가 D로부터 생률을 건네받아 찍은 사진에도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조리사 J는 학부모 1차 간담회 당시 이 사건 식자재 중 유통기한이 1년 이상이나 지난 전분의 사용을 인정하였고, J의 위 진술은 이 사건 식자재가 발견된 후 최초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④ 이에 원고도 J의 위와 같은 자백을 전해 듣고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가정통신문을 전달하였던 점, ⑤ 그 후 J가 최초 자백과 달리 위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진술로 인하여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식자재의 사용을 부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 만일 J가 정말로 이 사건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와 같은 진실을 밝힐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서 이 사건 식자재의 사용 여부를 끝내 밝히지 않았던 점, ⑦ 이 사건 식자재의 각 유통기한 및 그 종류와 수량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히 냉장고 정리를 하지 못한 과실로 이를 방치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2010년도 식단표에 의하면 전분이 소스로 사용되는 탕수육 등이 급식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설령 과실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조리과정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식자재의 유통기한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재료를 사용하기보다는 냉장고에 있었으니 안전하거나 유통기한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고 별 생각 없이 그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유치원에서 이 사건 식자재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여 조리한 음식을 유치원생들에게 급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유치원생들이 배탈을 일으켰을 개연성 역시 충분하므로, 이 부분은 진실에 합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작진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이 사건 유치원에서 이 사건 식자재를 보관, 사용, 급식한 부분을 방송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이상 그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반찬 없는 급식 부분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 유치원의 급식 문제를 보도하기 위한 것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였다는 부분과 반찬이 없는 급식을 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이 사건 유치원의 급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 사건 방송 취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반찬 없는 급식 부분은 유통 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문제에 부수되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무게를 지닌 별도의 독립된 문제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방송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방송을 진행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진실성 여부 역시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의 문제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유치원생들의 식판에 반찬이 없거나 반찬이 부실하게 제공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은 2009.경 유치원의 담임교사가 식사시간에 아이들을 촬영하여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유치원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인 점, ② 당초 촬영의 목적 및 계기는 아이들이 반찬을 가리지 않고 맛있게 식사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찬이 부실하다는 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위 사진들로부터 반찬 없는 급식을 추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식판에 반찬이 없거나 일부만 남아있는 사진 역시 처음부터 반찬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최초 사진의 게시 의도

대로 아이들이 반찬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서 반찬이 식판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위 사진의 촬영 및 게시 목적에 따라 위 사진이 유치원 인터넷 카페에 게시될 무렵 학부모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던 점, ⑤ 또한 위 인터넷 카페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사진 이외에도 식사 중인 아이들의 사진이 다수 게시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식판에 반찬이 없거나 일부만 남아있는 사진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이러한 사진에 대하여도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⑥ 경험칙상 어느 식당이든 짜장밥이나 카레밥 등의 메뉴가 나갈 때는 짜장이나 카레가 그 자체로 반찬의 역할을 하므로 단무지나 장국 이외의 추가적인 반찬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점, ⑦ 그럼에도 이 사건 제작진은 퇴직교사의 인터뷰 중 위와 같이 반찬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일품 음식인 자장밥과 관련하여 '반찬이 따로 없다'라고 한 부분만을 편집하고 부각시켜 방송하였던 점, ⑧ 이 사건 제작진과 인터뷰를 한 퇴직교사는 '식단이 부실하고 자장밥에는 반찬이 따로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 반찬 없는 맨밥을 급식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6 내지 10, 을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D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반찬 없는 급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반찬 없는 급식과 관련한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겨울철 난방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최초 이 사건 방송은 이 사건 유치원의 급식 문제를 취재하기 위한 것이었고 겨울철 난방에 관한 문제는 급식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점으로 보도한 것일 뿐 급식 문제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진실성 여부 역시 따로 살펴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갑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치원에 2010. 12.분 전기요금이 362,760원, 가스요금이 1,145,100원, 2011. 1.분 전기요금이 564,600원, 가스요금이 2,235,600원, 2012. 2.분 전기요금이 514,790원, 가스요금이 1,284,700원이 부과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초경 기록적인 혹한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일러가 동파되어 원고가 이에 관한 수리를 요청하였던 점, ② 위 보일러가 동파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유치원에는 바닥 난방 이외에도 전기난방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위 유치원에 필요한 난방을 하였던 점, ③ 이 기간 동안 원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이 사건 유치원의 실내 온도가 낮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에 관한 항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④ 겨울철 난방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이 사건 제작진과 인터뷰를 한 퇴직교사 역시 이 사건 유치원이 따뜻하지 않았을 뿐 덜덜 떨 정도로 춥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겨울철에 난방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방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겨울철 난방과 관련한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일반 법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들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2) 반찬 없는 급식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진실한 사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던 반찬 없는 급식 부분(이하 겨울철 난방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합하여 진실한 사실임이 입증되지 않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허위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제작진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급식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식사라는 점을 떠나서,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제공되는 식사이던지 반찬이 없는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비하여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와 같이 사안은 그 내용이 매우 선정적이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를 접한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충격 역시 일반적인 내용의 보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 만일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억울한 피해 역시 다른 사안에서보다 현저하게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는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시청자들에게 보다 강렬한 인상을 주고 지속적인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 이와 같이 충격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보도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 자칫 방송사가 보도하기 원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취사선택하고, 그 반대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애써 눈감아 버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대상 내용이 이례적이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리고 그러한 사안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방송사의 지명도나 신뢰성이 높아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방송사로서는 보도되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사안보다 더욱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그러한 자료들의 신빙성 여부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통의 상식을 가진 자라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누구라도 그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이를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신속성이 요구되는 뉴스 속보의 경우에는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진실 여부를 떠나 그와 같은 보도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신속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더 클 때가 많은 반면,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은 심층취재 보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와 달리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진실 여부를 규명할 시간적 여유나 수단도 비교적 충분하기 때문에 단지 의혹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일방의 진술이나 신빙성 없는 자료에만 의존하여 쉽게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원칙과 기준을 배경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방송 약 1주일 전부터 YTN 등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 식자재 등의 문제를 보도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는 이미 속보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식자재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YTN 등 다른 매체들과 달리 이 사건 방송이 단

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은 속보를 내보내는 뉴스가 아닌 심층취재를 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방송을 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방송할 필요성은 많지 않았던 반면 심층적으로 의혹을 취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위 프로그램을 방송할 필요는 더 많았음에도 이 사건 제작진은 2011. 2. 25. F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 같은 달 27.부터 취재를 시작하여 불과 2일 뒤인 2011. 3. 1. 오전 8:30경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던 점, ④ 학부모들과 퇴직교사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제작진이 이 사건 허위 부분에 관한 의혹을 처음 접하게 되었으나 학부모들 역시 아이들 또는 퇴직교사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퇴직교사의 증언만이 이 사건 허위부분에 관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언이었던 점, ⑤ 경험칙상 현재 직장에 몸담고 있는 자가 직장에 대한 우호적인 진술을 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인 진술로 보기 힘든 면이 있는 반면, 퇴직한 자 역시 퇴직 사유에 따라 이전 직장에 대한 상당한 반감과 악의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 그들이 반드시 내부비리를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고발하고 있다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점, ⑥ 그럼에도 이 사건 제작진이 퇴직 교사의 퇴직 사유 등 퇴직교사 증언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방송 전에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설령 퇴직 교사의 증언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증언 자체만으로도 퇴직 교사는 자장밥에는 반찬이 따로 안 나왔다거나 전체적으로 식단이 부실하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반찬이 없는 급식을 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⑧ 보도과정에서 표현에 일부 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반찬이 없다는 말은 식단이 부실하다는 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별개의 것으로 이를 단순한 과장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⑨ 학부모와 퇴직 교사에 대한 인터뷰 후 이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물증은 이 사건 제작진이 학부모들을 통하여 확보한 아동들이 식사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들뿐이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문제의 사진들은 반찬 없는 급식과는 전혀 무관하게 촬영된 사진이고 그 사진만으로는 원래 처음부터 반찬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식사를 거의 마친 후여서 반찬이 식판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⑪ 물론 수사기관과 같은 수사력을 갖지 못한 이 사건 취재진으로서는 의혹의 진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만일 이 사건 제작진이 이 사건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문제가 된 사진을 제시하며 그 출처, 촬영시기 및 동기 등에 관하여 확인한 후 식단표와 대조하여 보기만 하였어도 이 사건 사진이 반찬 없는 급식과는 무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⑫ 이 사건 프로그램의 취재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제작진이 위와 같은 정도의 확인을 거치는 데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하거나 고도의 취재기술이나 취재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제작진이 식단이 부실했다는 퇴직 교사의 증언 및 출처와 촬영 동기를 알 수 없는 사진을 취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작진이 반찬 없는 급식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겨울철 난방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다음으로 이 사건 방송 중 이 사건 유치원이 겨울철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작진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2)항에서 인정한 ① 내지 ⑥항의 각 사정들에 이어서 앞서 인정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⑦ 겨울철 난방에 관한 보도 부분은 사실상 퇴직 교사의 증언만이 위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는데, 보일러를 끄도록 한 원장의 태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 과도한 난방으로 인한 에너지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약행동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따라서 ⑧ 그러한 행동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가 더 중요한데, 퇴직 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퇴직 교사가 처음에는 '많이 추웠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인터뷰 마지막에서 '그런데 아이들이 추워서 덜덜 떨 정도는 아니었다. 춥다는 생각보다는 따뜻한 편은 아니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진술하여 '많이 추웠다'는 표현을 '따뜻한 편은 아니었다'라고 정정하였던 점, ⑨ 그럼에도 이 사건 제작진은 자신들이 보도하기 원하는 방향대로 퇴직 교사의 인터뷰를 편집하여 퇴직 교사의 마지막 진술은 생략한 채 퇴직 교사가 마지막 진술로 사실상 철회한 것이나 다름없는 '많이 추웠다'는 부분만을 부각시켜 마치 이 사건 유치원이 겨울철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생들이 냉방에서 지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만을 이 사건 방송에서 내보냈던 점, ⑪ 설령 이 사건 제작진이 퇴직 교사의 증언을 이 사건 유치원에서 겨울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작진으로서는 최소한 이 사건 유치원의 난방시설을 확인하여 보던가, 다른 학부모나 원생들을 추가로 취재하여 평소 이 부분과 관련된 원생들의 불만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였던 점, ⑫ 이 사건 제작진으로서는 취재 당시에 난방 문제에 관한 퇴직교사의 인터뷰 내용이나 이에 관한 취재 계획을 밝히고 원고로 하여금 난방 문제에 관한 부분을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방송 이전까지 원고에게 난방에 관한 문제를 보도한다고 알리거나 이에 관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작진이 학부모, 퇴직교사를 상대로 취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이 사건 유치원의 겨울철 난방 문제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허위 부분의 방송은 모두 이 사건 제작진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모두 이유 없다.

6.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 전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은 150명가량이었으나 이 사건 식자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후 원생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50명의 원생만이 이 사건 유치원에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생수의 감소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유치원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위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나 기타 관련자들만이 이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방송 당시는 이미 1, 2차 학부모 간담회가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YTN 뉴스 등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하여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방송 전, 즉 학부모 2차 간담회가 있었던 2011. 2. 24.부터 이미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들로부터 집중적인 환불요구가 시작되었던 점, ③ 이 사건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매체의 보도보다 훨씬 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 내용의 대부분은 이 사건 식자재 등의 보관, 사용, 급식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허위 부분은 이 사건 유치

원의 총제적인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포함되었을 뿐 이 사건 방송의 주된 내용은 아니었던 점, ⑤ 따라서 이 사건 허위 부분의 방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진실한 부분의 방송 내용만으로도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수는 급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15 내지 18, 23, 32 내지 35, 4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P의 각 증언, 화성오산교육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이 사건 허위 부분의 방송으로 인하여 원생수가 급감하였다거나 이 사건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이 사건 허위 부분이 방송되어 위법하게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적절한 위자료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인지도나 신뢰도 및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공중파 방송사로서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다수의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을 별다른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사건 허위 부분은 그 내용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시청자들로서는 단순히 부주의함을 넘어 원고를 지극히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위선자로 낙인찍게 될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서는 원고에 대한 이러한 인상을 오랜 기간 동안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는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방송 이전에 이미 학부모 1, 2차 간담회나 YTN 등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급식 문제가 주변 학부모들 및 일반 시민들 사이에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방송 내용의 대부분은 이 사건 식자재 등의 보관, 사용, 급식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허위 부분은 이 사건 유치원의 총제적인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포함되었을 뿐 이 사건 방송의 주된 내용은 아니었던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허위 부분의 방송이 아니었더라도 이 사건 방송 이전의 보도나 이 사건 방송 중 나머지 진실한 부분의 방송 내용만으로도 원고의 명예는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어서 이 사건 허위 부분의 방송이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 제작진이 이 사건 유치원에 방문하였을 당시 원고 역시 위 제작진의 취재를 피하려고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이 사건 허위 부분에 대한 해명에 나서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에게 유리한 요소로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일인 2011. 3.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9.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정정방송 청구에 관한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사의 고의 · 과실이나 위법성과 무관하게 그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허위 부분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방송부분에 대하여 정정방송을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정정방송문의 내용 및 방송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방송이 나간 시간대 및 그 비중, 표현방법과 방송 내용,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언론 보도에서 고려해야 할 공익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정방송의 내용 및 분량과 글자의 크기 및 모양, 방송방법, 방송시기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 주문과 같은 내용과 방법의 정정보도를 명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방송문

피고는 지난 2011. 3. 1. 방송한 '생방송 오늘 아침' –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밥상에? 수상한 유치원!"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유치원의 잘못된 실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위 유치원이 반찬 없는 급식을 하고 겨울철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반찬 없는 급식을 하거나 겨울철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 2〉 정정방송 요구문 생략

〈별지 3〉 YTN 뉴스 내용 생략

〈별지 4〉 방송 내용 생략

재산권 침해 사례 2

기사형 광고에서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언론사는 일반 보도기사와 동일하게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게재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사형 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입해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1가합127350 판결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2년 10월 10일 A 외 104명이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2011년 5월 19일 조선닷컴과 인터넷 중앙일보에 『국내 대표 네트워크 쇼핑몰 하이플러스프라자 이벤트 풍성』 제목으로, 헤럴드미디어는 2011년 5월 20일 헤럴드경제 인터넷판에 『생활가전 똑똑하게 사는 법, 네트워크 전문 쇼핑몰 하이플러스프라자에 가면 OK』 제목으로 홍보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을 기사 형식으로 게재하였다. 한편,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은 'Digital YTN E-biz 브랜드 대상'이라는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였고 '하이플러스프라자'를 'E-biz 브랜드 대상' 업체로 선정한 후, 2011년 6월 15일 인터넷 YTN의 '비즈니스 정보'란에 『E-BIZ 브랜드 대상 인터넷 최저가 가전제품, 하이플러스프라자』 제목으로 업체가 제공한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원고들은 포털사이트에서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파는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기사를 검색하던 중 하이플러스프라자를 알게 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였고, 홈페이지에 링크된 기사와 디지털와이티엔에서 2011년 E-biz 브랜드대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을 접하고 하이플러스프라자가 우량한 쇼핑몰 업체라고 판단, 해당 쇼핑몰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였다. 원고들은 물품대금을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아무런 제품을 배달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유명 언론사인 피고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허위와 과장이 심한 각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① 객관적인 위치에서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기사처럼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접한 독자들로서는 위 기사들이 단지 특정 상품이나 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광고'라기보다는 언론사가 취재하여 작성한 '기사'라고 판단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적으로 언론 매체에 게재되는 기사의 저작권은 기사 작성자가 소속하는 언론사가 가지는 반면, 광고의 저작권은 광고주에게 있는데,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의 기사 마지막 부분에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전재-재배포 금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 독자로서는 위 기사가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에

의해 작성된 '보도 기사'라고 판단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의 기사 마지막에는 작성자가 '객원기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반 독자들은 '객원기자'의 명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쉽지 않고, 이를 언론사의 밖에서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관련 언론사에 송고하는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자로 판단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하여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보도기사'의 게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언론은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그것이 광고임을 명백히 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거래에 임하도록 배려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언론 자신이 게재하는 기사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사 내용을 신뢰한 독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보도 기사'와의 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한 형태로 게재되는 이른바 '기사형 광고'의 경우에는 일반 보도기사와 동일하게 해당 기사의 내용에 의심을 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며,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 헤럴드미디어의 경우, '1년 이상 또는 다년간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사의 다른 내용 역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다소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디지틀조선일보, 제이큐브인터랙티브와 원고 일부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판 결 문

사　　건 : 2011가합127350 손해배상

원　　고 : A 외 104명 :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 1.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3.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4.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피고 1.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커뮤니케이션

변 론 종 결 : 2012. 9. 19.

판 결 선 고 : 2012. 10. 10.

주　　문

1.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별지 2 피해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2.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과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피해내역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이하 피고들을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각 인터넷신문인 'http://www.ytn.co.kr', 'http://news.chosun.com', 'http://joongang.co.kr', 'http://heraldbiz.com'을 운영하는 언론법인이다.

2) 원고들은 인터넷 쇼핑몰인 '하이플러스프라자(www.hiplusplaza.com)'를 통하여 전자제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별지 2 피해내역의 피해일시란 기재와 같이 2011. 6. 28.부터 2011. 7. 16.까지 사이에 위 쇼핑몰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청구취지 기재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아무런 제품도 배달받지 못하여 위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다.

나. 홍보 기사의 내용 및 게재경위 등

1)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2011. 5.경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자인 '하이플러스'의 언론홍보대행사인 주식회사 B 프레스(이하 'B 프레스'라 한다)가 제공한 내용을 2011. 5. 19. 자신들의 인터넷 신문인 'http://news.chosun. com', 'http://joongang.co.kr'에 각 〈국내 대표 네트워크 쇼핑몰 하이플러스프라자 이벤트 풍성〉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3-1 기재 기사(갑 2호증의 3, 4)와 같이 게재하였고, 피고 헤럴드미디어 역시 B 프레스로부터 넘겨받은 내용을 2011. 5. 20. 자신의 인터넷 신문인 'http://heraldbiz.

com'에 〈생활가전 똑똑하게 사는 법, 네트워크 전문 쇼핑몰 하이플러스프라자에 가면 OK〉라는 제목으로 별지 3-2 기재 기사(갑 20호증)와 같이 게재하였다.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가 게재한 기사에는 각 기사 마지막에 작성자가 '이◇◇ 객원기자'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 헤럴드미디어가 게재한 기사에는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2) 한편,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은 2010. 10. 18. 피고 1.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Digital YTN E-biz 브랜드 대상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보조참가인에게 E-biz 브랜드 대상업체의 선정 및 운영업무를 대행시켰다. 이에 보조참가인은 2011. 5.경 B 프레스로부터 '디지털와이티엔 2011년 상반기 E-biz 브랜드 대상 선정 신청'을 접수받고,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그 무렵 하이플러스프라자를 'E-biz 브랜드 대상' 업체로 선정하였다. 이후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은 2011. 6. 15. 자신의 인터넷 신문인 'http://www.ytn.co.kr'의 〈비즈니스정보〉란에 〈E-BIZ 브랜드 대상 인터넷 최저가 가전제품, 하이플러스프라자〉라는 제목으로 별지 3-3 기재 기사(갑 2호증의 2)를 게재하였는데, 이는 하이플러스가 제공한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고, 기사 마지막에는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기사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이플러스프라자는 국내의 대표적인 온라인 가전쇼핑몰로서 이곳에서 대표적인 가전브랜드들의 제품을 국내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다.
- 하이플러스프라자에서 고객들의 단순 변심에 의해 반품된 제품들을 최대 90%까지 할인 판매하는 리퍼브숍을 운영하고 있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하이플러스프라자가 다양한 특별할인 혜택과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 원고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등

원고들은 포털사이트에서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파는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기사를 검색하던 중 하이플러스프라자를 알게 되어, 위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당시 위 홈페이지의 우측 상단에는 "수많은 언론에서도 극찬한 하이플러스프라자"라는 제목 밑에 피고들의 상호가 배너(banner) 형태로 게시되어 있었고, 이를 클릭하면 이와 링크된 이 사건 각 기사를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위 홈페이지의 중간 하단에는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이 수여한 2011년도 E-biz 브랜드대상을 수상하였다'는 내용이 그래픽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들은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읽고 또한 하이플러스프라자가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에서 2011년에 E-biz 브랜드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우량한 쇼핑몰 업체라고 판단하여 위 업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하여 전자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제품주문을 하여 2011. 6. 28.부터 2011. 7. 16.까지 사이에 각 물품대금 상당인 청구취지 기재 해당 금액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아무런 제품도 배달받지 못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하이플러스프라자를 운영한 C, D는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

다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1480, 2012노116, 270(병합)]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갑 7호증의 28, 갑 16호증, 갑 20호증, 갑 34호증의 1 내지 갑 50호증, 을가 5 내지 을가 9호증, 을다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들은 각 공신력 있는 유명 언론사들로서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높은 신뢰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각 기사는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이 심한 것이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자신들의 인터넷 신문에 그대로 게재하였고, 이런 기사를 신뢰한 원고들이 하이플러스프라자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다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고의, 과실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은 기사 마지막에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고 명시하였고,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의 기사에는 그 작성자가 '이◇◇ 객원기자'로 되어 있으며, 피고 헤럴드미디어의 기사에는 그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으로 일반인도 쉽게 이 사건 각 기사가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하이플러스나 그 언론홍보 대행사가 제공하는 광고를 그대로 게재하였을 뿐인 피고들에게 그 광고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기사가 단순한 광고가 아닌 '기사'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외부에서 제공된 '기사형 광고'를 그대로 게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들의 소속 기자들이 위 기사들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기사형 광고'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원고들의 피해를 배상할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기사가 '단순한 광고' 인지 여부 – 부정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등의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기사에 대한 신뢰는 해당 언론기관이 가지는 높은 정보수집능력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에 근거한 것이므로, 언론기관이 이 사건 각 기사와 같이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기사형 광고'를 그 작성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그대로 게재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광고임을 명백히 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거래에 임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독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도기사'를 게재한 언론기관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의 기초사실 및 갑 2호증의 2 내지 5, 갑 20호증, 을다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기사에는 그것이 광고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사의 형식도 일

반적인 보도기사와 매우 유사하게 되어 있는 사실,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의 기사 끝부분에는 기사의 작성자가 위 피고임을 전제로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전재-재배포 금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주식회사 오에스이엔(osen)과 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앞서 본 기사를 제공받아 게재하였는데, 그 기사 마지막에는 그 작성자가 '객원기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이 사건 각 기사가 '뉴스'로 검색되고 있는 사실, 피고 헤럴드미디어의 기사는 인터넷 신문의 '뉴스' 부분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객관적인 위치에서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기사처럼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접한 독자들로서는 위 기사들이 단지 특정 상품이나 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광고'라기보다는 언론사가 취재하여 작성한 '기사'라고 판단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적으로 언론 매체에 게재되는 기사의 저작권은 기사 작성자가 소속하는 언론사가 가지는 반면, 광고의 저작권은 광고주에게 있는데,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의 기사 마지막 부분에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전재-재배포 금지]'로 기재되어 있어 있으므로 일반 독자로서는 위 기사가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에 의해 작성된 '보도기사'라고 판단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의 기사 마지막에는 작성자가 '객원기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반 독자들은 '객원기자'의 명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쉽지 않고, 이를 언론사의 밖에서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관련 언론사에 송고하는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자로 판단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하여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보도기사'의 게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사의 진실성을 조사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는지 여부 - 일부 긍정

광고는 광고주의 이름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언론 광고에 대한 신뢰는 고도의 정보수집 능력을 가지는 언론의 보도기사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광고의 매개(媒介)업무를 담당하는 언론으로서는 언론 광고가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에 비추어 일반 독자의 신뢰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광고의 내용에 의심을 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해 독자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가할 것을 예견하거나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허위의 광고를 독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언론은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그것이 광고임을 명백히 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거래에 임하도록 배려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언론 자신이 게재하는 기사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사 내용을 신뢰한 독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보도기사'와의 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한 형태로 게재되는 이른바 '기사형 광고'의 경우에는 일반 보도기사와 동일하게 해당 기사의 내용에 의심을 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대부분이 '하이플러스프라자'를 홍보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일부 기사의 경우에는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기사는 '기사형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체로써 광고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지는 아니하여 일반 독자들이 보도기사로 오해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

고들은 위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게재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이하에서는 위 3인의 피고들을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이라 한다)의 기사에는 '1년 이상 또는 다년간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하이플러스는 2011. 3. 11.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사내용은 명백히 허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하이플러스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하이플러스가 사업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이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였기 때문에 하이플러스프라자의 운영자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위 피고들의 상호를 배너 형태로 게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원고들이 위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의 상호에 링크되어 있는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를 보고 하이플러스프라자 홈페이지의 게시내용을 신뢰하여 위 사이트에서 전자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후 제품주문을 하면서 2011. 6. 28.부터 2011. 7. 16.까지 사이에 각 물품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위와 같은 구매결정에 이른 것은 우리사회에서 상당한 공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언론기관인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의 경우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Digital YTN E-biz 브랜드 대상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보조참가인에게 2011년 E-biz 브랜드 대상업체의 선정 및 운영업무를 대행시켰고, 그 결과 사업경력이 3개월도 되지 아니한 하이플러스플라자가 간단한 설문조사 등만으로 E-biz 브랜드 대상 업체로 선정되어, 위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일반 독자들로서는 위 브랜드 대상 수상이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인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이 실시한 엄정한 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은 허위내용의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였고, 아울러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은 위와 같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하이플러스플라자를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업체로 선정하여 하이플러스플라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광고하게 함으로써, C 등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은 적어도 과실에 의한 방조의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인바, 따라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 구매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헤럴드미디어가 게재한 기사에는 다른 피고들의 기사에서와 같은 '1년 이상 또는 다년간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기사의 다른 내용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다소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피고가 게재한 기사로 인하여 C 등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기범행이 용이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 피고가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과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바, 따라서 피고 헤럴드미디어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기사의 진실성을 조사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이고, 피고 헤럴드미디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책임의 제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대부분이 하이플러스프라자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고, 일부 기사의 경우에는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기사는 비록 기사의 형식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광고인 이른바 '기사형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접하는 독자들이 위 각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세심하게 보았다면 기사의 목적이 단순히 객관적 진실을 밝히거나 순수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업체인 하이플러스플라자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이 앞서 본 구매행위에 나아가게 된 원인이 오로지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의 이 사건 각 기사를 본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이 하이플러스프라자에서 제시하는 저렴한 가격 등에 현혹된 것이 더 큰 원인이었다고 보이는 점, 하이플러스프라자가 제시한 가격은, 온라인 쇼핑몰이 제시하는 가격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저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사기적인 거래가 적지 아니하므로 원고들로는 스스로 위 거래업체의 실적 등을 확인하거나 대금 지급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사기 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상품 구매를 결정한 소비자들에게 그 구매로 인한 결과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시키는 것이 대량 ·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의 거래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해 광고매체인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이 얻은 광고수입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이를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2 피해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2.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헤럴드미디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원고 목록 생략

〈별지 2〉 피해 내역

순번	원고	피해일시	청구금액(원)	인용금액(원)
1	A	2011. 7. 8.	664,000	199,200
2	E	2011. 7. 13.	295,850	88,755
3	F	2011. 7. 11.	1,674,220	502,266
4	G	2011. 7. 14.	1,105,800	331,740
5	H	2011. 7. 13.	247,600	74,280
6	I	2011. 7. 12.	2,081,620	624,486
7	J	2011. 7. 8.	2,414,700	724,410
8	K	2011. 7. 9.	252,000	75,600
9	L	2011. 7. 4.	2,578,260	773,478
10	M	2011. 7. 14.	2,586,020	775,806
11	N	2011. 7. 12.	1,257,120	377,136
12	O	2011. 7. 4.	1,020,440	306,132
13	P	2011. 7. 12.	309,430	92,829
14	Q	2011. 7. 11.	331,740	99,522
15	R	2011. 7. 11.	3,458,950	1,037,685
16	S	2011. 7. 12.	522,500	156,750
17	T	2011. 6. 29.	2,955,000	886,500
18	U	2011. 7. 12.	672,210	201,663
19	V	2011. 7. 9.	646,020	193,806
20	W	2011. 7. 6.	1,336,850	401,055
21	X	2011. 7. 8.	372,000	111,600
22	Y	2011. 7. 13.	2,487,000	746,100
23	Z	2011. 7. 11.	303,000	90,900
24	AB	2011. 7. 7.	369,000	110,700
25	AC	2011. 7. 13.	532,000	159,600
26	AD	2011. 7. 3.	455,000	136,500
27	AE	2011. 7. 12.	1,025,290	307,587

순번	원고	피해일시	청구금액(원)	인용금액(원)
28	AF	2011. 7. 11.	430,680	129,204
29	AG	2011. 7. 11.	1,128,210	338,463
30	AH	2011. 7. 12.	1,057,300	317,190
31	AI	2011. 7. 6.	855,000	256,500
32	AJ	2011. 7. 12.	1,191,160	357,348
33	AK	2011. 7. 14.	342,410	102,723
34	AL	2011. 7. 13.	1,141,690	342,507
35	AM	2011. 7. 12.	1,396,000	418,800
36	AN	2011. 6. 29.	230,000	69,000
37	AO	2011. 7. 12.	2,203,840	661,152
38	AP	2011. 7. 11.	1,470,520	441,156
39	AQ	2011. 7. 6.	1,035,000	310,500
40	AR	2011. 7. 12.	220,190	66,057
41	AS	2011. 7. 3.	882,700	264,810
42	AT	2011. 7. 10.	280,000	84,000
43	AU	2011. 7. 13.	895,310	268,593
44	AV	2011. 7. 12.	2,204,810	661,443
45	AW	2011. 7. 13.	1,317,260	395,178
46	AX	2011. 7. 7.	2,309,000	692,700
47	AY	2011. 7. 5.	881,000	264,300
48	AZ	2011. 6. 30.	230,000	69,000
49	BA	2011. 7. 5.	983,810	295,143
50	BC	2011. 7. 13.	624,680	187,404
51	BD	2011. 7. 12.	294,000	88,200
52	BE	2011. 7. 13.	1,373,520	412,056
53	BF	2011. 7. 2.	1,816,500	544,950
54	BG	2011. 7. 11.	1,584,010	475,203

순번	원고	피해일시	청구금액(원)	인용금액(원)
55	BH	2011. 7. 16.	320,000	96,000
56	BI	2011. 7. 12.	796,370	238,911
57	BJ	2011. 6. 28.	770,000	231,000
58	BK	2011. 7. 14.	1,824,570	547,371
59	BL	2011. 7. 12.	321,100	96,330
60	BM	2011. 7. 14.	255,110	76,533
61	BN	2011. 7. 4.	270,000	81,000
62	BO	2011. 7. 8.	767,000	230,100
63	BP	2011. 7. 12.	1,145,570	343,671
64	BQ	2011. 7. 7.	1,284,000	385,200
65	BR	2011. 7. 11.	380,240	114,072
66	BS	2011. 7. 13.	895,310	268,593
67	BT	2011. 7. 6.	378,000	113,400
68	BU	2011. 7. 10.	1,073,790	322,137
69	BV	2011. 7. 8.	303,000	90,900
70	BW	2011. 7. 2.	741,200	222,360
71	BX	2011. 7. 8.	1,295,920	388,776
72	BY	2011. 7. 11.	1,317,260	395,178
73	BZ	2011. 7. 4.	943,140	282,942
74	CA	2011. 7. 12.	803,160	240,948
75	CB	2011. 7. 14.	928,290	278,487
76	CD	2011. 7. 9.	338,000	101,400
77	CE	2011. 7. 11.	556,780	167,034
78	CF	2011. 7. 9.	318,000	95,400
79	CG	2011. 7. 10.	786,600	235,980
80	CH	2011. 7. 15.	550,960	165,288
81	CI	2011. 7. 13.	870,090	261,027
82	CJ	2011. 7. 11.	544,000	163,200
83	CK	2011. 7. 11.	380,240	114,072
84	CL	2011. 7. 11.	876,880	263,064
85	CM	2011. 7. 8.	578,000	173,400
86	CN	2011. 7. 9.	295,000	88,500
87	CO	2011. 7. 11.	472,390	141,717
88	CP	2011. 7. 6.	844,000	253,200
89	CQ	2011. 7. 11.	572,300	171,690
90	CR	2011. 7. 4.	1,990,440	597,132
91	CS	2011. 7. 13.	1,999,170	599,751
92	CT	2011. 7. 11.	351,140	105,342
93	CU	2011. 7. 13.	308,460	92,538
94	CV	2011. 7. 13.	391,880	117,564
95	CW	2011. 7. 13.	428,000	128,400
96	CX	2011. 7. 6.	1,638,000	491,400
97	CY	2011. 7. 11.	1,545,210	463,563
98	CZ	2011. 7. 12.	554,000	166,200
99	DA	2011. 7. 12.	672,210	201,663
100	DB	2011. 7. 12.	991,800	297,540
101	DC	2011. 7. 13.	787,500	236,250
102	DE	2011. 7. 14.	895,810	268,743
103	DF	2011. 7. 13.	11,046,360	3,313,908
104	DG	2011. 7. 14.	1,321,140	396,342
105	DH	2011. 7. 8.	839,050	251,715
합계			110,888,660	33,266,598

〈별지 3-1, 3-2, 3-3〉 기사 생략

재산권 침해 사례 3

사실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여 원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1가합42930 판결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2012년 11월 9일 A 영어마을 주식회사와 사내이사 B가 주식회사 제주도민일보 및 소속기자 2명, 엔에치엔 주식회사 외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영어캠프 참가자의 학부모인 피고 D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A 국제영어마을 피해자의 공간입니다'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A 영어마을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10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피고 제주도민일보는 2011년 1월 27일 『'A 국제영어마을' 어떤 결론내나』, 1월 31일 『"강사 채용 해지"등 민원 잇따라』, 2월 14일 『영어마을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2월 28일 『상식 비웃는 '입맛대로' 행정』 제목으로 A 영어마을이 무허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어캠프에 참가한 학생이 구타를 당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A 영어마을의 신용을 훼손하고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네이버에 블로그를 개설하여 A 영어마을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게시한 피고 D에 대해 "원고 A 영어마을을 '악덕 사업자'로 원고 A 영어마을과 원고 B를 '악덕 사기업자'라고 표현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들에 대한 모욕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게시행위와 이에 따른 신용훼손으로 인하여 원고 A 영어마을이 무형의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했다.

한편, 영어캠프에 참여한 학생이 구타를 당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제주도민일보에 대해서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피해학생이나 학부모와 직접 연락하여 구타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제주도민일보나 피고 H가 영어캠프에서의 구타행위에 관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영어마을의 신용을 훼손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피고 엔에이치엔에 대해서는 "「대표 B의 새로운 비리와 사기행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략)… 이런 악덕 사기업자가…(이하 생략)」,「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기와 성폭력, 비리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고…(이하 생략)」라는 부분과 같이 원고 B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등으로 그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고,

원고들이 게시 중단을 요청한 이상 피고 엔에이치엔도 위 각 글이 게시되었다는 사정 및 그 내용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44조의2 제4항에서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행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고 엔에이치엔은 위 각 글의 게시를 중단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를 재게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엔에이치엔은 위 각 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원고 B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엔에이치엔은 원고 B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 C, H, 엔에이치엔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판 결 문

사 건 : 2011가합42930(본소) 손해배상(기)
2011가합54223(반소) 손해배상(기)
2011가합9428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1. A 영어마을 주식회사
2. B

피 고 : 1. C
2. D
3. E
4. F
5. 주식회사 제주도민일보
6. G
7. H
8.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 2012. 11. 2.

판 결 선 고 : 2012. 11. 9.

주 문

1. 가. 피고(반소원고) D는 원고(반소피고) A 영어마을에게 5,000,0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0,000,000원,
나. 피고 제주도민일보, H는 각자 원고(반소피고) A 영어마을에게 10,000,000원,
다. 피고 엔에이치엔은 원고(반소피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27.부터 2012.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피고(반소원고) D에게 1,340,000원, 피고(반소원고) E에게 2,715,1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16.부터 2012.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반소피고) A 영어마을은 피고(반소원고) F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반소피고) A 영어마을의 피고 제주도민일보, 피고 H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반소원고) B의 피고 엔에이치엔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반소원고) D, 피고(반소원고) E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청구,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C, 피고 G에 대한 각 청구,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E, 피고(반소원고) F에 대한 각 본소청구, 원고(반소피고) B의 피고 제주도민일보, 피고 H에 대한 각 청구, 피고(반소원고) F의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D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제주도민일보,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 B와 피고 엔에이치엔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반소피고) B가, 나머지는 피고 엔에이치엔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C, 피고(반소원고) E, 피고(반소원고) F,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 영어마을 주식회사에게, 피고 C는 3,000,000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D는 120,000,000원, 피고 E는 17,000,000원, 피고 F는 10,000,000원, 피고 제주도민일보, 피고 G, 피고 H는 연대하여 1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10. 2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B에게, 피고 C는 7,000,000원, 피고 D는 50,000,000원, 피고 E는 10,000,000원, 피고 F는 10,000,000원, 피고 제주도민일보, 피고 G, 피고 H는 연대하여 5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엔에이치엔은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10. 2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D, E의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에게 3,573,333원, 피고 E에게 7,240,4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F의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F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영어마을 주식회사(이하 '원고 A 영어마을'이라 한다)는 'A 국제영어마을'이라는 영어캠프(이하 '영어캠프'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A 영어마을의 사내이사이다.

(2) 피고 C는 2010. 10. 4.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원고 A 영어마을에서 근무했던 직원이고, 피고 D, E는 영어캠프 참가자의 학부모들이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제주도민일보(이하 '피고 제주도민일보'라 한다)는 일간지인 '제주도민일보'를 발행하는 언론법인이고, 피고 G, H는 피고 제주도민일보 소속의 기자들이며,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피고 엔에이치엔'이라 한다)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사건의 경과

(가) 원고 A 영어마을이 제주도에서 진행한 영어캠프에 참가한 학생들 및 그 학부모 등은, 영어캠프의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하고, 영어캠프에서 같이 생활하기로 되어 있었던 영어권 국가의 학생들이 당초의 설명과 달리 영어캠프에 오지 않는 등 영어캠프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준이 낮자 이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나) 이후 영어캠프 참가한 학생들 및 그 학부모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영어캠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피고 D가 개설한 'A 국제영어마을 피해자의 공간입니다'라는 블로그 등에는 많은 학생들 및 학부모들이 자주 방문하여 원고들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다수 올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 및 학부모들은 원고 A 영어마을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복사하여 게재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원고 B 개인에 대한 비난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5, 6, 8, 14, 15, 갑 제3호증의 2, 3, 9, 10, 11, 15, 16, 25, 27, 28, 31, 44, 갑 제5호증의 4, 13,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는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 A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신용훼손 및 업무상 비밀누설로 인한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300만 원, 원고 B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위자료로 700만 원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C는 직접 또는 I와 공모하거나 I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별지1 기재 각 글을 게시하여 원고 A 영어마을의 신용과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B를 모욕하였다.

(2) 피고 C는 I, 피고 D, 피고 H에게 원고 B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피고 H에게 '뉴질랜드 학생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을 실제 접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제보를 하였다.

(3) 원고 A 영어마을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 및 이메일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1)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글 게시 행위

갑 제2호증의 1, 2, 3, 5,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 2. 1.부터 같은 달 4.까지 사이에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OOO'라는 아이디로 별지1 기재 각 글이 작성·게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직접 또는 I와 공모하거나 I를 이용하여 이를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8,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는 피고 C가 별지1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1. 5. 12. 피고 C가 별지1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위 아이디 'OOO'의 명의자는 피고 C가 아닌 I로서, I가 피고 C와 상의한 바 없이 단독으로 위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피고 D가 개설한 블로그에 별지1 기재 각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사실 유포와 허위 제보

2011. 2. 1.부터 같은 달 4.까지 사이에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OOO'라는 아이디로 별지1 기재 각 글이 작성·게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0호증, 을가 제16 내지 19호증, 증인 I의 증언, 피고 D, H 각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I에게 '원고 B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라고 말하였고, 피고 H의 전화를 받고 '원고 B를 언어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뉴질랜드 학생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을 실제 접수하였다'라고 확인해 주었으며, 피고 D와 통화한 사실, 피고 H는 '원고 A 영어마을의 전 직원이 원고 B를 언어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뉴질랜드 학생 1명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제주도민일보의 별지8 기사에 게재한 사실, 피고 C는 2010. 12. 13. 원고 B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1. 4. 11.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 C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9. 22.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영어마을의 직원이었던 J, K, L은 원고 B가 회식자리에서 피고 C나 다른 직원들에게 성추행 행위 등을 한 사실을

보거나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B의 성추행 혐의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 C가 남자친구인 I에게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원고 B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말했다 하더라도, 피고 C와 I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 C가 피고 D와 통화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D에게 원고 B가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 C가 피고 H에게 본인이 원고 B를 언어 성추행혐의로 고소하였음을 확인해 주어 이것이 제주도민일보에 보도되었으나,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자체는 진실한 사실이고, 범죄혐의에 대한 제보는 공익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의 피고 제주도민일보와 피고 H에 대한 이 부분 명예훼손 주장도 범죄혐의에 대한 보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바이므로, 결국 피고 C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을나 제12호증의 4, 5, 을나 제13호증, 을나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뉴질랜드 학생이 참여하지 않아 일부 학부모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사 피고 C가 직접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피고 C가 피고 H에게 '뉴질랜드 학생 1명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을 실제 접수하였다' 말한 것을 허위제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업무상 비밀 누설

을가 3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 을나 제3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I는 피고 C를 통해 입수한 업무일지를 피고 F의 아버지에게 준 사실, 위 업무일지는 피고 C가 그날그날 원고 A 영어마을에서 행한 주요업무와 상담내용 등을 정리한 것인데, 위 업무일지에는 M 초등학교의 10월 명단 작성, 부산 키즈랜드로 보내줄 프로그램 내용 검토, 피고 F 등의 강사 채용 확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C는 원고 B가 피고 C에게 번역을 지시한 뉴질랜드 현지 사업파트너로부터 온 이메일을 유출하였는데, 위 이메일에는 뉴질랜드에 원고 B에 대한 나쁜 평판이 퍼져 뉴질랜드 학생들이 제주 영어캠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과 뉴질랜드 사업파트너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직접 업무일지를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A 영어마을은 위 업무일지와 이메일의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이나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이 원고 A 영어마을에 의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들을 영업비밀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 C가 이를 유출함으로써 원고 A 영어마을이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A 국제영어마을 피해자의 공간입니다'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별지2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고, 위 블로그에 게시된 별지1, 별지3 별지4 기재 각 글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 A 영어마을의 신용과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B를 모욕하였다. 원고 A 영어마을은 이로 인하여 야기된 각종 민원들로 숙박 및 교육장소로 사용하던 시설물을 철거하고 장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어서 시설투자비용 1억 7,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는바, 원고 A 영어마을은 신용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그 중 8,500만 원과 'A 영어마을'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3,5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 B는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별지2 기재 각 글의 게시행위

(1) 원고들에 대한 신용 내지 명예훼손 또는 모욕 여부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또한,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나) D가 게시한 별지2 기재 각 글의 경우

1) 갑 제3호증의 2, 3, 9, 10, 11, 15, 16, 25, 27, 2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A 국제영어마을 피해자의 공간입니다'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2011. 2. 1.부터 같

은 해 3. 17.까지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별지2 기재 각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각 글 중 10항의 「지금까지 불법영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챙긴 후에 쥐꼬리만한 벌금으로 무마시키는 수법으로 지금껏 버틴거였습니다」라는 표현은 위 글 바로 밑에 게시된 다른 작성자의 댓글 중 「철거명령 내려진 불법건축물에서 뻔뻔하게 계속해서 돈 받아가면서 영업하는 걸 보면」 부분의 내용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원고 A 영어마을이 학원법상 무등록 상태에서 또는 불법건축물을 이용하여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고, 6항 중 「일전에 A 국제영어마을 홈피에 곽노현교육감 방문 글 올렸다 허위로 밝혀져 삭제명령 받고 내린 사건」이라는 표현 역시 서울시 교육감의 방문 여부에 관한 허위광고를 비난하는 내용으로서 위 각 표현은 원고 A 영어마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그리고 3항의 「숙소와 콘테이너박스로 만든 강의실은 난방이 제대로 안되고 파카를 껴입고 잘 정도였답니다」, 「공식적인 수업 외에는 내국인 강사 및 학생들 간에 전부 한국말로 소통한답니다. 중학생도 캠프 초반에는 초등학생과 함께 본인의 영어실력과 상관없이 알파벳부터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2주 정도는 관광과 게임을 하며 놀았답니다」라는 표현과 7항의 「원어민도 8명 정도 있다가 나중에는 3명만 남아 반을 마구 섞어서 수업했다고 하더라구요」라는 표현은 원고 A 영어마을이 운영하는 영어캠프가 당초 광고와는 달리 부실하다는 내용으로서 영어캠프의 시설 및 수업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5항의 「B는 다양한 종류의 사기와 성폭력, 비리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고…(중략)…이미 법망을 피해 재산을 은닉하고 도피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라는 표현 역시 원고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다만 별지2 기재 5항 중 사기, 성폭력 등을 언급한 부분은 그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원고 B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원고 B가 이러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게시물들로 인하여 원고 A 영어마을의 신용과 원고 B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1항의 「화려하게 포장된 거짓정보만 난무했지요. …(중략)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악덕 사업자를 교육계에서 뿌리 뽑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분과 4항의 A 국제영어마을의 사기행각과 비리들이라는 제목 아래 「A 국제영어마을과 대표 B의 새로운 비리와 사기행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악덕 사기업자가 교육을 핑계로 학생과 학부모를 유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라는 부분은 거짓정보나 비리 사기행각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원고 A 영어마을과 같은 사업자는 교육계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피고 D의 의견 내지 희망을 피력하면서, 1항에서는 원고 A 영어마을을 '악덕 사업자' 로, 4항에서는 원고 A 영어마을과 원고 B를 '악덕 사기업자'라고 표현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들에 대한 모욕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나 6항 중 「고발당한 일은 모르고 계셔서 알려 드렸으며 서울 쪽에서는 학교를 통해서나 교육청을 통해 아이들이 캠프에 참가하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은 피고 D가 곽노현 교육감의 영어캠프 방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듣게 된 교육청 담당자의 진술을 전달한 것으로, '서울지역에서는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이 캠프에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 A 영어마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게시물로 인하여 원고 A 영어마을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8항의 「B에게 소송진행상황 들어가면 증거왜곡, 인멸, 증인매수 들어갈 우려가 매우 큽니다」라는 표현은 소송진행과정에서 원고 B가 부정행위를 가능성에 대하여 순수한 의견 및 우려를 표명한 것이고, 그 앞부분도 원고 A 영어마을의 근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에 불과하여 글의 전체적 흐름이나 문맥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게시물들로 인하여 원고 A 영어마을의 신용과 원고 B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한편, 원고 B는 2항의 「조만간 엄청난 비리들이 속속 올라올 겁니다」라는 표현과 9항의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해먹었나 봅니다」라는 표현이 원고 B를 모욕하는 것이므로, 위 각 글의 게시행위는 원고 B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표현들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더라도 '엄청난 비리' 또는 '이런 식으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D가 영어캠프 참가자의 학부모로서 시설물의 허가 여부나 수업 내용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피해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피고 D가 원고 B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 또는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나) 공익성

1) 원고 B의 사기, 성폭력 등 범죄혐의 및 재산은닉과 도피 부분에 관하여

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를 가명이나 두문자 내지 이니셜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대상자의 주변 사람들만이 제한적 범위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될 것이지만,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피의자를 더 쉽게 기억하게 되어 그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 역시 훨씬 커질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할 경우 뿐만 아니라 개인이 인터넷 블로그 등의 공간에 범죄사실에 관한 글을 게시할 때에도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가명이나 두문자 내지 이니셜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공익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성범죄혐의는 영어캠프의 운영과 관계없는 원고 B의 개인적인 범죄혐의일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의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은 혐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범죄수법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강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어 원고 B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오늘날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범죄혐의는 개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점, 원고 B의 사기혐의나, 재산은닉 및 도피 등은 공공의 이익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D가 별지2 기재 5항에서 적시한 원고 B의 범죄혐의나 재산은닉이나 도피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은 그 진실 여부에 관계 없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 D가 게시한 별지2 기재 각 글 중 5항의 원고 B의 사기, 성폭력 등 범죄혐의에 관한 부분과 재산은닉이나 도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 A 영어마을의 학원등록 여부, 영어캠프의 수업내용과 과정 등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서, 비록 원고 A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영어캠프가 사교육 시설이기는 하나 피고 D가 지적한 위와 같은 사항들은 미성년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에 관련되는 것인 점, 피고 D가 위와 같은 블로그를 개설한 목적도 피해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보상받을 방안을 모색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 D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각 글을 게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진실성 또는 상당성

1) 원고 A 영어마을의 학원등록 관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경우 또는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학원이라 하고, 위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의 교습과정은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국제화'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어 신설되었다).

그런데 갑 제54호증, 을나 제8호증의 1, 2, 을나 제35호증의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영어마을은 교습일수가 최단 5박 6일부터 최장 30박 31일에 이르는 교습과정을 반복하여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온 사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011. 1. 31. 'A 영어마을은 학원법에 의한 등록 후 학원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무등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A 영어마을을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3. 27. 'A 국제영어마을은 2012년 현재 국세청에 폐업 신고된 사업자이며, 제주교육지원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임'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 영어마을은 학원법상 등록 대상이면서도 이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 영어마을이 학원법상 무등록 상태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한 별지2 기재 10항의 글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 A 영어마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의 행정지도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영어캠프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영어마을은 2006. 7. 7. 서귀포시 교육청에 '국제외국어학원'을 학원으로 등록하였다가 2006. 10. 1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같은 해 12. 1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수리 후 2007년 겨울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후 2007. 3. 23.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에 'A 국제영어마을평생교육원'을, 2008. 9. 26.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에 'A 영어마을 평생교육원'을 각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것을 두고 학원법상의 등록과 같이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 A 영어마을이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및 강남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A 영어마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서울시 교육감 방문 관련

을나 제30호증의 3, 을나 제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일부 증언, 피고 G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영어마을은 '2011년 서울시교육청 교육장 10여 명과 관계자 등 전국의 교육장들이 영어마을을 방문하였고, 원고 B가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과 1일 동안 제주체험학습장을 현장답사하면서 교육에 대하여 토론하였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으로부터 위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삭제한 사실, 피고 E는 서울시 교육감 비서실에 연락하여 곽노현 교육감이 A 영어마을에 방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담당자로부터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 세미나 때문에 제주도에 간 사실은 있으나 A 영어마을을 방문한 사실은 없으며, 원고 A 영어마을에게 곽노현 교육감이 방문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피고 G도 서울시교육청 공보실에 전화하여 담당자로부터 '교육장 일부가 영어캠프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곽노현 교육감은 방문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가 게시한 별지2 기재 6항 중 「일전에 A 국제영어마을 홈피에 곽노현 교육감 방문글 올렸다 허위로 밝혀져 삭제명령받고 내린 사건」이라는 표현 또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로서는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영어캠프의 수업내용 및 시설 관련

가)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3호증, 을나 제10호증, 을나 제12호증의 8, 을나 제15호증의 1, 2, 3, 을라 제2호증, 피고 D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와 피고 E의 남편인 N은 원고 A 영어마을이 계약과

다르게 영어캠프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영어캠프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뉴질랜드 학생들의 참여는 중요한 계약사항이므로 뉴질랜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계약 내용 불이행에 해당하고, 수준별 반편성 미실시 및 실내 테마시설 부족, 전용 숙소 및 기숙사 부재 등 영어캠프가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A 영어마을은 피고 D 및 N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영어캠프 참가자 학부모들이 소비자분쟁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여 원고 A 영어마을에 대한 배상결정이 내려진 사실, 2011년 1월 겨울 영어캠프에 참가한 피고 D의 자녀인 P가 피고 D에게 보낸 편지에는 "여긴 무지무지 추워요, 우린 보일러도 없이 작은 히터로만 버티고 있어요, 구스패딩과 티 3개를 겹쳐 입어야만 해요, (중략) 패딩을 입고 자는 아이들도 있어요. 전 4겹이나 입고 있어요."란 내용과 " 지난 2주는 조금(사실은 엄청 많이) 쉬웠어요, 공부도 안하고(아주 조금만 하고) 그냥 게임을 하고 놀기만 해요(한국어랑 영어를 섞어서), 제 생각엔 엄마가 돈을 낭비한 것 같아요..(많이)"라는 내용이 있는 사실, 같은 영어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의 부모가 작성한 진정서에는 "레벨별 수업은 고사하고, 알파벳부터 배우고"란 내용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가 게시한 별지 2 기재 3, 7항의 내용 중 원고 A 영어마을이 운영하는 영어캠프의 시설과 수업방식 등에 관한 부분은 그 시설이나 수업방식 등에 관한 부정적 내용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원고 A 영어마을이 운영하는 영어캠프에 관하여 '수준별 반편성 미실시 및 실내 테마시설 부족, 전용 숙소 및 기숙사 부재 등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도 영어캠프 참가자의 부모로서 영어캠프의 반편성이나 수업내용 등에 관한 자녀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D는 자녀가 영어캠프에서 사용한 교재를 직접 살펴보았고, 인터넷을 통해 영어캠프의 강의실, 숙소 등의 시설물을 확인한 다음 별지2 기재 3, 7항의 각 글을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 D로서는 위 각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별지2 기재 1, 4, 5항의 경우

1) 피고 D가 별지2 기재 5항의 각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은 원고 B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공익성이 없어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으며, 별지2 기재 4항의 표현은 원고 B에 대한 모욕에 해당된다. 이로 인하여 원고 B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D는 위와 같이 원고 B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위 각 글의 내용과 게시 경위, 피고 D가 개설한 블로그의 방문자 수와 위 각 글의 전파력 및 이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도, 원고 B의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D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또한 별지2 기재 1, 4항의 표현은 원고 A 영어마을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 A 영어마을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5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의 위와 같은 게시 행위와 원고 A 영어마을의 교육시설의 철거 및 장소의 이전,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는 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장소로 사용되던 시설이 불법 건축물임이 드러나고 원고 A 영어마을이 학원법에 따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무등록 업체이며 수업 내용이 부실한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원고 A 영어마을이 입은 무형의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D의 위와 같은 게시행위와 이에 따른 신용훼손으로 인하여 원고 A 영어마을이 무형의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각 글의 내용과 게시 경위, 피고 D가 개설한 블로그의 방문자 수와 위 각 글의 전파력 및 이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도, 원고 A 영어마을의 사업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D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나머지 각 글의 경우

피고 D가 별지2 기재 중 1, 4, 5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신용 내지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 D가 개설한 블로그에 게시된 글(별지1, 3, 4 기재 각 글)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6, 8, 14, 15, 갑 제3호증의 31, 4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가 개설한 블로그에 별지1, 3, 4 기재 각 글이 게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인터넷상의 블로그 개설 및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인터넷 게시물들이 원고들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그 불법성까지 인정된다면, 피고 D는 인터넷상의 블로그 개설 및 운영자로서 그 인터넷 게시물들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불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별지1 기재 각 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 D가 개설한 블로그에 게시된 별지1 기재 1항은「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직원들 관련 임금체불 전과만 신고된 기록만 7건 있더군요. (중략) 임금체불 이외에 별도의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며 이미 남부지검에 고소 접수한 형사소송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 소송상황을 봐 가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중략) 아무튼 돈벌이에만 혈안인 B씨는 뉴질랜드 내에서도 악평이 자자하여 사장된지 오래입니다.」, 2항은「B씨! 노래방가서 노래방 도우미는 그만 부르시죠! 여직원들 강제추행하고 다 보는 앞에서 성기 얘기에 성추행 발언 지존이신 B님은 이 참에 교육사업 접으셔야 할 듯」, 3항은「손등을 강제로 끌어당겨 입맞춤을 시도하고 강제로 뒤집어가며 마구 부볐으니.. 다른 여강사도 당했으나(이하 생략)」, 4항은「B 이분은 다른 민사사건으로도 고소된 건과 신고조차 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도주회피의 우려가 현저하고 돈 세탁 우려가 매우 높으니 최대한 빨리 돈세탁이나 해외로 자금을 빼돌려 출국하기 전에 소송거셔야 할 것 같습니다.」, 5항은「여직원을 단란주점에 강제로 데리고 가서 여자를 부른 뒤에 보X야 라고 부르고 온갖 변태 짓 하는 것 보여줬다는 말이죠? …모든 여자를 자기 밑으로만 들어오면 노리개로 아는 사무총장이란 사람 ×××네. 저런 정신이상자에게 아이들을 한 달 가까이 맡기고 (중략) 다시는 B가 (이하 생략) 」이 게시되었는데, 위 각 글은 원고 B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원고 B가 임금체불 등 다수의 민, 형사소송에 연루되어 있고,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들을 부르며,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하고, 또한, 뉴질랜드 내에서 악평이 자자하며, 돈세탁을 하며 해외로 자금을 빼돌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등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점, 원고 B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특별히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그 실명까지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진실 여부에 관계 없이 불법성이 명백하고, 또한 별지1 기재 5항에는 B를 '정신이상자'로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도 있어 역시 그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2) 별지3 기재 각 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별지3 기재 1항에는「야간업소(단란주점)에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님 말씀대로 "보X야"라고 부르고…(이하 생략)」라는 표현이, 별지3 기재 5항에는「B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고 했는데,(중략) 현재 불법 짜깁기한 교재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임금체불, 성추행, 계약위반, 허위광고, 부당해고 등으로 수 많은 고소+불법 건축물 철거명령까지 내려진 각종 민형사 사건 피의자의 지위에서 조사받고 있는자」라는 표현이, 별지3 기재 6항에는「결론부터 말하자면, B 총장은…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보×야~'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아무리 술에 취해 있어도 그렇지, 내국인 강사를 데리고 성인나이트까지 데리고 갈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해불가인 늙은이더군요. (이하 생략)」라는 표현이 있는데, 위 각 표현은 원고 B의 노래방에서의 언어 성희롱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거나, 원고 B의 저작권법 위반, 임금체불, 성추행 등 각종 범죄혐의에 대하여 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이 부분은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 점, 원고 B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특별히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그것이 진실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6항의 '이해불가인 늙은이'란 부분은 원고 B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여 역시 그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별지3 기재 2항의「A 영어마을 Q라는 선생은 매일 밤 아이들을 기합시키고 …(중략)… 아이들을 감시

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라는 부분은, 원고 A 영어마을에 대한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영어캠프에 참가한 학생의 부모가 피고 D가 개설한 블로그에 답글 형식으로 게시한 글로서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비록 원고 A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영어캠프가 사교육 시설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항은 미성년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피고 D가 개설한 블로그에 이를 게시한 목적도 피해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보상받을 방안을 모색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그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별지3 기재 3항의 「A 국제영어마을의 대표자가 가진 사업이 여러 개라 말이 많이 나오는 그리고 소송이 여러 개 걸린 이 A 국제영어마을 사업은 잠시 문닫고 조용해지면 다시 열거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진행 중인 캠프를 곧 문닫고 잠수를 타겠다는 말이겠죠」라는 표현 중 'A 국제영어마을의 대표자가 가진 사업이 여러 개라'라는 부분은 원고 B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원고 B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소송이 여러 개 걸린 A 국제영어마을은 잠시 문닫고 조용해지면 다시 열거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진행 중인 캠프를 곧 문닫고 잠수를 타겠다는 말이겠죠'라는 부분도 원고 B의 영어캠프 운영에 관한 타인의 의견 내지 추측을 전달하고 여기에 자신의 추측을 덧붙여 표현한 것으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표현으로 인하여 원고 A 영어마을의 신용과 원고 B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별지3 기재 4항의 「당신네들한테 생매장 당할까봐 참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다시는 일 못하게 만들테니 두고 봅시다. "A 국제영어마을" 없어지게 만들 겁니다.」 부분도 영어캠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원고 A 영어마을의 보복이 두려워 이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음을 언급하여 원고 A 영어마을이 보복을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는 하나, 그 보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원고 A 영어마을의 신용을 훼손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별지4 기재 각 글

피고 E가 별지4 기재 각 글을 게시한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신용 내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그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삭제의무의 발생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위와 같은 글이 블로그에 게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위 블로그의 게시물과 방문자 수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위 각 글을 삭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D는 위 블로그의 개설자로서 별지1 기재 각 글 및 별지3 기재 1, 5, 6항의 각 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B는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각 글의 내용과 게시 경위, 원고 B의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D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D는 원고 A 영어마을에게 500만 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500만 원+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2. 10. 2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0. 27.부터 피고 D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E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별지4 기재 각 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 A 영어마을의 신용과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 A 영어마을에게는 신용훼손으로 인한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700만 원, 원고 B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에 대한 신용 내지 명예훼손 여부

(가) 갑 제5호증의 4,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는 2011. 2. 9. 2차례에 걸쳐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D가 개설한 블로그에 별지4 기재 각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글 중 1항의 「제주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시설임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 「뉴질랜드 학생이 유입 안 된 이유가 연평도사건때문이라…(중략)…이것 또한 거짓으로 밝혀짐」, 「2011년 1월 22일 곽노현 서울교육감과 교육청 직원들이 A 국제영어마을을 방문하셔서, 격려를 보냈다는 거짓을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함」이라는 표현은 원고 A 영어마을의 학원법상 등록 여부, 원어민 강사의 참여 및 서울시 교육감의 방문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원고 A 영어마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또한 「초4~중학교2까지의 학생을 단 3반으로 나누어(29박30일 코스 특목고반 경우), 영어실력 거의 도움 안되는 놀이 중심의 시간때우기 수업진행 등등」이라는 표현은 원고 A 영어마을이 운영하는 영어캠프의 수업 내용과 운영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위 게시물들로 인하여 원고 A 영어마을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2항의 「이러한 치사한 방법으로 은폐하고 숨기는게 과연 통할까요? 피해자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들의 횡포를 파헤칩시다. 그들이 이러한 치졸한 방법을 쓰면 쓸수록 더욱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만히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표현은 원고들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순수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앞뒤 문맥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치사한 방법'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 원고들이나 영어캠프에 관한 부정적 내용을 묵시적으로 언급하거나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게시물로 인하여 원고들의 신용 내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가) 공익성

피고 E가 게시한 별지4 기재 각 글은 원고 A 영어마을의 학원등록 여부, 영어캠프의 수업방식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미성년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의 방지라는 목적도 인정되므로, 위 게시물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위 피고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게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실성 또는 상당성

1) 원고 A 영어마을의 학원등록 관련

원고 A 영어마을이 학원법상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4 기재 1항의 글 중 「제주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시설임에도 등록되어있지 않아」라는 표현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뉴질랜드 학생의 불참사유 관련

갑 제31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호증, 을나 제10호증, 을나 제3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영어마을은 홈페이지를 통해 뉴질랜드 학생들이 영어캠프에 참여하여 함께 공부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였고, 2009년 및 2010년경 영어캠프에 참가할 호주 및 미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업무약정서를 체결하는 등 외국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를 추진한 사실, 그러나 뉴질랜드 학생들은 원고 B에 대한 악평을 이유로 2010. 9. 20.경 불참을 통보하였고 2011년 겨울캠프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 원고 A 영어마을은 2011. 1. 11. 홈페이지 게시판에 '연평도 포격사건과 서해 군사훈련으로 인하여 뉴질랜드 학생들이 영어캠프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E가 게시한 별지4 기재 1항의 글 중 「뉴질랜드 학생이 유입 안 된 이유가 연평도사건 때문이라 해명했으나 이것도 또한 거짓으로 밝혀짐」이라는 표현 또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서울시 교육감 방문 관련

서울시 곽노현교육감이 원고 A 영어마을을 방문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4 기재 1항의 글 중 「2011년 1월 22일 곽노현 서울교육감과 교육청 직원들이 A 국제영어마을을 방문하셔서, 격려를 보냈다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함」이라는 표현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영어캠프의 수업내용 관련

가)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원고 A 영어마을의 영어캠프에 관하여 '수준별 반편성 미실시 및 실내 테마시설 부족, 전용 숙소 및 기숙사 부재 등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E가 게시한 별지4 기재 1항 중 영어캠프의 수업방식과 반편성 등에 관한 내용은 영어캠프의 수업방식 등에 관한 부정적 내용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E는 영어캠프 참가자의 학부모로서 영어캠프에 직접 참가한 자녀들로부터 수업내용, 반편성 등에 관한 진술을 들은 점, ② 피고 E는 D가 역시 같은 영어캠프에 참가한 자녀로부터 영어캠프의 반편성 등에 관한 진술을 직접 듣고 게시한 별지2 기재 3, 7항의 내용을 신뢰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E로서는 별지4 기재 1항 중 영어캠프의 수업방식과 반편성 등에 관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피고 E가 별지4 기재 각 글을 게시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신용 내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F는 포털사이트 '네이트'의 '판' 게시판에 별지5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 A 영어마을의 신용 및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B를 모욕하였으므로, 원고 A 영어마을에게 신용훼손으로 인한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000만 원, 원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에 대한 신용 내지 명예훼손 또는 모욕 여부

(가)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는 2011. 2. 1. 포털사이트 '네이트'의 '판' 게시판에 별지5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글 중 「A 국제영어마을은 주식회사도 아니고 개인사업장이고 학원, 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업체입니다」, 「중학교 3학년 수준의 학생과 초등학생이 같이 수업을 들으며 영어수준 레벨은 따지지 않고 같은 반에서 알파벳부터 수업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증명되지 않은 원어민들과 게임만 하고 제주도 투어만 하는 게 캠프 생활의 대부분이랍니다. 난방도 되지 않아 찬물로 씻지도 못하고…(이하 생략)」, 「A 국제영어마을 대표자가 회식자리에서 언어 성폭행, 성추행을 하였고 다음날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사건은 검찰로 사건이 인계되어 진행중이랍니다」라는 표현은 원고 A 영어마을의 학원등록 여부와 영어캠프의 시설과 수업 내용 및 운영방식, 원고 B의 행위 등에 관한 부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다) 그러나 위 글 중 「A 국제영어마을의 대표자가 가진 사업이 여러 개라 말이 많이 나오는 그리고 소송이 여러 개 걸린 이 A 국제영어마을 사업은 잠시 문닫고 조용해지면 다시 열거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진행 중인 캠프를 곧 문닫고 잠수를 타겠다는 말이겠죠」라는 표현 중 'A 국제영어마을의 대표자가 가진 사업이 여러 개라'라는 부분은 원고 B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원고 B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소송이 여러 개 걸린 A 국제영어마을은 잠시 문닫고 조용해지면 다시 열거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진행 중인 캠프를 곧 문닫고 잠수를 타겠다는 말이겠죠'라는 부분도 원고 B의 영어캠프 운영에 관한 타인의 의견 내지 추측을 전달하고 여기에 자신의 추측을 덧붙여 표현한 것으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표현으로 인하여 원고 A 영어마을의 신용과 원고 B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 B는 위 글 중 「교육자라는 사람들의 저런 파렴치한 행동들을 보니」라는 표현이 원고 B를 모욕한 것이므로, 위 글의 게시행위는 원고 B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표현이 그 앞부분의 「A 국제영어마을의 대표자가 회식자리에서 언어성폭행, 성추행을 하였고 다음날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사건은 검찰로 사건이 인계되어 진행중이랍니다」라는 표현과의 맥락을 고려할 때, 원고 B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또한 원고 B의 행위를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부분의 표현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 F가 공익적 목적에서 위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피고 F가 원고 B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 또는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가) 공익성

1) 원고 B의 성추행 혐의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반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도 대상자의 주변 사람들만이 제한적 범위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어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그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 F가 원고 B의 성추행 혐의에 관하여 적시하면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A 국제영어마을 대표자'라고만 표현하였고 그 내용 또한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단정적 표현이나 자세한 언급 없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② 그 표현 또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중략)… 사건이 인계되어 진행중이랍니다'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진술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③ 위 내용이 원고 B 개인의 범죄혐의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 B는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하는 원고 A 영어마을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그의 성추행 혐의는 학부모들이 영어캠프의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F가 게시한 별지5 기재 글 중 원고 B의 성추행 혐의에 관한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위 피고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게시하였다고 판단된다.

2)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 F가 게시한 별지5 기재 각 글 중 원고 B의 성추행 혐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 A 영어마을의 학원등록 여부, 영어캠프의 수업방식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미성년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의 방지라는 목적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 역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위 피고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게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실성 또는 상당성

1) 원고 A 영어마을의 학원등록 관련

원고 A 영어마을이 학원법상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

로, 별지5 기재 글 중 「A 국제영어마을은 주식회사도 아니고 개인사업장이고 학원, 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업체입니다」라는 표현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위 표현 중 'A 국제영어마을은 주식회사도 아니고 개인사업장이고'라는 부분은 원고 A 영어마을이 학원법상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부분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지도 않았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위 표현은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영어캠프의 수업내용 관련

가)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원고 A 영어마을의 영어캠프에 관하여 '수준별 반편성 미실시 및 실내 테마시설 부족, 전용 숙소 및 기숙사 부재 등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F가 게시한 별지5 기재 글 중 영어캠프의 수업방식과 시설 등에 관한 내용은 영어캠프의 수업방식 등에 관한 부정적 내용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F는 영어캠프 참가자의 학부모인 피고 D, E가 영어캠프의 시설물이나 수업방식에 관하여 쓴 글을 보고 이를 신뢰하여 별지5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글은 '…알파벳부터 수업을 하더랍니다. …(중략)…캠프 생활의 대부분이랍니다'와 같이 타인의 진술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F로서는 별지5 기재 글 중 영어캠프의 수업방식과 반편성 등에 관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원고 B의 성추행 혐의 관련

갑 제30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을가 제13, 14호증, 을나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2010. 12. 13. '원고 B가 2010. 10. 중순경 피고 C의 손을 부비고 강제로 입술로 가져가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2010. 11. 20.경 회식자리에서 피고 C에게 "너 스타킹 내리고, 빤스 내리고, 오줌 싸고, 팬티 올리고, 스타킹 올리고 왔어?"라고 말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원고 B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 피고 제주도민일보는 2011. 1. 31. '해당업체(원고 A 영어마을)에 근무하던 직원인 김모씨는 업체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지난달 언어 성추행 관련 경찰 고발, 현재 수사 진행중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1. 4. 11. 원고 B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별지5 기재 글에서 「A 국제영어마을 대표자가 회식자리에서 언어성폭행, 성추행을 하였고 다음날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사건은 검찰로 사건이 인계되어 진행중이랍니다」라는 표현 중 'A 국제영어마을 대표자가 회식자리에서 언어성폭행, 성추행을 하였고'라는 부분은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다음날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라는 부분과의 문맥을 고려해 볼 때 'A 국제영어마을 대표자가 회식자리에서 언어성폭행, 성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당한 직원이 소송을 걸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A 영어마을의 전 직원이 원고 B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로 사건이 인계되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위 표현은 모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 F가 별지5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신용 내지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6. 원고들의 피고 제주도민일보,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G, H는 별지6 기재 기사를, 피고 H는 별지7, 8기재 각 기사를, 피고 G는 별지9 기재 기사를, 피고 제주도민일보는 별지10 기재 사설을 각 작성하여 피고 제주도민일보가 발행하는 제주도민일보에 게재함으로써 원고 A 영어마을의 신용과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영어마을에게 신용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8,500만 원, 무형의 손해로 3,500만 원, 원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에 대한 신용 내지 명예훼손 여부

(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또한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는데(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참조),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뿐만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시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나) 별지6 내지 10 기재 각 기사 및 사설의 경우

1) 갑 제44호증의 1, 2, 6, 7, 갑 제45호증의 3, 을가 제4호증의 1, 2, 3, 6, 을나 제7호증의 1, 2, 3,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G, H는 2011. 1. 27.「민원 끊이지 않는다 했더니 무허가 시설」이라는 제목의 별지6 기재 기사를, 피고 H는 같은 달 28.「'A 국제영어마을' 어떤 결론내나」라는 제목의

별지7 기재 기사와 같은 달 31. 「"강사 채용 해지"등 민원 잇따라」라는 대제목과 「전 직원 대표 상대로 성추행 고발 수사 진행」이라는 소제목의 별지8 기재 기사를, 피고 G는 2011. 2. 14. 「영어마을 불법건축물 철거명령」이라는 제목의 별지9 기재 기사를, 피고 제주도민일보는 2011. 2. 28. 「상식 비웃는 '입맛대로' 행정」이라는 제목의 별지10 기재 사설을 각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별지6 기재 기사 중 「현재 해당업체는 학원 등록 없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업자등록만 되어있는 상태다. 제주세무서는 "해당 업체의 캠프와 같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학원 등록을 반드시 교육청에 마쳐야 하지만 사업자등록만 돼 있는 상태라면 무허가시설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표현과 별지7 기재 기사 중 「문제는 '무허가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는 표현, 별지8 기재 기사의 본문 중 「학원 등록 없이 운영 중인 'A 국제영어마을'」이라는 표현, 별지9 기재 기사 중 「불법 증축된 건물은 강당과 급식소로, 나머지 6개 컨테이너 건물은 수업장소로 각각 이용되고 있었다」는 표현 및 별지10 기재 사설 중 「제주시 조천읍 A 국제영어마을 제주캠퍼스는 무허가 건축물에 등록도 하지 않고 몇 년째 학원영업을 하고 있지만」이라는 표현은 모두 원고 A 영어마을의 학원법상 등록 여부와 불법 건축물의 이용 여부 등 원고 A 영어마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별지8 기재 기사 중 「한 학부모는 "저희 아들은 이번에 캠프 참가했다가 구타만 당하고 왔어요.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답니다. 캠프관계자들 모두 고발하고 싶어요"란 댓글을 본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김씨의 말과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표현은 원고 A 영어마을이 운영하는 영어캠프의 내용이나 안전성 등에 관한 부정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위 기사 중 소제목 「전 직원 대표 상대로 성추행 고발 수사 진행」과 본문의 「전 직원 C씨는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지난달 언어 성추행 관련 경찰 고발, 현재 수사 진행중이다」라는 표현 또한 원고 B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위 기사들로 인하여 원고 A 영어마을의 신용과 원고 B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별지8 기재 기사 중 「"…(중략)…외국 어학연수 비용에 준하는 고액의 수업료를 받고 학부모들을 현혹하는 부실업체가 아닌지 이번 기회에 관리 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원고 A 영어마을이 운영하는 영어캠프에 참가한 학생의 학부모가 순수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표현으로 원고 A 영어마을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가) 언론 ·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

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나) 공익성

1) 원고 B의 성희롱 혐의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보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그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인바, ① 별지8 기재 기사는 원고 B의 성희롱 혐의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업체 대표 이모씨'라고만 표현하였고 그 내용 또한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단정적 표현이나 자세한 언급 없이 전 직원이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② 원고 B는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하는 원고 A 영어마을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8 기재 기사의 소제목「전 직원 대표 상대로 성추행 고발 수사 진행」과 본문의「전 직원 김모씨는 업체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지난달 언어 성추행 관련 경찰 고발, 현재 수사 진행중이다」라는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 제주도민일보와 H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보도하였다고 판단된다.

2)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위 각 기사 및 사설 중 원고 B의 성희롱 혐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 A 영어마을의 학원등록 여부, 건축물의 불법 증축 여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는 미성년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에 관련되는 것인 점, 위 피고들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환기시켜 추가 피해의 발생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기사 및 사설을 작성하여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기사 및 사설의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위 피고들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보도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진실성 또는 상당성

1) 원고 A 영어마을의 학원등록 관련

원고 A 영어마을이 학원법상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6, 7, 8 기재 각 기사와 별지10 기재 사설 중「현재 해당업체는 학원 등록 없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업자등록만 되어있는 상태다. 제주세무서는 "해당 업체의 캠프와 같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학원 등록을 반드시 교육청에 마쳐야 하지만 사업자등록만 돼 있는 상태라면 무허가시설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문제는 '무허가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학원 등록 없이 운영 중인 'A 국제영어마을'」,「제주시 ○○읍 A 국제영어마을 제주캠퍼스는…(중략)…등록도 하지 않고 몇 년째 학원영업을 하고 있지만」이라는 표현은 모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건축법 위반 관련

을나 제5호증의 1, 2,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주 ○○읍장은 2011. 2. 10. 및 같은 해 3. 15. 원고 A 영어마을에게 제주시 ○○읍 ○○리 ○○○○-○ 외 2필지 지상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여 학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자진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보낸 사실, 피고 G는 ○○읍사무소의 담당 주무관과 통화하여 원고 A 영어마을이 영어캠프에서 사용하는 시설이 무허가 건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9 기재 기사 중「불법증축된 건물은 강당과 급

식소로, 나머지 6개 컨테이너 건물은 수업장소로 각각 이용되고 있었다」는 표현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영어캠프에서의 구타 여부 관련

가) 별지8 기재 기사 중 「한 학부모는 "저희 아들은 이번에 캠프 참가했다가 구타만 당하고 왔어요.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답니다. 캠프관계자들 모두 고발하고 싶어요"란 댓글을 본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김씨의 말과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표현은 비록 의혹 제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캠프에 참가한 자녀가 구타를 당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전달한 것인데, 을나 제6호증의 4의 기재, 피고 H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G, H는 영어캠프와 관련된 취재 도중 캠프참가자의 학부모들로부터 진정서를 받았는데, 그 중 Y, Z가 보낸 진정서에는 '왜 알파벳을 배워야 하느냐고 질문하는 아이에게 Jay(한국명 Q)라는 선생은 엎드려 뻗치기로 아이들을 체벌했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체벌에 아이는 수용소 같은 생활에서…(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 영어마을의 영어캠프에서 구타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 H가 별지8 기재 기사를 작성하면서 피해학생이나 학부모와 직접 연락하여 구타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제주도민일보나 피고 H가 별지8 기재 기사 중 영어캠프에서의 구타행위에 관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 B의 성추행 혐의 관련

원고 A 영어마을의 전 직원인 피고 C가 원고 B를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 및 검찰에서 이에 대해 수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8 기재 기사 중 「전 직원 대표 상대로 성추행 고발 수사 진행」, 「전 직원 C씨는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지난달 언어 성추행 관련 경찰 고발, 현재 수사 진행중이다」라는 표현은 모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별지8 기재 기사의 경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제주도민일보와 H가 별지8 기재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것은 원고 A 영어마을에 대한 신용훼손에 해당하고, 상당성이 없어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 A 영어마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우선 원고 A 영어마을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제주도민일보, H의 위와 같은 행위와 교육시설의 철거 및 장소의 이전 및 이로 인한 원고 A 영어마을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는 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장소로 사용되던 시설이 불법 건축물임이 드러나고 학원법에 따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업 내용이 부실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원고 A 영어마을이 입은 무형의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8 기재 기사의 보도와 이에 따른 신

용훼손으로 인하여 원고 A 영어마을이 무형의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기사의 내용과 보도 경위, 제주도민일보의 일간지로서의 영향력과 이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도, 원고 A 영어마을의 사업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제주도민일보와 H가 원고 A 영어마을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나머지 각 기사 및 사설의 경우

피고 제주도민일보, G, H가 별지8 기재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기사 및 사설을 작성하여 보도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신용 내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제주도민일보, H는 각자 원고 A 영어마을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A 영어마을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2. 10. 2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0. 2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원고 B의 피고 엔에이치엔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피고 엔에이치엔은 원고 B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고도 별지11 기재 각 게시물을 삭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C, D 등의 원고 B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엔에이치엔은 원고들로부터 피고 D, E 등이 게시한 글과 관련하여 합계 229건의 게시중단 요청을 받아 그 중 이미 게시 중단되었던 58건, 중복 요청한 6건, 서류가 미비된 3건 합계 67건을 제외한 나머지 162건에 대하여 게시중단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미 게시 중단되었던 58건은 추후 작성자의 재게시 요청에 따라 재게시되었다.

(2) 원고들은 2011. 3. 22. 피고 엔에이치엔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카합124호로 위와 같이 원고들이 게시중단을 요청한 글 중 일부를 포함하여 네이버에 게시된 글 31건에 대하여 게시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6. 14. 그 중 별지11 기재 각 게시물(게시글 2건과 댓글 4건 합계 6건)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위 각 게시물들은 피고 엔에이치엔이 위 결정에 따라 삭제하기 이전에 이미 삭제되었다.

(3)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및 '네이버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시(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삭제 ·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 · 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네이버 이용약관]

제16조 ("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 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에 따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라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피고 D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

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참조).

(나) 별지11 기재 1항의 경우

별지11의 1항 중 「B씨.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직원들 관련 임금체불 전과만…(중략)…7건 정도 있더군요」라는 표현은 원고 B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2011. 6. 14. 피고 엔에이치엔에 대하여 위 글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라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글에 대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회원수와 게시물의 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엔에이치엔이 위 글이 게시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11 기재 2, 3항의 경우

을라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엔에이치엔에 별지11의 2, 3항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위 각 글의 게시를 중단하였다가 같은 날 작성자들로부터 재게시요청을 받고 바로 이를 재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글에는 「대표 B의 새로운 비리와 사기행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략)…이런 악덕 사기업자가…(이하 생략)」,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기와 성폭력, 비리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고…(이하 생략)」라는 부분과 같이 원고 B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등으로 그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고, 원고들이 게시 중단을 요청한 이상 피고 엔에이치엔도 위 각 글이 게시되었다는 사정 및 그 내용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44조의2 제4항에서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고 엔에이치엔은 위 각 글의 게시를 중단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를 재게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엔에이치엔은 위 각 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원고 B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엔에이치엔은 위와 같이 원고 B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별지11 기재 4, 5, 6항의 경우

별지11의 4항 중 「일방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면서 부당하게 B가 짜른 내국인 강사님…(이하 생략)」, 5항 중 「말이 안되는 게 직원들 급여 몇 십만 원씩도 상습적으로 체불하시고…(이하 생략)」, 6항 중 「이런

사기집단은 없어져야 합니다. …(중략)… 완전히 감옥에 수용시키면서 약취하는…(이하 생략)」이라는 표현은 원고 B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2011. 6. 14. 피고 엔에이치엔에 대하여 위 각 글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나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글은 다른 게시글에 대한 댓글인데, 원고들은 해당 게시글에 대해서만 게시중단을 요청했을 뿐 댓글인 위 각 글에 대해서는 따로 게시중단을 요청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네이버'의 회원수와 게시물의 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회원수와 게시물의 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엔에이치엔이 위 글이 게시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별지11 기재 2, 3항 각 글의 내용과 게시 경위, 전파력 및 이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도, 원고 B의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엔에이치엔이 원고 B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엔에이치엔은 원고 B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2. 10. 2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0. 27.부터 피고 엔에이치엔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피고 D, E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 E의 주장

피고 D와 E는 원고 A 영어마을과 사이에 각 피고들의 자녀들이 영어캠프에 참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참가비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영어캠프의 시설물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었고 부대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광고 내용과는 다르게 뉴질랜드 학생들도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위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국내어학연수의 경우 개시 후 계약이 해제되면 기납입액을 환급하고 총비용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에게 기납입액 268만 원과 손해배상액 893,333원(=2,680,000원×1/3)의 합계 3,573,333원(=2,680,000원+893,333원), 피고 E에게 기납입액 5,430,360원과 손해배상액 1,810,120원(=5,430,360원×1/3)의 합계 7,240,48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A 영어마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6호증의 1, 2, 3, 을나 제19호증, 을나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 E는 2010. 11.경 원고 A 영어마을과 사이에 각 피고들의 자녀인 P, R, S가 영어캠프에 참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는 2010. 11. 4. 및 같은 달 30. 합계 268만 원을, 피고 D는 2010. 11. 23. 및 같은 해 12. 23. 합계 5,430,360원을 각 원고 A 영어마을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들의 자녀들이 참가한 영어캠프에는 당초의 광고 내용과는 달리 뉴질랜드 학생들이 참가하지 않은 사실,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위 영어캠프에 관하여 수준별 반편성 미실시 및 실내 테마시설 부족, 전용 숙소 및 기숙사 부재 등 영어캠프가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 영어마을은 당초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영어캠프를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의 불완전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A 영어마을은 이로써 위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영어캠프를 개최하여 불완전하게나마 위 피고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채무를 이행한 점, ②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3항 참조)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과 원고 A 영어마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영어캠프가 종료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 A 영어마을이 피고 D, E에게 배상할 금액은 위 피고들이 지급한 영어캠프 참가비의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원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 B는 원고 A 영어마을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영어캠프를 계약 내용과 같이 운영하지 않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 영어마을과 각자 피고 D, E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각자 피고 D에게 134만 원(=268만 원×1/2), 피고 E에게 2,715,180원(=5,430,360원×1/2)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위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 9. 16.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9. 피고 F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F의 주장

피고 F는 원고들과 영어캠프 강사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계약을 해지하였

으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F에게 위약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A 영어마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을가 제6호증의 6, 을나 제1, 2,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피고 C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영어마을의 내국인 강사 채용은 면접을 실행한 후 원고 B에게 보고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서류를 제출받아 결재가 나면 강사 본인에게 합격되었다고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실, 피고 C는 2010. 11.경 피고 F의 채용을 위한 면접을 실시한 사실, 2010. 11. 2. 피고 C가 작성한 업무일보의 '금월 주요업무', '금주 주요업무'란에는 각 '내 외국인 강사 채용'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일주요업무'란 하단에는 '8주 과정에는 현재 T씨 U(피고 F의 개명 전 이름)씨 V씨 W씨 확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F는 2010. 10. 28. '영어캠프 강사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무인하였고, 피고 C는 2010. 10. 말경에서 같은 해 11. 초경 사이에 피고 F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이력서 등의 입사서류를 제출받은 사실, 피고 F는 2010. 12. 11. X초등학교에서 열린 원고 A 영어마을의 신규채용 내국인 강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 영어마을의 강사 채용절차에 비추어 보면, 강사채용계약서의 작성은 원고 B에게 보고하여 합격자로 결정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② 피고 F는 당시 원고 A 영어마을의 직원으로서 강사채용을 위한 면접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C와 인터뷰하였고 원고 A 영어마을에서 작성하여 제시한 계약서에 무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위 계약서에 원고 A 국제영어마을 또는 B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U는 원고 A 영어마을과 사이에 강사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을나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고 U가 작성한 강사채용계약서의 근무조건 6항에는 "'갑'(원고 A 영어마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통보를 하였을 경우 위약금 200만 원을 '을'에게 배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 영어마을은 피고 U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F는 원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강사채용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A 영어마을과 피고 F이고, 원고 B는 원고 A 영어마을의 사내이사에 불과하여 위 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A 영어마을은 피고 F에게 위약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위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 결론

그렇다면, 피고 F의 원고 A 영어마을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본소청구, 원고 A 영어마을의 피고 제주도민일보, 피고 H에 대한 각 청구, 원고 B의 피고 엔에이치엔에 대한 청구, 피고 D, 피고 E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C, 피고 G에 대한 각 청구, 원고들의 피고 E, 피고 F에 대한 각 본소청구, 원고 B의 피고 제주도민일보, 피고 H에 대한 각 청구, 피고 F의 피고 B에 대한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5〉 게시글 생략

〈별지 6~10〉 기사 생략

〈별지 11〉 게시글 생략

제3장 초상권 침해 사례

초상권 침해 사례 1

방송된 신체의 일부만으로 피촬영자의 특정이 곤란한 경우, 단지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가합10952 판결(확정)

사실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12년 7월 19일 A가 주식회사 와이티엔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언론사는 2007년 8월 13일 『편의점 강도, '컵라면 지문' 덜미』 제목으로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수백만 원대의 물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원고와 공범이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경찰서로부터 입수된 촬영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의 뒷모습을 방영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지인들로 하여금 원고의 범죄 혐의 사실을 알게 하여 원고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초상이란 촬영 내지 묘사된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하므로, 뒷모습 등 신체의 일부에 대한 촬영이라 하더라도 피촬영자의 고유한 특징 및 촬영 영상에 대한 설명 등 관계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 초상권의 침해가 문제될 것이나, 신체의 일부만으로는 피촬영자의 특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지 그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족이나 친구들이 방송을 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방송에서 노출된 뒷모습만으로는 그것이 원고 신체의 일부임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11가합10952 손해배상(기)

원　　고 : A

피　　고 : 1. 주식회사 와이티엔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 2012. 6. 21.

판 결 선 고 : 2012. 7.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은 8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7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10.경 특수강도 혐의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공범이 친구인 B의 자택에 은신하고 있음이 확인되자 위 경찰관들은 원고를 대동하여 위 장소에서 공범을 검거하였는바, 당시의 검거 과정은 출동한 경찰관 중 한명에 의하여 캠코더로 촬영되었다.

나. 한편,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이하 '피고 와이티엔'이라 한다)은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로서, 원고 및 공범의 체포 직후 마포경찰서로부터 입수된 위 촬영 자료를 바탕으로 위 사건 관련 소식을 제작하여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방송은 2007. 8. 13. "편의점 강도, '컵라면 지문' 덜미"라는 자막하에 약 20여초 간 보도되었는데, "서울 마포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수백만 원 대의 물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서른 살 김 모씨 등 두 명을 구속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앵커의 보도 멘트와 함께 경찰관들이 다가구 주택 안으로 들어간 후 방에서 원고의 공범을 체포하는 장면이 방영되었고, 그 중 원고와 관련하여서는, 경찰관들과 함께 공범이 은신한 다가구 주택 안으로 원고가 들어가는 뒷모습이 방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모습까지를 포함하여 공범에 대한 검거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고 와이티엔은 위 촬영 장면을 토대로 이 사건 방송을 제작, 보도함으로써 지인들로 하여금 원고의 범죄 혐의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원고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 가정 및 교우관계의 파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초상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초상권 등의 침해 여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바, 그 중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침해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또한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 역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한편, 초상이란 촬영 내지 묘사된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하므로, 뒷모습 등 신체의 일부에 대한 촬영이라 하더라도 피촬영자의 고유한 특징 및 촬영 영상에 대한 설명 등 관계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 초상권의 침해가 문제될 것이나, 신체의 일부만으로는 피촬영자의 특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지 그의 동의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원고의 모습을 담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침해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방송에서의 피촬영자인 원고의 식별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초상권 침해 여부가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다),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방송에서는 원고의 상의 뒷모습이 약 5초간 방영되었을 뿐 원고의 앞모습은 일체 노출되지 않았던 점, ② 또한 이 사건 방송에서는 원고의 육성이나 성명 등의 인적사항, 기타 원고의 뒷모습과 종합하여 원고임을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위 방송이 촬영된 장소는 원고의 친구인 B의 집이나, 이는 통상의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택의 실내 모습 또한 통상의 모습과 비교하여 특별한 것이 없어, 위 촬영 장소와 원고와의 연관성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는 3명의 경찰관들과 함께 공범이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당시 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원고의 앞·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통상의 시청자로서는 사복 차림의 원고

를 포함한 피촬영자 모두를 경찰관으로 인식할 여지도 적지 않은 점, ④ B는 이 법정에서 2007. 8.경 수감중이던 원고를 면회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방송에 나왔다는 사실을 전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B는 위 방송을 청취할 당시 원고의 배우자를 통하여 원고의 수감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로부터 원고와 관련된 동영상 기사가 게시되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상태에서 위 방송을 접하게 되었고, 만일 위와 같은 사전의 정보 없이 위 방송을 보았다면 자신의 경우에는 원고를 알아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나아가 B는 자신에게 원고가 촬영된 이 사건 방송의 존재를 알려 준 친구 역시 원고의 고향 친척 내지 친구로부터 원고의 범죄 혐의 및 위 방송의 보도 사실을 들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B의 친구 역시 위 방송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제3자의 전언을 통하여 원고의 범죄 혐의 등에 관하여 최초로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족이나 친구들이 위 방송을 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위 방송에서 노출된 뒷모습만으로는 그것이 원고 신체의 일부임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방송을 통해 범죄사실과 관련한 자신의 모습이 친구 등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 자체에 대하여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 설령 이와 다른 입장에서 위 영상 역시 원고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음을 문제삼는다 하더라도, 위 영상 자체는 범죄사실 및 증거물에 대한 촬영적 기법에 의한 보존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수사상의 필요 등 제한적인 목적을 위하여만 한정적으로 활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임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위 영상 촬영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초상권 침해 사례 2

공익적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이나 초상권 보호절차를 생략해도 용인될 만큼의 긴급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9. 19. 선고 2011가단102015 판결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년 9월 19일 A 외 2명이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11년 10월 2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위험한 장난 바바리맨의 진화」 제목으로 아파트 경비원인 원고들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이 공익적인 목적 하에 제작, 방영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공익 달성을 위해 위 프로그램 중에 원고들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요성이나 초상권 보호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긴급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4월 26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원고들은 2011년 11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11서울조정1241)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된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11가단102015 손해배상
원 고 : 1. A
2. B
3. C
피 고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변론종결 : 2012. 7. 18.
판결선고 : 2012.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0. 30.부터 2012.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0. 3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2011. 10. 29.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 – 위험한 장난 바바리맨의 진화' 프로그램에 출연되는 정복을 입은 아파트경비원들이다.

나. 피고는 위 프로그램에서 원고들의 얼굴을 모자이크나 흐리게 처리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방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이 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공연음란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바바리맨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을 신빙성있게 전한다는 공익적인 목적 하에 해당 아파트에서 실제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들을 촬영, 방영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이 등장하는 장면은 원고들이 바바리맨의 인상착의를 한 용의자를 보았는지 등을 묻는 정보전달형 기사로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원고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각 1~2초 정도에 불과하며 열심히 자신의 업무

를 수행하는 원고들의 상반신이 나오는 모습이므로 상당성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객관적으로 용인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피해의 정도와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공익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프로그램이 공익적인 목적 하에 제작, 방영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공익 달성을 위해 위 프로그램 중에 원고들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요성이나 초상권 보호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긴급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액수

위 프로그램의 방영 목적, 원고들이 나오는 장면의 방영시간, 방영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0. 30.부터 2012. 9. 19.(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초상권 침해 사례 3

원고가 기자들에게 면담 당시에 찍은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가합13890 판결(확정)

사실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012년 4월 27일 A 전 국회도서관장이 주식회사 시사저널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11년 7월 26일 시사저널 및 시사저널 인터넷 홈페이지에 『힘 있는 곳에 책 주는 국회도서관 '끼리끼리 기증'』, 『입 다문 A 국회도서관장 "기사 쓸려면 맘대로 써라"』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1. 7. 21. 피고 소속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진기자가 원고의 사진을 찍기 시작하자 자신의 사진을 찍지 말라고 제지하면서, 재킷과 넥타이를 착용한 정장 차림이 아닌 와이셔츠 차림의 사진을 찍는 것이 부적절하고, 원고의 사진이 필요할 경우 국회도서관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도용 사진을 받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기자들에게 위 면담 당시에 찍은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11가합13890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원　　고 : A
피　　고 :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변론종결 : 2012. 3. 30.
판결선고 : 2012. 4. 27.

주 문

1. 피고는

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지 시사저널 특집란의 첫 번째 면 상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별지2] 기재 기사 중 [입 다문 A 국회도서관장 "기사 쓸려면 맘대로 써라"]는 제목의 상자기사와 동일하게 하고,

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48시간 동안 시사저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isapress.com)의 초기 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별지2] 기재 기사 중 [입 다문 A 국회도서관장 "기사 쓸려면 맘대로 써라"]는 제목의 상자기사와 동일하게 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별지2] 기재 기사의 검색이 가능한 날까지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별지2] 기재 기사를 검색하면 그 하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이 보이도록 함께 게재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6.부터 2012.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시사저널 특집란의 첫 번째 면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는 [별지2] 기재 기사의 부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로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시사저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isapress.com)의 첫 화면과 특집란의 첫 화면의 중앙 상단에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7일 동안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별지2] 기재 기사 [힘 있는 곳에 책 주는 국회도서관 '끼리끼리 기증']과 [입 다문 A 국회도서관장 "기사 쓸려면 맘대로 써라"]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하되,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는 위 기사의 부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로 한다. 또한 피고가 [별지2] 기재 기사를 송부한 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도 위와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회도서관장이고, 피고는 주간지 시사저널을 발행하며, 시사저널 인터넷 홈페이지(http://

www.sisapress.com)를 운영하면서 위 주간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재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는 2011. 7. 26. 주간지 시사저널 제1136호의 특집란과 같은 달 7. 27. 시사저널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2] 기재와 같이 [힘 있는 곳에 책 주는 국회도서관 '끼리끼리 기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위 기사에 연결하여 [입 다문 A 국회도서관장 "기사 쓸려면 맘대로 써라"]는 제목의 상자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로 피고 소속의 B 기자가 2011. 7. 21. 국회도서관의 원고 사무실에서 원고를 만난 내용의 기사 및 당시 동행한 C 사진기자가 원고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시사저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원고의 사진은 다음의 첫 번째 사진에서 보듯이 그 아래쪽에 사진을 촬영한 C의 이름이 기재된 것과 달리, 주간지 시사저널에 게재된 원고의 사진은 다음의 두 번째 사진에서 보듯이 원고의 왼쪽 어깨의 윗부분에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입 다문 A 국회도서관장 "기사 쓸려면 맘대로 써라"」

이와 관련해 A 국회도서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7월 21일 오후 도서관장실에서 A 관장을 만났다. 사전에 약속된 자리였다. …(중략)… 기자가 화제를 돌려 '도서관 현안 문제와 관련해 여쭤볼 것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자마자 A 관장은 정색을 하며 "아니다", "안 한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에 기자가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인터뷰를 안 한다고 하면 어쩌느냐'라고 채근했지만, 그는 "내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출신이다. (인터뷰는) 안 한다"라며 "(국회) 본청에 가야 한다"라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서둘러 나가려 했다.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서에게 "기자님들 밖으로 모시라"라고 했다. …(중략)… 하지만 A 관장은 "(인터뷰) 안 한다. 기사를 쓰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나갔다. 인터뷰를 거절한 것이다. …(중략)… 국회도서관의 한 직원은 "…(중략)… 최근에는 자료수집과 직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기증한 책 문제와 관련해 외부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라는 함구령을 내렸다. 게다가 (도서 기증 업무를 담당하는) 자료수집과 과장도 교체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사진생략)

ⓒ시사저널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별지3]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와 피고 소속 기자가 2011. 7. 21. 만나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한 바가 없

고, 원고는 기자가 인사 또는 민원제기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가 사전에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가 피고 소속 기자와 인터뷰를 약속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였고, 그럼에도 기자가 계속하여 인터뷰를 요구하자, 원고가 먼저 사무실에서 나가면서 인터뷰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기사에서는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하자 원고가 "정색을 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나갔다", "기사를 쓰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등의 왜곡되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3) 원고는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직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책을 기증한 문제와 관련하여 함구령을 내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가 그러한 함구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국회도서관의 책을 기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자료수집과 과장을 교체하는 문책성 인사를 한 바가 없음에도,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가 그러한 문책성 인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1) 사전에 인터뷰 약속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7. 19. 피고 소속 B 기자와 같은 달 21. 면담할 약속을 하면서 그 면담의 목적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비록 국회도서관 현안에 관하여 홍보담당자가 아닌 원고가 직접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경우가 드물다고 하더라도(원고는 도서관장으로 취임한 2010. 7.경 이후 현재까지 총 10회 미만의 인터뷰를 하였다), 이를 이유로 B 기자가 원고가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② 원고가 B 기자와 만날 약속을 하면서 단순한 인사 방문만 받고, 국회도서관의 현안에 대해서는 일절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그렇다면 국회도서관 출입자격을 가진 B 기자가 미리 약속을 하여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원고가 관장으로 총괄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의 현안에 관하여 질문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뿐만 아니라 B 기자의 방문이 단순한 인사차였다고 하더라도, 불시의 예측 못 한 방문이 아니라 국회도서관장실에서의 사전에 약속된 자리였다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로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B 기자가 자연스럽게 원고가 책임지고 있는 국회도서관의 현안에 대해 얘기를 꺼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기사에서도 "사전에 약속된 자리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전에 인터뷰를 할 것이 약속된 자리였다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B 기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하였고, 그 약속된 자리에서 B 기자가 국회도서관의 현안 문제를 질문하면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자 원고가 인터뷰를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일 뿐, 원고가 사전에 인터뷰를 약속하였음에도 인터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소속 기자와 사전에 인터뷰를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약속을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터뷰 거절 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언행을 왜곡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사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소속 B 기자가 국회도서관의 현안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자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는 거절 의사를 밝히고, B 기자와 C 사진기자로 하여금 원고의 사무실에서 나가도록 하였으나, 위 기자들이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자, 원고가 먼저 사무실에서 나갔으며, B 기자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면, 이대로 보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원고가 "기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위와 같이 원고가 인터뷰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한 말과 행동을 사실대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다만 "정색을 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나갔다"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나, 이러한 표현 또한 당시의 상황에서 기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판단을 기재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인터뷰 거절 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언행을 왜곡, 과장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함구령을 내리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자는 그 대상이 되는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어떠한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어떠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그 입증책임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국회도서관의 한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재하면서, 그 직원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원고 또한 위와 같은 함구령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 중 함구령에 관한 부분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국회도서관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자료수집과 과장의 교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회도서관의 자료수집과 과장이었던 E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전인 2011. 7. 1.의 같은 달 4.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자료과장으로 인사이동이 되었는데, 피고는 [별지2] 기재 기사에서 국회도서관의 책 기증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한 후, 이어서 이 사건 기사에서 "게다가 국회도서관의 도서 기증 업무를 담당하는 자료수집과 과장도 교체했다"고 기재하고 나아가 "무언가 심상치 않은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기재하는 등, 기사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국회도서관의 책 기증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원고를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원고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자료수집과 과장을 교체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의 자료수집과 과장의 교체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국회도서관의 자료수집과 과장의 교체와 관련하여, 위 인사이동이 국회도서관의 책 기증 문제를 다룬 [별지2] 기재 기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그 표현방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지 시사저널 특집란의 첫 번째 면 상단에 게재하되, 그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이 사건 기사와 동일하게 하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48시간 동안 시사저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sisapress.com)의 초기 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되, 그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이 사건 기사와 동일하게 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별지2] 기재 기사의 검색이 가능한 날까지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별지2] 기재 기사를 검색하면 그 하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이 보이도록 함께 게재하도록 정한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송부한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시사저널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①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② 원고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원고의 어깨 윗부분에 사진기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 중 허위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은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과장의 인사이동과 관련된 부분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일부 과장된 표현이나 기자의 주관적 느낌 또는 판단이 있을 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자료수집과 과장의 인사이동과 관련하여서도, 위 인사이동이 원고와 B 기자가 만나기 전인 2011. 7. 초경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국회도서관의 책 기증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무렵에 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도서관의 직원이 교체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위 인사이동이 위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제기와 관련되어 있으리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취지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과실이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원고의 어깨 윗부분에 사진기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는지를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사의 편집 과정에서 인물 사진 아래에 사진기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구도상 또는 공간 부족의 이유 등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 사진에 찍힌 인물의 어깨 윗부분에 사진기자의 이름을 기재하며, 이는 이 사건 기사 외에도 피고가 보도한 다른 기사의 인물 사진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방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어깨 윗부분에 사진기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

나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7. 21. 피고 소속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C 사진기자가 원고의 사진을 찍기 시작하자, 자신의 사진을 찍지 말라고 제지하면서, 재킷과 넥타이를 착용한 정장 차림이 아닌 와이셔츠 차림의 사진을 찍는 것이 부적절하고, 원고의 사진이 필요할 경우 국회도서관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도용 사진을 받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기자들에게 위 면담 당시에 찍은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국회도서관장으로서의 공적 지위, 사진을 찍을 당시의 상황, 위 사진이 게재된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의 보도일인 2011. 7.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1. 제 목 : 국회도서관의 도서기증 관련 A 국회도서관장의 인터뷰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문

2. 내 용 : 본지는 지난 제1136호의 특집란에 [입 다문 A 국회도서관장 "기사 쓸려면 맘대로 써라"]는 제목으로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도서 기증 업무를 담당하는 자료수집과 과장을 교체했다"고 기재하였으나, 자료수집과 과장의 인사이동은 본지 기사가 보도되기 전인 2011. 7. 1.의 같은 달 4.자 인사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국회도서관의 책 기증 문제를 다룬 위 제1136호 특집란의 기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끝.

〈별지 2〉 기사 생략

〈별지 3〉 정정보도문 생략

초상권 침해 사례 4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원고들이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을 방송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7. 선고 2011가단43086(확정)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년 2월 7일 A 외 2명이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11년 4월 17일 〈SBS 스페셜〉 프로그램에서 '오지랖 아줌마, 진상 아저씨가 사는 법' 제목으로 '아줌마, 아저씨'로 대표되는 우리사회 중년의 삶의 질을 점검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피고는 이 프로그램 전반부와 후반부에 직장인인 원고들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의 클로즈업 샷을 방송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초상권의 부당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며, "피고는 다큐멘터리의 제작진이 원고들의 사전 동의하에 촬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원고들을 평소 술만 마시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술꾼 또는 진상아저씨인 것처럼 방송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큐멘터리 방송의 전체 맥락상 원고들이 술꾼 또는 진상아저씨인 것처럼 표현되었거나 오인될 여지가 있었다하더라도 술꾼 또는 진상아저씨라는 표현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11가단43086 손해배상(기)

원　　고 : 1. A
2. B
3. C

피　　고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변 론 종 결 : 2011. 12. 6.

판 결 선 고 : 2012.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6. 15.부터 2012.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국 에스비에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에스비에스는 2005. 7.경부터 매주 일요일 23:00경 약 60분간 'SBS 스페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방송을 하고 있다.

(2) 원고들은 D 신문사 제작국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들로서 2011. 3. 15. 20:00경 서울 무교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에스비에스의 위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원고들이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3) 에스비에스는 2011. 4. 17. 23:00경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난 '아줌마, 아저씨'의 특징과 애환을 통해 '아줌마, 아저씨'로 대표되는 우리사회 중년의 삶의 질을 점검하는 내용의 'SBS 스페셜' 〈오지랖 아줌마, 진상 아저씨가 사는 법〉이라는 방송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촬영된 장면은 위 다큐멘터리의 전반부에 11초가량, 후반부에 6초가량 방송되었고, 클로즈업 샷(close up shot) 형태로 촬영된 원고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아니하여 위 방송장면의 인물들이 원고들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을 1, 3호증의 각 기재, 갑 2호증의 6 내지 10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초상권의 부당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다큐멘터리의 제작진이 원고들의 사전 동의하에 촬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4, 5, 7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9호증의 1, 2,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들은, 에스비에스가 위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원고들을 평소 술만 마시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술꾼 또는 진상아저씨인 것처럼 방송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다큐멘터리 방송의 전체 맥락상 원고들이 술꾼 또는 진상아저씨인 것처럼 표현되었거나 오인될 여지가 있었다하더라도 술꾼 또는 진상아저씨라는 표현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액

위 다큐멘터리 방송의 기획의도 및 그 내용, 원고들의 모습이 촬영된 장면의 방송분량,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위 다큐멘터리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3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6.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2.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초상권 침해 사례 5

지명수배 중인 원고의 실명과 초상을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조속한 검거에 일조하도록 한다는 공익이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1가합15231(확정)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2012년 11월 1일 A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및 소속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SBS 〈뉴스추적〉 프로그램에서 2006년 7월 19일 「지명수배 25건 A의 비밀은」, 2006년 8월 16일 「나는 아직도 회장님」 제목으로 '원고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사장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으나 도박에 빠져 마카오 등지에서 재산을 탕진하였고, 그 후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들과 결탁해 유망한 기업체들을 인수하여 경영하면서 거액의 사기 ·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주변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여 원고에 대해 25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나 원고는 계속 호화생활을 하며 서울에서 지내고 있고, 원고가 검거되지 않는 데에는 경찰 · 검찰 등의 고위권력층에 대한 원고의 로비로 인해 그들이 원고를 비호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원고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 및 인터넷 다시보기 영상 삭제, 정정 및 사과문 방송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개인은 자신의 성명의 표시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나, 성명의 표시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 있으며 그 표현내용 · 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의 표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방송보도 당시 원고는 거액의 사기 · 횡령 등의 범행으로 25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나 검거되지 않고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원고가 검거되지 않는 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유착 관계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실명과 초상을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수사기관에게 원고에 대한 검거 노력을 촉구하며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원고를 발견하였을 때 수사기관에 제보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조속한 검거에 일조하도록 한다는 공익이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보도를 통해 원고의 성명과 초상을 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11가합15231 손해배상(기)

원　　고 : A

피　　고 :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2. B

3. C

변 론 종 결 : 2012. 9. 20.

판 결 선 고 : 2012. 11.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2006. 7. 19. 방송한 '지명수배 25건 A의 비밀은', 2006. 8. 16. 방송한 '나는 아직도 회장님'이라는 각 제목의 '뉴스추적' 프로그램에 관한 방송 다시보기를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의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제2항 기재 각 방송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무단주거침입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과문을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가 방송하는 '현장 21' 프로그램의 정규방송에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사과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위 제2항 기재 각 방송 다시보기를 삭제하며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무단주거침입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사과한다는 뜻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도록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자막으로 또는 낭독하게 하라.

4.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가 제2, 3항 기재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뉴스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2006. 7. 19. '지명수배 25건 A의 비밀은'이라는 제목으로, 2006. 8. 16. '나는 아직도 회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관한 범죄 혐의와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방송보도(이하 '이 사건 방송보도'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 B, C는 위 프로그램을 제작 및 진행한 피고 회사 소속 기자들이다.

나. 이 사건 방송보도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사장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으나 도박에 빠져 마카오 등지에서 재산을 탕진하였고, 그 후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들과 결탁해 유망한 기업체들을 인수하였으며, 인수한 기업을 경영하면서 거액의 사기·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주변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여 원고에 대하여 25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나, 원고는 계속 호화생활을 하며 서울에서 지내고 있고, 원고가 검거되지 않는 데에는 경찰·검찰 등의 고위권력층에 대한 원고의 로비로 인해 그들이 원고를 비호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방송보도를 하면서 원고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였는데,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원고가 문제삼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B가 원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D 스위트(이하 '원고의 집'이라고 한다)에 들어가 집 안을 촬영하면서 원고의 옷, 넥타이, 구두 등을 촬영하여 방송한 부분

② 원고가 청계천 주상복합사업, 서울 미아동 시행사업, 울산 아파트 시행사업 등을 하였다고 보도한 부분(이하 '이 사건 1보도'라고 한다)

③ E 아이티주식회사(이하 'E 아이티'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회사 자금 275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직원들로부터 고발당한 E 아이티의 사장 F, 대주주 G가 원고의 측근이거나 원고가 추천한 사람이라는 보도 부분(이하 '이 사건 2보도'라고 한다)

④ 원고에 대한 25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안에 원고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어 원고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 부분(이하 '이 사건 3보도'라고 한다)

⑤ 원고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 6개를 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원고를 '밤의 황제', '아직도 회장님' 등으로 묘사한 부분(이하 '이 사건 4보도'라고 한다)

⑥ 원고가 마카오의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거액을 도박으로 탕진하였다는 보도 부분(이하 '이 사건 5보도'라고 한다)

⑦ 기흥시 소재 H의 별장과 테니스장을 촬영하여 보도한 부분(이하 '이 사건 6보도'라고 한다)

⑧ 원고가 I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도한 부분(이하 '이 사건 7보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보도를 하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여 성명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의 집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원고의 집안과 옷, 넥타이, 구두 등을 촬영하여 방송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1 내지 7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취지 제2, 3항 기재 각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첫 번째 방송보도가 있은 2006. 7. 19.경 위 방송보도 사실을 알았으므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인 2006. 7. 19.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성명권 및 초상권 침해, 주거침입,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는 공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고, 이 사건 1 내지 7보도는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성도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해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보도를 위해 원고의 운전기사 J, 원고가 인수한 회사의 이사 K, 변호사 L, 원고의 형수 M, 원고의 지인 N 등 원고와 가까운 사람들을 인터뷰하였고 그들에 대한 인터뷰가 이 사건 방송보도의 내용이 된 사실, ② 원고는 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이 사건 방송보도의 내용이 된 사기,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한 사실, ③ 원고는 2006. 7. 19. 이 사건 첫 번째 방송보도가 방송된 직후인 2006. 8. 14. 출국하여 해외로 도피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 직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 이후 얼굴을 감추기 위해 모자와 선글라스로 변장을 하고 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2006. 7. 19.경 이 사건 방송보도 사실을 알았다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성명권 및 초상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개인은 자신의 성명의 표시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나, 성명의 표시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 있으며 그 표현내용 · 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의 표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원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해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행한 사기, 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원고에 대하여 25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음에도 원고는 검거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O, P와 공모하여 2003. 4. 14.부터 2003. 10. 13.까지 총 20장, 액면금 합계 11,718,980,142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위·변조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수표사고신고서를 중소기업은행 강남구청역지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금융기관에 각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2006. 4. 24. 성동구청 여권과에 Q의 인적사항으로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6. 4. 28. Q의 인적사항에 원고의 사진이 부착된 여권을 발급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여권법위반의 각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5. 선고 2009고단7908, 2009고단7957(병합)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3. 선고 2010노2102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04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③ 원고는 「2002. 11. 27.부터 2002. 12. 10.까지 피해자 I로부터 23억 4,000만 원을, 2003. 2. 24. 피해자 R로부터 1억 7,600만 원을, 2003. 4. 26.부터 2003. 5. 30.까지 피해자 S로부터 5억 6,650만 원을, 2003. 4. 10.부터 2003. 5. 13.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T 광업으로부터 4억 6,070만 원을, 2003. 5. 12.경 피해자 U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2004. 10. 8.부터 2004. 11. 30.까지 피해자 V 주식회사의 자금 합계 7,803,618,996원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각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0고합961, 1028(병합)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의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7. 27. 선고 2011노2167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2도9592)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실, ④ W는 2004. 12. 28. 경찰청장으로부터 「W가 포천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4. 10.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당시 수배 17건), 경기경찰청 형사과 소속 경감 X와 함께 2004. 10. 16. 골프모임을 갖기로 약속하고, 포천경찰서장 보안계장 경사 Y에게 관내 ○○○○○ 골프클럽에 부킹을 하도록 한 후, 2004. 10. 16. 11:00경 근무시간 중임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관용차로 ○○○○○ 골프장으로 가 원고 등과 골프를 치기 위해 대기하던 중 11:40경 실종된 Z 경사의 차량과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사체가 안치될 예정이었던 포천의료원으로 가 30분 후에 도착된 사체를 확인하고 경찰서로 돌아갔다가 15:30경 위 골프장으로 가 일행과 함께 17:30까지 골프를 친 후 식사를 하고 모든 경비를 원고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골프장에 출입하고, 실종된 부하직원의 사망사실을 알고서도 계속 골프하여 비난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보도 당시 원고는 거액의 사기·횡령 등의 범행으로 25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나 검거되지 않고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원고가 검거되지 않

는 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유착관계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실명과 초상을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수사기관에게 원고에 대한 검거 노력을 촉구하며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원고를 발견하였을 때 수사기관에 제보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조속한 검거에 일조하도록 한다는 공익이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되므로(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 직후인 2006. 8. 14. 출국하여 일본, 몽골 등을 전전하면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9. 9. 12. 몽골 현지수사기관에 검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보도를 통해 원고의 성명과 초상을 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주거침입 주장에 관하여

피고 B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반장 AB와 함께 원고의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갔고, 여기서 원고의 운전기사 J를 만나 J가 문을 열어주어 원고의 집에 들어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B가 원고의 집에 들어간 것은 원고가 사기·횡령의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성도 인정되므로, 피고 B의 주거침입행위는 고의·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주장에 관하여

을 제3, 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의 집안에서 원고의 옷, 넥타이, 구두 등을 촬영하여 위 옷 등이 모두 고가의 명품이라는 음성과 함께 이를 방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원고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원고가 사기·횡령을 통해 취득한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검거를 촉구한다는 보다 우월한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5) 명예훼손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1보도

표현행위에 적시된 사실 중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원고가 청계천 주상복합사업, 서울 미아동 시행사업, 울산 아파트 시행사업 등을 하였다는 것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2보도

이는 진위 여부가 불명한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는 「F, AC, AD는 G와 공모하여 2006. 1. 2.부터 2006. 5. 4.까지 6회에 걸쳐 E 아이티의 자금 합계 80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F, AC는 G, AE, AF와 공모하여 2006. 5. 15.부터 2006. 5. 17.까지 4회에 걸쳐 E 아이티의 자금 180억 원을 임의로 인출·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6고합

1437(분리)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F가 항소하였으나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노1437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F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325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② G는 원고에 대해 여러 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고 원고에게 수천 만 원을 보내준 사실, ③ 원고는 E 아이티의 노조위원장 이△△에게 F를 대표이사로 만들어 주면 200~3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 ④ 원고는 AG와 E 아이티의 이사들에게 자신을 E 아이티의 회장으로 칭하고 다닌 사실, ⑤ 원고가 측근인 K, L과 각 2005. 8. 26. E 아이티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 G의 E 아이티 자금 횡령 범행에 원고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이 사건 2보도는 그 중요부분이 진실이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원고의 범죄혐의에 관한 보도로서 공익성 또한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3보도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적시에 해당하나, 원고에 대한 25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고 원고가 국내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생활하는데도 원고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포천경찰서장 W가 2004. 10. 16. 원고와 골프를 친 후 식사를 하고 모든 경비를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경찰청장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중요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고 수사기관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범죄행위자에 대한 검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고발하는 내용으로서 공익성 또한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4보도

원고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 6개를 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를 '밤의 황제', '아직도 회장님' 등으로 묘사한 부분은 피고들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부분 보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5보도

원고가 마카오의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도박을 하였다는 부분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원고는 2001년경 유흥업소를 운영할 당시에 카지노에 출입한 이후에는 카지노에 간 사실이 없는데 원고가 회사 자금을 빼내어 카지노를 다닌 것처럼 보도한 것이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방송보도 내용은 「96년부터 A씨는 본격적으로 해외 원정 도박 길에 나섰습니다…(중략)… 2002년 5월 출금금지 조치가 내려지기까지 A씨가 마카오에 간 것은 모두 140여 차례, 2000년 6월에는 한 달에 다섯 번이나 원정도박을 다녀왔습니다…(중략)… 하지만 승부사로서 A의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박에 빠져들면서 A씨는 잘 나가던 유흥업소를 모두 정리해 도박자금으로 밀어 넣었고, 결국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중략)… 2002년 5월 말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갑작스레 귀국하면서 A씨의 원정도박은 막을 내렸습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가 회사 자금을 빼내어 카지노에 다닌 것처럼 보도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마카오의 카지노에 원정 도박을 다녔다는 보도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고 범죄 혐의에 관한 보도로서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6보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부분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B : A에게 10억 원을 빌려줬다 떼인 피해자 이 모씨는 사채업자 김 모씨를 또 다른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AH : 저기 2층에, 전 층에 사무실을 하나 내가지고, 컨설팅 그런 거 한다고, 변호사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더라고요.

피고 B : 이씨는 사채업자 김씨가 자신을 호화별장으로 초대해 A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권했다고 했습니다.

AH : 대지 2천평 거기 별장이 있지. 내가 그 사설 테니스장 있어서 그 테니스 치러 갔다가 이 친구 만나서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수영장 있고 테니스장 있다고.

피고 B : 취재진은 이 별장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채업자 김씨의 별장으로 알려진 저택에는 모 클럽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중략)… 이천 여 평 대지에 지어진 별장, 깔끔하게 정리된 테니스 장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한 쪽엔 수영장까지 마련된 호화별장이었습니다.

AH : 20억 들여서 만든 거예요. 거기 테니스 장은 아마 하얏트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피고 B : 피해자 이씨는 이 별장에서 거물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AH : 내가 듣기로 검찰총장 경찰청장하고 같이 놀 정도로 세게 나갔다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그거는 들었어요. 그래서 별장에 불러 가지고 부부간에 놀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

피고 B : 그러나 사채업자 김씨는 이런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H : 경찰, 검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난 아는 사람 한명도 없어. 그런 쪽하고 거리가 멀어요. 나는 그런 쪽하고는.

피고 B : 또 자신은 A의 기업사냥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H : 거래 많이 없었어요. 보증 딱 한 번 서 준 거. 보증 서 준 거. 나는 A를 만난 내 일생에 그런 놈 만난 걸 후회하는 사람이야.

위 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 보도는 H의 별장과 테니스장을 촬영하여 방송하면서 H가 원고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사) 이 사건 7보도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I, AJ와 공동하여 2003. 6. 16. 23: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원고는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원고에게 23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 I(남, 48세)가 위 주점에 찾아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위 주점 8호실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AI에게 전화를 걸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채무관계가 있는 I가 일행들 몇 명을 데리고 왔으니 빨리 오라"라고 지시하고, AI는 위 지시를 받고 즉시 AJ에게 연락하여 함께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원고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혁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AJ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0고합961, 1028(병합) 판결}을

받은 사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7. 27. 선고 2011노2167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7보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AJ는 「공소외 원고, AI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원고는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원고에게 23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 I(48세)가 위 주점에 찾아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위 주점 8호실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AI에게 전화를 걸어 "ㅇ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채무관계가 있는 I가 일행들 몇 명을 데리고 왔으니 빨리 오라"고 지시하고, AI는 위 지시를 받고 즉시 J에게 연락하여 함께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원고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혁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AJ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서울지방법원 2004. 1. 14. 선고 2003고단9403, 2003고단10342(병합)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4.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I는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상해진단서와 상해부위 사진을 보여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7보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 부분 보도는 원고의 범죄혐의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성 또한 인정되므로, 결국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 소결론

이 사건 1 내지 7보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위 각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4장 기타 사례

모욕 사례 1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는 모욕행위는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비판・감시・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 27. 선고 2011나36512 판결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2012년 1월 27일 국회의원 A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9년 4월 15일 조선일보 『민주당 A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 제목으로, 원고가 국회에서 여성부장관에게 연예인 성접대 사건에 피고의 사주(社主)가 관련된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면서 언론사는 상당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성매매 방지 교육을 언론사 등에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사설의 게재는 공직자인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나타난 언론관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통상 신문의 사설은 사실의 보도를 위주로 하는 기사와 달리 신문사의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는 속성이 있는바, 신문사가 신문의 사설에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냄에 있어서는 풍자, 과장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사용한 표현을 쉽사리 위법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사용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든가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또는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은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공직자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설의 제목 및 본문에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수회 사용된 점,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발언에서 언론인 내지 피고 사주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언급한 내용에 비하여 이 사건 사설에서 사용된 표현은 더욱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점, 이 사건 사설은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서 피고 사주에 대

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이 순수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공직자를 비판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인의 정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점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모욕행위는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11년 4월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11나36512 손해배상(기) 등
원고, 항소인 : A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09가합68328 판결
변 론 종 결 : 2011. 8. 26.
판 결 선 고 : 2012. 1.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2012.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이 판결 확정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일간지 '조선일보' A35면 상단 부분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정정보도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며, ③ 만약 위 ②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일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제1심 판결의 정정보도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제②, ③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2008.경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및 여성위원회 간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일간지 '조선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이다.

나. 여성부장관이 2009. 4. 14. 개최된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현안으로 성매매 관련 사건을 보고하면서 술시중과 성상납의 강요 등을 이유로 자살한 배우 B의 유족이 관련자들을 성매매특별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하 'B 사건'이라 한다),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경찰청장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여성부장관에게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 중에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B 사건에 피고의 사주(社主)가 관련된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면서, 언론사는 상당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방지 교육을 언론사 등에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별지 2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다음날인 2009. 4. 15. '조선일보' A35면의 오피니언란에 「민주당 A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별지 3 기재 사설(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언론을 향하

여 '성폭행적 폭언'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원고에 대하여, "…노무현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 무대에 떠오른 '노무현 사람'이다.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이 나온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또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성폭행적 폭언'이고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의 이 사건 보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성폭행적 폭언'이고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원고가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는 등으로 인신공격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였고, 또 이 사건 사설 중 원고에 대하여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전제한 다음 다른 사람이 원고의 남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이 몇 명인지를 묻고, 성매매 방지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고 한 부분, 원고의 경력을 열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사람'이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원고를 모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언론 ·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진술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해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인 흐름과의 연관 하에서 당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표현이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하며(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참조), 또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사설 중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원고가 발언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정확하게 위와 같은 표현의 발언을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설 게재 전날 개최된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부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 중에서 언론인이 몇

명인지를 묻고, 피고의 사주가 B 사건에 관련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함으로써 '성매매를 하는 사람 중에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원고가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발언하였다고 적시한 것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설 중 원고에 대하여 "…노무현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 무대에 떠오른 '노무현 사람'이다.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이 나온 것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본다)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의 정치적 입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결부시킨 것으로 원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피고의 평가적 의견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성폭행적 폭언',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한 피고의 주관적인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역시 이유 없다.

2) 모욕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설의 제목에서 원고가 언론을 상대로 '성폭행적 폭언'을 하였다고 표현하고, 본문의 내용에서도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피고가 언론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비판적 시각에서 이 사건 사설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인 것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모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원고가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한 다음 원고의 남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이 몇 명인지를 묻고 그 직업에 대해 성매매 방지 교육을 시키라는 식으로 말하면 어떻겠느냐고 한 부분 및 피고가 원고의 경력을 열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사람'이라고 표현한 부분 등은 그 표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존재이고, 이 사건 사설은 원고의 국회에서의 공적인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인바, 신문 사설은 사실을 알리는 기사와는 다르게 비판, 풍자, 과장된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며, 이 사건 사설은 원고가 국회에서의 발언을 통하여 언론인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격을 한 것에 대한 반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설은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함하거나 원고에게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되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공직자에 대한 모욕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는 언론인의 성매매에 대하여 질의하고, 언론인에게도 성매매 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 이른바 B 사건에 피고 사주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사설의 게재는 공직자인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나타난 언론관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통상 신문의 사설은 사실의 보도를 위주로 하는 기사와 달리 신문사의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는 속성이 있는바, 신문사가 신문의 사설에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냄에 있어서는 풍자, 과장 등 다양한 표현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사용한 표현을 쉽사리 위법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사용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든가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또는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은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공직자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설의 제목 및 본문에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수회 사용된 점,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발언에서 언론인 내지 피고 사주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언급한 내용에 비하여 이 사건 사설에서 사용된 표현은 더욱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점, 이 사건 사설은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서 피고 사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이 순수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공직자를 비판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인의 정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점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모욕행위는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액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의 진행경과, 원고의 공직자 및 개인으로서의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의 표현행위의 수위 및 표현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모욕행위에 따른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09.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2〉 발언 내용 생략

〈별지 3〉 보도 내용 생략

모욕 사례 2

KBS 라디오 간부인 원고들을 사장의 '하수인'이라고 지칭한 것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하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가합5957 판결(확정)

사실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012년 12월 14일 한국방송공사 외 3명이 주식회사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12년 3월 13일 오마이뉴스 『KBS 라디오의 '어이없는' 실상, 부끄럽습니다』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 한국방송공사와 KBS 라디오 간부인 A, B, C는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주군' F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원고 A를 사장 F의 신하처럼 표현하고, 원고 B, C를 포함한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라디오 간부들을 F의 '하수인'이라고 지칭하여 원고 A를 비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사용하여 위 원고를 모욕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12가합5957 정정및반론보도, 손해배상청구

원 고 : 1. 한국방송공사
2. A
3. B
4. C

피 고 :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변론종결 : 2012. 10. 26.

판결선고 : 2012. 12. 14.

주 문

1.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 홈페이지(http://www.ohmynews.com/)의 초기 화면 우측 상단에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와 활자체는 [별지2] 기재 기사와 동일하게 하여 게재하라.

나. 만일 피고가 위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 한국방송공사에게 그 기한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3. 13.부터 2012.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의 홈페이지 첫 번째 화면 우측 상단에 제목은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큰 제목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본문은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별지3]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 한국방송공사에게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를 이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3.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한국방송공사는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 등을 하는 방송사업자이고, 원고 A는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라디오센터장, 원고 B는 라디오1국장, 원고 C는 라디오2국장이며, 피고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3. 13. 「KBS 라디오의 '어이없는' 실상, 부끄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정정보도청구와 관련된 부분

'시사채널인 1라디오는 그렇다 치고 음악채널인 쿨FM(89.1MHz)이 낙하산 사장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정통성 없는 낙하산 사장의 병폐는 시사채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낙하산 사장 부임 후 D, E 같은 DJ들이 KBS에서 퇴출됐고 업무능력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된 간부들에 의해 음악오락채널의 경쟁력 또한 추락하고 있다.

2) 반론보도청구와 관련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PD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낙하산 사장' 부임 이후 KBS 라디오의 모든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한때 뉴스시사전문 채널로 영향력을 발휘하던 KBS1라디오는 이제 '들어도 그만, 안들어도 그만'인 죽은 매체가 되고 말았다.

시사 프로그램의 아이템 선정은 경쟁사에 비해 항상 한발 뒤져서 낙종하기 일쑤고, 너무나도 당연한 비소식 · 더위 관련 아이템이 버젓이 메인을 차지했다. 여기에 G20관제특집으로 도배가 되고, 장관 관료들은 알맹이 없는 내용의 인터뷰로 대놓고 정권 홍보를 일삼는다.

화룡점정은 대통령의 몫이다. 격주로 방송되는 대통령 연설의 편집, 제작권은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행사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민의 방송 KBS1라디오를 통해 대놓고 야당을 비방하거나 날조된 통계를 예로 들며 노동자에 대한 비난을 쏟아낸다.

3)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부분

낙하산 사장의 패악은 인사에 이르러 정점을 찍는다. F 부임 이후 라디오 간부 자리는 업무능력, 도덕성, 리더십과 같은 당연한 평가 잣대가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라디오 1국장에 임명된 A씨는 라디오편성부장 재직 시 주도적으로 대통령 연설을 편성해 라디오PD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이후에는 온갖 거짓말과 궤변으로 공정방송위원회를 훼손시킨 문제적 인물이다.

음악오락채널을 관장하는 2국장의 경우 2010년 새노조 파업 때 사내 게시판에 노골적인 'F어천가'를 올려 그 전리품으로 국장 자리를 얻었으며 이로 인해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인물이다.

학도호국단 출신의 라디오센터장은 PD협회정상화위원회, 공정방송노조 등의 외곽단체를 통해 F 사장을 옹립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고 이를 인정받아 능력에도 과분한 자리에 앉아있다. 그는 주군 F가 행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국장, 부장 인사를 전횡하고 있다. '각하'가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았다면 낙하산 사장 F와 그의 하수인인 라디오간부들은 국민의 방송 KBS 라디오를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은 다음

과 같다.

○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 ·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 ·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낙하산 사장은 2009. 11.경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F를 지칭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D, E는 F가 사장으로 취임하기 약 1년 전인 2008. 11.경 각 진행을 맡고 있었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 중 "낙하산 사장 부임 후 D, E 같은 DJ들이 KBS에서 퇴출됐다"는 부분은 허위사실로서 피고는 이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낙하산 사장은 F뿐만 아니라 그 전에 2008. 8.경 사장으로 취임한 G를 포함하여 지칭하는 표현이므로, 낙하산 사장 부임 후 D, E 같은 DJ들이 퇴출됐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

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D, E가 2008. 11.경 각 진행을 맡고 있었던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사실, G는 그 전인 2008. 8.경, F는 그 후인 2009. 11.경 각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낙하산 사장이 F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G까지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기사에서 낙하산 사장이란 정권 친화적인 인물로서 사장이 되기에 적합한 자질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사장으로 취임하여, 정권 편향적으로 원고 한국방송공사를 운영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전 사장인 H는 2008. 8.경 해임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H가 정권에 친화적이지 않아서 축출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으며, 그 후 사장으로 취임한 G에 대하여 낙하산 사장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으므로, F가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낙하산 사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원고 한국방송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이 현재 사장인 F의 퇴출을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로 삼고 있기는 하나, 이는 G가 이미 퇴임하여 그의 사장 취임의 정당성을 다툴 실익이 없기 때문이지 G를 낙하산 사장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은 아니며, 이번 파업은 H가 사장직에서 해임되고 G가 사장으로 취임한 때부터 위와 같은 인사에 반대해온 노동조합의 입장이 파업의 형태로 가시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기사 또한 위와 같이 G가 사장으로 취임한 무렵부터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비판하는 취지인 점, ④ 이 사건 기사에서 현재 사장인 F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는 G가 사장으로 취임한 무렵부터 있었던 문제점이 F 사장 취임으로 더욱 악화되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을 뿐이지 낙하산 사장을 F로 한정시키려는 의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에서 낙하산 사장이 F만을 지칭하고 G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기사 중 앞서 본 낙하산 사장 취임 후 일부 라디오 방송 진행자들의 퇴출과 관련된 부분이 허위사실로서 정정보도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앞서 본 이 사건 기사 중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부분인 ① KBS 라디오가 죽은 매체가 되어 영향력이 하락하였다, ② 시사 프로그램의 주제 선택이 뒤쳐지고, 정권 친화적인 내용으로 편성되고 있다, ③ 대통령이 격주로 방송하는 라디오 연설에서 야당을 비방하고, 날조된 통계를 이용해 노동자를 비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사 중 원고들이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설령 위 부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기사 내용 중 지엽말단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가 청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기 때문에 반론보도를 할 이익이 없으므로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반론보도 청구사건에 있어서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참조)

1) KBS 라디오가 죽은 매체가 되어 영향력이 하락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방송매체의 영향력은 단순히 시청률이나 청취율과 같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선호도, 신뢰도 등 주관적인 평가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것이어서, KBS 라디오의 영향력이 하락하였다는 내용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반론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시사 프로그램의 주제 선택이 뒤쳐지고, 정권 친화적인 내용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 부분은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주제 선택 및 방송 내용 등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사실 적시와 그에 관한 의견 표명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뒤에서 살펴볼 대통령의 라디오 방송 연설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방송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와 달리, 구체적인 사실 적시보다는 KBS 라디오가 운영되고 있는 현 상태를 포괄적으로 비판하는 취지라고 보이는 점, KBS 라디오 편성이 실제로 정권에 편향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평가 영역에 속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도 사실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여 반론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대통령이 격주로 방송하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야당을 비방하고, 노동자를 비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 부분은 단순히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부당하다는 의견 표명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실제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야당을 비방하고, 날조된 통계를 이용하여 노동자를 비난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적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인 대통령이 야당을 비방하거나 노동자를 비난한 바가 없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나아가 이 사건 기사 중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관한 부분은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1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기사 전체에 비추어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기사 중 대통령의 라디오 방송 연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반론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분량, 표현방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3]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해당부분을 [별지1] 반론보도문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반론보도문의 활자크기, 게재방법,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은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 B, C는 앞서 본 이 사건 기사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허위 사실의 적시로서 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고, 설령 위 부분이 의견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모두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설령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공인인 위 원고들을 비판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 A와 관련된 부분

가) 원고 A가 F의 사장 취임에 공을 세워 자신의 능력보다 과분한 직책을 맡고 있다, F가 사장 지위에서 인사권을 정치적인 이유로 행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 A가 인사권을 전횡하고 있다는 부분은 모두 F가 사장이 될 적합한 능력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사장에 취임하였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원고 A가 F가 사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도운 것 자체가 잘못이라거나, 원고 A와 그 부하 직원들이 모두 F가 사장에 취임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권력에 부합하여 부당하게 직책을 맡았다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

다만, '주군' F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원고 A를 F의 신하처럼 표현하고, 위 원고와 원고 B, C를 포함한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라디오 간부들을 F의 '하수인'이라고 지칭하여 원고 A를 비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사용하여 위 원고를 모욕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A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 목적으로 위 원고를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모욕의 경우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나 위 기사를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사회적 배경,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 A에 대하여 '주군', '하수인' 등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B와 관련된 부분

가) 먼저 원고 B가 주도적으로 대통령 연설을 편성해 라디오PD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기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대통령 연설을 주도적으로 편성했다는 내용만으로는 그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위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없고(위 내용이 위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려면 대통령 연설을 편성한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 후문인 라디오PD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내용 및 이 사건 기사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대통령 라디오 연설의 운영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편성자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라디오 연설 운영이 불공정하다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 B를 온갖 거짓말과 궤변을 하는 자라고 비방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와 원고 A, C를 포함한 라디오 간부들을 낙하산 사장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비하한 표현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B를 모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B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 목적으로 위 원고를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나 위 기사를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사회적 배경,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 B에 대하여 '거짓말과 궤변을 하는 자', '하수인' 등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C와 관련된 부분

가) 이 사건 기사 중 원고 C가 'F어천가'를 작성하여 국장이라는 직책을 얻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조선 왕조의 업적을 찬송하는 고전 시의 제목이 '용비어천가'인 점을 이용하여 위 원고가 F에게 과도한 충성과 아부를 하는 글을 작성한 바 있다는 사실을 희화하여 표시한 것인데, 갑 제12호증,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 C가 작성한 글 중에서 피고가 F어천가라고 주장하는 글 3개 중 2개는 F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1개는 단순히 F가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기사 중 F어천가와 관련된 부분은 허위 사실로 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와 원고 A, B를 포함한 라디오 간부들을 낙하산 사장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비하한 표현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C를 모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도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C가 용비어천가를 작성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피고가 이를 진

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을 제4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용비어천가와 관련된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나 위 기사를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사회적 배경,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 C에 대하여 '하수인' 등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에 대하여 각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인한 손배해상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불법성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 B의 경우에는 각 1,500,000원, 원고 C에 대하여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2012. 3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반론보도문

가. 제목 : "KBS라디오의 어이없는 실상, 부끄럽습니다"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용 : 본 인터넷신문사는 지난 3월 13일자 기사에 "KBS라디오의 '어이없는' 실상, 부끄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격주로 방송되는 대통령 연설에서 대통령이 KBS 1라디오를 통해 야당을 비방하고 노동자를 비난하였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KBS가 대통령 주례연설의 주제 대부분이 경제, 교육, 외교 등으로서 야당 비방이나 날조된 통계를 이용한 노동자 비난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민주통합당 정당대표 연설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밝혔으므로, 이를 알려 드립니다. 끝.

〈별지 2〉 기고문 생략

〈별지 3〉 정정 및 반론보도문 생략

사생활 침해 사례 1

원고들의 사적 영역을 무단히 침범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나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손해배상하고 기사를 삭제하라.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1나89080 판결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2012년 3월 9일 모 대기업 대표이사 A와 B가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과 소속 기자 7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는 인터넷신문 디스패치 2011년 4월 21일자에 『A · B, 극비 상견례 포착 … ○○○ 로얄패밀리 총출동』, 『A · B, 5월 재혼 임박 … "친지만 초대, 비공개 결혼"』, 『'신부' B, 청담동 며느리룩 분석 … "단아한 럭셔리 패션"』, 『A · B, 비밀 데이트 코스? … "틈틈이 집 앞에서 만나"』, 『A · B, 신혼집은 어디? … "분당 소재 1,300평 대저택"』, 『"즐거운 A vs 수줍은 B" … 사진으로 본 양가 상견례』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의 양가 상견례 모임 및 데이트 장면 등을 촬영하여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기사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원고 A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 A의 재혼에 관한 사항은 그의 과거 결혼 및 이혼경력으로 인하여 대중적 관심사가 되었을 뿐, 원고들이 일반 대중에게 이에 관한 자신들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을 추구하여 왔다거나 그와 같은 노출을 자발적으로 감수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나 대화 내용 등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요소들이 일반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 원고 B의 경우에는 원고 A와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 A와 같은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대중적인 관심이 원고 A의 초상권보다 더 우월한 이익이 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생활 보호에 있어서 핵심은 인간의 자율성 보호인바,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 등은 비록 그 관찰대상의 지점이 호텔 현관이나 주거지 근처와 같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곳에서의 원고들의 사적인 생활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불간섭 상태는 여전히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 영역은 사생활 중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의 영역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 분위기나 원고 B의 옷차림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내용 및 이를 촬영한 사진들은 이를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이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취재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족생활 내지 일상생활이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관찰되는 것을 넘어서 특정한 목적 아래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이를 기록한 결과물이 사회 일반에게 노출됨으로써 받는 피해의 정도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사실이나 원고 B의 옷차림에 관하여 취재함으로써 이를 원고들의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을 보도함에 있어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이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접근하고 밀착하여 원고들을 지속적으로 관찰·미행하거나 그들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는 등 원고들의 사적 영역을 무단히 침범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나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은 기사삭제를 하고, 원고 A에게 5백만 원, B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1심 판결문은 『2011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72~382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11나89080 사생활침해행위금지 등
원고, 피항소인 : 1. A
2. B
피고, 항소인 : 1.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2. C
3. D
4. E
5. F
6. G
7. H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1가합44370 판결
변 론 종 결 : 2012. 2. 29.
판 결 선 고 : 2012. 3.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가.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기사를 피고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의 인터넷 사이트 (www.dispatch.co.kr)에서 삭제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행위 1일마다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다. 각자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국내 유명 재벌인 ○○○그룹의 후계자로서 2010년경부터 위 그룹의 부회장 및 위 그룹에 속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고 B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예비학교를 졸업한 후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유학생활을 거쳐 플루트 연주자 겸 음대 강사로 활동 중에 있고,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될 당시 원고 A와 교제 중이었으며, 2011. 5.경 원고 A와 혼인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2010. 12. 29.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 이른바 '파파라치식 보도'를 표방하며 인터넷신문 사이트인 '디스패치'(www.dispatch.co.kr, 이하 '이 사건 신문'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C, D, E는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고, 피고 F, G, H는 피고 회사 소속 사진기자이며,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각 기사를 공동 작성하였다(이하 피고 C, D, E를 '피고 기자들'이라 하고, 피고 F, G, H를 '피고 사진기자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도 전 원고들이 알려지게 된 경위

(1) 원고 A는 1995년 국내 유명 여배우인 I와 결혼하였다가 2003년 이혼하였는데, I와의 결혼 및 이혼은 당시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고,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2) 그 후 원고 A는 2007년경 음악회 모임을 통하여 이혼녀인 원고 B를 알게 되어 서로 교제하여 왔는데, 2007. 12.경 언론을 통하여 원고들의 열애설이 처음 불거진 이후 2010. 7.경 원고 A가 원고 B의 연주회에 참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원고들의 결혼설이 세간에 퍼지게 되었다.

다. 취재 경위 및 보도 내용

(1)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은 2011. 4.경 서울 소공동 소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비공개로 거행된 원고들의 양가 상견례 모임 및 그 무렵 원고 B의 주거지 근처 공원 등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의 데이트 장면 등을 잠복 및 원거리에서 사진 촬영하는 등 방법으로 취재하였고, 이를 토대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다. 피고 E는 위 상견례 모임 당시 위 호텔의 현관에서 원고들 가족 옆에 서있기도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1. 4. 21. ① 「[단독] A・B, 극비 상견례 포착 … ○○○ 로얄패밀리 총출동」이라는 제목의 별지 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 ② 「[단독] A・B, 5월 재혼 임박 … "친지만 초대, 비공개 결혼"」 이라는 제목의 별지 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 ③ 「[단독] '신부' B, 청담동 며느리룩 분석 … "단아한 럭셔리 패션"」 이라는 제목의 별지 3.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3기사'라 한다), ④ 「[단독] A・B, 비밀 데이트 코스? … "틈틈이 집 앞에서 만나"」 라는 제목의 별지 4.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4기사'라 한다), ⑤ 「[단독] A・B, 신혼집은 어디? … "분당 소재 1,300평 대저택"」 이라는 제목의 별지 5.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5기사'라 한다), ⑥ 「[포토] "즐거운 A vs 수줍은 B" … 사진으로 본 양가 상견례」 라는 제목의 별지 6.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6기사'라 한다)를 이 사건 신문에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기사 내지 제6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하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를 '이 사건 보도'라 한다).

(3) 한편,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진촬영이나 취재,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라. 보도 후의 정황

(1) 원고 A는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직후 이를 발견하고, 피고들에게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 사건 각 기사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이 사건 신문에 게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양가 상견례 모임, 원고들의 결혼 계획 및 데이트 내용 등 사적 사항과 원고 B의 초상을 포함한 원고들의 사적 생활 장면을 공표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원고 B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1억 원을, 원고 B에게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삭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일마다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보도는 공적인물에 대한 보도로서 원고들이 수치심, 불안, 불쾌감을 느낄만한 내용이 아니고, 이미 공중에게 알려진 사실로서 새로운 내용의 보도도 아니므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 B의 초상 부분도 공공장소에 있는 상태를 촬영한 것으로 충분한 보도가치가 있으므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에 관한 것으로 공적 인물인 원고들의 수인한도 내에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기사의 주요 내용 및 실린 사진

이 사건 각 기사의 주요 내용 및 이 사건 각 기사에 포함된 사진들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제1기사에는 원고들 양가의 상견례 현장이 묘사되어 있고, 원고 B의 이혼경력과 함께『웨스틴조선 호텔의 중식당에서 상견례가 이루어졌고, 양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약 2시간가량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원고 A가 원고 B에게 "수고했다", "잘 해냈다" 등의 칭찬을 하였는데, 이러한 따뜻한 모습은 평소 데이트 모습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아울러 상견례 당시 원고들이 웨스틴조선 호텔 현관에 서있는 장면, 원고 A가 원고 B를 배웅하는 장면, 원고 B가 위 호텔에 들어서는 장면, 위와 다른 날 원고 B가 불상의 길거리에 서있는 장면 등이 촬영된 사진이 실려 있다. 또한 위 사진 대부분에는 원고 B의 초상이 나타나 있다.

(2) 이 사건 제2기사에는 원고들의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소식으로서,『양가 상견례를 마친 원고들의 5월 중순 재혼이 유력해 보이고,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알려졌다. 예식장은 웨스틴조선호텔이 유력하고, 원고들 모두 초혼이 아닌 만큼 최대한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을 치르기 위해 준비 중이며, 신접살림은 분당의 대저택에 차린다. 원고 B는 지난 2003년 회사원과 결혼했다 3년 만에 이혼했다』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아울러 총 6장의 사진이 실려 있는바, 원고들의 신접살림이 차려진다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주택을 촬영한 네 번째 사진 외에는 상견례 당시 원고들의 웨스틴조선 호텔에서의 마중 또는 배웅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실려 있는데,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사진에는 원고 B의 초상이 나타나 있고,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사진에는 원고 A의 초상만이 나타나 있다.

(3) 이 사건 제3기사에는 원고 B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화장 상태 등이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고,『상견례 자리에서 ○○○ J 부사장이 "옷 예쁘다"며 칭찬을 하자 원고 B가 "그렇죠? 어머님께서 골라주셨어요"라고 대답하기도 했다』는 대화내용이 들어 있다. 아울러 원고 B가 불상의 거리에 서있거나 지나는 장면으로 원고 B의 옷차림이 부각된 사진 및 위 웨스틴조선 호텔에서의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실려 있는데, 위 사진 대부분에는 원고 B의 초상이 나타나 있다.

(4) 이 사건 제4기사에는 원고들의 데이트 현장이 묘사되어 있고,『원고들은 틈 날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만남장소는 원고 B의 집 앞이었고, 주변의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파트 현관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등 소박했다. 손을 잡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도 있었다.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아쉬워하기도 했다. 서로에 대한 감

정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B 교수는 사랑에 빠진 여인의 모습, 그대로였다. 데이트가 끝난 뒤에는 연인이 탄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크게 흔들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아울러 원고들의 위 웨스틴조선 호텔에서의 장면, 원고 B가 불상의 길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실려 있는데, 위 사진 대부분에는 원고 B의 초상이 나타나 있다.

(5) 이 사건 제5기사에는 원고들이 앞으로 살게 될 신혼집에 관한 설명으로, 『신혼집은 분당에 있는 1,300평 규모, 100억 원대의 대저택으로서, 확인 결과 위치나 외관이 모두 수려했고, 주변 환경도 쾌적했다』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아울러 총 3장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첫 번째 및 두 번째 사진은 원고들의 신접살림이 차려진다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주택이 촬영된 것이거나 위성사진이고, 세 번째 사진은 원고들의 웨스틴조선 호텔에서의 상견례 당시의 마중 또는 배웅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원고들의 초상이 나타나 있다.

(6) 이 사건 제6기사에는 원고들 양가의 웨스틴조선 호텔에서의 상견례 당시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ㅇㅇㅇ 일가는 예비 며느리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 "수고했다", "잘해냈다"며 다독이면서 "오늘 예뻤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아울러 위 상견례 당시의 원고들 내지 그 가족들을 촬영한 사진 총 18장이 실려 있는데, 원고 B의 초상이 나타나 있는 사진이 상당수이다.

나.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의 점

(1)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원고들을 무단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싣는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기사를 공동으로 작성한 피고 기자들 및 피고 사진기자들과 위 피고들의 사용자 겸 이 사건 신문을 발행하는 피고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초상권 침해의 점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B의 동의 없이 그녀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였고, 그 사진을 게재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 B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기사를 공동으로 작성한 피고 기자들 및 피고 사진기자들과 위 피고들의 사용자 겸 이 사건 신문을 발행하는 피고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로 인하여 원고 B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판단기준

언론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보도할 경우, 그것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아울러,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2) 원고들의 결혼예정 사실 등에 관한 일반적 보도 부분(이 사건 제2, 5기사)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는 국내 유명 재벌그룹의 경영인으로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유명 여배우인 I와 결혼을 하면서 그의 기업가로서의 면모 이외에도 결혼을 둘러싼 그의 사생활이 일반 대중들의 지대한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후 원고 A는 I와 이혼을 하면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됨으로써 그의 재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혼의 상대방이 누구일지 등이 대중적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 A는 2007년경 개인 홈페이지에서 '좋은 분이 생기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표명하여 스스로 대중의 궁금증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들의 열애설 및 결혼설이 대두되자 일부 언론매체에 원고 B의 실명과 사진, 약력과 가족관계 등이 공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도 이전에도 이미 원고 A에 대한 기본적 정보가 일반 대중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 직전인 2011. 4. 8. 및 2011. 4. 13.에는 원고 B의 이혼 경력까지도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른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 A는 이른바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어 그의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은 일반인의 지대한 관심을 끌 만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B 역시 원고 A와의 재혼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앞서 본 원고 A의 사회적인 지위와 대중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대중적 관심 자체를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흥미 내지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원고 A의 성명과 초상, 경력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 전반에 상당한 정도로 알려지게 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2기사 및

제5기사에서 보도된 것과 같은 내용의 원고들의 상견례 사실과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 사항, 원고들이 거주할 신혼집의 현황에 관한 사항, 원고 B에 대한 기본적 정보 등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제2, 5기사의 보도로 공개된 원고들의 사생활의 내용 또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 이전 언론 보도를 통하여 상당부분 알려졌던 것인 점,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흥미 본위의 품위 없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기사 및 제5기사 부분 중 원고 B의 초상이 나타나 있는 사진(이 사건 제2기사 중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사진, 이 사건 제5기사 중 세 번째 사진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진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단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B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므로, 보도에 필요한 한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다) 및 원고 B의 초상은 나타나 있지 않고 원고 A의 초상만이 나타나 있는 상견례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사건 제2기사에 실린 사진 중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사진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진들은 상견례 당시 원고 A가 원고 B를 배웅하는 장면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단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보도에 필요한 한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다.)을 제외한 보도내용은 모두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보도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상견례 및 데이트 장면 등에 관한 세부적 보도 부분(이 사건 제1, 3, 4, 6기사)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 A는 이른바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어 그의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이 일반인의 지대한 관심을 끌 만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었고, 원고 B 역시 원고 A와의 재혼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3, 4, 6기사는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나 원고 B의 옷차림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내용으로서, 그 중에는 원고들 사이의 내밀한 대화 내용이나 원고 A의 가족과 원고 B 사이의 대화내용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구체적인 보도는 피고 기자들이 위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에서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가족들에 몰래 접근하여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거나 미행하지 않고서는 수집하기 어려운 성격의 정보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피고 E는 원고들 가족의 상견례가 끝난 직후 원고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던 호텔 현관에 접근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원고들 사이의 사적 대화 및 원고 A의 가족과 원고 B 사이의 대화를 엿듣고 이를 기사화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사진기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상견례 현장 주변에서 상견례에 참석한 원고들과 그 가족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은 원고들의 데이트 장면을 취재하기 위하여 원고 A의 주거지 근처에서 잠복하면서 약 2주간에 걸쳐 원고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B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화장 상태 등을 취재하기 위하여 원고 B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주변 길거리 등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보도 이전에는 이 사건 제1, 3, 4, 6기사와 같이 원고들의 사적 생활모습을 원고들 주변에서 몰래 관찰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된 바 없었는데, 이 사건 보도 이후 그 내용과 사진들이 다른 언론매체나 인터넷 블로그・카페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전

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 A의 재혼에 관한 사항은 그의 과거 결혼 및 이혼경력으로 인하여 대중적 관심사가 되었을 뿐, 원고들이 일반 대중에게 이에 관한 자신들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을 추구하여 왔다거나 그와 같은 노출을 자발적으로 감수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나 대화 내용 등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요소들이 일반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 원고 B의 경우에는 원고 A와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 A와 같은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대중적인 관심이 원고 B의 초상권보다 더 우월한 이익이 될 수도 없다.

또한, 사생활 보호에 있어서 핵심은 인간의 자율성 보호인바,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 등은 비록 그 관찰대상의 지점이 호텔 현관이나 주거지 근처와 같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곳에서의 원고들의 사적인 생활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불간섭 상태는 여전히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 영역은 사생활 중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의 영역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그 중간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취재의 결과물로서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 분위기나 원고 B의 옷차림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내용 및 이를 촬영한 사진들은 원고들이 이를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이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취재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족생활 내지 일상생활이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관찰되는 것을 넘어서 특정한 목적 아래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이를 기록한 결과물이 사회 일반에게 노출됨으로써 받는 피해의 정도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사실이나 원고 B의 옷차림에 관하여 취재함으로써 이를 원고들의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을 보도함에 있어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이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접근하고 밀착하여 원고들을 지속적으로 관찰·미행하거나 그들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는 등 원고들의 사적 영역을 무단히 침범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나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을 취재하여 이 사건 제1, 3, 4, 6기사를 각 작성하고, 위 취재 과정에서 무단으로 촬영한 원고들 및 원고들 가족들의 사진을 위 각 기사에 포함시켜 공표한 행위와 이 사건 제2, 5기사에 위와 같이 무단으로 촬영된 원고 B의 초상이 나타나는 사진(이 사건 제2기사 중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사진 및 이 사건 제5기사 중 세 번째 사진) 및 원고 A의 세부적인 사생활이 나타나는 사진(이 사건 제2기사 중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사진)을 포함시켜 공표한 행위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원고 B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침해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자료가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제2, 5기사 중 원고 B의 초상 및 원고 A의 세부적인 사생활 장면이 나타나는 사진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하고, 이 사건 제1, 3, 4, 6기사 부분과 이 사건 제2, 5기사 중 위 사진 부분은 각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원고 A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원고들에게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의 경위와 기사의 취재 및 게재 방식, 게재된 기사의 내용 및 사진의 비중,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각 기사는 2011. 4. 21. 처음 보도된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10개월 이상 이 사건 신문에 줄곧 게재되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과도한 제약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각 원고들에게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원고 B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위자료 500만 원, 원고 B에게 위자료 합계금 1,000만 원(=500만 원 +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1. 5.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침해행위 정지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고, 원고 B의 초상권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기사가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이 사건 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4항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기사 중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제1, 3, 4, 6기사, 이 사건 제2기사 중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사진, 이 사건 제5기사 중 세 번째 사진을 각 삭제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에 대하여도 위 삭제의무의 이행을 구하나, 위 삭제의무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인 피고 회사만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에도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어 간접강제를 명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6〉 기사내용 생략

사생활 침해 사례 2

공적인 인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영역이 존재하는 것인 바, 남녀간의 성적 교섭과 같은 인간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은 절대적으로 보호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2가합4911 판결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2년 6월 13일 연예인 A가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와 연인 사이였던 미국인 D 측 관계자는 2011년 12월 4일 해외 인터넷 블로그에 '방송인 A SEX VIDEO'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D가 원고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원고 관련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국내 언론들은 위 사건을 "A양" 등의 익명처리를 하여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년 12월 5일 D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D는 2011년 12월 21일 원고 등을 상대로 집단폭행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는 D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등의 입장을 발표하였고, D는 2012년 1월 피고 C 등 기자들에게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피고 B는 원고가 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D를 폭행, 감금하였고, D의 명의로 사과 메일을 작성하였으며, D와 6개월 전부터 동거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원고가 자신의 외도로 인하여 종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D를 폭행, 감금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하였고, 가슴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금전적인 스폰서가 있다는 등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에 대해 "국민들의 정보욕구 또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과 같은 공인에 있어서는 그 정보가 일반 사인에 비하여 폭넓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적인 인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 영역이 존재하는 것인바, 가족관계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공인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 공개가 가능하나 남녀간의 성적 교섭과 같은 인간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서 침해되는 영역이 외계 내지 공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피침해 이익의 보호가 두터워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D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절대적인 보호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사유에 관한 것에 비하여는 보호의 정도가 높은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가슴 성형수술 여부 역시 여성인 원고에 있어서는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더욱 보호의 정도가 높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D가 보낸 이메일 전문을 게재한 피고 C에 대해 "원고에

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C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월 25일 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는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 B가 상고하였으나, 2013년 2월 18일 상고 취하로 종결되었다.

판 결 문

사　　건 : 2012가합4911 손해배상(기)

원　　고 : A

피　　고 : 1. B

2. C

변 론 종 결 : 2012. 5. 23.

판 결 선 고 : 2012. 6. 13.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억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1994년 제38회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진'으로 선정된 후, 1996년 서울방송(SBS) 공채 6기 아나운서를 시작으로 국내 유명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B는 일간지인 '스포츠한국' 기자, 피고 C는 일간지인 '스포츠서울' 기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원고와 관련되는 기사를 한국아이닷컴(www.hankooki.com) 및 스포츠서울닷컴(www.sportsseoul.com)에 각 게재하여 보도하였다.

나. 동영상 유출 사건 및 이에 대한 언론 보도 등

1) 원고와 연인 사이이었던 미국인 D측 성명불상자는 2011. 12. 4. 해외 인터넷 블로그에 '방송인 A SEX VIDEO'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D가 원고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2분 52초 분량의 성행위 동영상, 원고의 여권, 사진 등을 게시하였고(을가 10호증의 1, 2, 3), 위 동영상과 사진 등은 곧바로 인터넷을 통하여 퍼져나갔다. 그 무렵 국내 언론들은 위 사건을 "A양" 등의 익명처리를 하여 보도하였다(그 중 피고 B가 작성한 기사는 갑 1호증의 1, 피고 C가 작성한 기사는 갑 1호증의 2).

2) 원고는 2011. 12. 5. D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는바, 피고 B는 2011. 12. 6. 〈방송인 A양 섹스동영상 파문, '청부폭력'으로 비화되나〉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 기사를 작성하였고(갑 4호증의 1), 이어 2011. 12. 7. 〈동영상 게시자 "A양 사진 더 있다…폭행도 100%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 기사(갑 4호증의 2)를, 〈"합의는 없다, 끝까지 간다"〉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 기사(갑 4호증의 3)를 각 작성하였다.

3) D는 2011. 12. 21. 원고 등을 상대로 집단폭행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35177)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를 취재한 피고 B는 2011. 12. 22. 〈[단독] 방송인 A, 집단폭행 혐의 민 · 형사상 피소〉라는 제목으로 별지 4 기재 기사를 작성하였다(갑 3호증). 원고는 2011. 12. 21. 대리인 E 변호사를 통해 D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D가 보낸 사과 메일 등의 증거가 있다'고 밝혔고, 일부 언론은 이를 보도하였다. 피고 C도 같은 날 〈A "A씨 폭행 사실무근…오히려 협박당했다" 공식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5 기재 기사를 작성하였는데(을나 2호증), 위 기사에는 원고 측 주장으로 "누구도 D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 후에도 D는 자신의 잘못을 비는 메일이나 편지들을 수차례 원고와 가족들에게 보내오기도 했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 측 공식입장 전문〉이라는 글이 기사의 본문 아래에 추가되어 있다.

4) 이에 D는 2012. 1. 1.경 원고가 증거로 제시하는 사과 메일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일부 언론은 이를 기사화하였는바, 피고 B는 2012. 1. 2. 〈A 전 연인 "A는 거짓말의 실타래" 반박〉의 제목으로 별지 6 기재 기사를 작성하였다(갑 4호증의 5).

5) 이후 D는 2012. 1. 16.경 피고 C 등 기자들에게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는바, 피고 C는 2012. 1. 17. 〈'A 前 남친' D, 정체 공개 "진실 밝히겠다"〉라는 제목으로 별지 7 기재 기사(이하 별지 ㅇ 기재 기사를 '이 사건 제ㅇ기사'의 형식으로 칭하기로 한다)를 작성하였다(갑 7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8호증의 39, 을가 1 내지 11호증, 을나 1 내지 6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가 ① 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D를 폭행, 감금하였고, ② D 명의로 사과 메일을 작성하였으며, ③ D와 6개월 전부터 동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담긴 이 사건 제1, 2, 3, 4, 6 기사를 각 작성하였고, 특히 이 사건 제4 기사에서는 원고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피고 C는, 원고가 ① 자신의 외도로 인하여 종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② D를 폭행, 감금하였으며, ③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하였고, ④ 가슴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금전적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내용이 담긴 이 사건 제 7 기사를 작성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판단

(1) 명예훼손 여부 – 부정

(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들이 작성한 기사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본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들에는 원고가 D를 폭행하였고(이 사건 제1, 2, 3, 4 기사 각 ㉠ 부분, 제6 기사 ㉡ 부분, 이 사건 제7 기사 ㉠, ㉢ 부분), 원고가 D의 명의로 사과 메일을 작성하였으며(이 사건 제6 기사 ㉠ 부분), 원고와 D가 동거하였고(이 사건 제6, 7 기사 각 ㉡ 부분), 원고의 이혼 및 대학 입학과 아나운서 합격에 의혹이 있으며, 금전 관계를 맺는 스폰서가 있음(이 사건 제7 기사 ㉣, ㉤ 부분)을 암시하는 취지의 문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이 사건 제1, 2, 3, 4, 6 기사를 보면, ① 이 사건 제1 기사에는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 진실과는 거리가 먼 악의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라는 문구(이 사건 제1 기사 ㉡ 부분)가, ② 이 사건 제2 기사에는 〈5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A양은 변호사를 고용하며 강경 대응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라는 문구(이 사건 제2 기사 ㉡ 부분)가, ③ 이 사건 제3 기사에는 〈A양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D씨가 귀국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문구(이 사건 제3 기사 ㉡ 부분)가, ④ 이 사건 제4 기사에는 〈아직까지 A의 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다. 한 법원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 할 수 있다. 형사 고소에 대해서는 A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라는 문구(이 사건 제 4기사 ㉡ 부분)가, ⑤ 이 사건 제6 기사에는 〈A 측은 이에 대해 "A와 그 가족은 물론이고, 누구도 D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 후에도 D는 자신의 잘못을 비는 메일이나 편지들을 수차례 A와 가족들에게 보냈다"고 반박했다.〉라는 문구(이 사건 제6 기사 ㉢ 부분)가 각 포함되어 있다.

2) 또한, 이 사건 제7 기사는 〈피고 C가 작성한 기사 부분〉과 〈D의 이메일 전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 C가 작성한 기사 부분은 〈D는〉이라는 주어로 시작하여 〈 …… 말했다, 밝혔다, 주장했다, 고백했다〉라는 술어로 끝나며, 원고가 문제로 삼는 기사 내용은 〈D의 이메일 전문〉 부분이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7 기사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1. 12. 22. 원고 측의 주장을 기사(이 사건 제5 기사)로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제5 기사도 〈피고 C가 작성한 기사 부분〉과 〈원고 대리인의 보도자료 전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 C가 작성한 기사 부분은 〈원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F 측은〉이라는 주어로 시작하여 〈 …… 밝혔다, 주장했다, 덧붙였다〉라는 술어로 끝나고, 〈원고 대리인의 보도자료 전문〉은 D의 주장과 정반대인 'D가 원고의 집에 무단 침입 했고, 원고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며 협박하면서 기물을 파손하였으며, 원고 등은 D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다.

3) 피고 B가 소속한 스포츠한국 이외에도 많은 국내 언론들이 2011. 12. 22. 원고가 D로부터 폭행 혐의로 피소당했음을 보도하였고, 피고 C가 소속한 스포츠서울 이외에도 많은 국내 언론이 2012. 1. 16. D의 이메일 내용을 보도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의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측이 먼저 원고의 동영상을 유출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끌고 원고에 의한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언론에 제보하자, 원고는 D를 고소하고 원고 자신이 D에 의한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언론에 제보하여 양측 주장 모두가 충분히 보도됨으로써 진실공방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었으므로, D의 주장을 보도한 기사에 인용 문구가 정확히 표현되어 있다면 이를 읽는 일반 독자로서는 그러한 인용 문구에도 불구하고 D 측의 주장을 곧바로 진실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원고가 문제 삼는 이 사건 제1, 2, 3, 4, 6, 7 기사는 모두 D 측 주장을 보도함에 있어 인용 문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제1, 2, 3, 4, 6 기사는 D의 주장 외에도 그 기사 자체에 그와 배치되는 원고 측의 주장이나 중립적인 제3자의 진술을 보충적으로 기재하였고, 비록 이 사건 제7 기사에서 D의 이메일 전문을 게재하였으나, 피고 C는 그 이전에 이미 원고 측의 주장 역시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 적이 있었고,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었던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는 일반 독자에게 'D의 주장사항이 진실이다'라는 인상을 심어 주는 것이 아니라 'D의 주장이 무엇인가'라는 사실만을 전달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 4, 6, 7 기사가 일반 독자에게 D 측 주장사항이 진실하다는 인상을 주어, 즉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위 각 기사내용이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기사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 3, 4, 6, 7 기사를 통하여 원고와 D의 분쟁을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국내 유명 방송인으로서 명예와 깨끗한 이미지가 생명인 원고가 옛 연인과 사이에 이전 투구식의 소모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인상하여 심어 주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공인으로 볼 수 있는 원고와 관련된 민, 형사상의 분쟁 경위에 관련한 보도로서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분쟁 발생 자체는 사실이므로 보도내용의 진실성도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보도로 인해 명예 훼손의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 일부 인정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공개된 사항이 사생활과 관련되는 사실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관련되는 사실로서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들이 작성한 기사들로 인해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본다.

1) 이 사건 제1, 2, 3 기사

이 사건 제1, 2, 3 기사는, D가 옛 연인인 원고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주장을 기사화하였는바, 이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원고와 D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서 이른바 '사사적 영역(私事的 領域)'[1] 에 해당하여 보도의 이익이 있다면 익명으로 보도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각 기사는 국내 유명 방송인으로서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공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원고의 범죄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보도의 이익이 있고, 원고의 실명이 아니라 'A양'이라는 익명으로 작성된 이상 이 부분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제4 기사

이 사건 제4 기사는, D가 집단폭행 등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

1) 사생활의 비밀은 ① 內密 영역(양심, 성적인 사항 등 인간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적인 영역), ② 秘密 영역(서신, 일기, 의사, 성직자 등의 대화 등 공공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될 인간의 생활영역으로서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보도할 수 없는 영역), ③ 私事的 영역(가족구성원간의 다툼, 개인의 혈통, 질병 등 가족, 친구 등 친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영역으로서 이익형량에 의해 보도될 수 있으나 익명보도원칙이 지켜야 하는 영역), ④ 社會的 영역(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는 경우로서 사적인 것을 넘어서는 개인의 생활영역으로서 보다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영역), ⑤ 公開的 영역(정치, 선거, 법원의 심리 등 모든 사람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생활영역으로서 보도가 자유로운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를 하였다는 취지인바, 이는 이른바 '공개적 영역(公開的 領域)'에 해당하여 보도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는 것이고, 특히 공인에 대하여 공적 기록에서 수집된 자료의 공표는 그것이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국내 유명 방송인으로서 공인에 해당하고, 그 보도의 내용이 공인인 원고와 D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다는 것인 이상, 원고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4 기사에 의해 원고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원고의 실명을 거론한 2011. 12. 22.자 이 사건 제4 기사로 인하여 성행위 동영상의 주인공이 비로소 원고로 특정되고, 이후의 기사들이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10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문제의 동영상 자체에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고, 원고의 여권과 함께 게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4 기사에는 동영상의 주인공이 원고였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취지의 댓글이 다수 게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6, 7 기사

원고가 D 명의의 사과 메일을 작성하였고(이 사건 제6기사 ㉠ 부분), D와 6개월 전부터 동거하였다는(이 사건 제6, 7 기사 각 ㉡ 부분) 내용의 D의 주장을 기사화한 부분은, 원고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원고의 주거에 침입한 D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로 사과 메일의 존재를 알리자, 이에 대하여 D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원고와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고, 한글로 작성된 이메일은 D가 아니라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위 기사 내용은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적 분쟁의 연장선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원고가 스스로 공개한 사항에 관련된 것이므로, 위 기사에 의하여 원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D가 원고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D의 주장을 기사화한 부분(이 사건 제7 기사 ㉠, ㉢ 부분)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에 대한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의 대학입학과 아나운서 시험합격에 관한 D의 의혹제기를 기사화한 부분(이 사건 제7 기사 ㉣ 부분)은 그 자체로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끝으로, 원고의 외도가 종전 배우자와의 이혼사유이었고, 원고가 가슴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금전적인 스폰서가 있다는 점에 관한 D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부분(이 사건 제7 기사㉣, ㉤ 부분)은, 원고의 성생활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원고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원고가 불쾌감을 가질 사항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부분 기사가 설령 일반 독자에게 'D의 주장사항이 진실이다'는 인상을 심어 주는 것이 아니라 'D의 주장이 무엇인가'라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D의 위와 같은 주장 자체가 원고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반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기사화한 이 사건 제7 기사 중 ㉣, ㉤ 부분은, 결국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 부정

언론 보도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그 침해에 대한 제재는 필연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는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 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이하 '침해법익'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7 기사는 공인에 해당하는 원고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와 D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진실한가에 관한 진실 공방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 대중의 알권리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를 보태어 보면 이를 공개함으로 인한 침해법익이,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을 피해이익에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기사의 작성 및 게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즉, ① 국민들의 정보욕구 또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과 같은 공인에 있어서는 그 정보가 일반 사인에 비하여 폭넓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적인 인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 영역이 존재하는 것인바, 가족관계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공인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 공개가 가능하나 남녀 간의 성적 교섭과 같은 인간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서 침해되는 영역이 외계 내지 공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피침해 이익의 보호가 두터워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D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절대적인 보호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사유에 관한 것에 비하여는 보호의 정도가 높은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가슴 성형수술 여부 역시 여성인 원고에 있어서는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더욱 보호의 정도가 높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명예와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방송인으로서 위와 같은 내밀한 영역에 관한 D의 일방적인 주장이 여과 없이 보도될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인 반면, 일방적인 주장에 터 잡아 제기된 소문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란 유명인에 대한 선정적인 호기심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치명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수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D는 원고의 반박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폭행사건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원고의 이혼사유, 가슴 성형수술, 스폰서의 존재를 거론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할 것인바, 위 이메일 전문을 기사에 게재하는 것이 보다 보도의 정확성을 높이는 수단이기는 하나,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므로 구태여 원고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 전문을 그대로 기사화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피고 C의 책임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이 사건 제7 기사를 작성 ·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고, 그 위법성도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7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원고의 연령, 직업, 경력과 사회적 지위, 원고와 D 사이의 법적분쟁 경과 등 이 사건 제7 기사가 보도된 사회적 배경, 위 기사의 전체 내용과 그 중 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 C의 기사작성 방식 및 위 피고의 위 기사 이외에도 D의 이메일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가 소속한 신문사의 규모와 위 신문사가 국내의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일반인에 대한 공신력, 피고 C가 위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의 노력 정도, 위 피고가 위 기사와 마찬가지로 원고 측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사실이 있었던 기사작성의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C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7〉 이 사건 제1~7기사 생략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1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제재수단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은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결정 2009헌가27

사실개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강국 재판관)는 2012년 8월 23일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중 '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2009년 4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2008년 12월 20일 방송한 내용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도록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위반하였고, 2009년 1월 3일 방송 내용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규정한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문화방송은 사과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11월 3일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재판부는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심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더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하여는 '명령'이 아닌 '권고'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반면, 사과명령은 방송사업자 자신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위반할 정도로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방송을 함으로써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방송이 언론의 책무를 방기하고 심의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평가하여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아니한 윤리적·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하도록 강제로 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제재수단과 구별되는 사과명령의 고유한 효과,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부분은 그 실효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과명령이 다른 제재수단에 비해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2009헌가27, 2012.8.23,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문】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고, 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1호 중 '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 제1항 제1호 중 '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제9호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고, 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4항, 제108조 제1항 제27호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 제4항, 제108조 제1항 제27호

【참조판례】

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5

헌재 1999. 5. 27. 97헌마137등, 판례집 11-1, 653, 665

헌재 2003. 12. 18. 2002헌바49, 판례집 15-2하, 502, 517

헌재 2010. 7. 29. 2008헌가28, 판례집 22-2상, 74, 79

【 당 사 자 】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5968 제재조치처분취소

【 주 문 】

1.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고, 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1호 중 '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 제1항 제1호 중 '방송사업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 유 】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 4. 6.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12. 20.자 '뉴스 후' 프로그램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도록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 제14조를 위반하였고, 2009. 1. 3.자 '뉴스 후' 프로그램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도록 규정한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고, 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이하 '이 사건 사과명령'이라 한다)를 하였다.

1. 문화방송의 '뉴스 후'에 대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한다.

2. 문화방송은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래 고지방송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

가. 고지방송 내용

#1 이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고지방송입니다.

#2 MBC-TV는 지난 2008년 12월 20일과 2009년 1월 3일자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방의 의견을 과도한 비중으로 방송하고 방송법 개정안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을 단정적으로 묘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4 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주)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 문화방송입니다.

나. 고지방송 방법

ㅇ 문화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의 "고지방송 내용"을 4개의 전면화면으로 나누어 음성과 자막(푸른 바탕, 흰 글씨)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본방송 직전 1회 자막 고지하여야 한다.

ㅇ 해당 프로그램 종료 · 폐지 또는 편성 조정 등으로 본방송 직전에 고지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 프로그램 등의 방송 직전 1회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문화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방송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문화방송은 이 사건 사과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968호), 당해 사건 법원은 2009. 11. 13. 직권으로 구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고, 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1호 중 '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구법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한편, 방송법이 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면서 제100조 제1항이 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과징금을 제재조치의 하나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 구법조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현행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 제1항 제1호 중 '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현행법조항'이라 한다)은 그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구법조항과 결론을 같이할 것이므로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이 사건 현행법조항도 이 사건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헌재 2010. 7. 29. 2008헌가28, 판례집 22-2상, 74, 79 참조, 이하 '이 사건 구법조항'과 '이 사건 현행법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고, 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제재조치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 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 제8호의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제재조치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 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관련조항]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 ·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보도 · 논평의공정성 · 공공성에 관한 사항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고, 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 조항과 현행 방송법 조항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여 이를 합하여 지칭할 때에는 '방송법'이라고만 한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④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7.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제재조치등) ④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7.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행정청이 권력작용을 통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신념에 반하여 자기의 행위가 심의규정 위반행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을 형성 · 강요하여 사과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인바, 이는 양심이 아닌 것을 양심인 것처럼 표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왜곡 · 굴절이며 이중인격 형성을 강요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나. 또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와 그 이행 과정에서 인격권이 무시되고 행정청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되어 인격형성에 분열이 필연적으로 수반됨에 반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인격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연혁 및 방송규제의 필요성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연혁

1963. 12. 16. 법률 제1535호로 제정된 방송법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1973. 2. 16. 법률 제2535호로 개정된 방송법 제6조 제1항에서 방송윤리위원회는 보도 논평의 공정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 방송윤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사과 · 정정 · 해명 또는 취소 등을 하게 하거나, 관계자의 출연정지, 집필정지 또는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신문 ·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언론윤리위원회법 및 방송법이 폐지되고 제정된 언론기본법(1980. 12. 31. 법률 제3347호로 제정된 것) 제39조 제1항 및 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방송법(1987. 11. 28. 법률 제3978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제1항도 위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었으며, 그 후 1990. 8. 1. 법률 제4263호로 개정된 방송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방송위원회는 보도 · 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등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시정이나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었고,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이르게 되었다.

(2) 방송규제의 필요성

방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하나의 매체로서 작용하고, 여론 형성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방송은 아직까지 그 기술적, 경제적 한계가 있어서 소수의 기업이 매체를 보유하고 정보의 유통을 제어하는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이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송매체는 음성과 영상을 통하여 동시에 직접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강한 호소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조작이 가능하며 방송매체에 대한 사회적 의존성이 증가하여 방송이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추세이다(헌재 2003. 12. 18. 2002헌바49, 판례집 15-2하, 502, 517 참조). 이러한 방송매체의 특수성 때문에 방송이 어떤 정당이나 이익단체 등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의사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결집될 가능성과 여론에 대한 일방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오용될 위험성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방송이 한 번이라도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면 여론 형성 왜곡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후에 이를 정정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방송의 특성을 종합해 볼 때 방송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즉, 입법자는 한편으로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방송에서 가능한 한 균형있고 완전하게 표현될 것을 보장하도록 규율할 것이 요청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균형있는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책무를 부담하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리 헌법은 법인 내지 단체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이라도 그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5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사과여부 및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송사업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사과인 것처럼 그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명되고, 이는 시청자 등 국민들로 하여금 방송사업자가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을 저버린 방송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방송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한다.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바, 이러한 제한이 그 목적과 방법 등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헌법적 한계 내의 것인지 살펴본다.

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책무를 부담하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제재수단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등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조치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 · 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 ·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있다(방송법 제100조 제1항). 그런데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가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비하여 시청자의 권익보호나 민주적 여론 형성 등에 더 기여하거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만으로도 반성을 촉구하고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방송법 제100조 제4항, 제108조 제1항 제27호), 위 조치만으로도 심의규정에 위반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되어 이를 다른 방송사업자나 일반 국민에게 알리게 됨으로써 여론의 왜곡 형성 등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방송사업자에게는 해당프로그램의 신뢰도 하락에 따른 시청률 하락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또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더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하여는 '명령'이 아닌 '권고'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반면, 사과명령은 방송사업자 자신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위반할 정도로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방송을 함으로써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방송이 언론의 책무를 방기하고 심의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평가하여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아니한 윤리적 · 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하도록 강제로 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제재수단과 구별되는 사과명령의 고유한 효과,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부분은 그 실효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과명령이 다른 제재수단에 비해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보더라도 방송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하여도 민간자율기구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제재'가 아니라 '권고'에 그치므로 궁극적으로는 방송사업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점에서 방송사업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 즉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며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공익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초래되는 방송사업자의 기본권 제한 측면은 시청자 등 국민들로 하여금 방송사업자가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을 저버린 방송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방송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는 것인바,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법인의 인격권을 제한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기준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법인에게도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은 결사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에 의해 비로소 창설된 법인격의 주체여서 관념상 결사의 자유에 앞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할 수 없고, 그 행동영역도 법률에 의해 형성될 뿐이므로, 자연인처럼 감성에 바탕을 둔 기본권영역은 상정할 수 없거니와 상정할 필요도 없다. 상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은 감성적 영역의 기본권문제는 법인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의 몫으로 돌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본권의 성질과 내용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기본권이 그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은 해당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연적 생명체인 사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이나 인간의 감성과 관련된 기본권처럼 개인이 자연인으로서 향유하게 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당연히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즉, 법인은 인간의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 혼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거나 인간의 감성과는 무관한 기본권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실현하는 데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예컨대 재산권, 직업의 자유, 거주 · 이전의 자유, 언론 · 출판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

나. 법인의 인격권과 그 제한

우리 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인격권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기본권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헌재 1999. 5. 27. 97헌마137등, 판례집 11-1, 653, 665 등 참조). 이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놓고 법인의 인격권을 과잉제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원칙인 비례심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인이 헌법상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서 어떠한 인격권적 내용도 향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인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을 누릴 수는 없지만, 법률에 의하여 법인에게 인격권 유사의 내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법인은 법률적 수준의 인격권적 권리를 누릴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에게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명예권이 인정되지 않아 인격권 침해로 인한 헌법소원이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

더라도 법인의 명예를 형법 등에 의하여 법률적 수준에서 보호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법원에 제소하여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이 경우 법인의 명예보호는 헌법상 기본권에서 직접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률상의 권리로서 입법정책적인 것이 되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영역 또는 그 구체화로서 법원의 법률해석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다. 소결

법정의견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법인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는 사과방송을 강제함으로써 법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은 그 성질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향유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비례심사에 나아갈 것 없이 법인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의 인격권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2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 운영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결정 2010헌마47,252(병합)

사실개요

헌법재판소(주심 이강국 재판관)는 2012년 8월 23일 인터넷게시판을 설치 ·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A외 2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유튜브', '오마이뉴스', 'YTN'의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 등을 게시하려고 하였으나, 게시판의 운영자가 게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또 다른 청구인 주식회사 D는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 D'를 운영하여 왔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언론사를 2010년도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로 공시함으로써 2010년 4월 1일부터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 회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제재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제2항, 제7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본인확인제는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여 장기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본래의 입법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하고 다른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또, "본인확인제는 기간 제한 없이, 표현의 내용을 불문하고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대부분의 게시

판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보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며, "본인확인제로 인하여 기본권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하는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이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 결 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심판대상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0조 제1항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4조의5, 제76조 제1항 제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등, 판례집 22-1상, 347, 362-363

헌재 2010. 5. 27. 2008헌마663, 판례집 22-1하, 323, 333

【당 사 자】

청 구 인 : 1. A(2010헌마47)

2. B(2010헌마47)

3. C(2010헌마47)

4. 주식회사 D(2010헌마252)

【주 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0헌마47 사건

(가) 청구인 A, B, C(이하 '청구인 A 등'이라 한다)는 2009. 12. 30.과 2010. 1. 17. 인터넷 사이트인 '유튜브(kr.youtube.com)', '오마이뉴스(ohmynews.com)', '와이티엔(ytn.co.kr)'의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 등을 게시하려고 하였으나, 위 게시판의 운영자가 게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없었다.

(나) 이에 청구인 A 등은 인터넷게시판(이하 특별히 '인터넷게시판'이라 칭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게시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조치를 취할 의무(이하 '본인확인조치의무'라 한다)를 부과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10헌마252 사건

(가) 청구인 주식회사 D(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는 2005. 11. 7.부터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 D'를 운영하여 왔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 2. 2. 위 인터넷 언론사를 2010년도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로 공시함으로써 2010. 4. 1.부터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 회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의무 부과 및 그 위반 시 제재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제2항, 제7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제1항 이외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2항, 제76조 제1항 제6호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들은 본인확인조치의무 불이행시의 제재조항으로서 청구인 회사가 위 법률조항들에 규정된 제재를 받은 바도 없고 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그 고유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 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

제30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관련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생략)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내지 8. (생략)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화상 · 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내지 12. (생략)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 · 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

2.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내지 5. (생략)

6. 제44조의5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내지 12.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①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2010헌마47 사건

(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하 위 제도를 '본인확인제'라 한다)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상에서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사전에 제한하는 실질적인 사전검열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게시판 이용자인 청구인 A 등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청구인 A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사람을 다른 매체에 글을 쓰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어 청구인 A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2010헌마252 사건

(가) 본인확인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게시판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는 인터넷 언론사인 청구인 회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절차를 위하여 과다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그 절차의 불편으로 인한 게시판 이용자 수의 감소로 영업상 불이익을 입게 하는 등 청구인 회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 요지

(1)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인터넷 이용자로 하여금 보다 책임 있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게시판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실명을 노출하는 것이 아닌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이용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이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절차를 위한 것일 뿐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규정된 조항은 아니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본인확인제의 도입배경 및 내용

(1) 본인확인제의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현재는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그에 따라 인터넷상에서의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 등 역기능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의 역기능은 익명성에 의한 이용자의 자기 점검 및 책임의식 결여가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2005년경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언어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본인확인제의 도입이 논의되어, 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본인확인제가 도입되었다.

(2) 본인확인제의 내용 및 적용범위

(가) 본인확인제의 내용

본인확인제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 본인확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2항),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6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제의 시행을 강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확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제1호) 및 본인확인정보의 유출방지기술(제2호)을 각 마련하고, 6개월간 본인확인의 정보를 보관(제3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확인방법 중 대면확인이나 모사전송,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확인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불편 때문에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바, 현재 주로 쓰이고 있는 본인확인방법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인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

위와 같은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는 인터넷 사용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우선,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자에 관하여 보자면, 본인확인제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30만 명 이상의 포털서비스 제공자 및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 제공자, 일일 평균 이용자 수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언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였으나, 그 후 2009. 1. 28.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정으로 그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으로 공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 수는 2007년 35개, 2008년 37개이던 것이 2009년 153개, 2010년 167개, 2011년 146개로 대폭 늘어났다.

한편, 본인확인제가 실시되는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의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카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은 일반인 공개목적이 아닌 사적 의사소통 영역으로 보아 위 게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등, 판례집 22-1상, 347, 363).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있어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는바, 인터넷게시판은 인터넷에서 의사를 형성・전파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표현・전파 형식의 하나로서 인정된다(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등, 판례집 22-1상, 347, 362 참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함에 있어 본인 확인을 위하여 자신의 정보를 게시판 운영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중 게시판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동시에, 그러한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말미암아 게시판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역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 판례집 22-1상, 347, 362 참조).

한편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함에 있어서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도 제한하나, 청구인 회사의 주장 취지 및 앞에서 살펴본 본인확인제의 도입배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은 언론의 자유라 할 것이고, 게시판 운영자의 언론의 자유의 제한은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수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게시판 운영자의 언론의 자유 등 침해 여부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2) 그 밖에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본인확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헌재 2010. 5. 27. 2008헌마663, 판례집 22-1하, 323, 333 참조),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및 보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3) 그런데 청구인 A 등은 본인확인제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게시판 이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제한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인확인제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고 보아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 A 등은 본인확인제가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글을 쓰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만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다른 매체에 글을 쓰는 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인터넷에 글을 쓰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A 등이 주장하는 차별취급은 본인확인제가 인터넷상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일 뿐인 것으로서 그에 관한 판단은 익명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청구인 A 등은 본인확인제가 인터넷상에서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사전에 제한하는 실질적인 사전검열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본인확인제는 게시 글의 내용에 따라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의견발표 전에 국가기관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표현을 저지하는 사전적 내용심사로는 볼 수 없으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6) 결국, 이 사건에서는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인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 및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파급력 및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된 반면,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 등을 이용한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 등 역기능도 함께 증가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본인확인제는 이러한 인터넷상의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그와 같은 정보를 게시할 경우에는 향후 신원 확인을 통하여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여 표현내용에 신중을 기하고 불법정보 등의 게시를 자제하도록 함과 아울러, 게시판 이용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게시판을 보다 책임 있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우선, 불법정보의 게시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가해자 특정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등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물론 가해자가 타인의 컴퓨터 또는 아이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해자를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으나, 본인확인제에 의하더라도 가해자가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움은 마찬가지이고, 위와 같은 가해자의 은폐시도에 따른 특정의 어려움은 통상의 불법행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로서 일반적인 수사기법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다.

다음으로,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된 자에 대한 구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한 불법정보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제3항) 등으로 불법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즉 현행 형사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더라도 불법정보 등 게시에 대한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후적으로 불법정보 등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본인확인제 이외의 여러 규제조항들의 엄정한 집행을 통하여 불법정보 등 게시의 단속 및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본인확인제의 실시 이상의 높은 일반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현재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의 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들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업계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독일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 역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기초로 하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이나 면책요건을 정하는 방식으로 관계 법령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불법·유해정보가 게시되는 때에 민관(民官)이 협조하여 사후적으로 대처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본인확인제와 같은 적극적인 게시판 이용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규정하는 본인확인제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우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은 본인확인조치를 할 대상을 '게시판 이용자'로 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확인의 대상인 '게시판 이용자'는 '정보의 게시자' 뿐만 아니라 '정보의 열람자'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단순 열람자'는 인터넷상에서 정보열람만 하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어 본인확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의 게시자'만이 위 '게시판 이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축소해석하여 '정보의 게시자'에 대하여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법령조항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함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2)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3개의 조사기관에 인터넷 이용자 수의 산정을 의뢰하여 본인확인제의 적용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의 공간적 무제약성으로 인하여 국내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을 외국인이나 국외에 소재하는 한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바 그들도 위 '이용자 수' 산정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동일인이 동일한 인터넷 게시판을 하루에 여러 번 이용한 경우에 이용자 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이용자 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그 정확성과 산정기준이 불분명한 이용자 수 산정 결과에 따라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정하여진다는 점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

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함으로써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으로 공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 수는 2011년 기준 146개로 거의 전면적 수준의 본인확인제가 실시되는 것과 유사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3) 그 밖에 본인확인제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이다. 그러나 게시판에서 당해 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한 정보의 게시는 종료되지 않으므로 정보의 삭제가 없다면 본인확인정보는 무기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 결국 본인확인제는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모든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여 장기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본래의 입법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하고 다른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령조항들의 경우, 우리 법상의 규제가 규범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통신망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함에도 외국의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힘든 본인확인제를 규정함으로써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터넷은 전세계를 망라하는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의 집합체로서 개방성을 그 주요한 특징으로 하므로 외국의 보편적 규제와 동떨어진 우리 법상의 규제는 손쉽게 회피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 법상의 규제가 의도하는 공익의 달성은 단지 허울 좋은 명분에 그치게 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나아가 이해관계인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본인확인제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나) 반면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규정하는 본인확인제에 의한 익명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 되는데,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본인확인제는 기간 제한 없이, 표현의 내용을 불문하고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대부분의 게시판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보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의한 게시판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게시판에의 정보 게시를 봉쇄함으로써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

(다) 한편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터넷 환경의 변화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일반 게시판보다는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바일 게시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도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본인확인제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을 인터넷 공간의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현하는 반면에, 위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정보통신망상의 의사소통수단과 경쟁하여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에게는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가하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인터넷을 통한 여론의 형성・전파라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역시 심대하게 제한받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 보관의무 부과로 인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게시판 이용자가 입는 불이익 및 수사기관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본인확인정보의 보관목적외 사용 우려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역시 중대함을 부인할 수 없다.

(마) 결국 본인확인제로 인하여 기본권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하는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이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4) 소결

그렇다면 본인확인제를 규율하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본인확인이라는 방법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그 결과 헌법으로 보호되는 표현까지도 억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A 등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청구인 회사의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청구인 A 등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청구인 회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엠바고 사례

국가 안위나 중대한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일 경우, 엠바고 요청을 받은 바 없는 기자라 하더라도 그 취지를 존중하여 관련 사안의 보도를 유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1가합3841 판결

사실개요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2012년 6월 27일 부산일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1월 15일 화물선인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국적의 해적들에게 납치되자, 대한민국 해군은 2011년 1월 18일 인질로 잡힌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제1차 해상작전을 시도하였으나, 해군 3명이 부상을 입은 채 작전은 실패하였다. 국방부는 제1차 작전 전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작전 수행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보도는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이하 '엠바고(news embargo)'라 한다)을 하여 동의를 받았고, 작전 다음날 다시 출입기자단에게 작전 진행 경과를 설명하면서 엠바고를 요청하였다. 한편,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은 원고는 엠바고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1차 작전의 진행경과를 제보 받고 국회, 군 관계자 등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청와대 대변인에게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국방부에서 엠바고 걸고 백(back) 브리핑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원고 소속 기자 3명은 2011년 1월 20일 『소말리아 해적과 교전 해군 3명 부상』이라는 대제목과 「피랍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 중」이라는 소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국방부는 추후 작전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여 기사가 삭제되었다. 국방부는 2011년 1월 21일 선원들이 무사히 구출된 이후 국무총리실, 각급 중앙행정기관 등에 원고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청와대, 국무총리실 및 각급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원고 소속 각 출입기자들에 대한 1개월간 출입정지 및 보도자료 제공중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원고는 엠바고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음에도 엠바고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법하고, 엠바고를 요청한 국방부 외의 행정기관까지 제재조치를 하는 등 원고의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취재기자들에게 특정 사안을 보도하기 전에 항상 관련 내용에 대한 엠바고 요청 및 그에 대한 다른 취재기자들의 수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보도하려는 내용이 국가 안위나 중대한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 당해 사안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 취재원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엠바고를 요청한 경위 및 엠바고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엠바고 요청을 받은 취재기자들이 이를 수용하게 된 경위 및 취지, 당해 사안이 보도될 경우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도하려는 특정 사안에 대해 엠바고 요청을 받은 바 없는 취재기자라 하더라도 당해 사안에 대해 엠바고 요청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존중하여 관련 사안의 보도를 유예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헌법상 보장되는 취재의 자유는 기자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의 권력기관으로부터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취재를 할 수 있는 자유권일 뿐, 나아가 취재원에게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행정기관이 기자실을 운영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취재원이 취재기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한 점, 언론사가 엠바고를 파기할 경우 기자실 출입정지, 보도자료 제공 중단 등의 제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자실 출입기자의 등록 및 출입제한, 보도자료 제공의 대상 및 제한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이 없다는 점 자체만으로 이 사건 각 조치가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음과 같은 헌법 및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원고 등 언론사에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행정기관 스스로 운영하는 기자실 출입 및 보도자료의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조치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11가합3841 손해배상(기)
원　　고 : 부산일보 주식회사
피　　고 : 대한민국
변론종결 : 2012. 5. 30.
판결선고 : 2012.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게재 경위

1) 대한민국 국민이 승선한 1,500톤급 화학물질 운반선인 삼호주얼리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가 2011. 1. 15. 인도양 아라비아해 입구 공해상에서 소말리아 국적의 해적들에게 납치되자, 대한민국 해군은 2011. 1. 18. 인질로 잡힌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해상작전(이하 '이 사건 제1차 작전'이라 한다)을 시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해군 3명이 부상을 입은 채 이 사건 제1차 작전은 실패하였다.

2) 국방부는 이 사건 제1차 작전 전날인 2011. 1. 17.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이 사건 제1차 작전을 수행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보도는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이하 '엠바고(news embargo)'라 한다}하여 동의를 받았고, 이 사건 제1차 작전 다음날인 2011. 1. 19. 위 출입기자단에게 이 사건 제1차 작전의 진행경과 등을 설명하면서 다시 이에 대한 엠바고를 요청하여 동의를 받았다.

3) 부산·경남 지역에서 일간신문 '부산일보'를 발행하는 원고 소속 기자들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소속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설명 및 엠바고 요청을 받은 바 없는 상태에서 2011. 1. 20. 08:30경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사건 제1차 작전의 진행경과를 제보받고, 국회,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함과 아울러 같은 날 09:30경 청와대 대변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소말리아 해적과 교전 및 우리 해군 부상'이라는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B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국방부에서 엠바고 걸고 상세 백(back) 브리핑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4) 원고 소속 기자 C, A, D는 2011. 1. 20. 오전경 '소말리아 해적과 교전 해군 3명 부상'이라는 대제목과 '피랍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 중'이라는 소제목으로 별지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기사를 같은 일자 '부산일보' 제1면에 게재함과 아울러 '부산일보'의 인터넷 사이트(www.busan.com)에도 게재하여 보도하였다.

5) 국방부는 이 사건 기사의 게재사실을 알게 되자, 2011. 1. 20. 11:20경 원고 소속 기자들에게 위와 같은 보도내용이 인질범들에게 알려질 경우 인질로 잡혀있는 선원들의 신변에 위험이 초래되고 추후 작전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소속 기자들은 그 무렵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였다.

6) 대한민국 해군은 2011. 1. 21. 다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해상작전(이하 '이 사건 제2차 작전'이라 한다)을 시도하여 인질 전원을 구출하였다.

나. 이 사건 공문 발송 및 각 조치

1) 국방부는 2011. 1. 21. 이 사건 제2차 작전이 성공한 후 국무총리실, 각급 중앙행정기관 등에 '삼호주얼리호 사건 관련 업무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호주얼리호 사건 관련 업무협조 요청】

2. 국방부 대변인실은 삼호주얼리호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일간지 등 출입기자단과 주요포털사를 대상으로 인질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 엠바고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부분 언론과 포털사가 성숙한 자세로 이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3. 다만, 아래와 같이 인질구출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는 정부의 정당한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해당 매체는 공익을 위한다는 언론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어긋난바, 범정부 차원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나. 제재사유

1) 부산일보 : 본 사건의 경우 인질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기사화 전 취재내용에 대해 국방부에 문의할 경우 포괄적 엠바고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관련 기사를 인터넷 및 석간으로 보도(1. 20.)

다. 제재방안

1) 해당 언론사 출입기자 기자실 출입제한 조치

2) 사전 보도자료 제공중지 등

2) 이이 따라 청와대는 2011. 1. 24. 원고에게 '부산일보, 엠바고 파기에 대한 징계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소속 청와대 출입기자인 A에 대하여 30일간 출입정지의 징계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국무총리실과 문화관광부도 각 언론담당자를 통하여 같은 날 원고 소속 각 출입기자에게 1개월간 출입정지 조치를 한다고 구두로 통보하는 등 그 무렵 청와대, 국무총리실 및 각급 중앙행정기관 등(이하 '청와대 등'이라고 한다)에서 원고 소속 각 출입기자들에 대한 1개월간 출입정지 및 보도자료 제공중지 조치(이하 '이 사건 각 조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소속 기자들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엠바고를 요청받은 바 없었음에도, 국방부는 이 사건 공문에서 마치 원고 소속 기자들이 국방부의 엠바고 요청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 사건 공문을 각급 행정기관 등에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

2) 청와대 등의 이 사건 각 조치는, ①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엠바고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가 엠바고를 위반하였다는 전제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② 출입기자실 출입 및 보도자료를 제공받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취재의 자유에 포함되는 권리임에도 법률

의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며, ③ 엠바고 파기에 따른 징계는 해당 출입처의 기자단 소속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등 해당 출입처가 직접 이 사건 각 조치를 취한 점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④ 엠바고를 요청한 국방부 외의 다른 행정기관까지도 나서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며, 그로 인하여 원고의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방부, 청와대 등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문의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고 유사 사안에서 엠바고 준수를 강조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으며, 피고가 내부적으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발송한 이 사건 공문을 기사화하여 대외적으로 보도한 것은 오히려 원고이므로 이 사건 공문의 기사화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조치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엠바고 요청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기한 채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정당하며, 엠바고 위반에 관한 제재 관행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언론사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온 기자실 출입, 보도자료 제공을 일정기간 정지한 것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국방부의 이 사건 공문이 원고의 명예 · 신용을 훼손하였는지 여부

1) 먼저, 이 사건 공문에 기재된 원고의 엠바고 위반 관련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문 제3항 본문에 '인질구출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는 정부의 정당한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해당 매체는 공익을 위한다는 언론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어긋난바'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문은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포괄적 엠바고에 불구하고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요청하면서 그 제재대상으로 원고 외에도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이하 '미디어오늘 등'이라 한다)를 거론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이 사건 공문 제3항 본문의 기재 내용은 미디어오늘 등에 대한 제재사유와 원고에 대한 제재사유를 종합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포괄적 엠바고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관련기사를 지속, 확대 게재하였다는 미디어오늘 등에 대한 제재사유에 중점을 둔 표현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문은 제3의 나 1)항에서 원고에 대한 제재사유를 '본 사건의 경우 인질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기사화 전 취재내용에 대해 국방부에 문의할 경우 포괄적 엠바고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관련 기사를 인터넷 및 석간으로 보도'한 사실로 특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 소속 기자들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청와대 대변인 B에게 이 사건 제1차 작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국방부의 엠바고 요청이 있었음을 확인하고서도 국방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문의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문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공문의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그 사실 적시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 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엠바고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억류된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점,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속해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대한 엠바고를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보도를 유예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문을 통한 제재 요청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엠바고 요청 및 그에 대한 출입기자단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사가 보도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공문에 의해 원고의 명예 · 신용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문은 진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공문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원고의 명예 · 신용을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조치가 있었던 2011. 1. 24. 무렵 원고를 비롯한 언론사들을 통해 이 사건 공문의 내용이 보도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방부는 이 사건 공문을 국무총리실 등 각급 행정기관에만 발송하였고, 이를 수령한 각급 행정기관도 원고 등에 대한 제재 절차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공문을 열람시켰을 뿐 적극적으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문은 불상의 경위로 이를 입수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원고도 스스로 제일 먼저 이 사건 공문을 전문게재하면서 관련 기사를 작성하여 부산일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공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 신용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조치의 위법여부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보도를 유예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가) 엠바고란 '취재원(정보 제공자)과 취재기자들 사이에 특정사안에 대한 보도를 일정 시점까지 유예하기

로 하는 내용의 약정 또는 신사협정'으로 정의되는바, 취재원의 엠바고 요청에 대해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요청을 받은 취재기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고, 달리 국가기관 등 취재원이 엠바고를 요청할 경우 취재기자들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거나 일부 취재기자들이 엠바고 요청을 수용한 경우에 나머지 취재기자들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등 엠바고의 준수를 강제하는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은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취재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함에 있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엠바고 요청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거나, 다른 취재기자들이 취재원의 엠바고 요청을 받아들였음을 알게 된 경우 당연히 그에 따라 관련 내용의 보도를 유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엠바고는 개념상 대상 사안이 다른 취재기자에 의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특히 취재원이 국가기관처럼 반복적으로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재기자가 통일적으로 엠바고를 준수하여 보도유예가 되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엠바고가 필요한 개별적인 사안마다 사전에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엠바고를 요청하여 그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특히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엠바고 요청을 받은 바 없는 취재기자라 하더라도 다른 취재기자들에 의해 엠바고 요청이 수용되었음을 알면서도 엠바고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관련 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취재기자들에게 특정 사안을 보도하기 전에 항상 관련 내용에 대한 엠바고 요청 및 그에 대한 다른 취재기자들의 수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보도하려는 내용이 국가 안위나 중대한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 당해 사안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 취재원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엠바고를 요청한 경위 및 엠바고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엠바고 요청을 받은 취재기자들이 이를 수용하게 된 경위 및 취지, 당해 사안이 보도될 경우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도하려는 특정 사안에 대해 엠바고 요청을 받은 바 없는 취재기자라 하더라도 당해 사안에 대해 엠바고 요청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존중하여 관련 사안의 보도를 유예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기사 작성 당시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국방부의 엠바고 요청에 따라 그 보도를 유예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 작성 당시 원고 소속 기자들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소속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대한 엠바고를 요청받은 바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1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차 작전은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해 있다가 인질로 잡힌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것으로 사안의 성격상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점, ② 인질구출과 같은 군사작전의 경우 성공적인 작전수행을 위하여는 관련 내용이 비밀에 붙여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제1차 작전의 실패를 납치범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출작전의 경위와 배경, 우리 군이 납치범들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내용, 이 사건 제1차 작전 실패로 인한 우리 군의 구체적인 피해 정도 및 그에 따른 조치의 경과, 작전 실패에 따른 우리 군의 후속 구출작전의 실행에 대한 의지 여부 등은 구출작전이 최종적으로 성공하거나 포기될 때까지 비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기사가 이 사건 제1차 작전의 실패에 관한 내용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후 펼쳐질 추가적인 구출작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게다가 이 사건 기사는 소제목이 '피랍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중'이라 되어 있고, 기사 내용 중에는 '국방부는 20일 중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출작전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추가적인 구출작전이 있을 것임을 예측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⑤ 1959. 9. 4. 설립된 언론사로서 50여년간 신문을 발행해 온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보도가 인질로 잡힌 선원들이나 작전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원고는 2005. 7. 4. 대통령 참석에 따른 보안 문제로 국방부의 엠바고 요청과 국방부 출입기자단의 수용이 있었음에도 해군 진수식을 사전 보도하였다가 청와대로부터 출입제한 3개월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제1차 작전과 같은 중요 군사작전에 관한 사안의 경우 국방부의 엠바고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⑦ 실제로 원고 소속 기자들은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제보를 받고 확인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대변인 B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방부에서 엠바고를 요청하였음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소속 기자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 작성 당시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국방부의 엠바고 요청과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이를 수용한 취지를 존중하여 그 보도를 유예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보도를 유예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조치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각 조치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행정기관이 기자실을 운영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취재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취재기자에 의한 공무원 개인 혹은 담당 부서에 대한 취재활동을 자제하도록 하여 원활한 공무수행을 추구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기사의 경우 기자실에서의 브리핑 및 보도자료 제공에 의존하여 관련 기사를 작성, 보도하는 것이 관행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어느 언론사가 행정기관의 기자실 출입 및 보도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면 신속 · 정확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는 중요 취재원인 행정기관에 대한 취재에 있어서 큰 제약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행정기관의 기자실에 출입하고 보도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단순히 행정기관의 시혜적 편의제공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2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헌법상 보장되는 취재의 자유는 기자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의 권력기관으로부터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취재를 할 수 있는 자유권일 뿐, 나아가 취재원에게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행정기관이 기자실을 운영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취재원이 취재기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한 점, 언론사가 엠바고를 파기할 경우 기자실 출입정지, 보도자료 제공 중단 등의 제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자실 출입기자의 등록 및 출입제한, 보도자료 제공의 대상 및 제한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이 없다는 점 자체만으로 이 사건 각 조치가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음과 같은 헌법 및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원고 등 언론사에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행정기관 스스로 운영하는 기자실 출입 및 보도자료의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조치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④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 신장하여야 한다.

②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 · 보도 · 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3348호)**

제15조(취재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은 언론에 대하여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언론에 대한 원활한 취재지원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언론에 대한 세부 취재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6조(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에 대한 정례브리핑 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수시브리핑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신속 ·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고, 현안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을 하기 위하여 언론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정성 ·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방홍보훈령 (국방부훈령 제1092호) 제6조**

③ 국방부 대변인은 주간 보도계획을 매주 금요일 기준으로 출입기자에게 공지할 수 있으며, 공지된 사안과 일정은 브리핑 시점까지 보도자제(엠바고)가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절차상 하자 여부

이 사건 각 조치가 엠바고 파기에 대한 제재를 출입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정해 온 관행과 달리 각 행정기관

이 직접 제재를 한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자실을 운영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주체는 청와대 등 행정기관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 등 제재도 행정기관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엠바고 파기 등을 이유로 한 기자실 출입제한 등 제재가 주로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이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의견을 존중해 그에 따라온 것으로 보아야 할 뿐 행정기관 스스로는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지 않고 행정청 스스로 제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조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이 사건 각 조치가 엠바고를 요청한 국방부 외의 다른 행정기관에 출입하는 원고 소속기자들까지 제재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대로 엠바고를 요청한 행정기관의 출입기자에 한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엠바고를 요청한 국방부의 출입기자단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각 조치는 피고 산하 전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이 사건 공문에 따라 행정기관별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판단하여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조치는 1개월간의 기자실 출입제한 및 보도자료 제공중지에 그쳐 납치된 이 사건 선박 선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엠바고의 취지를 감안할 때 다른 엠바고 파기에 따른 제재조치에 비해 과중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각 조치에 따른 출입정지 기간 내에도 원고 소속의 청와대 출입기자인 A는 대통령과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북악산 동반 산행과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그 과정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출입기자인 E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식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출입금지요청을 받았으나 강제로 쫓겨나지는 않아 취임식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등 출입정지 조치가 엄격히 적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조치가 제재사유와 제재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국방부의 이 사건 공문 발송과 청와대 등의 이 사건 각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기사 생략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및 지역사무소 안내

서 울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 02) 397-3114 상담전화 : 02) 397-3000, 3010, 3100 팩스 : 02)397-3089

지 역

중부본부	전화 031)211-9027
경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1116-1) 경기문화재단 8층 전화 031)211-9027,9022 / FAX 031)212-0223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42)525-0778~9 / FAX 042)525-0768
충북사무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산남동 657)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전화 043)286-8083,8081 / FAX 043)286-8084
강원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033)255-2878~9 / FAX 033)255-2872
영남본부	전화 051)759-7083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전화 051)759-7083~4 / FAX 051)759-7093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53)763-0020~1 / FAX 053)763-0242
경남사무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사파동 80) 보고빌딩 601호 전화 055)263-1787,1780 / FAX 055)263-1769
호남본부	전화 062)676-0360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5(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전화 062)676-0360~1 / FAX 062)676-0362
전북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72(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063)288-0010,0981 / FAX 063)288-0980
제주사무소	제주도 제주시 남광북5길 6(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064)722-3328,3352 / FAX 064)726-3201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3년 6월 25일 인쇄
2013년 6월 30일 발행
발 행 인 : 권 성
편 저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수시교육팀
발 행 :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6층
전 화 : 02)397-3061~4
팩 스 : 02)397-3069
홈페이지 : http://www.pac.or.kr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 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이 책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